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00-01

# 2010~2011 구제역 백서

농림수산식품부 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00-01

# 2010~2011 구제역 백서

－ 구제역의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백서는 연구를 담당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일부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연구진 :**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연구위원 허    덕    연구위원 정 민 국  
연구위원 우 병 준    연구위원 김 창 호    초빙연구위원 정 종 기  
인턴연구위원 연 가 연

## 머 리 말

---

2010년 11월 하순에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이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축 347만여 마리를 도살처분 및 매몰한 뒤 종식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보상비, 방역비, 매몰비를 포함한 국고 지원액이 약 3조 원에 달하며, 발생지역 내 주민·차량 통제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대규모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어 가히 '사상 최악의 가축질병 재앙'이라고 칭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5번째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 규모나 범위 면에서 방대하여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으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각계에서 구제역 사태의 전말에 대하여 철저하고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에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여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6월에 백서의 작성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이 백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백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구제역 관련 연구보고서나 구제역 백서와 차별성을 가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기록이라는 점이다. 즉,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제역이 발병하여 확산된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방역 및 정책 대응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오해 불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제역을 둘러싼 오해나 갈등에 대하여 전문가 견해 및 정책자료 공개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정책·현장 지침서가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축산 현장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백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과 ‘구제역백서 연구자문위원회’가 연구의 초기부터 협의하면서 편찬 방향에서 내용 구성까지 공동으로 작업한 성과물임을 밝혀 둔다. 아울러 이 백서는 정부 문서를 비롯한 많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농림수산물부와 산하 유관기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 시·도 광역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등에 감사드린다. 또한 쟁점사항을 집필하여 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감수를 맡아주신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관실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도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2011.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연구 개요

---

### 1. 연구 배경과 백서의 특징

이 백서(白書, whitepaper)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제역 백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11월 하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게 된 2011년 5월 하순까지 약 6개월 동안이다. 2010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어 4월부터 6월에는 경기 강화, 김포, 그리고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하였다. 그 후 9월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다시 11월 하순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11월 이후의 구제역은 이전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그 후의 발병·확산과 방역 및 정책 대응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려는 것이다.

둘째, 백서의 내용으로서, 구제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오해 불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 향후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정책·현장 지침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하고, 구제역을 둘러싼 오해나 갈등에 대하여 전문가 견해 및 정책자료 공개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축산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구제역 백서와의 연관성 및 차별성이다. 이번 구제역은 발병 원인

이나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상황이므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백서에는 기존의 구제역 백서에서 포함하지 않은 환경오염과 매몰지 사후관리, 경제·사회적 영향, 각계 의견,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2. 백서의 구성

이 백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구제역 질병 개요를 서술한다. 제1절에서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등을 서술하고, 제2절에서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에 대하여 영국(2001년, '07년), 우루과이(2001년), 일본(2010년 4~7월, 미야자키현), 대만(1997년) 등의 사례를 정리한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교훈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3절에서 최근 국내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방역 활동에 대하여 2000년 3~4월, 2002년 5~6월, 그리고 2010년 1월과 4~5월 등의 상황에 대하여 정리한다.

제2장은 2010년 제5차 구제역의 발생 및 확산 경과를 정리한다. 제1절에서 안동 지역의 구제역 발생 경과와 원인,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등을 서술하고,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초동 대처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고, 쟁점 사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한 의견을 소개한다.

제2절에서는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과를 서술한다. 구제역 확산의 단계별 특징과 경과를 정리하고, 이어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한다. 쟁점 사항으로 구제역 역학조사의 문제점, 구제역의 효과적인 차단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또한 우수사례로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3장은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을 정리한다. 제1절에서는 방역 추진 체계에 대하여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의 구제역방역대책본부,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방역체계,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역할 분담 등을 소개한다. 또한 방역 지원조직과 활동으로서 군인(국방부), 경찰(경찰청) 지원체제, 민간단체 활동 등을 정리하고, 방역 관련제도와 예산 조치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이러한 방역 활동과 관련하여 유정복 전 농식품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 사항으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제2절은 구제역 진단 및 예찰을 정리한다. 구제역의 진단과 예찰 활동에 대하여 의심축 신고, 감수성동물 예찰, 검사 방법 등을 서술하고, 시도별 활동 실적을 정리한다. 그리고 주요 쟁점으로 구제역 초동 진단의 문제점, 구제역 진단소의 분산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가축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지역 설정,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폐쇄, 차단 방역의 내용 등을 정리한다. 그리고 차단 방역의 우수 사례로 지역 및 기관의 대응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하여 백신 의사결정 과정, 백신의 수급, 접종 효과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관련 쟁점으로서 백신의 효과, 백신 확보의 방법으로서 국내 생산 문제 등을 정리한다. 또한 백신 접종의 우수사례도 몇 가지 소개한다.

제5절은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 살처분과 동물복지 적용, 매몰지 합동조사 결과, 매몰지 관리를 위한 대책 등을 정리한다. 또한 쟁점으로 동물복지에 입각한 살처분 방법, 매몰지 침출수의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제6절에서는 방역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서술한다. 구제역의 방역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언론 보도 동향 등을 정리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한 방역교육 활동을 정리한다. 그리고 구제역을 경험한 축산농가의 경험과 소회를 소개한다.

제7절에서는 방역조치 해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추진한 이동제한 해제의



추진경과와 내역 그리고 가축 재입식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쟁점 사항으로 구제역 청정국 유지의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역 활동을 정리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과 특징에 대하여 구제역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즉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8개도이다. 그리고 쟁점 사항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고, 특별히 구제역으로 순직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2절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방역 활동을 정리한다. 관계 부처로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활동, 그리고 국방부, 경찰청 등 타부처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다. 그리고 축산단체의 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대한수의사회와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의 축산단체 그리고 축산업계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특별히 축산단체장의 사회로서 한우협회장과 양돈협회장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제5장은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정리한다. 제1절에서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대하여 구제역 이후의 축산물 수급 동향, 축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에 대하여 이동제한지역 가축 구매, 살처분 보상금,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쟁점 사항으로 구제역의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구제역 보상에 관한 외국사례도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종합 평가 및 정책 과제를 정리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구제역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하여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직접 영향은 재정 지출 집계, 축산업 피해 시나리오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간접 영향은 연관 산업, 지역경제, 기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사례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를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정책 과제와 개선 방안으로서 구

제역 사태 이후의 한국 축산의 비전, 방역체계 개선 방안,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부록에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문건들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구제역 상황일지, 구제역 관련 정부 발표문, 일지,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 목록, 구제역 관련 법령 등으로 한정하였다.

### 3. 연구 추진체계와 자문위원회 활동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보고서(구제역 백서)를 집필하되,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며, 집필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도록 하였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를 총괄하며,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을 연구책임자로 허 덕 연구위원, 정민국 연구위원, 우병준 연구위원, 김창호 연구위원, 정종기 초빙연구위원, 연가연 인턴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는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세 분, 학계에서 세 분, 업계에서 두 분, 언론에서 두 분, 소비자단체에서 한 분, 그리고 정부에서 세 분 등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표 참조), 동 위원회에서 백서의 구성부터 내용 조율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외부의 관련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 이를 연구진들이 객관적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였다.

구제역 백서 연구자문위원회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명의로 위촉하여 6월 16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연구진이 구상한 백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쟁점사항과 집필자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백서가 일반인들에게도 읽힐 수 있도록 흥미롭게 작성하는 방향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정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백서의 초안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이 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 &lt;구제역 백서 연구자문위원회 구성&gt;

구분	분야	성명	소속 / 직위
위원장	축산 일반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생산자 단체	축산 일반	이환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한우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양돈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
학계	수의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축산경제	한성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환경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업계	수의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컨설팅	최준표	JP 솔루션 대표이사
언론	일간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전문지	장지헌	축산신문 편집국장
소비자	시민단체	강광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상임이사
정부	축산	이창범	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환경	송재용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방역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

&lt;제1차 자문회의(6.16, 농경연)&gt;



&lt;현지 시찰(7.13, 이천)&gt;



제2차 회의는 7월 13일에 현지 시찰과 자문회의를 겸하여 개최하였다. 자문 위원들과 연구진이 직접 구제역 사태로 가축 매몰 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이천시를 방문하여 시청 방역담당자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여 매몰 처리한 한우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를 각각 1개소

씩 방문하여 농장주로부터 경영 개황과 방역 활동 및 매몰지 관리 상황 그리고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담당 공무원과 축산 농가들은 정부 지침이 자주 바뀌는 문제, 살처분 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 그리고 매몰지 관리, 보상금 지원, 가축 재입식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3차 회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 6일에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10개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원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공통적인 견해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백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재발설, 구제역 진단소의 지역 분산 문제,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 방안, 백신 청정국 유지 방안, 동물보호 차원의 살처분 방법, 가축 매몰지의 환경오염 문제, 피해 보상금의 내용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이 제시되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백서에 포함해야 할 추가 쟁점으로 SOP 매뉴얼 보완사항, 매몰지 관리 등을 선정하고 추가로 집필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제4차 회의는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10월 18일에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연구진들이 집필한 백서 초고에 대하여 구성부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점이 된 주요 사항으로 구제역의 발병 상황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정확한 설명, 구제역 확산과 관련된 사료공장에 대한 표기 문제, 이동제한지역의 가축수매 내용, 차단방역에 대한 관련업계의 활동 내용, 긴급행동지침 매뉴얼에 추가해야 할 사항, 초기진단 방법에 대한 세부적 언급, 우수사례의 선정 기준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집필된 초고에 대하여 좀 더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특히 향후 구제역 재발시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충분하게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내용상의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이 10월 말까지 연구진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수 의견과 함께 최종보고서의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4. 주요 연구 결과

### 4.1.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의 개요

#### (1) 구제역의 질병 개요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증상으로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데, 포유중인 어린 돼지의 경우 치사율이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2) 국내의 구제역 발생 경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최초 기록은 1911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소규모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가 1934년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종식되었던 구제역은 2000년 3월에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후 2002년에 경기 안성에서 재발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잠잠하다가 2010년 1월에 경기 포천에서, 4월에는 강화에서 발생하였고, 11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00.3.24~4.15(22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하여 충청 지역까지 15건 발생
- '02.5.2~6.23(52일): 경기 안성과 용인에서 16건 발생
  - \* '02.11.29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
- '10.1.6~3.23(76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 약 6천두 살처분
- '10.4.8~6.19(72일): 강화, 김포, 충주, 청양에서 발생. 약 5만두 살처분.
  - \* '10.9.27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
- '10.11.23~11.4월말: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 약 347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

### (3)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발생·확산과 방역 추진 내용

#### ① 구제역 발생('10.11.28):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축산농가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당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발생 농가의 경영주가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시에 소독 조치를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검역원은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홍콩, 러시아, 일본, 베트남, 몽골 등에서 최근 발생된 바이러스 유전형과 관련성이 있음”이라고 분석하였다.

#### ② 주의 단계('10.11.29): 경북 지역으로 확산

검역원은 경북 지역에서 초동 방역이 지연되면서 구제역의 확산이 가속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제역의 의심 가축이 신고되면 지방 가축질병진단기관에서 진단하고 양성 판정 이후에 방역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11월 24일에 신고된 기립불능 가축을 구제역 음성으로 추정하여 자체 종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동통제 전에 인근 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거한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제2차관)를 설치하였다.

#### ③ 경계 단계('10.12.15): 경기 지역으로 확산

12월 들어 구제역은 경북 예천, 영양, 영주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12월 14일에는 경기 양주와 연천, 15일에는 파주에서 발병하였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안동에서 검역원 신고(11.28) 10여일 전에 발생농장 분노를 통하여 경기도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농식품부는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격상하였으며,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경기 고양, 가평, 김포에 이어 12월 하순에는 강원 화천, 평창, 춘천, 원주, 횡성 등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정부는 백신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함에 따라 12월 22일에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결정하게 되었다.

## &lt;구제역 발생·확산 및 방역 추진 경과&gt;

일자	진행 상황	주요 내용
'10.11.28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경보: "관심" 단계)	• 경북 안동 양돈단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발생 * 일선기관에서 간이항체키트로 진단, 이동통제 전에 인근 농장으로 전파
'10.11.28 ~ 12.15	경북 전역 확산 (11.29, 경보 상황: 관심→주의)	• 11.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동 의심신고 양성 확인 → 양성 판정 이후 초동방역 개시 • 안동에서 예천(12.4), 영양(12.6), 영주(12.10), 예천(12.14) 등으로 확산
'10.12.15	경기 파주로 전파 (경보: 주의→경계)	• 양주/연천(12.14), 파주(12.15)에서 발생 * 검역원 신고(11.28) 10여일 전 안동 발생농장 분뇨가 경기도 파주로 이동 확인
'10.12.25	백신 접종 시작 * 발생지역 소에 접종	•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백신 접종 실시 * 평창(12.21), 강화(12.23), 여주(12.25) 등에서 발생
'10.12.29	전국 확산 * 중대본 설치 (경보: 경계→심각)	• 사료업자 등 전국단위 영업으로 인해 발병 확산 * 춘천(12.27), 경주(12.30) 등에서 발생 •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 수위로 격상 • 범정부 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11.1.13	전국 백신 결정	• 링 방식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발생 * 천안(1.1), 괴산(1.3), 대구(1.17), 김해(1.24) 등에서 발생 * 전국 모든 소·돼지 대상(1200만두) 백신 결정
'11.2.10	매몰지 사후관리 T/F 구성·운영	• 매몰지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매몰지 보강 * 1~2차(1.24~2.25) 조사결과 274개소 보강, 신규발생 및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3차 조사(2.27~3.4)
'11.3.3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지시	• 구제역 NSP 항체 양성농장 및 가축방역 조치사항 재강조
'11.3.24	위기경보 하향 (경보: 심각→경계)	• 2.25일 울주군 돼지농가 발생 이후 소강 상태 •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선진화방안" 발표(3.24)
'11.4.12	위기경보 하향 (경보: 경계→주의)	• 3.21일 이후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3주간 추가 매몰이 없고 상시 예방접종 상황

#### ④ 심각 단계('10.12.29): 전국으로 확산

구제역은 12월 15일 이후에도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경기 여주, 인천 서구, 경기 양평, 경북 청송, 강원 홍천과 횡성, 경북 영주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분뇨, 사료업자 등이 전국 단위 영업으로 인하여 발병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1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농식품부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살처분 두수가 50만두를 넘어서면서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국가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12월 29일에는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범정부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설치하였으며, 농식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구제역은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월 6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100만 두를 초과하였다. 1월 12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150만 두를 넘었고, 당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1월 하순에는 구제역 발병이 강원 삼척과 영월, 경북 포항 등으로 확산되어 살처분 두수가 200만 두를 넘어섰고, 다시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김해와 양산 등으로 확산되면서 1월 31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300만 두를 넘어섰다. 2월 초에는 부산 사하와 충북 청주에서 신규로 발병하였다. 2월 10일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T/F(단장: 농식품부 장관)를 구성하였다.

#### ⑤ 경계 단계('11.3.24): 위기경보 하향 조정

2월 중순 이후에는 대전, 충남 태안, 경북 청도에서 추가로 발병하였고, 2월 25일 경북 울주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후에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정부는 3월 3일에 구제역 추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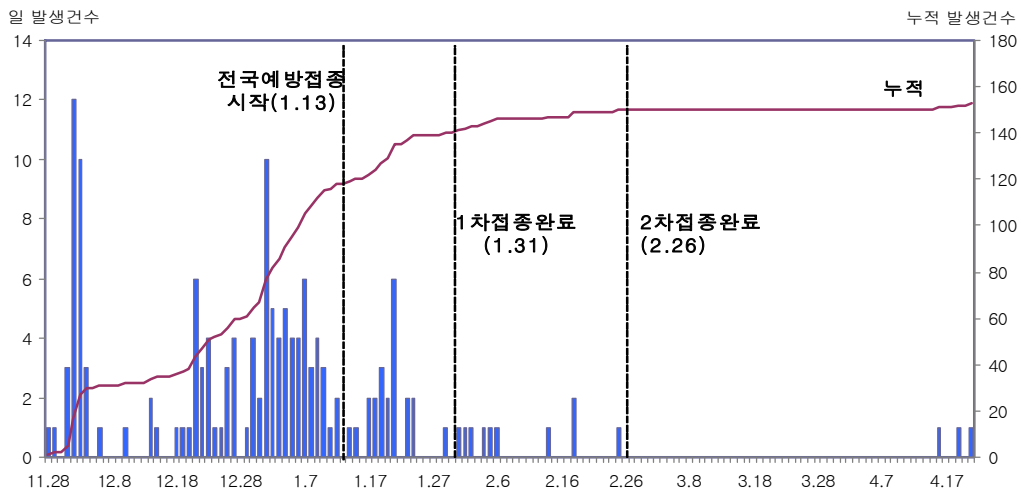


### ⑥ 주의 단계('11.4.12): 추가 발생 없음

3월 들어 구제역 발생은 완연한 소강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3월 21일 이후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4월 12일 구제역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전환하였다. 그 후 4월 19일과 21일에 경북 영천에서 그리고 5월 26일 안동에서 추가로 발병하였으나 매몰 두수는 적었다.

이상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구제역은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2011년 2월 초까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다가 3월부터 소강 상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5월 말까지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 두수는 총 347만 9,962두로 집계되었다.

<구제역 발생 건수 추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현황(2011.6.2 기준)>

축 종	가축 매몰 농장 수	매몰 마리 수
소	3,750	150,864
돼지	2,103	3,318,298
염소	232	7,557
사슴	156	3,243
소계	6,241	3,479,96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4.2. 주요 쟁점사항

### (1)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존 바이러스 재발설과 해외유입설이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유입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기존 바이러스 재발설을 주장하는 학자(우희중 서울대 교수)는 안동 구제역의 유전자형이 2010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던 A형과 인천 강화 지역의 O형 중에서 강화 쪽에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인천 강화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짜맞추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역학조사 및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구제역바이러스는 단지 내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11.3~11.7)에 의해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O형으로 동남아(SEA)형에 속한다는 사실 확인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 2010년 4월에 발생한 O형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8.44%라고 밝혔다.

### (2) 구제역 진단소의 중앙집중과 지역분산

구제역은 초기 진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이 유리하다는 주장과 아울러 현장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구제역 진단에 대하여 중앙집중이 일반적이며,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도 중앙에서 진단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구제역이 빈발한 경기도에서는 정밀진단 기능이 중앙(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이 없는 상황 하에서 지자체 수의공무원이 구제역 의심 증상만 가지고 중앙에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고, 구제역 창궐로 샘플량이 늘어나면 빠른 진단과 판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도내에 2개소의 진단소 설치를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으나, 남부 지역에 1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3) 구제역 확산의 효과적 차단방법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제한지역의 영업제한 강화, 역학조사 철저, 소독방법과 효과 거양 등의 견해가 있다.

이동제한을 강조하는 학자(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사료공장이 전국의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고 생축이 다른 지역에서 도축되고 있어 구제역 발생시의 확산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 강화 및 축산농가별 차단방역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역학조사의 철저를 강조하는 학자(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시·도에 역학조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중앙역학조사반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에 있어서 역학적 중요도가 높은 농가 및 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독 철저를 강조하는 학자(박봉균 서울대 교수)는 축사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 등으로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독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소독약제 선택, 용법·용량 준수, 적정 작용온도 유지, 충분한 소독 시간 및 소독 범위, 차량운전자 및 종사자의 소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4)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유지

이에 대해서는 살처분 청정국이나 백신 청정국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는 먼저 백신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이후 2단계로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 고려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목표이다.

예방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①전국 소·돼지에 매년 80%이상 예방접종 실시, ②청정국 신청전 최근 2년간 구제역 미 발생, ③최근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 미 존재 증명, ④정기적인 예찰활동 실적 등이다. 따라서 2011년 4월 20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 이후 추가 발생 없으므로, 예방접종 청정국 신청요건 충족시는 2013년 4월 20일에 청정국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예방접종 100% 실시, 차단방역 및 국경검역 조치 강화 등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5) 구제역 백신 확보 및 접종

현재 구제역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면 저렴하게 안정 공급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반면에 구제역 청정국을 지향하면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백신 생산을 주장하는 학자(최인수 건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메리알사와 인터벳사로부터 완제품 백신을 공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이들 회사로부터 항원만을 공급받아 국내 백신회사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수입할 항원은 O, A, Asia 1 등으로 복합백신도 제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의 백신 생산을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이중복 건국대 교수)는 현재 다국적 백신 회사로부터 생산한 항원을 수입하여 완제품 백신을 제조하는 반공정 방식을 예정하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국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내 생산에 부정적인 학자(류영수 건국대 교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고 같은 혈청형 내에서도 변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아시아 방역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국에서 일정부분 투자하여 연구소 및 백신 시설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6) 발병 가축의 살처분 방법

구제역 발병한 가축의 살처분 방법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물복지 차원의 살처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살처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검역검사본부 이상진 박사)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매몰, 소각, 랜더링 등이 많은 한계를 내포한다는 견해이다. 매몰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 문제가 있으며, 소각은 대량 처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화물차량에 사체 투입구, 사체 파쇄부, 살균부, 고형물과 액상폐기물로 분리하는 압착부, 저장조 등을 설치한

이동식 특장차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전문가(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는 살처분 방식의 개선을 위해 OIE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우선 살처분 개체 수가 적을 경우 약물주사, 많을 경우 전살(電殺)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살처분 수행 작업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OIE는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동물복지 조항에 질병통제 목적으로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인도적이고 축종과 연령을 고려한 살처분 방법을 권고하며, EU 동물복지지침은 동물복지에 반하는 살처분 방법을 불허한다. 일본도 동물의 살처분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살처분 대상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 (7) 매몰 가축 및 침출수의 환경오염 문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매몰지 유실 등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가축매몰지 매몰 기준대로 매몰할 경우 침출수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나, 매몰지 설치나 침출수 관리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 전문가(환경부 토양지하수와 임성재 사무관)는 앞으로 매몰처리보다 액비저장조, 퇴비화, 소각, 랜더링 등의 처리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불가피하게 매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매몰지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8) 구제역의 피해보상 문제

현재 구제역의 피해보상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매몰가축을 구분(성축과 자축, 임신 여부, 체중)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은 전국에서 장기간 발생하였고 매몰시 기록이 부정확하여 보상 기준과 시기에 대해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축산경제학자(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농가의 채무부담 완화, 전직 지원, 정신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간접지원에 대한 보완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9)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적절성과 한계

현행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 및 체계가 현실에 적절한지 실효성을 검증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동 대응 체계의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군의 공조체계 구축,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한 항원진단키트 보급, 공항·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 강화,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 예찰 강화, 축산농장 출입차량의 소독 철저, 축산단체·기업 등의 자율적 예찰 및 방역 활동,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매몰 방식 외에 소각, 화학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안 강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0) 민간단체의 자율방역기구 설치 운영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즉,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방역조직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가 방역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비상 상황시 방역용품을 제공하여 그물망 방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또한 축협의 방역단(전업농 중심)과 정부 공동방제단(소규모 농가 중심)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방역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4.3. 종합 평가 및 개선 방향

### (1) 구제역 발생으로 드러난 방역의 문제점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드러난 국내 방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검역 관리 및 조치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국경에서의 방역관리가 미흡하였다.

②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울타리 구분 경계의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질병발생시 초기진단 및 대응에 미숙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에 한계를 나타냈다.

④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파악이 탐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⑤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⑥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하여 긴급하게 매몰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⑦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2) 방역 체계의 개선 사항

구제역 발생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지역사회, 국가 재정, 국민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항만 검역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 후 소독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의 전염병 진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최초 확인될 경우 가장 강력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당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시설의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기관을 통합한 조직을 신설하여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백신 수급 관리, 예방접종 축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축사 울타리 경계, 차량소독 시설,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는 방역과 농장 출입 요

령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하며, GPS 및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축사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주변국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의 유입에 대비한 혼합백신 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제류 전체 사육두수를 고려한 백신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백신공장 설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⑤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적합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몰처리 방식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당분간 대규모 매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매몰방식 이외의 소각, 랜더링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⑥ 방역을 위해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농가 조사 결과,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많은 농가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방역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다.

⑦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축단계 이외 전 유통단계로 확대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⑧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에 의한 진입제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⑨ 가축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인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목 차

---

### 연구 개요

#### 제1장 구제역 질병 개요

1.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	1
1. 1. 구제역 정의와 질병 특성 .....	1
1. 2.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	5
2.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	9
2. 1. 영국 .....	10
2. 2. 우루과이 .....	17
2. 3. 일본 .....	19
2. 4. 대만 .....	22
3. 최근 국내의 구제역 발생 동향 .....	29
3. 1. 2000년대 구제역 발생 경과 .....	29
3. 2.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 상황 .....	32

#### 제2장 2010년 하반기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1.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경과 .....	35
1. 1. 안동지역 구제역의 발생 상황과 원인 .....	35
1. 2. 구제역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	38
1. 3. 구제역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란 .....	45
2.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과 .....	53
2. 1. 구제역 확산의 단계별 경과 .....	53
2. 2. 구제역의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 분석 .....	60

### 제3장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

1. 방역 추진체계 .....	79
1. 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	79
1. 2. 방역 관련 제도와 예산 .....	92
2. 구제역 진단 및 예찰 .....	98
2. 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	98
2. 2. 구제역 정밀진단 결과 .....	100
2. 3. 구제역 예찰 결과 .....	104
3. 가축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	110
3. 1. 이동제한 지역 지정 .....	110
3. 2. 가축 이동제한 .....	112
3. 3. 차단 방역 .....	116
4. 백신 접종 .....	124
4. 1. 구제역 백신의 의사결정 .....	124
4. 2. 구제역 백신의 수급 .....	130
4. 3. 백신 접종 효과 .....	132
5.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	140
5. 1. 살처분과 매몰 .....	140
5. 2. 살처분과 동물복지 적용 .....	149
5. 3. 매몰지 관리 .....	152
5. 4. 매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157
6. 방역 홍보 및 교육 활동 .....	171
6. 1. 방역 홍보 .....	171
6. 2. 축산농가 방역 교육 .....	179
7. 방역조치 해제 .....	183
7. 1. 이동제한 해제의 추진경과와 내역 .....	183
7. 2. 가축 재입식 .....	187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역 활동

1.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191
1. 1. 인천광역시	191
1. 2. 대전광역시	193
1. 3. 대구광역시	194
1. 4. 울산광역시	197
1. 5. 부산광역시	198
1. 6. 경기도	199
1. 7. 강원도	203
1. 8. 충청북도	206
1. 9. 충청남도	209
1.10. 전라북도	210
1.11. 전라남도	211
1.12. 경상북도	211
1.13. 경상남도	213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방역 활동	220
2. 1. 유관기관의 방역 지원	220
2. 2. 축산단체의 방역 활동	227

## 제5장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보상

1.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239
1. 1.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239
1. 2. 축산물 수급안정 조치	245
2.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249
2. 1. 농가 보상 체계	249
2. 2.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251

2. 3. 살처분 보상금 .....	255
2. 4. 생계 및 경영 안정 지원 .....	257
2. 5.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 .....	260
2. 6. 피해농가 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	261

## 제6장 종합 평가 및 정책 과제

1. 구제역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	273
1. 1. 가축의 매몰 처분 .....	274
1. 2. 구제역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	276
1. 3.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 .....	278
1. 4. 국민경제 파급 영향 .....	283
1. 5. 사회적 갈등 사례 .....	285
2.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 .....	289
2. 1. 방역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	289
2. 2. 방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298
3.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	302
3. 1. 한국 축산업의 비전 .....	302
3. 2. 방역체계 개선방안 .....	308
3. 3. 축산업 선진화 방안 .....	314

참 고 문 헌 .....	331
---------------	-----

## 부록

부록 1. 구제역 상황일지 .....	333
부록 2. 구제역 관련 정부 발표문 .....	371
부록 3.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 목록 .....	539
부록 4. 구제역 관련 법령 .....	557

## 표 목 차

---

### 제1장

- <표 1- 1> 2010~11년 기간 해외 구제역 발생 현황 ..... 9
- <표 1- 2> 우루과이의 2001년 구제역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 18
- <표 1- 3> 일본의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 ..... 21
- <표 1- 4> 2000년과 2002년 국내 구제역 발생 내용 비교 ..... 31
- <표 1- 5> 2010년 1월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 ..... 32
- <표 1- 6> 2010년 4~5월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 ..... 34

### 제2장

- <표 2- 1> 서현양돈단지 사육 현황 및 구제역 발생 상황 ..... 36
- <표 2- 2> 구제역 현장 역학조사시 조사사항 ..... 40
- <표 2- 3> 서현양돈단지 농가별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 45
- <표 2- 4> 2010년 하반기 구제역의 위기경보 단계별 상황 ..... 54
- <표 2- 5>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 신고 및 양성 판정 목록 ..... 57
- <표 2- 6> 안동시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의 가축두수 분포 ..... 62

### 제3장

- <표 3- 1>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구성원과 주요 임무 ..... 90
- <표 3- 2>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진단결과 종합 ..... 101
- <표 3- 3> 국내 발생 O형 바이러스와 동일 계통 바이러스의 비교 ..... 103
- <표 3- 4> 구제역 발생건의 지역별·일자별 염기서열 변화 정도 ..... 103
- <표 3- 5> 전국 구제역 임상예찰 조사 실적 ..... 105
- <표 3- 6> 전국 구제역 혈청학적예찰조사 실적 ..... 105
- <표 3- 7> 야생동물의 구제역 감염여부 확인검사 실적 ..... 106
- <표 3- 8> 구제역 방역지역의 유형과 내용 ..... 110
- <표 3- 9> 전국 시·도 구제역 이동제한 현황 ..... 113

<표 3-10> 이동통제 초소 설치 현황 .....	114
<표 3-11> 전국 구제역 이동초소 분포상황 .....	115
<표 3-12>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별 확대상황 .....	127
<표 3-13> 전국 구제역 제1차 백신접종실적 .....	129
<표 3-14> 전국 구제역 제2차 백신접종실적 .....	129
<표 3-15> 구제역 백신 공급 조치 .....	131
<표 3-16> 각국의 질병가축 처리방법 .....	141
<표 3-17> 전국 시·도별 구제역 가축 매몰 현황 .....	146
<표 3-18> 전국 시·군별 구제역 가축 매몰 현황 .....	147
<표 3-19> 전국 가축 구제역 매몰지 일반관리상황 .....	154
<표 3-20> 구제역 집중 홍보 실적 .....	173
<표 3-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구제역 순회교육 실적 .....	180
<표 3-22> 구제역 발생 및 이동제한 해제 시·군 현황 .....	186
<표 3-23>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일자별 현황 .....	186

#### 제4장

<표 4- 1> 정부부처의 구제역 관련 협조 내역 .....	221
<표 4- 2> 행정안전부의 구제역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223
<표 4-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구제역 방역 지원 실적 .....	227
<표 4- 4> 농협중앙회의 구제역 방역 지원 실적 .....	229

#### 제5장

<표 5- 1> 한우 송아지 및 큰 암소 산지가격 추이 .....	240
<표 5- 2> 한우고기 도매가격 추이 .....	240
<표 5- 3> 한우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 .....	242
<표 5- 4> 수입 노선별 쇠고기 수입량 .....	242
<표 5- 5> 삼겹살 소비자 가격 추이 .....	243
<표 5- 6> 월별 돼지고기 공급량 .....	244
<표 5- 7>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 동향 .....	246
<표 5- 8>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등 지원 대책 .....	250

<표 5- 9> 지역별 생체 수매현황 .....	252
<표 5-10> 지역별 도축장 및 가공장 파견근무 현황 .....	253
<표 5-11> 지역별 지육판매 실적 .....	253
<표 5-12> 수매 가축의 냉동보관육 판매량 및 판매단가 .....	254
<표 5-13> 전년대비 가축 수매 실적 비교 .....	255
<표 5-14> 시·도별 보상금 지급 상황 .....	256
<표 5-15> 시·도별 생계안정자금 교부내역 .....	258
<표 5-16> 업종별 경영안정자금 배정 현황 .....	258
<표 5-17> 시도별 경영안정자금 배정 현황 .....	259
<표 5-18> 구제역 발생 소요예산 종합 .....	260

## 제6장

<표 6-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두수 .....	275
<표 6- 2>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관련 재정지출 추정액 .....	276
<표 6- 3> 2010년 하반기 이후 시·도별 구제역·AI 보상금 지급 상황 .....	277
<표 6- 4> 구제역·AI 관련 소요예산 현황 .....	278
<표 6- 5> 구제역 발생 전후 산지가격 및 도축 두수 변화 .....	279
<표 6- 6> 구제역 발생 전후 국내산 수요 감소 수준 추정 .....	280
<표 6- 7> 구제역 발생 전후 사육두수 추정치 및 실제치 차이 .....	281
<표 6- 8> 구제역 이후 도축두수 .....	282
<표 6- 9> 구제역 발생 이전과 이후의 가격 추정치와 실제치 차이 .....	282
<표 6-10>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	295
<표 6-11> 축산업 선진화의 핵심 키워드 .....	316
<표 6-12>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비중 .....	317
<표 6-13>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	317
<표 6-14> 축산업 “경제와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의 필요성 .....	318
<표 6-15> ‘경제 성장’,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보호’의 병행가능성 .....	318



## 그림 목 차

---

### 제1장

<그림 1- 1> 세계 구제역 발생 현황 .....	10
<그림 1- 2> 영국의 구제역 대응 조직도 .....	13
<그림 1- 3> 영국의 백신접종 의사결정 흐름도 .....	16

### 제2장

<그림 2- 1> 구제역 역학조사의 단계와 주요 내용 .....	39
<그림 2- 2> 서현양돈단지의 구제역 감염경로 추정 .....	44
<그림 2- 3>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 발생 건수 추이 .....	53
<그림 2- 4>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로 .....	56
<그림 2- 5> 경기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	63
<그림 2- 6> 강원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	65
<그림 2- 7> 충청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	66
<그림 2- 8> 경상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	67

### 제3장

<그림 3- 1> 구제역 방역 체계도 .....	80
<그림 3- 2> 정부 구제역 방역 및 보고 체계도 .....	81
<그림 3- 3>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 조직도 .....	82
<그림 3- 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83
<그림 3- 5> 농식품부 구제역중앙수습본부 조직도 .....	85
<그림 3- 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상황실 .....	85
<그림 3- 7>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조직도 .....	89
<그림 3- 8> 구제역 의사환축의 검사과정 .....	99
<그림 3- 9> 매몰지 설치 모식도 .....	143

<그림 3-10> 구제역 방역 홍보 정기간행물 .....	178
<그림 3-11> 구제역 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	178

#### 제4장

<그림 4- 1> 경기도 가축매몰지 관리시스템 .....	201
<그림 4- 2> 구제역 방역 포스터 .....	204

#### 제5장

<그림 5- 1> 한우고기 월별 부위별 소비자가격 추이(1등급 기준) .....	241
<그림 5- 2> 월별 돼지고기 공급 및 삼겹살 가격 .....	244

#### 제6장

<그림 6- 1>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 구조 .....	274
<그림 6- 2> 축산방역 및 검역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 .....	290
<그림 6- 3>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	293
<그림 6- 4> 현행 가축질병 위기관리 체계도 .....	296
<그림 6-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계도 .....	297
<그림 6- 6> 세계의 구제역 관련 국제연구 및 공동제어 조직 .....	304
<그림 6- 7>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307
<그림 6- 8>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 정의 .....	315
<그림 6- 9>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319
<그림 6-10> 축산업 선진화의 정책 방향 .....	319

## 사 진 목 차

---

### 제1장

- <사진 1- 1> 구제역에 감염된 소 ..... 3
- <사진 1- 2>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 4

### 제2장

- <사진 2- 1> 서현양돈단지 전경 ..... 36
- <사진 2- 2> 구제역 재발설 관련기사 ..... 46

### 제3장

- <사진 3- 1> 구제역 담화문 발표 ..... 84
- <사진 3- 2> 농식품부 장관 안동시 구제역 현장점검 ..... 87
- <사진 3- 3> 구제역 방역 차량통제(연천) ..... 112
- <사진 3- 4> 구제역 일제소독(안성시) ..... 117
- <사진 3- 5> 구제역 백신집중(보령시) ..... 126
- <사진 3- 6>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 계획 ..... 132
- <사진 3- 7> 구제역 가축 살처분 ..... 142
- <사진 3- 8> 구제역 매몰지(태안군) ..... 145
- <사진 3- 9>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협업지도 ..... 152
- <사진 3-10> 농식품부장관 구제역 매몰지 현장 점검(2011.7.8) ..... 155
- <사진 3-11> 구제역 관련광고(농식품부·정부합동) ..... 172
- <사진 3-12> 축산농가 방역교육 ..... 179
- <사진 3-13> 가축 재입식을 위한 축사 청소(홍천) ..... 184
- <사진 3-14> 구제역 살처분농장 돼지 재입식 반대 현수막(횡성) ..... 188

### 제4장

- <사진 4- 1>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 192
- <사진 4- 2> 매몰지 비닐하우스 설치 ..... 196

<사진 4- 3>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	200
<사진 4- 4>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	208
<사진 4- 5>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	210
<사진 4- 6> 안동시 가축질병방역대책협의회 .....	212
<사진 4- 7>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	214
<사진 4- 8>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55사단) .....	224
<사진 4- 9>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57사단) .....	224
<사진 4-10> 대한수의사회 방역 지원 .....	228
<사진 4-11> 수원농협 방역 지원 .....	230
<사진 4-12> 구제역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전달(대한양돈협회) ....	230

## 제5장

<사진 5- 1> 구제역 피해농가 현장조정 .....	261
-------------------------------	-----

## 제6장

<사진 6- 1> 돼지 재입식 반대 현수막 .....	286
-------------------------------	-----

# 제 1 장

## 구제역 질병 개요

### 1.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 1.1. 구제역 정의와 질병 특성

##### 1.1.1. 구제역 정의

구제역(口蹄疫; foot-and-mouth disease, FMD)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偶蹄類, cloven-hoofed animal)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sup>1</sup>

구제역은 가축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에서 주요 제한 이유가 되는 질병으로 엄격한 사전예방 조치가 없으면 쉽게 질병 청정국에 유입될 수 있다. 일단 질

<sup>1</sup> 1897년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뢰플러(Friedrich August Johannes Loeffler)가 구제역의 원인은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을 포셀린 필터에 통과시켜 걸러도 여전히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키백과사전에서 인용.

병이 발생하고 감별이 늦어질 경우 빠르게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넓은 숙주범위와 강한 전염성, 빠른 복제와 다양한 감염 경로의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질병 특성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sup>2</sup>는 구제역을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List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 1.1.2. 바이러스 특성과 전파 경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A, O, C, Asia1, SAT1, SAT2, SAT3형의 7가지 혈청형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다시 80여 가지의 아형(亞型)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전세계적으로는 O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아시아에서는 A, O, Asia1이 주로 발생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조건 하에서는 오래 보존되는 반면, pH 6.0이하 또는 9.0이상 조건 또는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 및 0.2% 구연산 등의 소독제에서는 불활화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전파이다. 둘째는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접촉전파이다. 셋째는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km, 바

---

2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질병을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예방책을 연구하고 회원국 간 가축 교역 및 국제적 가축위생규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상태 등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다. 설립 당시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OI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3년 인간 보건에 대한 국제기구인 WHO와 대칭하는 의미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명칭을 바꿨지만, OIE의 역사를 감안해 약칭은 그대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은 130여 가지 가축전염병의 자국 내 발생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를 통해서는 25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 가능하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바이러스 혈청형, 감염용량, 감염경로, 개체 간 감수성의 차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연상태에서 감염용량이 높을 경우 잠복기는 2~3일로 짧지만 감염용량이 낮으면 10~14일로 지연될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 1.1.3. 주요 임상증상

#### 가. 소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는 체온 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질병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물집은 발굽 사이와 제관부(蹄冠部)<sup>3</sup>,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된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환율(罹患率)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다. 성우의 경우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반면, 어린 송아지의 경우는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이 초래되기도 한다. 감염된 소들은 1주일 이상 거의 먹지 못하거나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특히 젖소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사진 1-1> 구제역에 감염된 소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sup>3</sup> 발굽 상단과 다리 피부조직 하단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테 모양 부분이다.

## 나.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게 는 절뚝거림,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 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된다.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사진 1-2>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포유중인 자돈의 경우 폐사율은 50%에 달한다.

## 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경우 보통 약간의 병변과 함께 경미하게 발병하지만 심각하게 감염된 동물은 급격히 쓰러지거나 발에 병변이 나타나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물집은 발의 윗부분 주변과 발톱 사이 주변으로 형성되며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혀 위와 치아받침에 발달하기도 한다.

### 1.1.4. 질병 진단

구제역 진단방법으로는 동물체내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검색하는 항원진단법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결과 형성된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항체진단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항원진단법으로는 수포액, 수포형성 상피세포 또는 인후두 부위 채취액 등을 검사시료로 하여 세포배양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분리, 중합효소연쇄반응(PCR)법을 이용한 구제역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및 항원검출용 ELISA 검사 또는 보체결합 반응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항체진단법으로는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 여부를 검출하는 혈청중화시험, 항체검사용 ELISA 검사법 및 보체결합반응 등이 주로 이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PCR 검사기법, ELISA 검사법 및 혈청중화시험 등이 구제역의 확정 진단에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 구제역 발생현장에서는 신속 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상동성 확인을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World Reference Laboratory)로 수포액, 수포상피세포 및 혈청 등의 가검물 또는 감염동물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송부한다.

## 1.2.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 1.2.1. 인수공통전염병의 개념과 종류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은 인축공통전염병이라고도 하는데, 척추동물과 인간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지칭하며, 특히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을 말한다. 보통 인수공통전염병은 척추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과 비록 동물이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과 동물에 공동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환들을 모두 포함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는 직접 전파, 매개 곤충 또는 기타 매개물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을 야기하는 병원체도 기생충과 같은 큰 것에서부터 원생동물, 세균, 바이러스 등 매우 다양하다.

사람의 법정전염병과 가축의 법정전염병 가운데 공통되는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은 탄저병, 브루셀라증(브루셀라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증(소 렙토스피라병), 소 해면상뇌증(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일본뇌염(돼지 일본뇌염), 공수병(광견병), 바베시아증(바베시아병), 결핵(결핵병), 큐열 등이 있다. 특히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는 광견병, 일본뇌염, 뉴캐슬병, 황열 등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진다.

## 1.2.2. 구제역의 인체감염 가능성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람의 공중 보건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구제역은 우제류에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구제역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Pirbright Laboratory)에서는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하였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FMD is not public health risk: 구제역은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자료에도 “FMD is not recognized as a zoonotic disease: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한수의사회의 공식 발표 자료에서도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므로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sup>4</sup>

과거에 유럽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의심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9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의 의심 증상이 약 40건 정도로 진단되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간 감염의 경우에는 물질과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람은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취급, 감염된 유즙을 섭취하는 경우 피부나 구강점막의 창상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나, 감염된 동물에서 생산된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 감염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요리하게 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파괴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

4 과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수의공중보건학” 교재에 근거하여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르쳤으나, 최근 개정판(제3판, 2005년 8월)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자료>

## 구제역 의심되면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 소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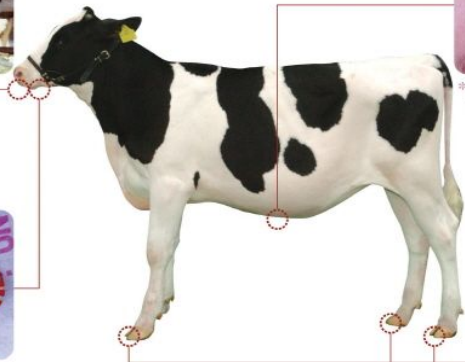
\*거품 섞인 침흘림



\*유두에 생긴 백색의 수포와 수포 파열후의 가피 형성



\*혀에 생긴 궤양



\*앞발굽 사이의 수포 형성과 뒷발굽 사이의 궤양과 가피



### 돼지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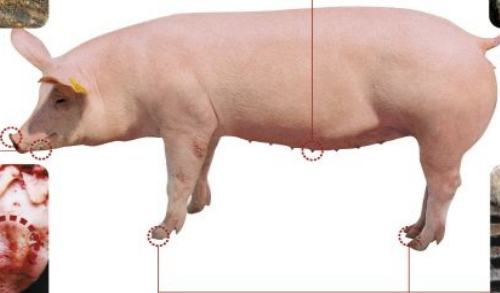
\*귓동에 생긴 수포



\*유방에 생긴 수포 및 파열로 인한 상피탈락



\*수포가 터져 돼지의 혀에 생긴 궤양



\*발굽 사이의 수포, 궤양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1588-4060/9060** 으로 신고합니다!

<해설자료>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대한수의사회 (2010.1.11)

지난 7일 정부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재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수의사들은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질병방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혹한을 무릅쓰고 구제역의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이라는 질병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전파차단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제역은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물론 말과 같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국내 수의과대학에서는 “수의공중보건학” 교재에 근거하여 구제역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르쳤으나, 최근 개정판(제3판, 2005년 8월)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의학계에 발행된 “최신 인수공통전염병학(최철순 중앙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2006년 3월)에서도 ”오늘날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은 “FMD is not public health risk: **구제역은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MD is not recognized as a zoonotic disease: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식품의 소비와 동물과의 건전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립니다.

## 2.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최근의 구제역 발생 동향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전 세계의 총 41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아시아 19개국, 아프리카 18개국, 유럽 3개국, 중남미 1개국 등이다. 아시아 국가만 나열하면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한국, 미얀마,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예멘, 베트남, 말레이시아, 북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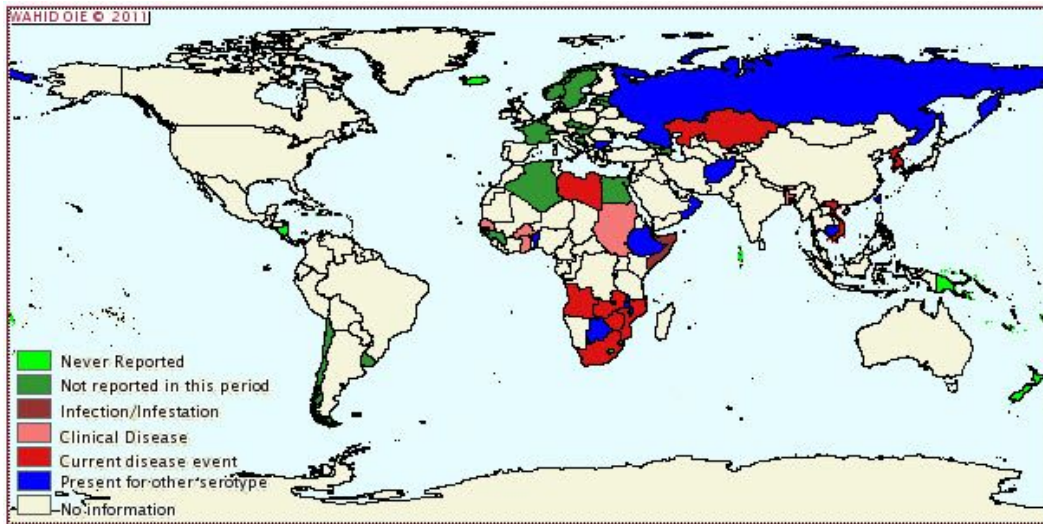
또한 2011년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백신 비접종 청정국 65개국과 백신 접종 청정국 1개국(우루과이)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가 2001년 9월에 회복하였고, 또 2002년 5월에 재발하여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2002년 12월에 다시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

<표 1-1> 2010~11년 기간 해외 구제역 발생 현황

발생대륙	국가
아시아 (19개국)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한국, 미얀마,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예멘, 베트남, 말레이시아, 북한
아프리카 (18개국)	베냉, 보츠나와,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디오피아, 가나, 날라워,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리비아
유럽 (3개국)	러시아, 터키, 불가리아
중남미 (1개국)	에콰도르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 홈페이지.

<그림 1-1> 세계 구제역 발생 현황(2011.1~6)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 홈페이지.

## 2.1. 영국

### 2.1.1. 2001년 발생 사례

2001년 2월 영국 에섹스(Essex)주의 도축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 신고된 이후 9개월 동안 영국 전역에서 2,030건이 발생하여 660만 마리 이상의 우제류가 살처분 매몰처리 되었다. 이 가운데 400만 마리는 구제역 방역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하에 도축되었으며, 200만 마리는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이유로 도축되었다.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최소 57개 농가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구제역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어 44개 카운티(county) 2,000개소에서 발병이 신고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구제역 발생 이전까지 영국에서 가장 최근의 구제역 발생 사례였던 1967~68년 사이에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다.

구제역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2001년 4월 중순에는 수의사, 군

인, 현장지원단 등 1만 명 이상의 인력이 구제역 방역사업에 투입되었다. 일일 최고 10만 마리의 가축들이 도축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물류체계의 작동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발생 초기부터 예방적 살처분을 고수했던 영국 정부는 피해가 커지면서 백신접종을 고려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구제역 발생이 장기화되면서 영국 총선이 한 달 연기되기까지 하였다.

구제역에 따른 공공부문의 직접 비용 지출은 약 30억 파운드(5조 4000억 원) 이상, 민간부문의 비용 지출은 약 50억 파운드(9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영국 재무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관광·레저산업이 함께 피해를 입었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순수한 경제적 피해로 영국 총생산의 0.2%인 약 20억 파운드의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특히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관광부문이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관광객들의 도보여행을 통한 진입을 차단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가축들의 대량 도축광경을 담은 이미지들은 관광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사태는 32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콤프리아(Cumbria) 지방의 애플비(Appleby) 인근 농장에서 2001년 9월 30일 구제역 발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로 발병하지 않았다. 2002년 1월 22일, 영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재승인 받았으며, 2002년 2월 5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육류 및 가축 수출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 2.1.2. 2007년 발생 사례

2007년 8월 3일에 다시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서레이(Surrey) 지역 122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전국적으로 11만여 개의 농장에서 가축이동이 금지된 후 종식되었다. 이 경우는 구제역 발생 지역 인근 4km 지점인 퍼브라이트(Pirbright)에 위치한 정부의 동물보건연구소(Institute of Animal Health)와 Meril사의 백신 생산 실험실 주위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검출된 바이러스가

실제 개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1967년 발생 이후 격리되어 위에서 언급된 실험실에서 백신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종류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원인이 추정되었다.

다만, 2007년 구제역 발생 때는 발생지역이 축산업 밀집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을 채용하여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 2.1.3. 방역 조치

영국은 외래성 동물 질병 긴급방역대책에 따라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조직으로는 시민위기관리위원회, 환경식품농촌부, 국가질병관리센터가 있으며, 지방에서는 지역질병관리센터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한다.

구제역 등 해외 가축질병 대응에 대한 기본 원칙은 공중보건 보호, 질병 등에 의한 가축의 살처분 및 동물복지 문제 최소화, 식품·농업·관광 및 농촌경제에 미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환경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납세자 및 공공의 부담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의 경우 발생농장 감수성 동물에 대해 살처분·매몰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역학적 판단 등 위험평가 실시 후 결정한다.

#### 가. 위험 수준별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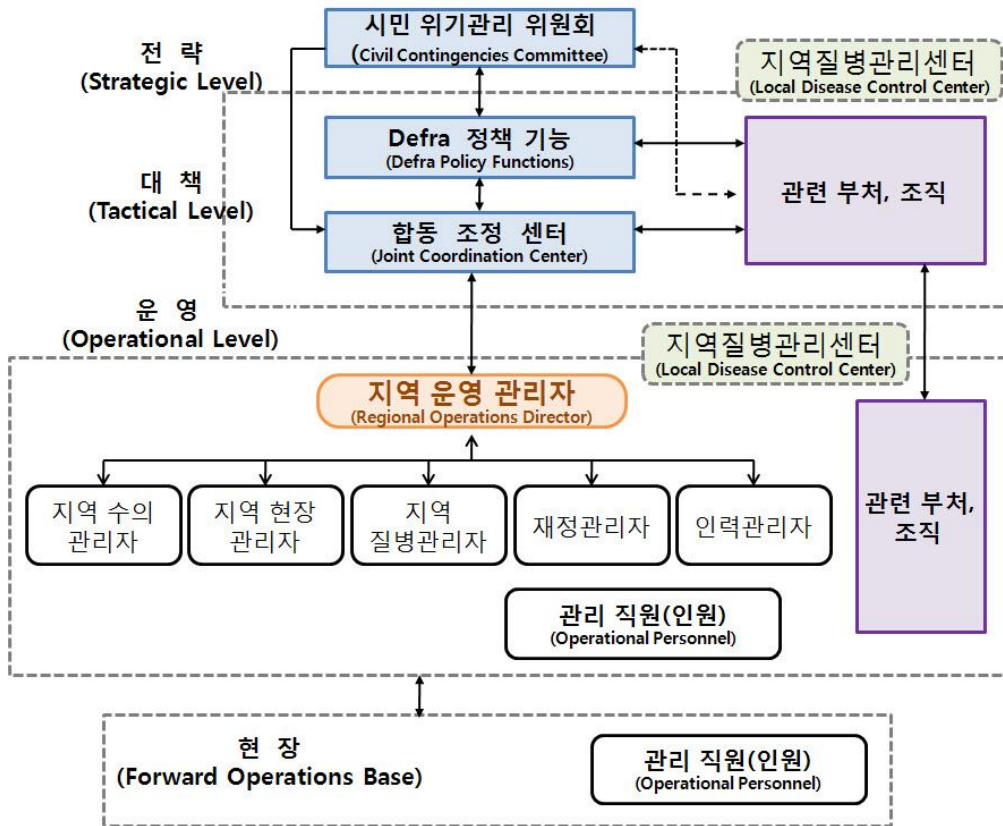
영국은 위험수준별로 백색, 흑색, 황색, 적색의 4단계 위기 경보를 구분하고 구제역이 최초 확인된 즉시 최고 경보단계(적색)를 발령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백색이나 흑색 단계에서는 수의학적으로 질병이 의심되지 않고, 임상적으로는 전형적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다. 평시에는 백색, 주변국 발생시에 흑색 단계를 발령한다. 규제나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며, 의심 가축에 대해 관찰하고 표본 추출을 통해 진단한다.

황색 단계는 외적, 임상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만 확진되지 않은 상황이며, 모든 의심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적색 단계는 구제역 확진 시



발령되며 모든 의심 가축과 확진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비한다.

<그림 1-2> 영국의 구제역 대응 조직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참고자료」, 2011.2.

## 나. 방역 조직

구제역 등 외래질병 발생 시 방제 및 대응을 위하여 3단계의 명령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총괄은 런던의 환경식품농촌부 국가질병관리센터(National Disease Control Center, NDCC)에서 맡으며, 각 지역은 가축보건사무소 내에 지역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방역 전략 수립은 환경식품농촌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시민위기관리위원회(Civil Contingencies Committee, CCC)와 협조하여 관계부처 회의 소집 및 구제역 지원, 협의 등 구제역 대응을 총괄한다. 구체적인 대책은 국가질병관리센터의 합동조정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에서 주관을 하며, 전략적 권고 및 실질적 대응을 위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현장에서의 대책 운영은 지역질병관리센터에서 주관을 하며, 비상대응 계획 및 현장운영 등에 대한 지도 등을 담당한다.

#### 다. 살처분 조치

구제역 발생 시 국가질병관리센터는 지역총괄책임자, 지역수의사협회, 지역현장매니저 등과 연계하여 질병관리 및 방제 등을 추진하며,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직 공무원이나 개업 수의사 등의 인력을 확보한다.

구제역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가축, 같은 축사·농장 내 가축,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가축,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축 등이 살처분 대상이며, 살처분은 계약에 의하여 허가된 도살업자가 실시한다.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는 계약에 의해 소각업자, 랜더링 업자가 실시하고, 처리 가축수가 많을 경우 매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소각이나 랜더링 한계를 초과하거나, 시설까지 운반이 어려울 때 허가된 매립지에 매몰한다. 만약 소각, 랜더링, 허가된 매립지에 매몰하기 어려운 경우 농장 내에 매몰할 수 있으나, 환경 및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환경공무원의 확인 및 문서화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처분 가축의 운송 등을 위하여 계약에 따라 1일 5만 톤의 살처분 가축 운반이 가능하며, 36시간 내에 운송업체는 차량을 제공한다. 운송차량은 누출수 점검을 받고 정해진 경로로 처리장까지 가야하며 경찰 또는 응급서비스 차량의 호위를 받는다.

추적확인시스템(Vetnet Tracing Verification System, VTVS)을 통해 매일 관련 차량 및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 병의 진행 및 관리 상황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

는 질병관리시스템(Disease Control System, DCS)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다.

#### 라. 방역대 설정

발생지로부터 최소 3km 이내는 보호구역(Protection Zone), 10km는 감시구역(Surveillance Zone)으로 지정하고 가축의 이동을 제한한다. 수의사는 보호구역 내 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반출 등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감시구역 내 가축은 이동에 제한을 받는다.

보호구역 내에서 세척, 소독조치 완료 후 최소 15일이 경과하고 구역 내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찰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감시구역의 경우에는 경계지역에서 세척, 소독조치 완료 후 최소 30일 경과하고 구역 내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찰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 감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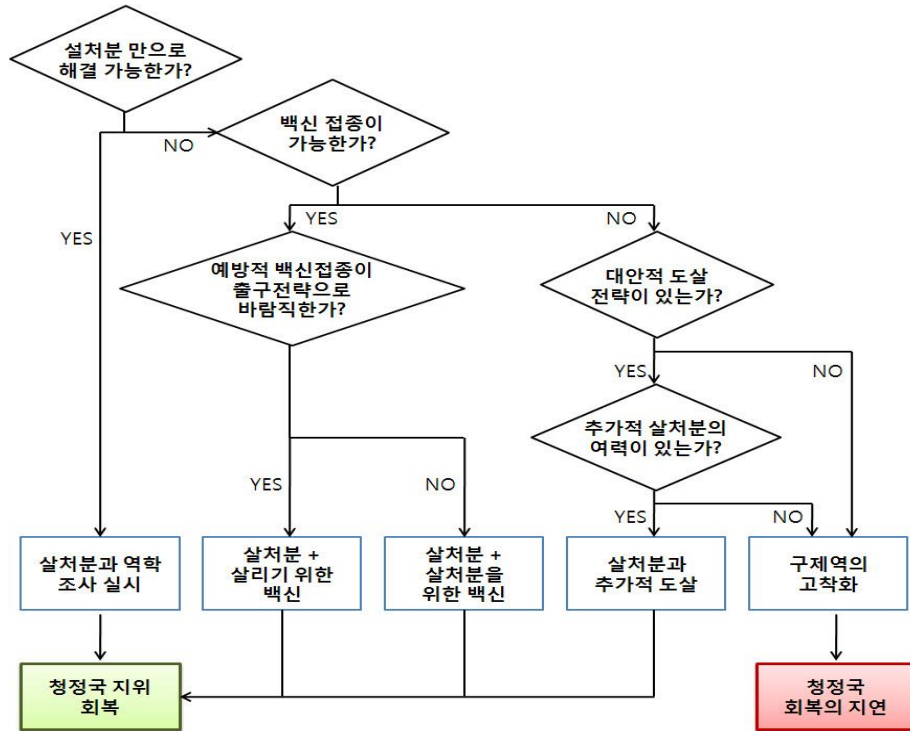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국무상(Secretary of State)은 백신구역과 백신감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백신감시구역은 백신구역에서 최소 10km이거나 수의역학적으로 적정한 거리로 설정한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 지역 내의 대상 가축은 귀표나 패스포트 등으로 백신접종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 마. 긴급 백신 접종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을 겪은 후 살처분만 고려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백신접종의 잠재적 가능성을 탄력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는 “The FMD Contingency Plan”에 따라 백신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수의과학적 조인과 모델링 결과 등을 이용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허가하는 법률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행정입법 2006 No. 183 “The Foot-and-Mouth Disease (Control of Vaccination) (England) Regulations 2006”이다.

위의 관련법 제 2의 9조는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국무상이 1) 질병의 위험성, 2) 백신접종이 병의 전파 및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 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이 증상 억제용 백신(suppressive vaccination)인지 아니면 구제역 예방용 백신(protective vaccination)인지 여부, 2)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 실시 지역, 3)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축종, 4)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실시 기간, 5)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 적용 지역 내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금지 통보, 6)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 대상 가축에 대한 귀표 부착 및 이동 기록(passport) 방식, 7)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 실행 책임자, 8) 그 외에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정보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1-3> 영국의 백신접종 의사결정 흐름도



자료: 농림수산물부,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참고자료」, 2011.2.

영국은 긴급 백신정책 시행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항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개 유형의 백신 2,000만 마리 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백신은행은 다양한 긴급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항원 공급과 백신접종 실시는 Genus사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3개의 이동 가능한 백신센터를 운영하여 구제역 발생 5일 이내에 접종준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부가된다.

- 1) 살아있는 동물은 백신 접종 후 백신접종지역 밖으로 6개월간 이동 불가
- 2) 백신 접종 후 30일 이후부터 모든 백신 접종 동물에 대하여 개별검사
- 3) 백신 접종 동물 유래 축산물은 사람에게 위험성 없음
- 4) 백신 접종 후 6개월 내에는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백신접종 동물 유래 식육은 반드시 숙성 및 뼈 제거
- 5) 6개월 후 모든 동물의 개별적 검사 완료한 후에는 동 식육은 정상 유통

## 2.2. 우루과이

### 2.2.1. 발생 사례

우루과이의 경우 2000년 10월 23일 O1형 바이러스에 의한 구제역이 브라질 리오그란데도설(Rio Grande do Sul)과 인접한 아르티기스(Artigas) 주의 한 농가에서 발병하였다. 10월 24~25일 발생 농장의 반경 25km 지역이 완전히 차단되고, 소 6,924마리, 양 12,371마리, 돼지 247마리가 살처분되었다. 11월 1일에 살처분과 소독이 완료되었고, 11월 30일에는 바이러스에 민감한 어린 소와 돼지가 임상시험 가축으로서 도입되었다.

그후 구제역 감염 농가로부터 5~25km 반경 내 지역에 혈청학적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모든 표본이 구제역 항체 검사에 음성이었다. 또한 모든 임상시험 가축이 건강했으며, 구제역 항체가 없었기에 발병 이듬해인 2001년 1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우루과이의 백신 비접종 청정국 지위를 다시 승인하였다.

그러나 2001년 4월에 아르헨티나로부터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확산되어 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기존의 살처분 정책을 변경하고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2002년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1년의 경우 총 구제역 발생 건수는 2,057건이었으며, 그 중 264건은 낙농가였다. 살처분 매몰은 구제역 발생 첫 주에만 실시되었으며, 매몰 두수는 총 6,937마리였다. 감염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일인 8월 21일로부터 30일까지 가축 이동 제한과 같은 격리 조치가 실시되었다.

<표 1-2> 우루과이의 2001년 구제역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일 자	주 요 내 용
4월 23일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약 70km 떨어진 Palmitas, Soriano 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수소 39마리에서 구제역 발생(아르헨티나로부터 구제역 유입)
4월 24일	수출 중단, 감염 및 감염노출 가축 살처분 (소 5,093마리, 양 1,511마리, 돼지 333마리)
4월 25일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4월 26일	- 최초 발생 농가에서 약 40km 떨어진 Colonia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 모든 가축의 이동 제한 및 발생 지역 격리 - 구제역 발생 농가 10km 반경 내 지역 소에 대한 링 백신 시작
4월 27일~ 7월 7일	군경의 지원을 받아 가축 이동 제한 및 교통 통제를 국가 전체로 확대
4월 29일	-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 지역 농민 저항과 구제역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살처분 조치 중단
4월 30일	소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 실시
5월 5일	국가 내 모든 소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백신 접종 시작
6월 7일	- 1차 백신 접종 완료 및 이동 제한 완화
6월 15일~ 7월 22일	소에 대한 2차 백신 접종
8월 21일	San Jose 지역 낙농가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 발생
11월	송아지 450만 마리에 대한 백신 재접종

자료: Sutmoller and R. Casas Olascoaga(2002).

## 2.2.2. 방역 조치

우루과이는 2000년 10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정책만을 이용하여 2001년 1월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후 동년 4월에 다시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2001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정책만을 실시하다 발생 3일 후 링 백신 접종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5월에는 소에 대해서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동년 8월에 구제역이 종식되어 2002년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백신 사용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1년의 구제역 발생 기간 동안 10.6백만 마리의 육우에 대해서 총 24백만 개의 구제역 백신 접종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하루 평균 35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수의 관련 기관이 지역, 날짜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백신 접종 일정을 수립하였다. 젓소의 경우는 하루 평균 6.7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이 접종되었다. 대부분의 백신접종은 농가에 의해 직접 행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사가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정부 수의 관련 기관은 백신접종 절차를 관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차 백신 접종 후 기축 이동 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 건수는 한 자리 수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차 접종 완료 후에는 단지 몇 건만이 발생하였고 8월 21일 이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았다. 우루과이는 기축 이동 제한과 소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면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한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구제역 종식을 위한 총 비용은 1,360만 달러였으며, 이 중 백신 구입 비용이 750만 달러였고 나머지는 농가보상, 소독, 운영 등에 소요되었다.

## 2.3. 일본

### 2.3.1. 발생 사례

일본에서는 2010년 3월 미야자키(宮崎)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구제역 발생 농장만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실시했으나, 질병이 계속 확산되어 5월부터

이동제한구역(10km) 이내에 대해 살처분을 전제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다.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된 우제류는 총 211,608마리이고, 백신 접종 후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살처분된 우제류는 총 76,143마리에 달하였다. 일본은 2011년 3월에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 2.3.2. 방역 조치

일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2004. 12)에 따라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 조치를 수행하는 조직은 중앙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동물검역소,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약품연구소가 있으며, 중앙조직은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련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함. 지방 방역조직으로는 도도부현 축산주무과, 가축보건위생소, 식육위생검사소가 있다.

일본은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매몰을 기본정책으로 두고 예방접종은 살처분 매몰, 이동제한만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10년의 경우 초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구제역이 확산된 이후 반경 10km이내 모든 감수성 동물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백신접종 가축들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 조치를 취하였다.

#### 가. 이상 가축의 발견 통보에서 병성(病性)결정까지의 조치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의사의 진찰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해야 한다. 가축방역원은 신고 농장에 대해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가축보건위생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조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송신함.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도도부현은 농림수산성에 연락하고 긴급방역에 필요한 가축방역원의 대기 상황, 긴급연락망 정비 상황 및 방역용 자재 조달계획 등을 점검한다.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에 관련 조서를 송신한 후, 병성감정 재료의 채취 및 송부,



임상소견, 연학(硯學) 소견 등 추가정보를 수집하며, 방역조치의 실시 또는 준비 등의 상황을 확인한다.

#### 나. 구제역 양성시의 조치

가축보건위생소 등에 현지방역대책본부, 발생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방역대책본부 및 농림수산성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도도부현 및 가축보건위생소는 필요한 가축방역원의 집합을 명하고, 필요시 다른 도도부현에 인원을 파견 요청한다.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동물검역소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방역 전문가를 발생 도도부현에 파견한다.

<표 1-3> 일본의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

구분	이동제한 구역	반출제한구역
범위	○발생지 중심 반경 10km (필요시 5~30km까지 가능)	○발생지 중심 반경 20km (필요시 10~50km까지 가능)
기간	○최초 발생 후 21일간	○최초 발생 후 21일간
제한 내용	○우제류 가축의 이동 금지 ○아래 물품 이동 금지 · 발생지 및 근접농장에서 착유된 생유 · 가축관리용구, 깔짚, 사료, 배설물 등 · 가축의 사체 · 동 구역내에서 채취된 정액 및 수정란 ○도축장 및 가축시장 폐쇄 ○가축을 집합시키는 모임 개최 금지 ○가축인공수정 금지 ○새로운 방목 중지	○우제류 가축의 반출제한구역 이외로 이동금지 ○우제류 가축의 도입 시 14일 이상 계류 ○가축시장 개최 중지 ○가축을 집합시키는 모임 개최 금지 ○농장 소독 철저 및 공동 차량 소독시설 설치 ○가축에 생유 급여 중지
해제	○최종 발생 후 20일 이후 해제 가능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다. 발생지에서의 방역조치

살처분·사체 처리·소독·오염물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인원·자재·약품 등을 준비하고, 발생장소 및 출입금지 표시판 게시와 출입구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

하여 소독 시설을 설치한다. 모든 동물의 격리와 배수구의 폐쇄를 확인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살처분 대상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처분 지시서를 교부하고 살처분을 위해서는 안락사·전살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체 처리는 발생지 또는 부근에서 소각 또는 매몰하며, 발생지에서 소각 또는 매몰이 어려울 경우 도살 후 적당한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 라. 방역대 설정

사람과 물품 등의 이동제한에 대한 규정의 경우 이동제한은 발생지 반경 10 km, 반출제한은 20km로 설정하며 질병의 최종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 마. 백신 접종

살처분과 이동제한 방법만으로 구제역 방역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기 청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백신 및 주사관련 자재의 비축장소는 동물검역소로하고 구제역 발생 시 관계 도도부현의 시설 등으로 이송한다.

도도부현은 접종지역과 접종두수에 대하여 농림수산성과 협의하여, 접종지역의 바깥쪽에서 발생지 중심을 향하여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해야한다. 이 경우 백신접종을 실시한 가축은 표식을 부착하고, 도축장 이외로의 이동을 당분간 금지한다.

## 2.4. 대만

### 2.4.1. 발생 사례

대만에서는 1929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이 없었으나, 1997년에 대규모로 발

생하여 385만 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 매몰하는 큰 피해를 기록하였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대만 정부는 3단계의 구제역 박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 1단계(1997년 7월~2000년 6월)에서는 백신접종, 25kg 미만 돼지의 이동 제한,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양돈장 철거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을 0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제 2단계(2000년 7월~2001년 6월)에서는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발생률 0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발할 경우에는 1단계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제 3단계(2001년 7월~2002년 6월)에서는 돼지구제역 박멸을 선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1년까지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결국 전국적인 예방 백신 접종을 통해 2004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2001년 당시 대만의 경제적 손실은 약 69억 불(한화 약 7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만은 1997년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2004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백신을 사용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백신접종 비율을 줄여 나가 동년 11월 50%, 2009년 2월에는 10%로까지 접종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2009년에 구제역이 다시 재발하여 결국 전국 백신접종을 재개했으며,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 구제역 발생 시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살처분과 링 백신 접종을 실시했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전국 예방접종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 2.4.2. 방역 조치

### 가. 살처분 조치

발병 가축과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살처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살처분 가축의 사체는 소각, 매립, 화학적 처리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소각 처리 방식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돼지 사체를 화학 처리하여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매몰처리의 경우는 후속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

사체 운반 등을 위하여 위생당국, 경찰, 환경보건국에 연락하고 군대에 협조를 요청한다. 매몰 시 원칙적으로 발생농가의 부지 내에 매몰하며, 수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유지에 매몰이 가능하다. 매몰 작업 및 매몰장소까지의 운반은 군부대 병력의 지원을 받는다.

#### 나. 방역대 설정

발생지역 주변의 모든 차량과 사람, 동물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이동제한 구역은 발생 농장 반경 1km로 설정하며, 구제역 비발생 농가의 돼지는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이동(출하)이 가능하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차량 및 사람 이동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오염지로부터 반경 3km는 오염방어지역으로 선포되며, 오염지로부터 반경 6km는 감독지역으로 설정된다. 또한 해당 축사 반경 3km 이내의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해 임상 방문을 실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소독조치를 확대한다.

#### 다. 백신 접종

구제역 발생시에 돼지의 경우 약 12~14주 연령 시, 그리고 소, 양, 사슴은 4개월 및 12개월 연령에 도달할 때 구제역 백신(6PD<sub>50</sub>이상)을 접종한다. 마지막 백신 접종일로부터 돼지는 6개월 경과 시이고, 소, 양, 사슴은 1년 경과했을 때 추가로 접종한다. 이때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회 접종 시(1개 백신 앰플) 5NT\$를 정부가 보조한다.

정부는 각 축산 농장의 백신 신청 구매 및 접종 현황을 총괄하기 위하여 구제역 방역 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백신 구매 증명표 및 사용된 백신 약병 회수 통제를 통해 농가의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축산 농가의 백신 사재기를 방지한다. 사육두수 500마리 이하의 축산 농장은 지방 정부에서 수의사가 접종을 실시하며, 500마리 이상의 축산농장은 수의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백신을 접종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방역 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율이 95% 이상이고 임상 발병 사례가 없으며 비구조단백질항체(NSP) 검사결과 검출율이 0.1% 미만일 경우, 산·관·학 공동 인식이 형성된 경우, 살처분 경비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경우를 백신접종 중단 의사결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만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구제역 O형 백신은 총 110만 마리 분이며, 이후 매월 필요 백신 수량은 생산공장과의 기한 및 수량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구제역 항원은행에는 75만 마리 분이 비축되어 있다. A형 백신의 경우에는 10만 마리 분이 있으며, 항원은행에는 75만 마리 분이 비축되어 있다.

#### 2.4.3. 구제역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우제류 동물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하며, 우제류 동물 사육농가에 대한 평시 구제역 예찰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동물방역기관은 평일에 관할 우제류 동물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 건강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의 침입 및 확산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 등 운반 차량, 기구 및 거래장소의 청소 및 소독 등의 차단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우제류 동물 사육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회 300개 농장에서 혈청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비구조단백질항체(NSP)를 검사한다. 이 때 돼지는 6개월에 1회, 소, 양, 사슴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농장별 돼지 1두를 검사하며, 백신의 비정상적인 구입 신청 혹은 백신 공병이 미 회수된 우제류 동물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샘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이후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양돈산업을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양돈산업을 내수 위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육두수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외국사례>

**대만, 1997년 구제역의 교훈**

**1. 구제역 박멸대책 수립**

- 1997년 3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에 3단계의 구제역 박멸정책을 수립하여 이후의 발생에도 철저하게 대비함.

① 제1단계: 1997년 7월 ~2000년 6월

- 1997년 7월 ~1998년 6월 : 백신접종, 25kg 미만 돼지의 이동 제한,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양돈장 철거
- 1998년 7월 ~1999년 6월 : 백신접종-감염돼지 살처분, 발생률 0 유지
-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 : 백신접종-발생률 0 유지

② 제2단계: 2000년 7월 ~2001년 6월

- 백신접종 중단, 발생률 0 유지(발생할 경우 1단계로 복귀)

③ 제3단계: 2001년 7월 ~2002년 6월

- 돼지구제역 박멸 선포

**2. 수출 지향의 양돈산업을 내수형으로 전환**

- 수출 중단에 따라 양돈산업을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적정규모 유지계획을 수립함.

- 적정규모:1997년 10월 기준 모돈수를 119만두에서 70만두로, 육성돈은 800만두에서 700만두로 감축 계획 수립(1997년 보유두수 800만두)
- 1998년 대만정부의 정책은 사육규모 700만두 유지(연간 1000만두 생산)
- 1998년 당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도태 계획 수립

- 1998년 7월 4일(발생후 16개월 경과) 일본은 대만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 햄 등 살균가공된 돈육제품의 수입 재개

- 대만은 WTO가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998년 6월 이후 대만 육류시장을 미국에 개방함. 1998년에는 연간 5,000톤을 수입하며 향후 6년에 걸쳐 연간 15,400톤까지 증가하게 됨.

-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도 연간 7,500톤, 1만톤 수입 예정(수입관세 15%에서 6년에 걸쳐 12.5%로 감축)

**3. 구제역 발생으로 얻은 것**

- 가축전염병 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양축농가의 차단 등 방역에 대한 의식 고조
-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강화
- 구제역 방역 및 방역에 대한 경험 획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2000.4)에서 발췌>

## &lt;외국사례&gt;

**영국, 2001년 구제역의 교훈**

2001년 구제역 발생은 모든 관련 지역과 개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남겼다.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구제역 피해의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축산업계, 그리고 농촌 경제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다양한 조치들을 서로 조화롭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2001년 구제역 발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몇 가지 중점 사안을 도출해 냈다. 이 사안들이 바로 2001년 구제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다.

- 경계태세 유지: 국제·국가·지역 차원의 예찰과 사전 조사를 통한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 사전 준비: 포괄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함. 교육과 모범관행의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와 확신을 구축한다.
-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 충분한 시범 연습을 거친 위기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위기상황 혹은 위기고조 상황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한다.
- 정책·계획·조치에 대한 설명: 광범위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방식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 현장 지식의 존중: 국가 차원의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현장의 지식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위임한다.
- 리스크 평가 및 비용 효과 분석 적용: 적합한 경제적 모델 내에서 리스크 평가 및 비용 효과 분석을 적용한다.
- 데이터 및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정보 수집 및 의사 결정의 뒷받침이 되는 인정받는 모범관행을 따른다.
- 법적 장치 마련: 위기로 인한 새로운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결정: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널리 이해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훈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전략과 통합되어야 한다.

- 외래 질병의 전염 병인(agent) 유입 방지
- 업계 관행을 개혁하여 가축 취약성 개선
- 모든 질병 발생의 피해 최소화

<앤더슨보고서(2002.6.22) 제1장 서문에서 발췌>

## &lt;외국사례&gt;

## 일본, 2010년 미야자키현 구제역의 교훈

## 1. 구제역 피해에 관한 인식

이번의 구제역은 츠노쵸(都農町)에서 제1차 발생한 이후 고유군(兒陽郡) 내에 그치지 않고 5개 시 6정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되기까지 감염이 확대되어, 백신접종가축을 포함해 약 29만두나 되는 가축을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의 법정전염병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피해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현 내의 시정촌, 경찰본부, 관계기관 등은 물론, 국가의 관계기관과 자위대, 각 현의 경찰본부, 각 도도부현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부대가 달려와 주었고, 또 정부의 구제역대책 현지본부가 5월 중순부터 2개월 이상에 걸쳐 현청 내에 설치되는 등,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다.

이번 피해 경험에서, 일본에서도 대규모 법정전염병의 만연 및 피해의 확대가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일단 피해가 확대되면 농축산 관계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나아가 그 영향은 구제역 그 자체가 종식된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점을 배웠다. 또 이 정도로 피해가 확대되면 방역대책에서 가축의 보상 등은 물론, 복구대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장차 커다란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편, 이번 검증작업을 통해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또는 피해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것, 즉 방역대책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 2. 가축방역의 바람직한 방향

해외의 구제역 발생 상황, 특히 한국에서의 이번 발생 상황 등을 생각하면, 이번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사태는 미야자키현이나 다른 어떤 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혹은 피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①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유입차단 대책, ②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입하더라도 가축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축산농가 및 관계자의 방역대책, ③ 가축에 감염된 경우 조기발견·조기통보, ④ 감염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 등이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철저히 실행한 후 중요한 것은 ① 역할이나 책임을 명확히 한 후 관계기관의 긴밀한 연계, ② 모든 사태를 상정한 매뉴얼의 책정과 그에 근거한 실지훈련, ③ 사태는 상정이나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태의 진전을 적확하게 예측하고 한발 앞을 내다본 전략을 세우며, 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야자키현 구제역대책검증위원회 보고서(2011.1)에서 발췌>



### 3. 최근 국내의 구제역 발생 동향

#### 3.1. 2000년대 구제역 발생 경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최초의 기록은 일제 때인 1911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소 15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그 후 매년 발생하여 1918년에는 36,397마리가 발생하였다. 이후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 1934년에 3마리 발생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 3.1.1. 2000년 발생 사례

국내에서 종식되었던 구제역은 2000년대 들어 다시 발생하였다. 2000년 3월 24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낙농가가 수포성 괴질을 보인 젖소를 파주시에 의사광견병으로 신고하여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하였고, 시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7일 농림부가 의사 구제역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구제역은 그 해 4월 15일까지 경기도 파주, 화성, 용인, 충청북도 충주, 충청남도 홍성, 보령 등 6개 지역 15개 농가에서 발생하였다. 구제역에 감염된 양성축은 한우 62마리, 젖소 19마리 등 총 81마리였으며,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182개 농가의 우제류 2,216마리가 모두 매몰 처분되었다.

2000년의 경우 임상증세가 심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예방적 살처분과 병행하여 3월 28일부터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의 742개 농가 95,851마리의 우제류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4월 23일에 1차 접종이 완료되었다. 백신 2차 접종은 5월 3일부터 시작되어 7월 31일에 완료되었으며, 2차례에 걸친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우제류 1,523천 마리에 달하였다. 발생 농장 반경 20km 이내 및 비발생지역에 대하여 발생시점부터 2001년까지 우제류가축 14,692농가 63,589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음

<sup>5</sup>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내부 자료,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대책 실시 현황”, 1999.

성으로 판정되었다.

당시 농림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에 의거 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 되는 2001년 9월 1일자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을 심의한 결과 2001년 9월 19일자로 청정국 인증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조치사항을 높이 평가하여 총회의 승인 없이 청정국 지위를 인증한 결과이다.

당시 농림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중국, 대만, 몽고, 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O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살처분보상비 지급과 소독 실시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약 3,0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3.1.2. 2002년 발생 사례

2002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신고된 이후 6월 23일까지 총 16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경기도 안성의 쫓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경기도 용인, 평택, 충청북도 진천의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여 2000년과는 다르게 돼지 중심으로 질병이 확산되었다. 특히 총 16건 중 13건은 최초 발생농장에서 반경 10k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최초 발생일로부터 52일이 경과한 6월 23일까지 4개 시·군 16개 농가에서 발생한 2002년에는 처음 발생 이후 2차·3차 발생시기는 8일 내외의 발생주기를 보였으나, 5월 20일 이후에는 3~14일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6월 23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8월 7일에 최초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8월 14일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였다.

2002년의 경우 발생농가 사육규모별로 보면 돼지의 경우 1,000마리 이상 사육규모가 12개 농가, 1,000마리 미만 사육규모는 3농가로 주로 1,000마리 이상의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방역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소독 등 방

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수행했으나, 중대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한 이유는 양돈 관련 인원·사료·동물약품·돼지 출하 등을 위한 차량출입이 많아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2년에는 예방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돼지는 반경 3km 이내) 162개 농가 160,155마리(돼지 158,708마리, 한우 286마리, 젃소 1,086마리, 염소 42마리, 사슴 33마리)는 매몰 처리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 14일에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11월 29일에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당시 농림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2년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00년과 같은 O형이었으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2000년과는 다른 바이러스주(strain)으로 밝혀지고, 2001년 중국과 몽고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더 가까운 계통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당시 살처분 보상비 지급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약 1,43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표 1-4> 2000년과 2002년 국내 구제역 발생 내용 비교

구 분	2000년	2002년
발생상황	- 기간: 3.24~4.15 (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 경기 파주·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	- 5.2~6.23 (52일간) - 16건 (돼지 15건, 소 1건)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
발생원인 (추정)	- 수입건초 - 해외여행객(신발, 휴대축산물)	-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 살처분 2,216두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우제류) - 반경 10km내 예방접종(2차)	- 살처분 160,155두 (반경 500m내 우제류, 3km내 돼지) - 예방접종 배제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후 1년 -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후 (8.14) - 청정국 회복 : '02.11.29
직접 피해액	- 총 3,006억 원 · 살처분 보상금: 71 ·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202 · 생활안정자금: 2.7 · 가축수매지원: 2,428(444천두) ·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 총 1,434억 원 · 살처분 보상금: 531 · 소독약품 등: 154 · 생활안정자금: 7.5 · 가축수매지원: 337(142천두) ·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04.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3.2.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 상황

### 3.2.1. 2010년 1월 발생 상황

2010년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소재 젓소농장에서 의심축이 발생한 것을 임상수의사가 신고하였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1월 7일에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밀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구제역이 바이러스 A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바이러스 A형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으로, 국내에서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O형과는 다른 형태이다.

<표 1-5> 2010년 1월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

농가 현황				구제역 발생 상황		
순번	소재지	축종	사육규모	양성두수	발생일	확진일
1	포천 창수면	젓소	198두	9두	'10.1.2.	'10.1.7.
2	포천 신북면	한우	15두	2두	'10.1.13.	'10.1.13.
3	포천 창수면	젓소	67두	6두	'10.1.15.	'10.1.16.
4	포천 창수면	젓소	55두	2두	'10.1.15.	'10.1.16.
5	연천 청산면	한우	63두	2두	'10.1.18.	'10.1.19.
6	포천 창수면	젓소	74두	9두	'10.1.29.	'10.1.30.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초부터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 소재 농장의 송아지가 경기도 여주와 충북도 진천의 농장에 판매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이들 2개 농장에 대하여 임상검사와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구제역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월 13일에는 포천 한우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15일에도 젓소농가의 신고가 이어져 구제역으로 판명되었으며,

1월 18일에는 포천에서 가까운 연천군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되었다. 1월 19일에는 충남 서산시의 젓소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1월 29일에 다시 포천시 젓소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 23일에 이동제한을 해지하고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였다.

농식품부는 날씨가 풀릴 경우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지역에서는 가축 이동 통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서 농장 및 농장 주변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인 1월 20일 중국 베이징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공항만 국경검역을 더 한층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2010년 1월 2일부터 29일 기간에 2개 시·군(포천, 연천)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두수는 총 5,956마리였다.

### 3.2.2. 2010년 4-5월 발생 상황

2010년 4월 8일에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어 경기 김포(4월 19일), 충북 충주(4월 21일), 인천 강화(4월 27일), 충남 청양(4월 30일, 5월 6일)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4월 8일부터 5월 6일 동안에 구제역이 4개 시·군(강화, 김포, 충주, 청양)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 건수는 소 7건과 돼지 4건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살처분 두수는 4만 9,874마리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 살처분 가축 마리수는 449개 농가 55,853마리였으며, 동원인원 및 장비는 총 115,368명, 1,322대였다. 발생기간 동안 살처분 보상금, 방역활동 등에 지출된 국가재정 소요액은 약 2,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번 구제역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강화의 경우에는 농장주가 동북아시아 국가에 여행한 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포는 농장 주인이 이미 구제역이 확산되었던 강화에 방문하면서 바이러스를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충남 청양의 경우에는 충남축산기술연구

소에서 사료를 공급한 영업소 소장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6> 2010년 4~5월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

농가 현황				구제역 발생 상황		
순번	소재지	축종	사육규모	양성두수	발생일	확진일
1	강화 선원면	한우	177두	9두	'10.4.8.	'10.4.9.
2	강화 선원면	한우	85두	3두	'10.4.9.	'10.4.9.
3	강화 선원면	돼지	1,791두	1두	'10.4.9.	'10.4.10.
4	강화 선원면	한우	47두	1두	'10.4.9.	'10.4.10.
5	강화 선원면	한우	223두	2두	'10.4.10.	'10.4.10.
6	김포 월곶면	젓소	120두	1두	'10.4.19.	'10.4.20.
7	강화 불은면	한우	19두	2두	'10.4.21.	'10.4.22.
8	충주 신니면	돼지	1,100두	2두	'10.4.21.	'10.4.22.
9	강화 불은면	돼지 한우	1,300두 18두	2두 (돼지)	'10.4.27.	'10.4.28.
10	청양 정산면	돼지 소	1,278두 319두	2두 (돼지)	'10.4.30.	'10.5.1.
11	청양 목면	한우	20두	1두	'10.5.6.	'10.5.7.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따라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국경검역과 일제소독 등 국내 방역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에 2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연속 발생함에 따라 현재 방역체계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4월 9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살처분만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5월부터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 조치와 종식 이후의 근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국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9월 27일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 제 2 장

---

# 2010년 하반기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 1.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경과

#### 1.1. 안동지역 구제역의 발생 상황과 원인

2010년 하반기의 구제역 발생은 11월 28일 16:30분 경에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양돈단지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주 김씨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상황실에 구제역 의심 돼지를 직접 신고해 옴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화를 통해 양돈장 환축의 임상증상과 경과를 전해들은 검역원 직원은 구제역이 의심되어 즉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으로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농장주는 관할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연락하였으며, 북부지소 직원이 단지 내 환축으로부터 수포, 혈액 등 가검물을 채취하고 단지 내 양돈장 2곳(김00, 권00)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새끼돼지를 선택하여 신고 검역원으로 향하였다.

한편, 실험실 정밀검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검역원은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아침 5시 30분 경에 도착한 환축에 대해 병리검사를 하고, 송부해 온 가검물을 사용하여 구제역 정밀검사에 착수하였다. 1차 실험실검사는 오전 8시

경에 끝나 거의 구제역이 확실시되었으나, 재확인을 위하여 다시 검사를 반복 실시하여 11월 29일 오후 2시에 진성 구제역임을 확정 판정하였다. 검역원은 그날 아침 8시경 구제역 진단이 거의 확실시됨과 동시에 검역원 역학조사 전문가 2명을 안동 현지에 급파하여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안동 서현양돈단지 내의 구제역 발병 경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지의 가축사육 환경이나 질병의 첫 발견 및 임상에 관하여 보다 좀 더 상세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므로, 경상북도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서현양돈단지는 지금부터 약 15년전 이 지방의 양돈가 10여 명이 모여 약 25,000㎡의 대지에 모두 30여 동의 돈사를 짓고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그 후 반수 이상이 단지를 떠나고, 2010년 11월에는 5명의 농장주들이 각각 독립된 축사에서 양돈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양돈장의 배치와 사육관리 현황은 <사진 2-1>과 <표 2-1>과 같다.

<사진 2-1> 서현양돈단지 전경



출처: 정종기 촬영(2011.10.7)

<표 2-1> 서현양돈단지 사육 현황 및 구제역 발생 상황

농장명	사육두수(두)	경영 형태(외국인 고용)	구제역 발생
김00	5,500	일관사육(외국인2, 중국1, 베트남1)	11.29 양성 관정발생농가 살처분
권00	3,500	비육돈(외국인1, 베트남)	"
양00	2,500	일관사육(외국인1, 태국)	예방적 살처분
전00	2,300	일관사육(외국인 없음)	"
박00	1,000	비육돈(외국인1, 조선족)	"
합 계	14,5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



특기사항은 외부로부터 양돈장으로 들어오는 돈사 출입구에 공동창고와 길이 50미터 정도의 분뇨처리장이 위치해 있어서 단지 내의 각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매주 2회 정도씩 트럭으로 이곳에 운반해 온 후에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양돈단지 내의 사육자들은 각각 5~7개 정도 되는 사료 공급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료를 공급 받고 있었으며 인근 각처에서 진료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형편이었으며 각 농장간의 차단방역 시설도 미흡하여 외부로부터 전염병 유입에 최적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양돈장의 돼지에서 처음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11월 23일 경으로 추측된다. 양돈장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양00의 돈사에서 11월 23일 경 전에 볼 수 없던 돌연한 모돈의 발굽염증, 절뚝거림(파행), 유방의 수포 등이 관찰되었다. 이에 농장주는 구제역을 의심하고 11월 23일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하여 병성감정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당일 북부지소 직원이 현장에 나와 환축의 상태를 검사한 후 구제역 예찰검사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항체검사키트를 사용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좀 더 경과를 두고 보기로 하고 철수하였다. 다음날 아침 포유자돈 30여두가 폐사된 것을 축주(양00)가 발견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회사 가축질병검사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돼지호흡기질병(PRRS)인 것 같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로부터 2~3일 후, 비슷한 질병이 동일 단지 내의 입구 쪽에 위치한 김씨와 권씨의 축사에까지 확산되어 11월 26일 오전 김씨와 권씨의 축사에 다수의 포유자돈 폐사와 비육돈에 파행증상이 나타나 다시 북부지소에 신고 했으며 두 번째 현장에 나온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은 다시 항체검사키트를 사용하여 구제역 현장검사를 반복했으나 시험결과는 역시 음성이었다. 이로부터 2일이 지난 후 환축들이 점차 늘어나고 폐사돈이 속출하자 위기감을 느낀 김씨가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검역원에 직접 전화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고 검역원 직원 2명이 11월 29일 안동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농장마당에 폐사한 자돈 700여두가 쌓여 있었으며, 5명의 농장주가 사육하고 있는 모든 축사의 환축을 둘러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축사에

질병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맨 안쪽 양씨 농장의 돼지 환축에서 가장 오래된 구제역 유사병변이 관찰되었고, 그 외에도 김씨, 권씨, 박씨, 전씨 등의 순서로 농장에서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 1.2. 구제역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의학적 용어로서의 역학조사(疫學 調査,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란 전염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인과 관계를 역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1) 질병의 원인체에 관한 정확한 확인동정 정보, 2) 해당 질병이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가, 즉 감염동물의 종류, 감염두수, 임상증상 등 질병의 특징, 3) 질병이 유입된 근원은 무엇이며, 4)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어떤 전염 경로를 통해 전파 확산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질병 진행 추이를 예상하고 방역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이 역학조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의 관찰과 조사는 물론 전염병 발생 및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상대습도, 온도, 풍향, 풍속 등), 발생지 주변의 지형, 교통로의 파악, 발생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질문과 주위의 관련사항에 대한 탐문조사, 외부인의 농장방문 여부, 농장 작업과 관련된 대인 대물 접촉정보, 일상적인 축주나 농장종사자의 생활행태에 이르기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나아가 분리된 병원체에 관한 유전정보까지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마치 범죄 수사와 유사하여 쉽게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축주나 농장 종사자가 전염병 유입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진술하지 않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역학조사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의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과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림 2-1> 구제역 역학조사의 단계와 주요 내용



<표 2-2> 구제역 현장 역학조사시 조사사항

구 분	조 사 항 목
농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주 및 축주 가족 사항</li> <li>○ 종사자 고용, 외국인 고용 사항</li> <li>○ 농장 위치 및 축사구조 단면</li> <li>○ 가축 사육현황</li> <li>○ 과거 가축질병 발생, 백신접종 내역</li> <li>○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내역</li> </ul>
질병발생 및 신고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별 임상증상 진행경과 내역</li> <li>○ 정밀검사 의뢰 내역</li> <li>○ 신고 경위</li> </ul>
가축 이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식 현황</li> <li>○ 도축출하 현황</li> <li>○ 위탁(분양, 판매) 현황</li> </ul>
농장 출입 현황 (사람, 차량,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주, 농장 근무자 및 그 가족</li> <li>○ 수의사 및 축산관련업체 등 서비스 관계자</li> <li>○ 외부인: 우편물, 택배, 공사 등</li> <li>○ 동물약품(백신 포함): 구입현황, 사용 현황 등</li> <li>○ 가축 사료: 제조사, 종류, 수량, 용도, 운반자, 하역장소, 급여 방법, 가축과 접촉여부, 소독실시 여부 등</li> <li>○ 가축분뇨: 톱밥, 계분, 분뇨</li> <li>○ 중부(자연중부 및 인공수정): 자연중부 현황, 정액구입 현황, 임신진단 및 인공수정 현황, 정액판매 현황 등</li> <li>○ 집유(젖소농장에 한함)</li> <li>○ 잔반처리: 자가급여 현황, 반출 및 반입 현황</li> <li>○ 폐사축 처리: 자가처리 현황, 외부처리 현황</li> <li>○ 야생동물(야생조수류 포함) 출현: 축종, 출현두수, 출현 일시, 출현 빈도, 출현 장소, 가축 및 폐사축과 접촉여부 등</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농장 관련자 및 인근지역 주민 외국방문 사항</li> <li>○ 기상 현황(공기전파 가능한 질병에 한함)</li> <li>○ 발생농장 주변 생활권 조사: 생활권 및 활동지역, 공공 시설, 식료품 및 일용품 구입처 등</li> <li>○ 발생지역 지형조건 조사</li> <li>○ 발생지역 외국인근로자의 활동영역에 관한 사항 조사: 불법 휴대 육류 등 유통조사, 모임장소 및 횃수, 농장근무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여부 등</li> <li>○ 발생지역 주민의 특성조사: 집성촌 여부 등</li> </ul>
농장관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주 또는 관리인이 추정하는 질병유입 원인에 대한 의견 기술</li> </ul>
조사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생 및 확산원인 추정 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기술</li> </ul>

역학조사자가 당면한 어려움은 이런 것 뿐만 아니다. 일단 수집 조사된 역학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가축방역협의회나 방역정책결정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의 결정은 즉각적인 방역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시간에 쫓기고 있는 셈이다. 가용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수효나 배치도 문제가 된다. 전염병이 국지적으로 소수 발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수의 장소에서 발생할 때에는 소수의 한정된 전문가를 적시에 제대로 배치하여 조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안동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은 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조사하고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 이 역학조사 보고서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소재 서현양돈단지가 이번 구제역 발생의 최초 진단농장이면서 최초 감염농장이다.

2)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 및 유전자형은 O형 동북아(SEA)형이며,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2010년 주변국(홍콩,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에 유행하고 있었다.

3) 이번 바이러스가 서현양돈단지에 유입된 시기는 11월 9일~16일 사이로 추정된다.

4) 이번 구제역바이러스는 해외(베트남)로부터 유입된 것 같으며, 유입 원인으로서는 이 단지의 한 농장주의 해외여행(베트남)시 오염되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추정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돈단지 내 한 농장주가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제역 발생국(베트남)을 여행하였으며, 여행 후 입국 시에 신고 등 검역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동 농장주가 귀국한 11월 7일 이후 축분처리기계 설치 관계로 주변 인물들과 양돈단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한 바 있으며, 양돈단지의 축분처리장은 양돈단지 내 한 장소에 모두 모여 있다는 점에서 축분장이 오염될 경우 양돈단지 내 농장은 모두 오염될 수 있고, 질병의 잠복기와 축분장 오염에 따른 질병

전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동 양돈단지를 최초발생지로 추정할 수 있다. 동 단지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형으로 2000년 베트남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8.44% 일치한다.<sup>1</sup>

③ 그 외에도 양돈단지 내에 동남아 출신 등 외국인 근로자(5명)가 고용된 점, 동남아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구제역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참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서(2011.12.)**

### (1) 안동 서현양돈단지 역학조사 내용

-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국(베트남) 여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입 원인으로 추정
  - 구제역 유입원인 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학적 인과관계이며, 금번 안동 구제역의 유입원인 중 하나로 베트남 여행 농장주를 추정하는 이유
    - 구제역이 농장주가 소속된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발생
    - 농장주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인 베트남을 다녀옴.
    - 입국 시 공항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 국내 입국 후 수차례 동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됨.
    - 구제역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농장주의 해외여행과 구제역 발생의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함.
  - 그 외에도 단지 내에 동남아 출신 등 외국인 근로자(5명)가 고용된 점,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발생 경위
  - 베트남 여행 11.4~7일(여행자 총 30명 중 3명이 농장 경영)

1 구제역의 잠복기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최단 2일에서 최장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은 소 5일, 돼지 4일이다.

- 권00씨 양돈단지 방문일: 11.9, 10, 13, 16, 23, 26일
  - \* 동 농장주는 11.9, 10일 양돈단지 방문 사실을 부인
- 최초 증상 발현 농가 추정 감염일: 11.9~11.16
- 안동 양돈단지 추정 감염일: 11.9~25

□ 신고 경위

- 11.23일 서현양돈단지 내 양돈 농장주(양00)가 경북시험소신고 → 구제역 음성으로 추정
- 11.26일 오전 서현양돈단지 내 농장주(김00, 권00)가 경북 시험소 신고 → 구제역 음성으로 추정
- 11.28일(일), 농장주(김00)가 검역원에 문의
  - 11.29일 05시 30분 검역원에 시료 도착
  - 정밀검사 실시결과 2개 농장 모두 양성 판명(14:00)

**(2)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 근거**

□ 안동 바이러스와 베트남 바이러스의 역학적 연관성

- 동 단지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형으로 국제표준연구소에 '10.11월 국내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 '10년 베트남 유래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관련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요청한 결과 98.44%의 일치율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보고서, '11.2.16).
- 베트남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며 여러 종류의 구제역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음.
  - 특히 축주가 방문한 지역은 국내에 발생한 혈청형과 같은 O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형도 SEA형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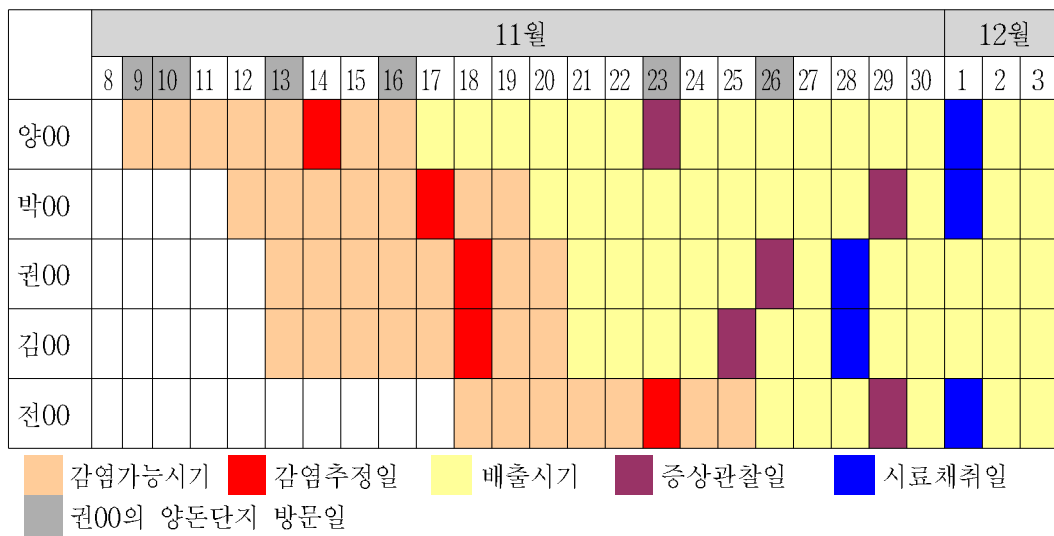
□ 구제역의 잠복기와 항체검사성적,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현양돈단지 돼지에 최초로 구제역이 감염된 시기는 11.9일부터 16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 구제역 상시 발생국가인 베트남을 다녀온 농장주가 11.9, 11.10, 11.13, 11.16, 11.23, 11.26일 등의 6회에 걸쳐 양돈단지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농

장 방문일자는 구제역 추정 감염기간 내에 포함되어 농장 방문일과 추정 감염시기가 일치하며,

- 따라서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베트남을 여행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금번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여 소나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6개월 이상 농장에서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화바이러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그림 2-2> 서현양돈단지의 구제역 감염경로 추정



**(3) 서현양돈단지를 최초 감염농가로 판단하는 근거**

- 항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서현양돈단지 주변이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인근농장은 서현단지보다 감염이 늦게 된 것으로 분석되어 최초진단농장(Index farm) 서현단지를 최초감염농장(Primary farm)으로 판단함.
- 서현양돈단지 내 구제역 바이러스 침입 순서 추정
  - ①양00 → ②박00 → ③권00=김00 → ④전00 순서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



- 서현양돈단지 3km 이내 농가 조사 내역
  - 12.2~12.10일까지 한우 75, 돼지 1농가 등 총 76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 한우 6농가 11두에서 SP 항체 양성, NSP는 모두 음성
- 11.29~12.10 구제역 검사 내역
  - 총 320농가 (소 292, 돼지 24, 염소 4농가) 검사 124농가 양성
  - SP 40농가 56두 양성
  - NSP 2농가(12.8 및 12.10일 채취 농가, 소) 2두 양성

&lt;표 2-3&gt; 서현양돈단지 농가별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2011.12.4 검사결과 판정)

축주명	구 분		항체양성두수	
	검사두수	채취일자	SP양성	NSP양성
김00	90	11.29	3	0
권00	40	11.29	1	0
전00	20	12.1	0	0
박00	20	12.1	10	0
양00	41	12.1	17	7

- 주: 1. SP 항체 검출시기 : 감염 후 5~8일  
 2. NSP 항체 검출시기 : 감염 후 10~12일  
 3. 김00, 권00 12. 28일 채취 혈액 10두 중 각각 SP 2두 양성

### 13. 구제역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란

#### 13.1. 국내 재발설과 관련하여

검역원 역학조사서에서 발표된 내용과 달리 국내 수의학계 일부에서는 2010년 11월의 안동지역 구제역이 상반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재발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국회 이춘석 의원은 검역원의 발표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sup> 즉,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새로 유입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2010년 4월에 발생한 바 있는 강화 바이러스가 국내 어딘가

에 잔존해 있다가 다시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며, 그 의견의 근거로 국제표준실험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와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상동성을 제시하였다.<sup>3</sup>

여기에 대한 검역원의 반증은 다음과 같다. “ 1) 2010년 4월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발생지 주변 및 국내 여러 곳의 가축을 대상으로 충분한 양의 임상 예찰과 혈청검사를 통해 더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순환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으며, 이 결과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2010년 9월 27일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받은 바 있다. 2) 지난 4월 이후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O, SEA형)가 전파력이 높고 임상증상이 뚜렷하여 발병 농가에서 숨긴 채 그간 발견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검역원의 역학조사보고서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상황 증거를 근거로 하여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의 다른 유입 원인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단지, 만약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국내 잔존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되었

<사진 2-2> 구제역 재발설 관련기사



출처: 경향신문(2011.2.15)

2 2011년 2월 15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끼워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6월 7일에는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구제역 발생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가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06% 일치하고, 4월 발생한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민주당 이춘석 의원 자료)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0년 4월 이후 그간 국내에서의 구제역 바이러스 잔존 증거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안동 서현양돈단지에 옮겨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하반기의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설 이외 추정되는 다른 원인으로는 1)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잔존해 있다가 겨울철을 타고 재발했다는 설, 2) 불온 세력에 의한 바이오테러의 가능성, 3) 수입축산물과 사료 및 건초 등의 바이러스 오염, 4) 멧돼지나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5) 동북아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의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 1.3.2.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초동 대처의 문제점

안동 서현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힌 후 언론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방역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처음 의심축 신고시에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의 오진과 초동 방역대처의 미흡을 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구제역 발생 역사를 되돌아 보면,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발생, 그리고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의 구제역 발생시에도 의심축이 신고된 후 구제역 확진과 비상 방역대응 활동이 개시되기까지 약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구제역과 같은 전파성이 높은 질병의 방역에서는 초기의 신속 발견과 신속 대응이 방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는데 왜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1) 지역 가축시험소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 2) 돼지에서 최초 발생시에는 구제역으로 진단 내릴 수 있는 특징적 증상이 부족하다는 점, 3) 현지에서 검역원 진단소까지 가검물을 송부하는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4) 구제역을 의심하여

검사를 의뢰했다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의 후유증이 남는 점, 5) 설마 여기까지 구제역이 전파되었을까 의심하는 정신적 해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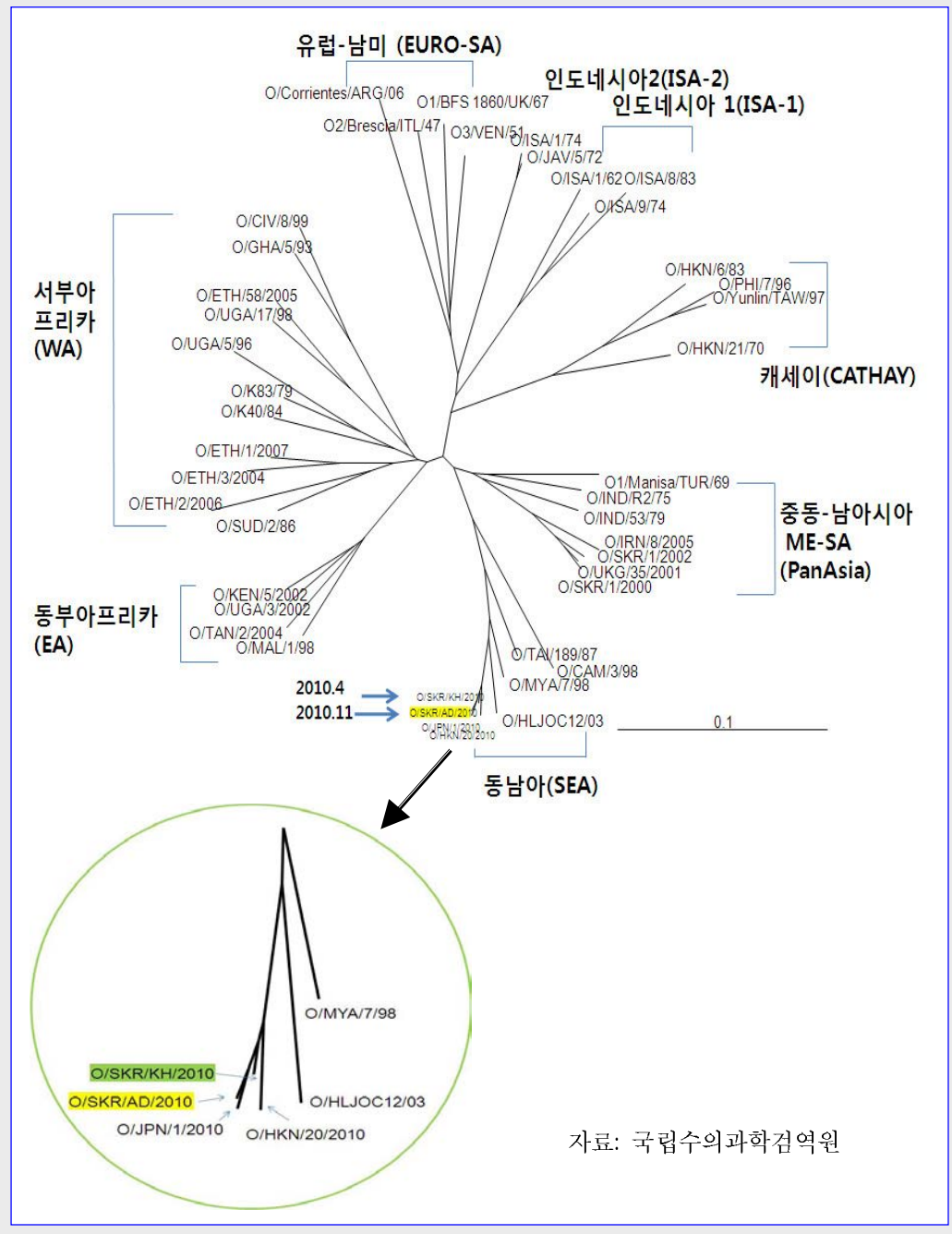
또한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감염 발병 후 오랜 시일(최소 7일) 후에야 검출이 가능한 항체 검사용 키트 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것은 원래 지역 시험소가 구제역 진단용이 아니라 구제역 예찰을 위한 혈청검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배부한 것이었다. 현지 지역시험소에 보다 조기에 진단이 가능한 항원 검사용 키트가 배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오진과 검사 실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항원키트가 항체키트보다 구제역 감염측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임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장 사용 항원과 항체키트가 갖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을 깊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당초 검역원에서 구제역 항원진단용 현장키트를 미리 널리 배부해 놓지 않은 이유를 살펴 보자. 실제 이 야외 사용 항원 항체키트는 진단에 사용하는 가검물 속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검사 대상동물이 구제역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음성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이 키트는 구제역 발병 급성기 중의 한 시기, 즉 수포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사용이 권장되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RT-PCR이나 ELISA, 바이러스 중화시험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음성임을 재확인해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개 이런 확인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값비싼 장비가 필요할 경우도 많아 한정된 인력과 예산, 장비만 갖춘 일선 시험소에서는 이런 데까지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제역 항원키트를 모든 일선 시험소에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구제역 확인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게 하지 않는 한 일선 시험소에는 여전히 거짓 음성 판정에 의한 오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국내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O형 지역형 유전자 계통도(VPI 분석)



## &lt;참고 자료&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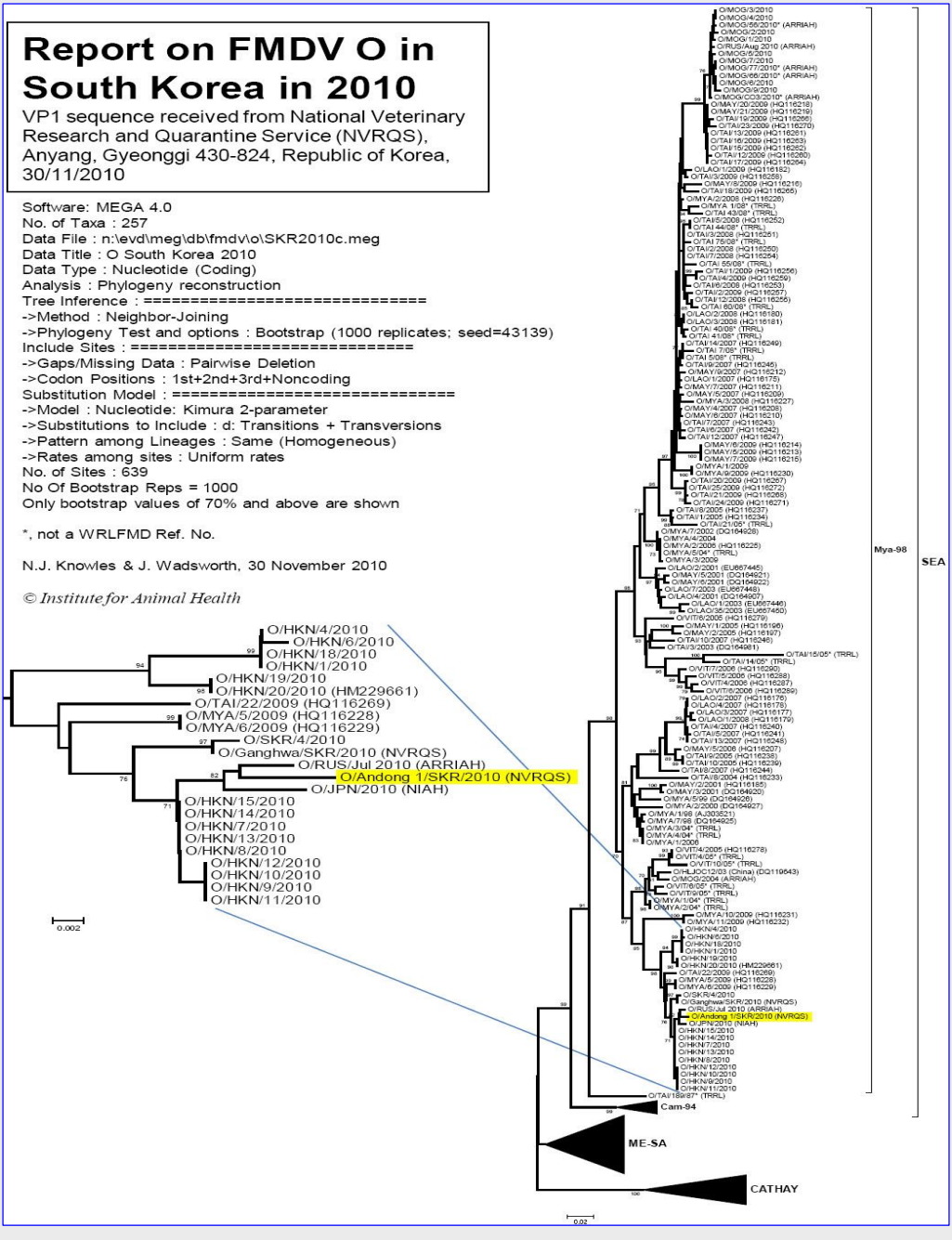
## 국내 발생 O형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의 차이와 유사도

국가	발생 년도 (월일)	지역 (축종,바이러스명)	유전자 상이 (차이수/ 분석염기)	일치율 (%)	자료 참고
한국	'10.11.28	경북 안동 (돼지)	기준	기준	NVRQS
한국	12.13	경북 안동 (한우)	2/639	99.69	NVRQS
한국	12.17	경북 안동 (한우)	3/639	99.53	NVRQS
한국	12.13	경북 예천 (돼지)	2/639	99.69	NVRQS
한국	12.12	경북 의성 (한우)	3/639	99.53	NVRQS
한국	12.14	경북 영주 (한우)	2/639	99.69	NVRQS
한국	12.14	경기 연천 (돼지)	5/639	99.22	NVRQS
한국	12.14	경기 양주 (돼지)	6/639	99.06	NVRQS
한국	12.15	경기 파주 (젓소)	5/639	99.22	NVRQS
한국	12.19	경기 고양 (한우)	6/639	99.06	NVRQS
홍콩	2010.2	O/HKN/13/2010	6/639	99.06	WRL*
러시아	2010.7	O/RUS/Jul 2010	6/639	99.06	WRL
홍콩	2010.2	O/HKN/10/2010	7/639	98.90	WRL
일본	2010.4	O/JPN/1/2010	7/639	98.90	일본동위원
한국(강화)	2010.4	O/KOR/1/2010	10/639	98.44	NVRQS
베트남(엔베이)	2010.1	O/VIT/NCVD-8/2010	10/639	98.44	WRL
베트남(엔베이)	2010.1	O/VIT/NCVD-9/2010	11/639	98.28	WRL
베트남(손라)	2010.3	O/VIT/NCVD-19/2010	16/639	97.50	WRL
베트남(손라)	2010.3	O/VIT/NCVD-20/2010	16/639	97.50	WRL
홍콩	2010.3	O/HKN/20/2010	17/639	97.34	NCBI
베트남(손라)	2010.3	O/VIT/NCVD-17/2010	17/639	97.34	WRL
베트남(손라)	2010.3	O/VIT/NCVD-18/2010	17/639	97.34	WRL
미얀마	2010.3	O/MYA/3/2010	39/639	93.90	WRL
태국	2010.1	O/TAI/1/2010	67/639	89.51	WRL
태국	2010.1	O/TAI/4/2010	67/639	89.51	WRL
태국	2010.1	O/TAI/5/2010	68/639	89.36	WRL
태국	2010.1	O/TAI/6/2010	68/639	89.36	WRL
태국	2010.1	O/TAI/3/2010	69/639	89.20	WRL
베트남(하틴)	2010.9	O/VIT/5/2010	67/639	89.51	WRL
베트남(손라)	2010.2	O/VIT/2/2010	73/639	88.58	WRL
러시아	2010.8	O/RUS/Aug/2010	72/639	88.73	WRL
몽골	2010.9	O/MOG/7/2010	74/639	88.42	WRL
미얀마	2010.1	O/MYA/1/2010	75/639	88.26	WRL
미얀마	2010.2	O/MYA/2/2010	75/639	88.26	WRL
몽골	2010.9	O/MOG/9/2010	77/639	87.95	WRL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참고 자료>

국내 발생 O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OIE 보고서



<쟁점 의견>

**구제역 발생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축산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구제역 발생 원인의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구제역  
종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

1. 정부와 고위 공무원들이 구제역 발생 원인을 축산 농가 탓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FAO 구제역 공식 표준실험실 분석 결과를 빌려 안동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홍콩·러시아 바이러스와 99.06%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대로라면 정부가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2. 문제는 정부가 분석 결과를 알면서도 FAO 구제역 공식 표준실험실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안동 구제역이 베트남을 다녀온 축산농민에 의해 유입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정부가 구제역 발생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게 전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더욱이 정부가 구제역 초동 조치 및 대응 미숙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성 없이 축산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축산 농가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구제역이 전국을 덮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구제역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이 축산 농가들에게 위로가 되고 국민들의 요구에 바람직하게 답하는 것이다.
4. 이에 정부는 구제역 발생 원인을 은폐하고 축산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책임자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구제역 종식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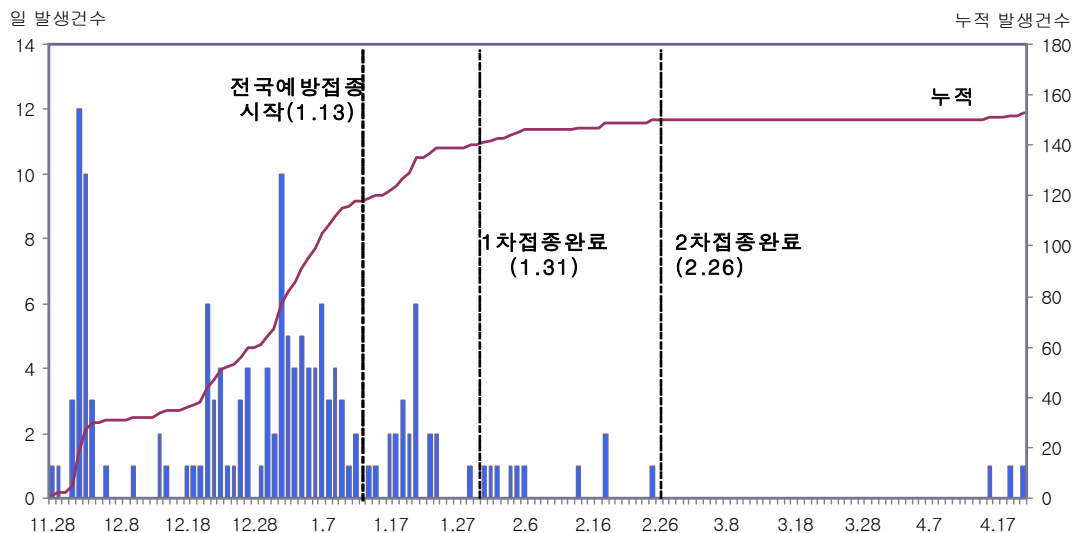
## 2.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과

### 2.1. 구제역 확산의 단계별 경과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최초 신고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2011년 4월 21일까지 114일 동안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의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3>에서 일별 발생 건수를 정리한 바와 같이 2010년 12월 2일 하루에 1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최고의 발생 빈도를 보였고, 누적 발생 건수로 보면 2011년 1월 말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1월 말에 1차로 전국 예방접종이 끝나갈 무렵부터 발생이 점차 줄기 시작하여 2월 들어서는 평균 1일 1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림 2-3>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 발생 건수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특별사이트(<http://web.maf.go.kr/fmdg>)내 구제역속보.

&lt;표 2-4&gt; 2010년 하반기 구제역의 위기경보 단계별 상황

일자	진행 상황	주요 내용
'10.11.28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경보: "관심" 단계)	• 경북 안동 양돈단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발생 * 일선기관에서 간이항체키트로 진단, 이동통제 전에 인근 농장으로 전파
'10.11.28 ~ 12.15	경북 전역 확산 (11.29, 경보 상황: 관심→주의)	• 11.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동 의심신고 양성 확인 → 양성 판정 이후 초동방역 개시 • 안동에서 예천(12.4), 영양(12.6), 영주(12.10), 예천(12.14) 등으로 확산
'10.12.15	경기 파주로 전파 (경보: 주의→경계)	• 양주/연천(12.14), 파주(12.15)에서 발생 * 검역원 신고(11.28) 10여일 전 안동 발생농장 분뇨가 경기도 파주로 이동 확인
'10.12.25	백신 접종 시작 * 발생지역 소에 접종	•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백신 접종 실시 * 평창(12.21), 강화(12.23), 여주(12.25) 등에서 발생
'10.12.29	전국 확산 * 중대본 설치 (경보: 경계→심각)	• 사료업자 등 전국단위 영업으로 인해 발병 확산 * 춘천(12.27), 경주(12.30) 등에서 발생 •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 수위로 격상 • 범정부 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11.1.13	전국 백신 결정	• 링 방식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발생 * 천안(1.1), 괴산(1.3), 대구(1.17), 김해(1.24) 등에서 발생 * 전국 모든 소·돼지 대상(1200만두) 백신 결정
'11.2.10	매몰지 사후관리 T/F 구성·운영	• 매몰지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매몰지 보강 * 1~2차(1.24~2.25) 조사결과 274개소 보강, 신규발생 및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3차 조사(2.27~3.4)
'11.3.3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지시	• 구제역 NSP 항체 양성농장 및 가축방역 조치사항 재강조
'11.3.24	위기경보 하향 (경보: 심각→경계)	• 2.25일 울주군 돼지농가 발생 이후 소강 상태 •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선진화방안" 발표(3.24)
'11.4.12	위기경보 하향 (경보: 경계→주의)	• 3.21일 이후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3주간 추가 매몰이 없고 상시 예방접종 상황

따라서 2010년 하반기 이후의 구제역 확산 경과에 대하여 위기 경보 단계별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확산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주의 단계(2010.11.29): 위기경보 발령

안동시 서현양돈단지에서 신고된 의심가축이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29일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진단 및 긴급방역조치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12월 초부터 주로 최초 발생 농장 주위의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안동지역에만 퍼진 구제역이 1주일 이내에 경북 예천과 영주 지역까지 북상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경기도 북부인 연천 및 양주까지 확산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날 연천과 양주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해 왔으며, 이튿날인 15일에는 경기도 파주의 젓소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다.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구제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연천과 양주 및 파주의 구제역 바이러스들은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이 거의 일치하여 안동에서 전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나. 경계 단계(2010.12.15): 위기경보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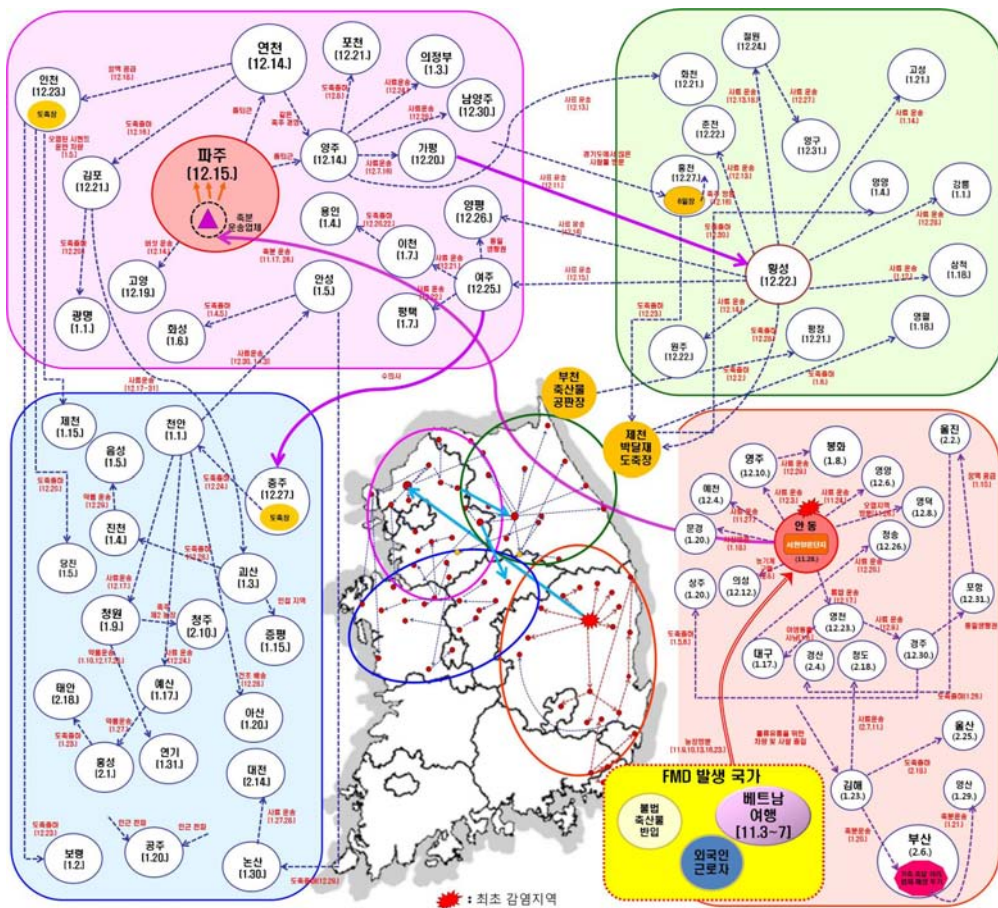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경북지방에서 발생할 때 “주의” 단계로 방역에 임하다가 축산 밀집지역인 경기도로 확산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갈 기미를 보이자 2010년 12월 15일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계” 단계로 방역 태세를 상향 조정하고, 전국의 비발생 지역에도 구제역 방역 태세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구제역의 전파 속도는 당시의 방역 대응작업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남부, 강원 지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12월 중순부터는 경기 고양, 가평, 김포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어 12월 하순에는 강원 화천, 평창, 춘천, 원주, 횡성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함에 따라 12월 22일에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결정하게 되었다.

### 다. 심각 단계(2010.12.29): 위기경보 상향 조정

구제역은 2010년 12월 하순부터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경기 여주, 인천 서구, 경기 양평, 경북 청송, 강원 홍천과 횡성, 경북 영주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분뇨처리업체와 사료업자 등이 전국 단위로 영업한 것이 발병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4>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로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lt;표 2-5&gt;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 신고 및 양성 판정 목록

순번	신고 일시	발생 지역	축종	규모 (두수)	순번	신고 일시	발생 지역	축종	규모 (두수)
1	11.28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돼지	9,000	39	12.21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한우	27
2	11.29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	5	40	12.21	경기 연천군 전곡읍	돼지	10,000
3	12.1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150	41	12.21	경기 포천시 일동면	한우	31
4	12.1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3	42	12.21	강원 화천군 사내면	한우	5
5	12.1	경북 안동시 이천동	한우	210	43	12.21	경기 김포시 월곶면	돼지	5,000
6	1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	69	44	12.21	경기 포천시 관인면	한우	11
7	1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	29	45	12.22	강원 춘천시 남면	한우	25
8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1	46	12.22	강원 원주시 문막읍	한우	98
9	12.2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돼지	4,000	47	12.22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한우	27
10	12.2	경북 안동시 노하동	한우	117	48	12.23	인천 강화군 양도면	돼지	890
11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100	49	12.23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한우	55
12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80	50	12.23	경북 영천시 화남면	돼지	24,000
13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35	51	12.23	강원 횡성군 서원면	젓소 우	96
14	12.2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106	52	12.24	강원 철원군 동송읍	한우	280
15	1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	6	53	12.25	경기 여주군 가남면	한우	140
16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36	54	12.26	인천 서구 오류동	돼지	3,000
17	12.2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35	55	12.26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한우	7
18	12.3	경북 안동시 풍산면	돼지	570	56	12.26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한우	5
19	12.3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45	57	12.27	강원 춘천시 동면	한우	11
20	12.3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53	58	12.27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한우	6
21	12.3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65	59	12.27	경북 영주시 장수면	돼지	13,000
22	12.3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20	60	12.27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	130
23	12.3	경북 안동시 북후면	한우	72	61	12.29	강원 홍천군 남면	돼지	13,000
24	12.3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37	62	12.30	경북 영천시 화산면	한우	144
25	12.3	경북 안동시 남선면	한우	37	63	12.30	경북 경주시 안강읍	한우	14
26	12.3	경북 안동시 와룡면	한우	85	64	12.30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한우	120
27	12.3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우	7	65	12.30	강원 횡성군 우천면	돼지	1,750
28	12.4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우	45	66	12.31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우	87
29	12.4	경북 안동시 예안면	한우	42	67	12.31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우	10
30	12.4	경북 안동시 서후면	돼지	12,000	68	1.1	충남 천안시 수신면	젓소	50
31	12.6	경북 영양군 청기면	한우	3	69	1.1	경북 영천시 화남면	돼지	1,000
32	12.10	경북 영주시 적서동	한우	56	70	1.1	경북 영천시 화북면	한우	3
33	12.14	경기 양주시 남면 /연천군 백하면	돼지	2,400	71	1.1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우	72
34	12.14	경북 예천군 지보면	한우	146	72	1.1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한우	5
35	12.15	경기 파주시 부곡리	젓소	180	73	1.1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한우	59
36	12.18	경기 파주시 교하읍	한우	100	74	1.1	강원 화천군 간동면	한우	96
37	12.1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우	53	75	1.1	경기 광명시 가학동	한우	74
38	12.20	경기 가평군 하면	한우	55	76	1.1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돼지	3,500

순번	신고 일시	발생 지역	축종	규모 (두수)	순번	신고 일시	발생 지역	축종	규모 (두수)
77	1.1	강원 원주시 소초면	돼지	12,250	116	1.11	충북 충주시 신니면	한우	17
78	1.2	강원 춘천시 동산면	한우	72	117	1.12	경북 영양군 입암면	한우	155
79	1.2	충남 보령군 천북면	돼지	23,000	118	1.12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한우	132
80	1.2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한우	34	119	1.14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한우	30
81	1.2	경북 경주시 안강읍	한우	14	120	1.15	충북 제천시 송학면	한우	8
82	1.2	충남 천안시 병천면	젓소	69	121	1.17	대구 북구 연경동	한우	110
83	1.3	강원 철원군 철원읍	한우	190	122	1.17	충남 예산군 신암면	돼지	3,000
84	1.3	경기 의정부시	한우	57	123	1.18	강원 삼척시 미로면	한우	360
85	1.3	강원 홍천군 서석면	한우	37	124	1.18	강원 영월군 수주면	한우	75
86	1.3	충북 괴산군 사리면	돼지	2,700	125	1.19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우	487
87	1.4	강원 춘천시 남면	한우	35	126	1.19	경북 포항시 흥해읍	돼지	500
88	1.4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돼지	8,500	127	1.19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한우	25
89	1.4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돼지	2,900	128	1.20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8
90	1.4	경기 용인시 백암면	돼지	2,000	129	1.20	충남 이산시 신창면	한우	44
91	1.4	강원 횡성군 안흥면	돼지	33,900	130	1.21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염소	40
92	1.5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돼지	21,766	131	1.21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한우	142
93	1.5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돼지	8,965	132	1.21	충남 이산시 음봉면	한우	103
94	1.5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한우	10	133	1.21	충남 천안시 풍세면	돼지	1,000
95	1.5	경기 안성시 일죽면	돼지	25,000	134	1.21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한우	222
96	1.6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한우	15	135	1.21	경북 문경시 불정동	한우	17
97	1.6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돼지	5,900	136	1.23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한우	123
98	1.6	인천 계양구 갈현동	젓소	49	137	1.23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	1,000
99	1.6	경기 안성시 고삼면	돼지	12,000	138	1.24	충남 공주시 계룡면	돼지	1,000
100	1.7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돼지	4,500	139	1.24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	7,188
101	1.7	경기 용인시 백암면	돼지	20,000	140	1.29	경남 양산시 상북면	돼지, 염소	251
102	1.7	경기 안성시 일죽면	돼지	2,000	141	1.31	충남 연기군 금남면	돼지	4,300
103	1.7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한우	62	142	2.1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돼지	3,700
104	1.7	경기 이천시 설성면	돼지	5,000	143	2.2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한우, 돼지	1,231
105	1.7	강원 철원군 서면	돼지	8,400	144	2.4	경북 경산시 입량면	돼지	3,662
106	1.8	강원 대화군 대관령면	한우, 젓소	1,008	145	2.5	충남 천안시 성환읍	돼지	1,650
107	1.8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돼지	1,400	146	2.6	부산 사하구 장림1동	돼지, 염소	568
108	1.8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한우	29	147	2.14	대전 동구 하소동	돼지	2,000
109	1.9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우	193	148	2.18	경북 청도군 청도읍	돼지	1,200
110	1.9	강원 춘천시 서면	한우	25	149	2.18	충남 태안군 고남면	돼지	500
111	1.9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한우	17	150	2.25	울산 울주군 삼남면	돼지	178
112	1.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돼지	1,400	151	4.16	경북 영천시 금호읍	돼지	67
113	1.10	강원 화천군 사내면	한우	1,140	152	4.19	경북 영천시 금호읍	돼지	2,265
114	1.10	경북 봉화군 상운면	돼지	1,800	153	4.21	경북 영천시 도남동	돼지	800
115	1.10	강원 횡성군 강림면	한우	43					

살처분 두수가 50만두를 넘어서면서 정부 내에서도 국가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12월 29일에는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설치하였으며, 농식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구제역은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월 6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100만 두를 초과하였다. 1월 12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150만 두를 넘었고, 이에 당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백신 예방 접종을 전라도와 경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백신 접종 및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하였다.

1월 하순에는 구제역 발병이 강원 삼척과 영월, 경북 포항 등으로 확산되어 살처분 두수가 200만 두를 넘어섰고, 이어 다시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김해와 양산 등으로 확산되면서 1월 31일에는 살처분 두수가 300만 두를 넘어섰다. 그리고 2월 초에는 부산 사하와 충북 청주에서 신규로 발병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2월 10일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T/F(단장: 농식품부장관)를 구성하였다.

#### **라. 경계 단계(2011.3.24): 위기경보 하향 조정**

2011년 2월 중순 이후에는 대전, 충남 태안, 경북 청도에서 추가로 발병하였고, 2월 25일 경북 울주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후에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다.

정부는 3월 3일에 구제역 추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마. 주의 단계(2011.4.12): 추가 발생 없음**

3월 들어 구제역 발생은 완전한 소강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3월 21일 이후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3주간 추가 매몰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4월 12

일 구제역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월 25일 울산시 울주군의 돼지농장에서 1건이 발생한 후 더 이상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이것이 최종 발생인 것으로 안심하였으나, 4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경북 영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3건이 추가 발생하여 다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5월 26일 안동에서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 2.2. 구제역의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 분석

2010년 하반기 이후 구제역의 지역별 확산 경로와 원인은 역학조사를 담당 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검역원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 2.2.1. 구제역의 확산 원인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제역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구제역은 2010년 11월 28일에 최초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동 양돈단지에서 11월 23일 지방가축질병진단기관에 질병진단 의뢰하였으며, 의뢰 시료에 대한 구제역 간이 항체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같은 과정에서 초동방역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양돈단지 내 다른 농장에서도 11월 26일 지방 가축질병진단기관에 질병진단 의뢰하였으며 의뢰 시료에 대해 간이 항체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그 이후 증세가 계속되어 검역원에 신고하여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 양돈단지의 돼지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후 이미 여러 날이 경과되었고, 농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감염돼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둘째,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질병의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축산과는 다르게 한 지역 내에 많은 농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마다 축종이 특성화되는 특징이 있어 질병이 감염될 경우 그 피해가 큰 경향이 있다. 경북 안동은 한우 집산지이며, 안동의 양돈단지에서 배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변의 한우농가로 동시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농가의 밀집으로 구제역이 확인되지 않은 잠복기 중 농가를 방문한 축산관련 차량이나 사람 등의 타농가 방문으로 인한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 상 동시에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매몰 처분이 지연되고, 매몰 처리에 동원되는 인력이 제한되는 등 초동방역 수행에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셋째,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독 등 차단방역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하였고, 전국에 한파가 지속되어 소독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다. 예를 들어 과거의 구제역은 발생시기가 3~5월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넷째, 최초 발생농장이 대규모 양돈단지였다는 점이다. 돼지는 소보다 1,000배 이상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그만큼 구제역의 확산이 빨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 2.2.2. 지역별 전파 경로 분석

### (1) 경북 지역의 전파 요인

안동 지역에서 구제역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배경으로 구제역 발생 사실 확인이 늦어진 사유 이외에도, 구제역 등 질병이 처음 발생하여 긴급 대처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안동 지역의 특성상 동일 성씨의 집

4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는 하루 약 10억 개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양돈단지 내 사육돼지가 17,000두이며, 5%가 감염되었다고 가정해도  $850 \times 10^9$ 개의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소는 4~10개, 돼지는 300~800개로 감염이 이루어진다.

성촌이 많아 밀접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소에도 회합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발생 후에도 발생 농가와 비발생 농가가 자주 만남으로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주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양돈단지로부터 반경 3km 내의 위험지역에 속하는 한우농가는 124개 농가이고 사육두수는 1,860두였다.

<표 2-6> 안동시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의 가축두수 분포

구분	500m이내		위험지역 (3km)		경계지역 (3km~10km)		관리지역 (10km~20km)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소	-	-	124	1,860	849	15,240	2,632	40,358
돼지	5	14,580	3	5,254	18	24,725	42	31,069
염소	-	-	-	-	4	580	21	1,204
사슴	-	-	-	-	1	13	7	159
계	5	14,580	127	7,114	872	40,558	2,702	72,79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축방역협의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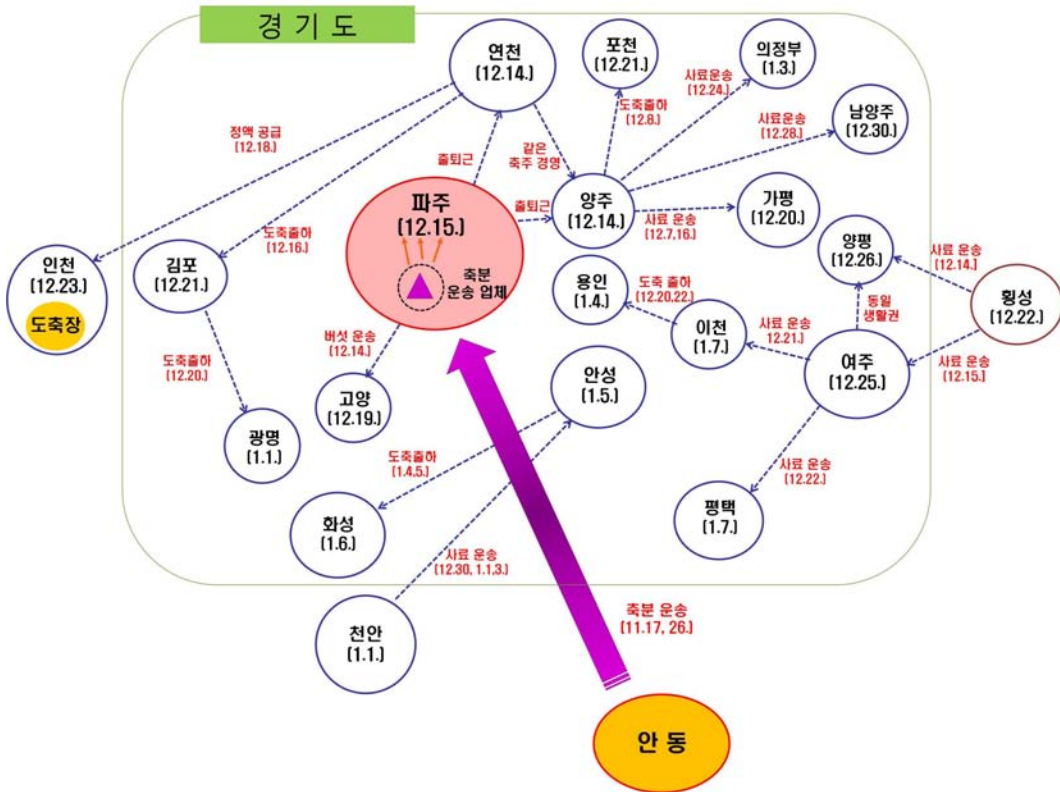
또한 안동 지역의 한우농가는 대부분이 동일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어 사료차량의 오염 등과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으로 동시에 여러 농가에 구제역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지역은 경기도 등에 비해 타 시도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안동 지역 및 인근 시·군으로만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예천 지역은 벼짚 수송차량이 전파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영양 지역은 사료차량이, 영덕 지역은 오염지역 방문으로, 영주 지역은 가축 이동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경기 북부 지역 및 인천 지역의 전파 요인

구제역이 최초 신고된 안동 양돈단지의 축분처리 기계 설치와 관련 양돈단지의 축분 약 1.5톤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축분처리기계 개발업자에게 배송(11월 17일)되었으며, 이 시설업체에서는 일정 상태로 건조시킨 축분 시제품을 가지고 다시 양돈단지를 다녀온 사실(11월 26일)이 확인된 바 있어, 이러한 과정

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축분처리시설 기계 공장과 200~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돼지 및 소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림 2-5> 경기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경기 북부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의 최초 신고는 12월14일이며, 이 시기는 경기 지역이 축분에 오염된 후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파주 지역에서 의심축이 신고되어 초동방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주변 지역의 축산농가로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주변 농가의 구제역 검사결과 항체양성 농가가 확인되어 이미 주변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의 연천 지역은 안동의 경우와 같이 최초 감염 농장이 대단위 양돈단지였고, 동 양돈단지는 동일한 길을 사용하고 있어 빠르게 주변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정액 배달자에 의해 인천 강화, 김포 및 양주 등의 농장에 질병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 지역은 사료차량,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의 인적·물적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기 전에 많은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변농가에서 구제역 항체양성 농가가 확인되어 이미 많은 농장이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타 시·군 전파 사례로 동일 축주(양주), 사료차량(포천, 가평)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주에서 조사료 원료로 버섯을 공급하는 업체가 고양시 소재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이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3) 강원 지역의 전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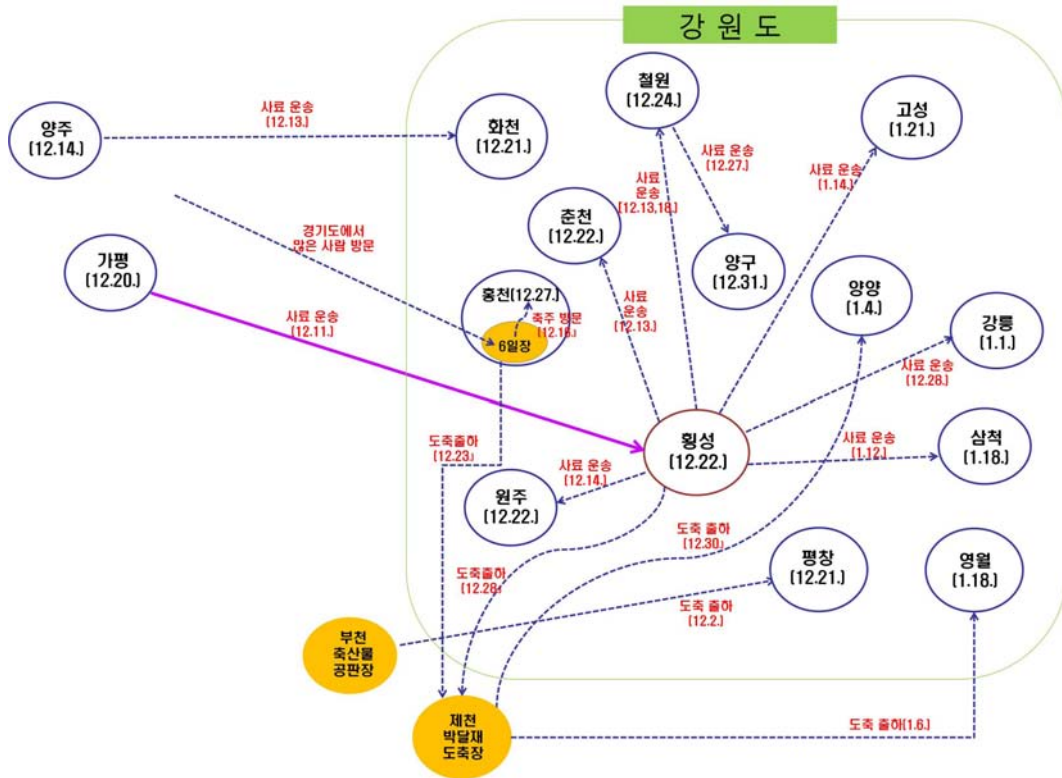
강원 지역으로의 구제역 전파는 경기 북부 지역의 발생농가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한 사료차량에 의해 화천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횡성, 춘천, 삼척, 영월, 고성 등의 여러 시·군으로 구제역이 전파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동일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또한 원주, 횡성, 홍천 지역의 양돈 농장들은 동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위탁 농장을 통해 질병이 전파되고 있었고, 원주의 양돈 농장에서 사용한 사료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했던 양양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으로서 사료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경기 남부 지역의 전파 요인

경기 남부지역의 구제역 전파는 원주와 생활권이 같은 여주·이천지역에서 먼저 확인되었는데, 강원도 소재 사료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과 배달자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특히 이천, 여주, 안성 지역의 경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소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구제역 발생농가가 증가하면서 감염축 매물처리의 지연, 이동통제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주변지역으로의 바이러스 전파가 더욱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6> 강원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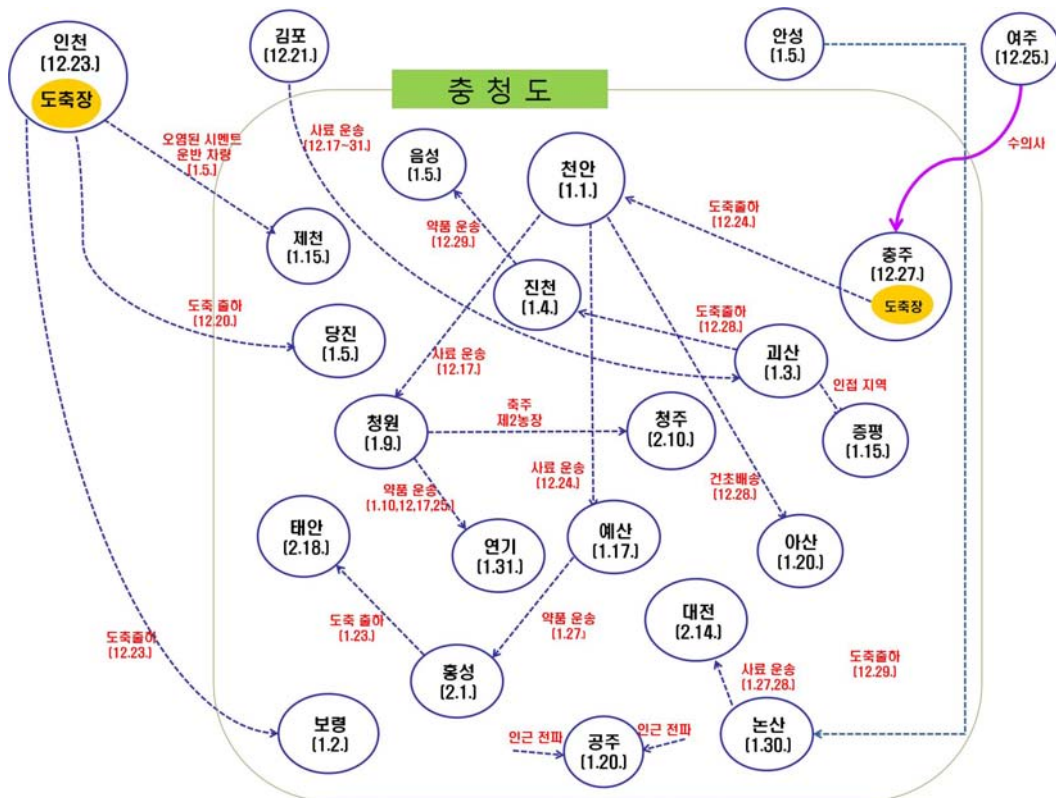
**(5) 충청 지역의 전파 요인**

충청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과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축산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충청 지역의 최초 발생은 여주·이천과 인접한 충주의 한 우농장에서 확인되었고, 동 발생지역은 여주와 이천이 생활권이어서 여주 등에서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 지역 내에서의 구제역 전파는 사료차량, 정액·동물약품 배송차량, 가축 운반차량, 오염지역 방문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료차량에 의한 전파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전파요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구제역이 확인된 보령의 돼지농장에서 이용한 도축장은 비슷한 시기에

인천, 파주, 김포 등의 구제역 양성농장들도 같은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했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림 2-7> 충청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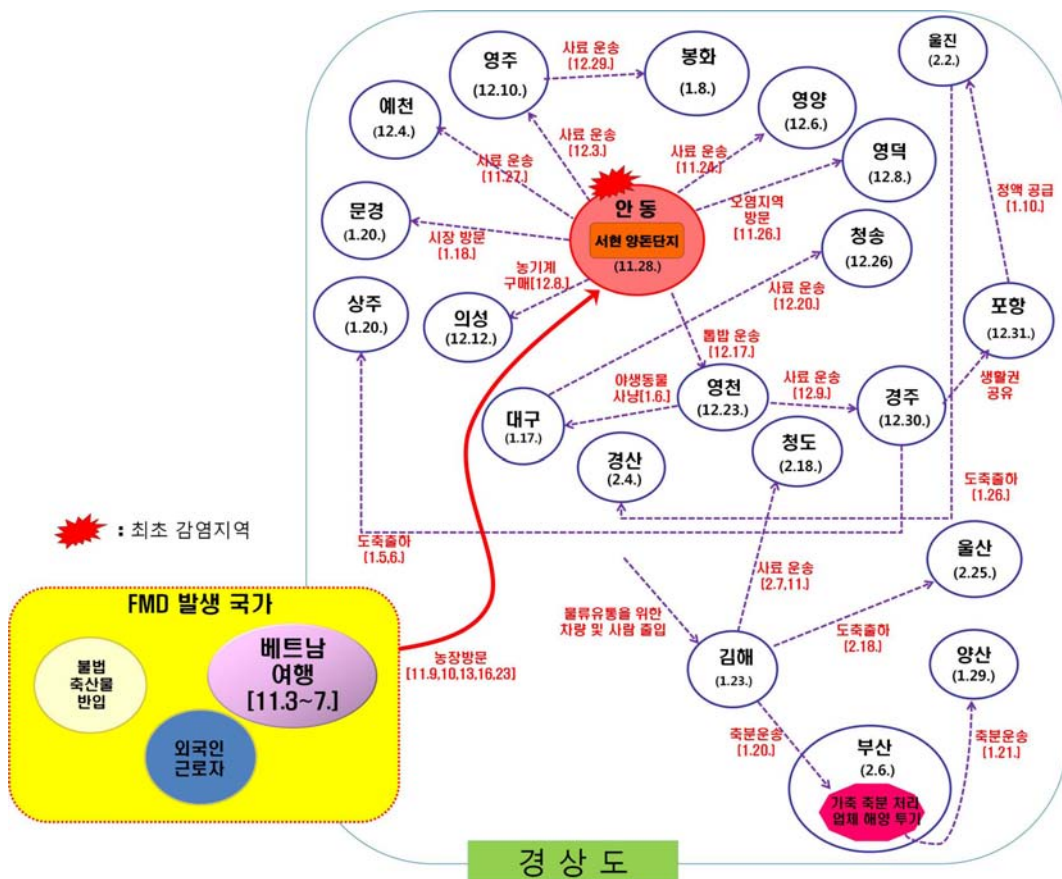


### (6) 경남 지역의 전파 요인

경남 지역은 경북 지역에서 사람 또는 차량 등의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1월 23일 김해에서의 최초 발생 이후 2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최초 발생된 김해 소재의 농장 주변에는 양돈 농가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농장 주변 도로를 따라 소규모의 공장 및 기업체들이 많이 분포하였다. 이러한 기업체들은 경북 등 기존의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이 많아 이들로 인해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해, 양산, 부산 등 경남 지역의 주된 전파 원인은 부산에 소재한 축분처리업체와 축분 수거차량이 여러 농장을 출입하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톱밥·사료 배송차량 및 운전기사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

<그림 2-8> 경상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경로 추정



(7) 기타 지역(대구, 부산, 대전, 울산)의 전파 요인

대구 지역에서는 2011년 1월 17일 북구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며, 발생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사료공장에 축주가 방문하여 오염 또는 농장

인근에 야생동물 사냥을 위해 출입한 포수들에 의해 유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지역의 구제역 발생은 2011년 2월 6일 사하구에 있는 한 돼지농가에서 확인되었으며, 김해의 최초 발생농장을 방문한 출하차량과 운전기사가 같은 날 부산 발생농장을 방문하여 출하함으로써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지역의 구제역 발생은 2011년 2월 14일 한 돼지농가에서 확인되었으며, 논산 지역의 구제역 양성농장을 거친 사료배송차량이 동 발생농장에 배송함으로써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천안 지역의 발생농장과 동일한 도축장으로 출하함으로써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울산 지역의 구제역 발생은 2011년 2월 25일 울주군의 돼지농가에서 확인되었으며, 타 지역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동일 도축장에 출하함으로써 교차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도 하지만, 정액 배송자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 정리>****구제역 역학조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유한상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의 역학적 대응을 바탕으로 볼 때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학조사시 중앙 역학조사반과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할과 임무가 구분되어 있으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역학조사 없이 검역검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방역조치를 취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역학조사 담당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역학조사를 중앙 역학조사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사태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전체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수행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발생농가에 대하여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에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소모 없이 전파원인 규명에 필요한 중요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일지역 내 최초 발생농장 등 역학적 중요농장 이외 타농가는 전파 양상, 발생 양상 및 대처방안 등이 유사하고, 지역적으로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불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역학조사는 대부분의 내용이 축주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가축 출하내역, 농장 방문내역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병인체의 전파를 예측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역학조사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앙 역학조사반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평소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하여 농가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이동 및 분뇨처리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파악으로, 이동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중앙 역학조사반은 최초발생 등 역학적으로 중요 농장, 2개 시·도

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종축장 (종돈 등)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

둘째, 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시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와 관련된 역학적 중요농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장출입, 가축이동 및 출하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농가정보등록 전산시스템을 역학조사에 활용하거나, 농장을 자주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용하여 이들 차량 및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병원체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와 이러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역학조사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효율적으로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쟁점 정리>****구제역 확산의 효과적 차단 방법  
- 이동제한 지역의 영업제한 강화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김유용

가축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자는 지역별·농장별 방역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장 유지에 필수적인 사료차량들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공급받을 때에 농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료공장에서 공급을 받는다.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원료사료를 농장에서 준비하고 필요한 첨가제들만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차량의 출입을 가능한 줄이거나 억제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일부 사료회사들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하여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의 사료공급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사료를 서로 교차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처음 시도되었다. 구제역 사태가 종결된 후에는 사료회사들의 생존을 위해 이 같은 전략적인 제휴와 마케팅 방법들의 도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 권역별 가축의 사육규모와 도축장의 분포 및 도축능력을 살펴볼 때 현재로는 출하된 가축이 권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도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사육규모가 가장 큰 경상북도는 도축장 시설규모는 오히려 경기, 경남이 더 많아서 도축되는 소의 절반은 경북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되어 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육규모가 가장 큰 충남은 도축장이 매우 부족하여 도축되는 돼지의 약 60%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되어 도축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와 충북이 도축장시설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방역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생축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축되는 것보다는 가축들은 사육지역에서 도축되어 육제품의 형태로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것이다. 권역별 가축사육규모에 비례하여 도축장의 도축능력이 해당지역에 갖추어져야만 타 지역으로 이동되어 도축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언급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위탁사육의 병폐이다. 일부 양돈장과 축산기업들은 모돈농장을 위주로 사육하면서 생산된 자

돈들은 일반농장에서 위탁사육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의 발생시 항상 지적되는 문제가 하나의 위탁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자돈을 공급하는 모돈농장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있는 모든 위탁농장들에서 비슷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의 발생시 많은 농장들에게 감염되어 대량 폐사는 물론, 생산성 저하 및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현재 양돈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EU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생산성의 지표인 MSY가 60% 밖에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위탁농장에서의 관리부실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가들이 사육규모를 급격히 늘리는데 사용하는 정책자금의 지원도 매우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육규모의 증설에 따른 농장의 부실화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농장이 부실화되면 한 농장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질병의 발생과 전파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농장이 전업화 규모화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농장들이 스스로 가축사육에 필요한 인공수정, 임신진단, 주사 및 백신접종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업화, 기업화가 되면서 오히려 가축사육에 꼭 필요한 작업들을 외부 기술자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특이한 모습이 생겨났다. 따라서 각 농장별로 많은 축산전문가들이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사육구조를 갖게 되었고, 이들이 농장을 방문할 때 차단방역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질병의 차단에는 무방비상태로 놓여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었다.

이번을 계기로 농장주 및 종업원 뿐만 아니라 축산전문가들인 컨설턴트, 수의사, 사료회사직원, 가축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들도 철저한 방역조치 없이 농장을 방문하는 관행은 버려야 한다. 특히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전신샤워를 통해 외부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농장의 질병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각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모든 축산인들이 차단방역을 철저히 지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재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쟁점 정리>****구제역 확산의 효과적 차단 방법  
- 소독을 통한 효과 거양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박봉균

구제역은 구제역 바이러스, 우제류 동물(숙주), 환경의 3요소가 갖추어 졌을 때 발생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국으로부터 생축 및 축산물, 그 외 축산관련 제품의 수입제한, 국경검역 강화 등의 방법으로 병원체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교역의 개방화, 구제역 상재국과의 교역 증가 및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빈번한 발생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의 구제역 상재국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에 더욱 발생 위험이 높아져 왔다.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우제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소독, 차단방역 및 살처분의 방법이 우선되어 왔으나 2010년 12월말부터는 축산기반의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동물체내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백신접종과는 달리, 소독이란 차단방역의 일종으로 화학제를 이용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우제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오염된 환경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 때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독온도의 준수: 모든 소독제는 18~43℃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소독액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 중탕용 열선(일명 돼지꼬리), 가스순간온수기, 보온 등과 같은 설비를 소독조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절한 소독제 선택: 소독제는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원충, 곰팡이)에 따라 소독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초(4% acetic acid)는 구제역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좋지만, 4급 암모늄, 페놀, 요오드, 알코올 등은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가 거의 없으니, 다른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성제제들과 알칼리성제제들은 1차적으로 구제역바이러스 소독제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소독제 선택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효과가 있으면서, 피부와 옷의 손상, 독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이상이 없는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정량을 희석하여 즉시 사용: 소독제를 정해진 희석량에 따라 물에 섞은 후에는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소독제 희석비율은 소독제 표면에 적혀 있으며, 그 보다 과용량을 사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필요한 양을 희석한 후 전체를 다 사용하고, 다음 소독시에 역시 새로운 물에 소독제를 타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증가된다.

(4) 깨끗이 청소(유기물 제거) 후 사용: 분뇨 같은 유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소독하면 소독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물질, 먼지, 분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 효과적인 소독 실시: 소독대상(축사내부, 축사외부, 차량, 물품 등)을 충분한 시간동안 소독해야 한다. 20~30분 이상 소독할 것을 권장하며, 작업용 장화를 소독할 때에도 발판소독조에 흠뻑 담구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독제는 같은 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제제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러 소독제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나 소독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금물이다. 소독 후 일정 기간 건조시켜야 미생물 살멸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6) 사용설명서 준수: 각 소독제 마다 사용설명서를 준수해야 한다. 소독제에 따라 사용자나 동물에 유해하고, 옷, 신발, 고무제품 등을 손상시키며, 철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수 사례>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 전라북도**

-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장(강OO)은 방역대책 상황실장은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유관기관·협회·행정이 일체되어 도내 발생에 준하는 방역 조치로 청정지역을 끝까지 사수함.
  - ‘10.11.29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 즉시 도내 유입 고속도로 IC 및 주요국 지방도에 방역초소 설치 및 가축시장 폐쇄 등 발생에 준하는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 도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
  - ※ 특히 충남 인접지역인 군산, 익산, 완주로 유입되는 주요도로 5곳에 5m 간격으로 소독초소를 이중으로 설치 운영
  - ‘10.12.30일 14개 시·군에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1,050개반을 구성하여 소독활동이 어려운 영세농가의 소독을 주 2회 이상 추진
  - ‘11.1.2일 구제역이 충·남북까지 확산되자 통제초소의 소독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타도에서 유입되는 생축운송, 사료차량 등은 통제초소에서 발급한 소독확인증이 없을 경우 도축 및 사료 상·하차를 금지토록 하여 외부로부터 유입 차단을 강화
  - 도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타도 반출시 도경계에 환적장을 설치 운영하여 구제역 확산을 억제
- 특히 완주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한우협회 완주군지부가 협력하여 구제역 확산을 억제하였음.
  - ‘10.12.8일 경북 구제역이 경기도로 확산되자 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소 밀집사육 지역인 3개면(고산, 비봉, 화산 818호 23,606두로 완주군의 79%사육)에 대한 자율방역을 결의
  - 한우협회 완주군지부 회원농가는 자율방역자조금(2천원/두)을 모금하여 3개 광역방제단을 편성하여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3개면 한우 818농가에 대하여 5회/매주 이상 자율적으로 소독 실시
  -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충남북까지 발생한 구제역 유입 차단

**<참고>****구제역 방역기관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02 FAX	500-2072/2084 504-0908	전국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031 FAX	467-1940/2 467-4374/1729	전국

 시·도

시도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특별시	생활경제담당관	02-6321-4069	3737-9399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3231	888-3209
대구광역시	농식품과	053-803-3461	803-3439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	032-440-4392	427-0700
광주광역시	농산유통과	062-613-3983	613-3969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600-5445	600-227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3	229-2919
경기도	축산과	031-249-2652	249-2658
강원도	축산과	033-249-2728	249-4042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943	220-3919
충청남도	축산과	042-251-2871	251-2729
전라북도	축산경영과	063-280-2653	280-2729
전라남도	축정과	061-286-6552	286-4787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2683	950-2659, 2689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695	211-3659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064-710-2152	710-2129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DDD	번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 과천시 용머리2길 18	02 FAX	570-3435 570-3206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051 FAX	331-5012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7	053 FAX	760-1300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032 FAX	440-5490 576-7785	인천



## &lt;참고&gt;

기관명	주소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 북구 본촌동 379-2	062 FAX	571-0497 571-0496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042 FAX	870-3480 870-348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052 FAX	229-5240/ 1229-5249	울산광역시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031 FAX 8008-6270 8008-6272 8008-6247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 이천시 진리동 371-4	031 FAX 8008-6360 8008-6365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 안성시 풍도면 만정리 274-10	031 FAX 8008-6340 8008-6359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제2기축위생연구소본소	경기 양주시 고읍동 340-1	031 FAX 8008-6430 8008-6432 820-020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과주
	제2기축위생연구소북부지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7-1	031 FAX 8008-6470 8008-6471 593-4012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강원 춘천시 신북로 196	033 FAX 248-6622/ 5248-6617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장현동 74-7	033 FAX 610-8702/ 5610-8722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반곡동 1098-2	033 FAX 761-1880/1 -18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제방리 15-8	033 FAX 339-8855 333-8866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사동 649-3	033 FAX 636-8581 636-8582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20	043 FAX 220-5571/2 220-5589	청주, 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043 FAX 220-5620/1 220-5629	충주, 음성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043 FAX 220-5641 220-564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043 FAX 220-5631 220-5639	보은, 옥천, 영동
충청남도	본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041 FAX 631-3091/4 631-3092/3	보령, 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041 FAX 548-2950 548-2954	천안, 아산

<참고>

기관명	주소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가축위생연구소 충청남도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90-10	041 FAX	881-0127 881-0129	공주, 금산, 연기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041 FAX	352-4056 357-5850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041 FAX	833-8611 830-2784	논산, 부여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041 FAX	675-4349 675-4348	태안, 서천
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	본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063 FAX	220-6530 220-6511	전주, 완주, 김제, 부안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063 FAX	290-6571 290-6598	남원, 임실, 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063 FAX	290-6542 290-6568	정읍, 고창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063 FAX	290-6512 290-6538	군산, 익산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37	063 FAX	352-9876 352-9877	무주, 진안, 장수
축산기술연구소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본소	광주 광산구 북룡동 89-5	062 FAX	941-2577/8 -3667	목포, 나주, 담양, 회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061 FAX	755-6396 751-1045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곡성, 고흥
	남부지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061 FAX	432-8938 434-8171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가축위생시험소 경상북도	본 소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053 FAX	326-0012/3 -0014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2	054 FAX	850-3285 -328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054 FAX	748-6624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답동 476-1	054 FAX	533-1752 532-4966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축산진흥연구소 경상남도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055 FAX	750-6341/3 750-633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함양, 남해
	중부지소	경남 장유면 부곡리 17-8	055 FAX	211-5770/3 211-5779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07-1	055 FAX	931-3245 930-3865	합천, 거창, 의령, 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055 FAX	646-4395 640-4987	통영, 거제, 고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초전읍 와흘리 782	064 FAX	754-5441 710-4139	제주	

## 제 3 장

#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

### 1. 방역 추진체계

#### 1.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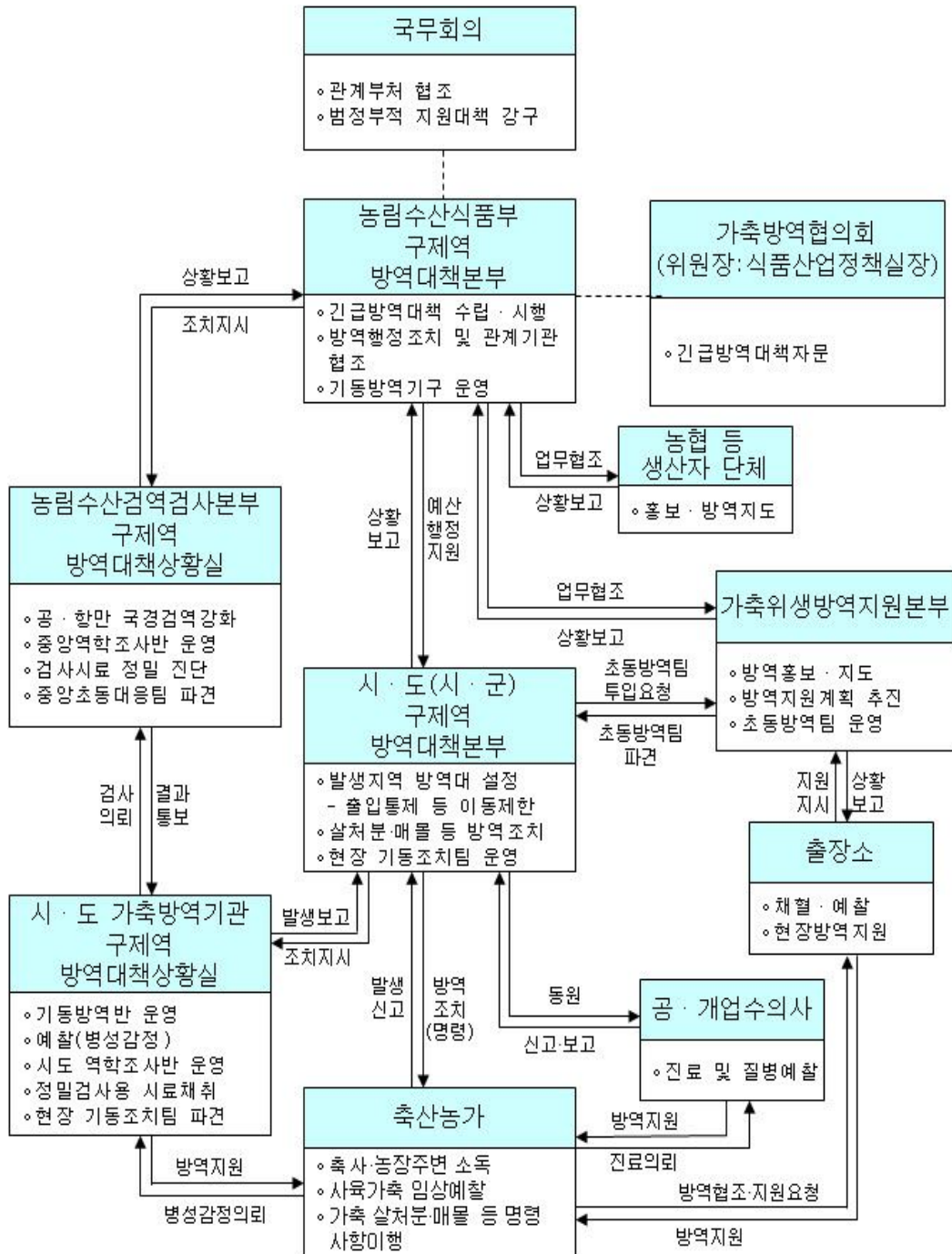
##### 1.1.1. 중앙정부 대책기구 활동

국내의 구제역 방역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축산농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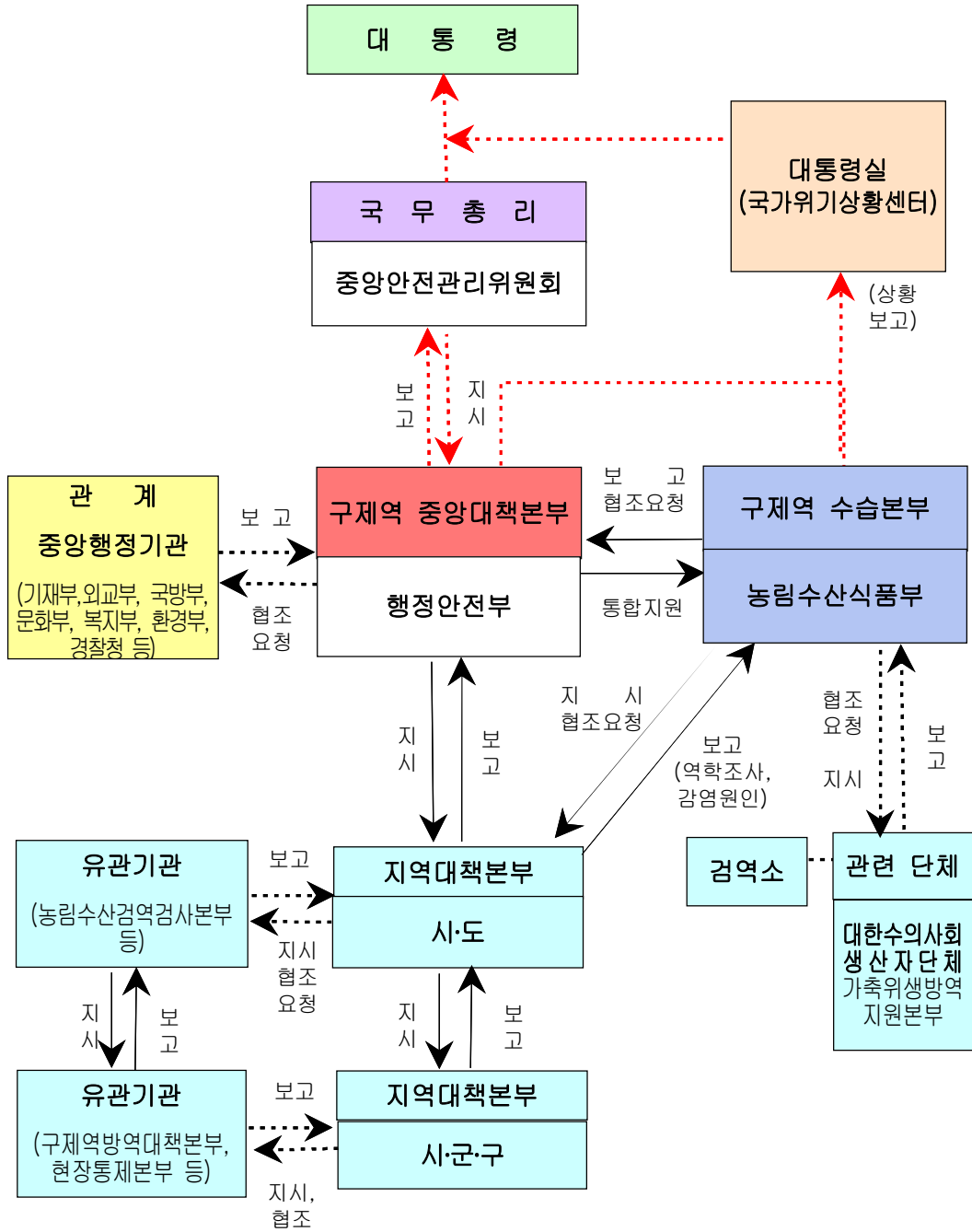
각 기관간의 업무 관련은 <그림 3-1>구제역 방역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축산농가에서 지자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 구제역 발생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계통을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되어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그림 3-2>정부 구제역 방역 및 보고 체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재난안전관리 및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구제역 방역 체계도



<그림 3-2> 정부 구제역 방역 및 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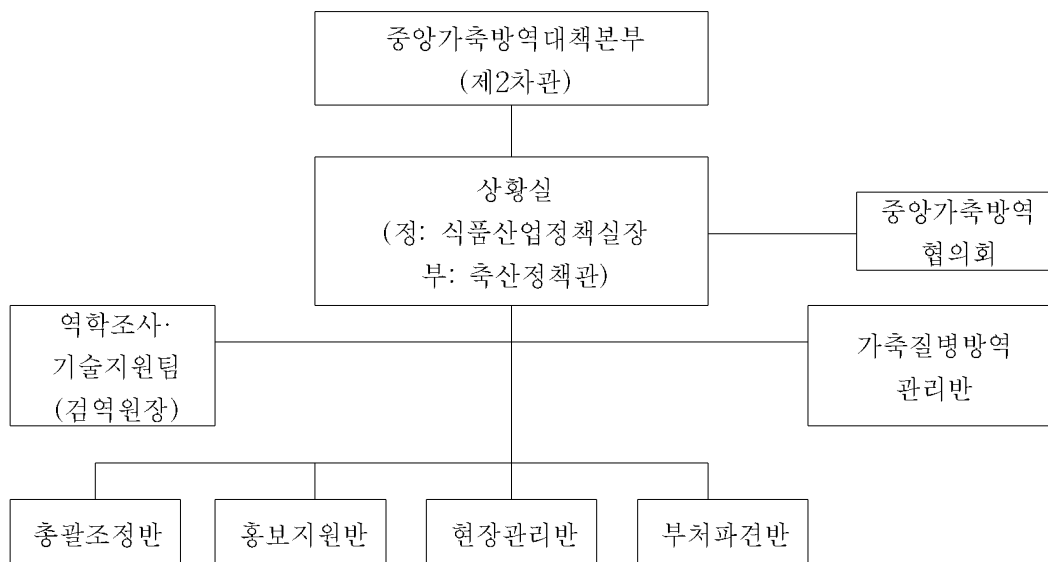


### 가. 농식품부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운영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자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의 임무는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긴급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 및 전국 각 시·도의 가축 방역기관의 방역활동을 지휘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부장(제2차관) 밑에 상황실을 두고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체계 하에서 11월 29일 발생한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12월 14일에는 경기도로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종래 제2차관이 관장하던 대책본부를 장관이 직접 관장하여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림 3-3>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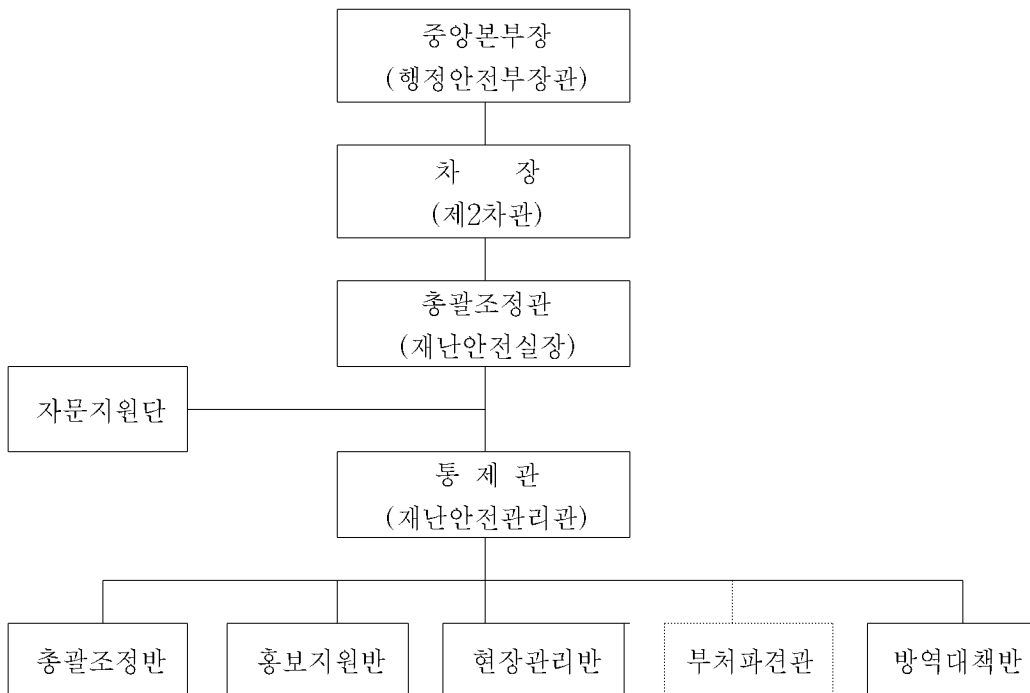


## 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구제역 발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2010년 12월 29일에는 5개 시·도 29개 시·군에까지 확산되어 발생건수가 총 60건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부에만 설치되어 있던 구제역 방역대책기구를 범정부 종합대응체제로 전환시키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그림 3-4>. 동시에 시·도(시·군·구 포함)에도 지역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국가 기구로, 재난 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림 3-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3개 실무반과 방역대책반(농식품부), 부처파견반 등 5개 반으로 편성하여 31명의 인력을 지원 받

아 운영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2011년 3월 31일에 기구가 해산될 때까지 구제역에 대한 총괄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방역활동 총괄지원(전체회의 11회, 24시간 비상근무, 일일 상황회의, 대책회의): 설 연휴 방역 종합대

<사진 3-1> 구제역 담화문 발표(10.12.29)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책 추진, 백신 수급상황 관리, 백신접종 신속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 방역활동(인력, 장비, 예산) 지원, ③ 가축 매몰지 정비·보완과 관리 지원조직 운영, ④ 친환경 폐사축 처리 확대, ⑤ 방역 홍보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정부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운용함으로써 구제역 통합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였고, ② 재난시 요구되는 홍보 및 언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전 양축농가와 국민이 방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방역에 협력토록 하였고, ③ 적기에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여 방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④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다. 농식품부 구제역중앙수습본부 및 상황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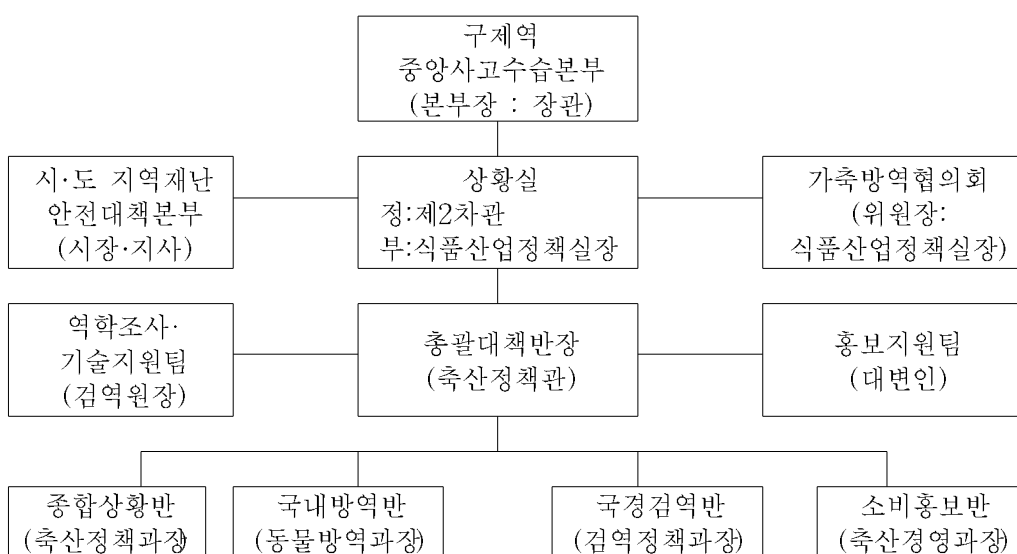
구제역 확산에 따라 201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농식품부는 기존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구제역중앙수습본부<그림 3-5>로 전환하여 구제역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과 같은 방역 업무에만 주력하게 되었다.

또한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존에 편성하여 운영중이던 “구제역·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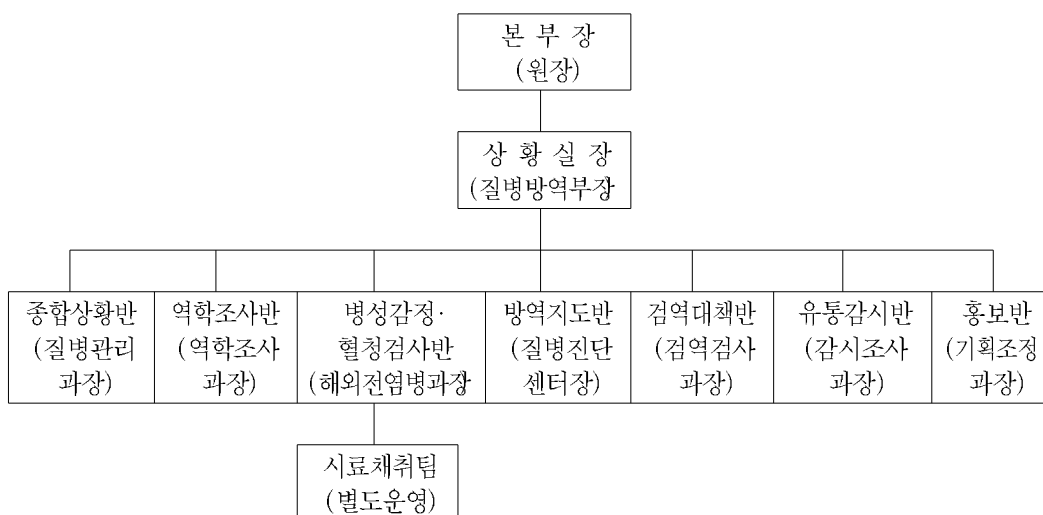


방역대책상황실”(‘10.11.1)을 비상방역대책상황실로 전환(‘10.11.29)하여 신속한 신고 접수, 검사 및 방역 조치를 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하였다.

<그림 3-5> 농식품부 구제역중앙수습본부 조직도



<그림 3-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상황실



구제역상황실은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병성감정·혈청검사반, 방역지도반, 검역대책반, 유통감시반, 홍보반 등 7개반을 편성하였으며, 대책반별로 주요 임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 시에 대비하여 미리 각반의 인력 조정계획을 세워 신속한 검사와 방역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상황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동시에 방역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체제로 약 7개월간('10.11.29~'11.7.3) 운영하였다.

주요 방역대책의 추진 내역은 ① 중앙방역기술지원팀(역학조사팀 포함)을 구성하여 현지 방역 기술지도·점검(전국 27개 지역에 연인원 2,669명 파견), ② 전국 발생지역 신고축 및 의심축, 예찰용 역학조사 시료, 매몰지 검사시료의 정밀검사, ③ 구제역 예방백신의 수급 및 접종 기술지도, ④ 정부 중앙방역부처의 방역정책 결정을 위한 기술자문, ⑤ 국경검역 강화, ⑥ 구제역에 대한 대국민, 양축농가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 라. 국무회의 개최 및 대통령 지시

2010년 11월 30일 구제역 발생 다음 날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총리실과 외교부 등 관계 10개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12월 5일 이후부터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12월 7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관계부처에 인력·예산·홍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12월 15일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주재 하에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1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경기지역 방역활동을 현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12월 17일 농식품부 구제역중앙대책본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제역 발생상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에게는 농식품부에서 12월 5일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대통령이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구제역 발생 상

황과 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2011년 1월 6일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구제역 확산 상황과 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백신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1월 16일에 대통령은 강원도 횡성군 구제역 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1월 24일에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구제역 백신 자체 생산을 검토하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월 25일에는 가축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축산업 선진화 대책 수립시 외부인사 및 다른 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 마. 관계부처 협조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을 총괄 지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발생 당일의 안동시 방문을 비롯하여 수차례(‘10.12.2, 12.22, 12.24, 12.31, ‘11.1.4, 1.5, 1.16, 1.19, 1.23, 2.1, 2.11) 발생지역 현지와 지자체의 방역상황실을 방문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

<사진 3-2> 농식품부 장관 안동시 구제역 현장점검(‘10.11.29)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방역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구제역이 진정된 후에도 경찰청(‘11.3.8), 육군본부(‘11.3.9), 해병대(‘11.3.18) 등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기관을 방문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농식품부 차관도 발생현장 방문 점검 및 순직 공무원 조문, 현장소독 참여 등을 위하여 현지를 방문(‘10.12.29, ‘11.4.26, 5.13, 6.10)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제역 확산 및 차단대책을 총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정부적인 합동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방역에 진력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에 대책본부를 해체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국의 구제역 현장을 방문하여 각 시·도 지역재난대책본부의 활동을 격려 지원하였으며,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후에도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의 정부부처로 환경부, 국방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지원부서를 구성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방역에 일조하였다.

이와 같이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중앙부서에서는 전 관련 공무원이,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전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중지하고 구제역 방역에 주야 구분 없이 전념하였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 수는 488,000여명, 군인 338,000여명, 경찰 146,000여명, 소방공무원 306,000여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공무원과 군인 외에 민간인도 692,000여명의 인력이 구제역 방역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살처분·매몰·소독 청소·예방 접종 등 방역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18,000여대에 달하였다.

### 1.1.2.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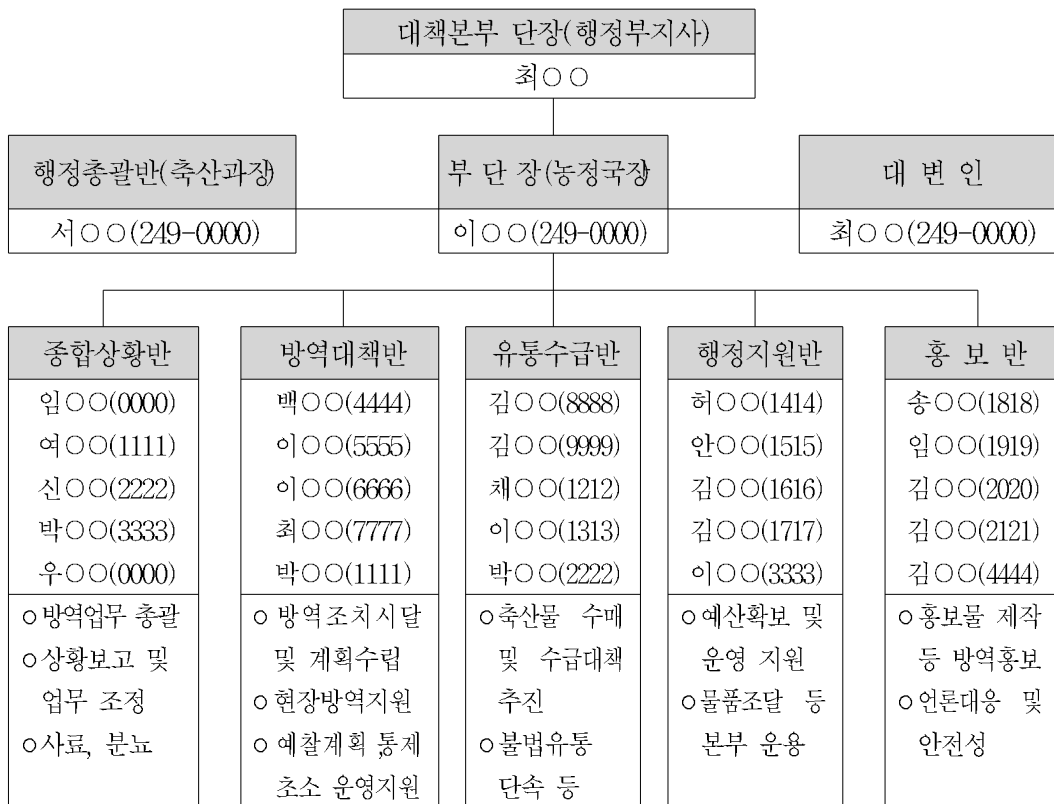
201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였다. 특히 대책본부에는 지역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즉, 본부 회의는 지역내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반은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였으며, 시·도 재난대책본부에서는 현장상황지원관을 별도로 임명하여 시·군·구 현장에 대한 점검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괄조정관 또는 통제관은 반 편성 및 인원을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조직도는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방역대책본부장을 하여 축산과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세부 조직으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을 편성하였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농식품부, 검역원, 연구소, 시군 환경부서 등과 비상연락 및 보고체제를 유지하며, 축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시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즉, 초동방역팀을 가동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로 양성 판정시 전파 확산 방지를 통하여 조기 근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역 추진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 즉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림 3-7>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조직도



<표 3-1>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구성원과 주요 임무

구분	구성	주요 임무
상황실장	○ 농정국장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총괄반장	○ 축산과장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업무 총괄
방역대책반 (3명)	○ 반장 : 1명 - 축산과 사무관급 1명 ○ 반원 : 2명 - 축산과 6급이하 1명 - 소방재난본부 1명	○ 방역조치 시달 및 계획 수립 ○ 현장 방역 지원 ○ 예찰계획, 통제초소 운영지원 ○ 소독지원
유통수급반 (2명)	○ 반장 : 1명 - 농정국 사무관급 1명 ○ 반원 : 1명 - 농정국 6급이하 1명	○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가축 수매조치 ○ 출하가축 도축장 지정 ○ 역학관련 축산물 폐기 조치 ○ 도축장 지도·감독 ○ 불법 유통 단속
행정지원반 (6명)	○ 반장 : 1명 - 자치행정국 사무관급 1명 ○ 반원 : 5명 - 예산담당관실 6급이하 1명 - 자치행정국 6급이하 3명 - 농정국 6급이하 1명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및 보고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파악 ○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 ○ 공동방제단 구성 및 농가소독 실시현황 파악 ○ 광역방제차량 위험·경계지역 소독 현황 파악 ○ 이동 통제초소 설치 현황 파악 ○ 예방접종, 살처분 진행현황 파악 ○ 사고 및 현지매몰 현황 파악 ○ 잔존물 처리현황, 구제역 역학관련 농가예찰 현황 파악 ○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 추진현황 파악 ○ 예비비 사용승인 등 재원대책 마련
홍보반 (2명)	○ 반장 : 1명 - 대변인실 사무관급 1명 ○ 반원 : 1명 - 대변인실 6급이하 1명	○ 본부장 및 차장 인터뷰 지원 ○ 각종 언론자료 작성·배포 ○ 언론 모니터링(분석·대응) ○ 미담·수범사례 언론보도 ○ 홍보사진 촬영 및 취재 지원 ○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지원
유관기관반 (2명)	○ 3군사령부 : 1명 ○ 경기경찰청 : 1명	○ 유관기관 추진상황 파악·보고 ○ 주민 반발집회 동향 파악 보고 ○ 사재기 및 불법행위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점검 ○ 차량통제 및 질서유지 등

### 1.1.3.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2010년 11월 하순에 구제역이 발생한 당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다음과 같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과 지방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 책무로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②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 대책의 수립 시행, ③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④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⑥ 가축방역 전문 인력 육성, ⑦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제정된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3010-78호, 2010.8.11)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청장)의 방역에 대한 역할 분담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제역 방역의 중앙기관인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지도·점검한다. 예를 들어 구제역에 관한 입법 제안, 방역 규정 제정 등 정책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방역 및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예산 지원도 포함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속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진단시료의 채취, 정밀검사, 발생지역의 역학조사(시·도 가축방역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구제역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지자체의 방역 기술지도 등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현장의 방역업무를 책임진다. 현

장 방역업무란 발생지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매몰 등 사체처리, 방역지역 설정, 예방접종 등의 방역조치를 말하며, 이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 1.2. 방역 관련 제도와 예산

정부가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역조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서 세부지침이 제정 공포되어 실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즉 농식품부 고시로 발령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다. 이들 요령과 지침에는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의 의심축 신고,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청소, 예방접종, 예찰과 진단을 포함한 정밀검사, 수입검역, 축산농가 준수사항, 살처분 가축의 폐기처리 방법, 피해 보상,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대국민 식품위생상의 안전 보호를 비롯하여 구제역 종식 후 가축 재입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역 절차가 상세하게 망라되어 있다.

국내의 가축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주요한 정부기관으로는 농식품부의 축산정책관 소속 동물방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중앙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의 축산담당과, 지자체 소속의 전국 43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지방 방역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의 활동은 민간 가축위생방역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생산자 단체, 대학, 수의학회 등의 실무적 및 학술적인 지원도 받는다.

농식품부 동물방역과는 가축방역정책 수립, 법령 및 제도 운영, 국가 방역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 국가방역업무 관련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식품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내 발생 질병의 예찰·감시업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동물용의약품 등의 인·허가 업무



의 국가검정·수거검사, 동물보호 업무와 검역검사, 축산물 위생 및 수의연구, 기술개발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지도와 현장방역 지원업무,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업무도 수행한다. 이 기관은 본부에 위생검역부, 질병방역부 및 동물질병 연구부 등 3개 부서에 19개의 담당과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전지역에 6개 지원, 12개의 출장소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시·도)는 국가방역정책의 집행과 관할구역 내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은 관할지역 내 가축질병 예찰·검진·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등 검사업무와 축산물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 산하 시·군·구청은 관할지역 내에서 방역지대 설정, 이동제한, 살처분·매몰, 백신접종, 기타 차단 방역 등 가장 힘든 현장방역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농식품부 외에 구제역 발생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관리를 하고 질병박멸에 적극 참여하는 주요 정부조직으로서는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위시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농촌진흥청 등 거의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산 조치로는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방역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및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긴급 방역비,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등이 있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계에 지급되는 피해 보상금,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등도 중요한 예산 조치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구제역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지출되는 지방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번처럼 구제역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국회에 방역예비비를 청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인터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터뷰 (월간 신동아 2011년 3월호, 발췌)**

▼ 이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농가에 한 말씀 하신다면….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방역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출하가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은 구제역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축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인도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협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 우리 정부는 백신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나요?

“백신은 구제역 방역에 비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도 백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백신을 선택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에요. 이번 백신정책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에 대한 신중론, 부정적 견해가 많았어요.”

▼ 농림수산식품부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12월 들어선 내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들을 설득해 백신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 백신 제조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내 지시로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회사에 백신 제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30만두 접종 분량밖에 없었어요. 해외주재 31개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백방으로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구했어요. 이후 주당 200만~300만두 접종 분량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하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지만 국민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과거 2002년, 2008년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매몰지를 전부 조사 했는데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이번에도 안 생기도록 할 겁니다.”

▼ 규정대로 하지 않고 산 채로, 졸속으로 매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침을 지자체에 전합니다. 지침엔 매몰지 입지선정, 매몰 방법이 적혀 있어요. 지자체가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마취제 약품으로 가사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돼지는 쉽게 주사가 듣지 않고 꿈틀거리고 두수가 많았어요. 신속하게 매몰은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매몰지가 200곳에 달하는 시군도 있어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각이나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 매몰지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예방적 살 처분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그 인근 500m, 3km, 10km 단위로 살 처분합니다. 정답이 있거나 법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인근 500m 정도는 살 처분해야 해요. 물품이 자주 이동하고 쥐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놔두면 확산됩니다. 특히 돼지는 소의 1000배, 하루 1억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내뿜거든요. 이번 구제역에선 일반적으로는 500m 단위로 했고 위험성이 높은 곳은 3km로 했어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선 ‘한국의 살 처분을 배우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배우라’고 합니다. 살 처분이 과한지 적정한지 평가하는 건 어려운 문제죠. 결과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도 발생지인 경북 안동에서 잡혔다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동에서 가축분뇨차에 실려 경기 파주로 날아갔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게 결정타였습시다.”

▼ 구제역은 언제쯤 사라질 것 같습니까?  
 “말하기가 겁나네요. 소는 안정됐다고 판단합니다. 돼지는 1차 집중 3주차에 80% 정도 항체를 형성해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일원에서 자꾸 돼지가 오염돼 긴장됩니다. 2월 한 달은 조심스럽습시다. 3월 초부터 전체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쟁점 정리>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적절성과 한계

도드람양돈농협 정현규 박사

처음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는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길고 상처가 큰 구제역과의 싸움이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예상을 벗어나 커졌는지를 돌아보면서 구제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를 되돌아 본다.

#### (1) 매뉴얼을 무시한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매뉴얼을 무시하고 당장 편리한대로 대처한 것이 큰 화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생매장과 관련한 것이다. 분명히 살처분후 매몰인데 현장에서는 작업속도, 힘들다는 이유로 생매장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몰해도 된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없는데도 현장의 담당자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매뉴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2) 계절을 고려한 내용이 있어야

겨울철에는 소독기, 소독약이 얼거나 동파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고, 장마철에는 빗물로 인해서 소독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매몰지선정과 매몰작업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경험에서 알게 되었다. 겨울철 소독법, 방역대책 등 최악의 환경 조건에 관한 부분이 매뉴얼에 명시되어야 한다.

#### (3) 도로 등 차단방역에 관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야

겨울철에 소독기가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선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문제이다. 발생농장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길, 입구도로 등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같은 인원, 비용을 들여서 좀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방역대 설정과 관련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 (4) 오염에 노출된 인원의 방역작업 관련 내용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진단, 매몰, 백신접종, 방역작업에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구제역과 직간접 접촉후에 전파방지를 위해서 취해야할 행동요령이 구체화되어있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오염가축과 직간접 접촉 후에도 특별한

방역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됨으로 새로운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 (5) 방역관 문제

신고된 농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하고, 방역작업을 주도할 방역관의 행동지침이 부족하였다. 신고 후에 시간대별로 방역관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방역관이 부족할 때는 개업수의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동원시점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기준을 확실하게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6) 발생농장에서 매몰완료 전후의 방역 작업

의심 신고 후에 매몰까지 농장 입구, 사료차 등 출입자, 농장내부 근무자 등 다양한 사람,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기간 등이 현실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있었다. 매몰이 이루어지기까지 농장에는 사료차, 주유차, 각종 배달차량 등 다양한 외부인원이 출입하게 되는데 이들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

#### (7) 살처분 방법의 다양한 제시 필요

발생가축, 매몰대상가축을 매몰하기위한 살처분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방법까지 매뉴얼화되어야 한다. 이동식 전살기, 가스 사용, 기타 다른 방법 등 현재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별·상황별로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8) 역학관련 차량, 관련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관련

역학적으로 발생농장과 관련한 차량이 직접 축산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다면 제대로 지켜지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구체적으로 이동제한조치 후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관리가 필요한데 단순히 전화나 공문만 보내면 끝이다. 이동제한조치의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 (9)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구제역 발생시 담당공무원조차 정부의 표준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각종 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제역이 무슨 질병인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역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허점이 생기고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매뉴얼에 담당자나 발생시 참여자는 평상시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방역에 참여할 사람은 동원되면 즉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누가 교육을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구제역 진단 및 예찰

### 2.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구제역 의심축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가축의 축주, 이 동물을 진단 또는 간단한 수의사, 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관할당국(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 즉시 신고하도록 관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조)에 정해져 있다. 이번 2010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구제역은 대부분 축주가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며, 그 중 일부는 공개업 진료수의사나 방역당국이 예찰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신고된 의심축에 대하여 증상별로 분류해 보면, 소에서는 다량의 거품 섞인 침을 흘리거나 입 또는 발굽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발을 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돼지에서는 발굽의 염증과 파행 또는 일어설 수 없거나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자돈 특히 포유자돈이 돌연히 폐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축들은 식욕 폐절, 원기 소실, 고열, 젖분비 중지 등 전신증상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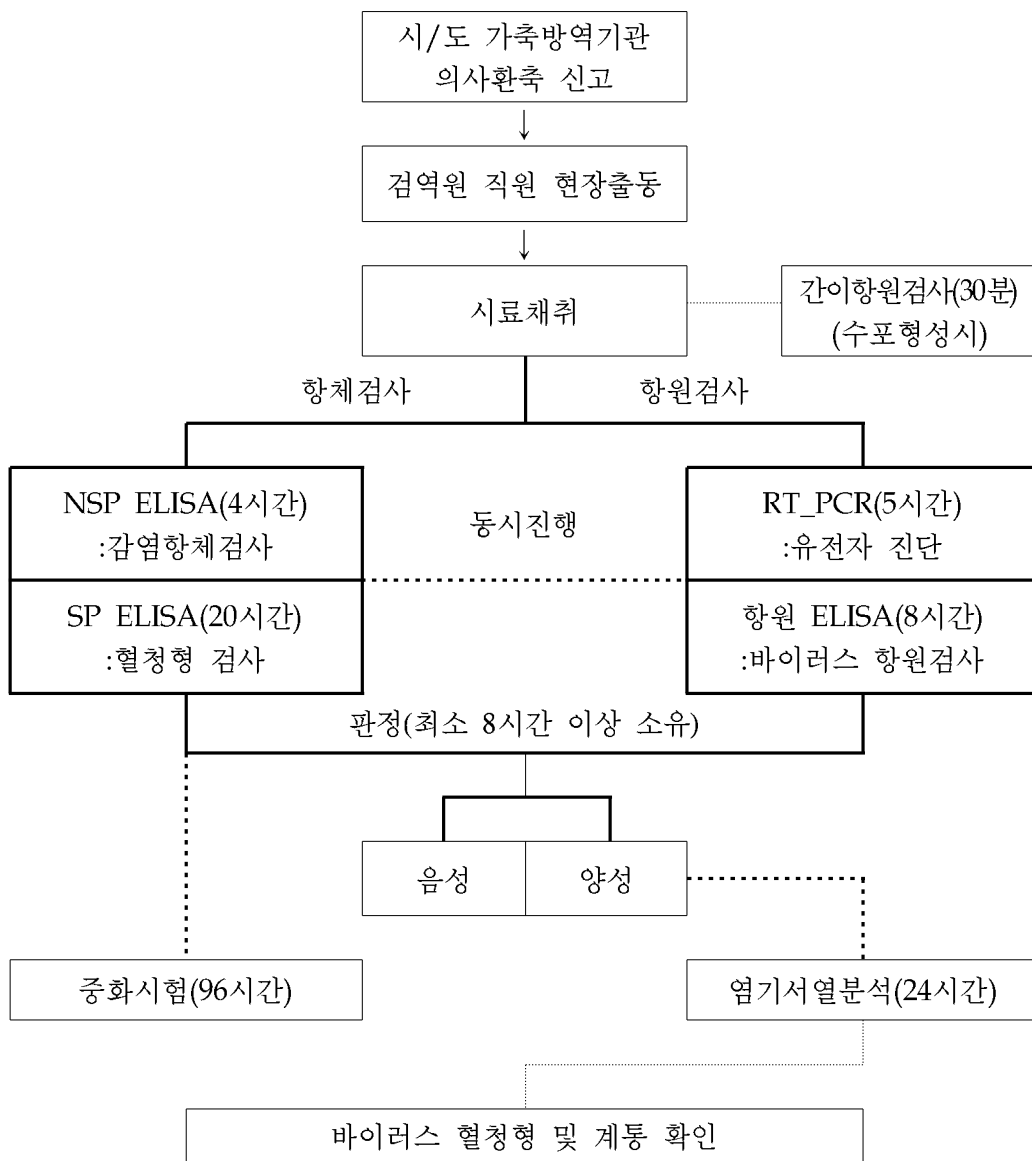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를 받으면 제일 먼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발생현장에 보내 검사를 하게 하는데, 이 때 가축방역관은 현장상황을 조사하고 임상검사를 거쳐 실험실 정밀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료를 채취한다.

임상검사는 의심축에 대하여 주로 외부에서 관찰을 하거나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여 행하는데, 이 방법은 현장에서 할 수 있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반면 검사자가 동물의 수포성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실제 가축을 다두 사육하는 현장에는 연중 다종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며, 이들 질병 중에는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 설사병, 소우두종 및 소 기관염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구제역과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질병이 많아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어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구제역 정밀검사는 검역원 특수 차폐검사실에서 하는데 시료채취로부터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구제역 의사환축의 검사과정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진염병 진단 매뉴얼

## 2.2. 구제역 정밀진단 결과

다음은 이번 구제역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진단과에서 제공한 검사결과 기술내용이다.

2010년 11월 29일 병성감정 의뢰된 경북 안동의 김00 농가와 권00 농가의 돼지에서 첫 번째로 양성 결과가 확인되었다. 타액, 수포 및 가피에서 유전자 검사(RT-PCR)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밴드를 확인하였으며, 혈청형 감별을 위한 RT-PCR 에서도 역시 혈청형 O형으로 확인되는 밴드를 확인하였다. 수포액을 이용하여 진행된 항원 ELISA에서도 혈청형 O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청 시료에 대한 항체 ELISA에서는 두 양돈농가에서 채혈한 각 10두 분의 혈액 중 각각 2두에서 SP(구조단백질) 항체 ELISA 결과 양성이 확인되었고 NSP(비구조단백질) 항체 ELISA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가검시료 증폭한 구제역바이러스 VP1 부위(639bp)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동남아 및 중국 등에서 최근 유행하는 O형의 바이러스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염기서열 자료를 FAO 및 OIE에서 인증하는 영국에 있는 세계구제역표준연구소(World Reference Laboratory)에 즉시 보내어 보다 폭 넓은 분자역학적 계통수(Phylogenetic tree)를 확보하였고, 계통분석 결과는 국내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발생농장 유래 가검시료를 동물조직 배양세포(염소태아 혀상피세포, ZZR 127 cell)에 접종하여 원인체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

최초 발생건에 대한 구제역 확산에 이어서 수 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의심 신고축 208건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및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등 5,549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표 3-2>. 항원검사로 Real-time RT-PCR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기존 방식의 RT-PCR 및 항원 ELISA법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였고, 항체 검사는 SP(Structural protein, 구조단백질) 항체 ELISA와 NSP (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항체 ELISA를 병행하되 발생 초기에는 SP항체 형성 여부를, 발생 후기에는 NSP항체 형성 여부에 보다 주목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학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되었다.



&lt;표 3-2&gt;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진단결과 종합

시료종류 구 분	발생지역		신고축		역학관련		임상증상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강원	14	126	33	10	5	40	363	54
경기	56	200	23	4	13	56	1,734	255
경남	3	5	3	1	2	23	63	25
경북	183	582	63	22	3	56	420	156
광주						1		
대구			1	1		1	1	2
대전			1	1				
부산			1				1	
울산			1	1			6	1
인천	7	86	3		2	3	12	8
전남				1		12		
전북				1		23		
제주						7		
충남	17	50	16	6	3	37	339	25
충북	16	44	8	7	5	17	315	71
결과별 계	296	1,093	153	55	33	276	3,254	597
종류별 계	1389		208		309		3851	
양성률	21.3%		74.3%		10.7%		84.5%	
합 계	5,757							

주: 농장 기준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백신 접종을 실시한 이후에는 백신축에서도 SP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SP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성적만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축과 실제 감염축 간의 감별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NSP 항체 ELISA를 통해서 구제역 감염축을 백신접종축으로부터 감별하고자 하였으며, 백신접종 대상 축종이었던 소와 돼지에서 백신항체 형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의뢰검사 건수가 7월말 기준 15,059두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2차 백신 접종 이후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와 구제역 양성 개체는 현저하게

줄어 들었고, 정책 변화에 따라 구제역 양성판정 농가에 대해서 기존의 전두수 살처분하는 방식이 아닌 양성개체만 부분적으로 매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부 개체에서 검출되더라도 사육 전두수를 살처분하지 않고 항원양성인 개체만 제거한 뒤, 나머지 개체에 대한 NSP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NSP항체가 형성된 양성개체에 대해서만 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당 축사에 대한 환경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두수의 살처분이 이루어져 매몰지의 수도 많아졌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구제역 위험성 확인을 위해 매몰지 침출수 및 토양에 대한 구제역 정밀검사가 유전자 검사(Real-time RT-PCR)로 이루어졌다. 전국 매몰지 약 10%(460개소)의 일제 점검 이후 지자체 요청에 의해 검사 물량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검사결과 모두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계통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 O형에는 ME-SA(중동-남아시아), EURO-SA(유럽-남미), CATHAY(캐세이), SEA(동남아시아), ISA-1(인도네시아-1), ISA-2(인도네시아-2), EA(동아프리카) 및 WA(서아프리카)로 분류되는 8가지 이상의 지역형이 존재한다. 각 지역형에 속하는 바이러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CATHAY형은 1983년 홍콩, 1995년 필리핀 및 1997년 대만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EURO-SA형은 1967년 영국에서 발생한 O1/BFS 1860/UK주를 포함한다. ME-SA형에는 2000년 및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PanAsia주가 속하며, 이 계통은 2001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확산되는 등 지역적 전파범위가 넓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SEA지역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홍콩에서도 SEA형이 발견되었다.

2010년 4월에 한국과 일본 및 몽골에 발생한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와 2010년 11월 안동에서 최초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O형의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ME-SA형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기원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둔 SEA형으로 확인되었다<표 3-3>.

<표 3-3> 국내 발생 O형 바이러스(2010년 11월 분리)와 동일 계통 바이러스의 비교  
(VP1 부위, 639bp)

국가(차수)	발생 시기	지역 (축종, 바이러스명)	유전자 상이 (차이수/분석염기)	일치율 (%)	지역형	자료 참고
한국 (11월1차)	11.28	경북 안동(돼지)	기준	기준	SEA	NVRQS
홍콩	2010	O/HKN/13/2010	6/639	99.06	SEA	WRL*
러시아	2010.7	O/RUS/Jul 2010	6/639	99.06	SEA	WRL*
홍콩	2010	O/HKN/10/2010	7/639	98.90	SEA	WRL*
일본	2010.4	O/JPN/1/2010	7/639	98.90	SEA	일본
베트남	2009	O/VN/LC169/2009	9/639	98.59	SEA	NCBI**
한국 (4월1차)	2010.4	O/KOR/1/2010	10/639	98.43	SEA	NCBI
홍콩	2010	O/HKN/20/2010	17/639	97.33	SEA	NCBI

- 주: 1. \*는 WRL(World Reference Laboratory, UK) :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보고서 참고  
 2. \*\*는 NCBI: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A)  
 3. 2010년 11월, 당시 중국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는 유전자 정보가 없어 유사성 비교는 불가

<표 3-4>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발생건의 지역별·일자별 염기서열 변화 정도  
(VP1 부위, 639bp)

지역	발생차수	발생일자	염기서열상이도	일치율 (%)
안동	1차	11.28	기준	기준
안동	2차	11.29	0/639	100.00
안동	3차	12.1	0/639	100.00
안동	4차	12.1	1/639	99.84
안동	5차	12.1	0/639	100.00
안동	6차	12.2	0/639	100.00
안동	7차	12.2	0/639	100.00
안동	8차	12.2	1/639	99.84
안동	9-17차	12.2	0/639	100.00
안동	18-20, 23-25차	12.3	0/639	100.00
안동	29-30차	12.4	0/639	100.00
연천	33차	12.14	5/639	99.21
양주	33차	12.14	6/639	99.06
파주	35차	12.15	5/639	99.21
고양	37차	12.19	6/639	99.06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한 국내에서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VP1 부위에서 1.56% (10/639)의 유전적 차이를 보였다<표 3-3>. 한편, 2010년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바이러스들 간에는 VP1 부위에서 약 1%까지 유전적 변이를 보였다<표 3-4>.

### 2.3. 구제역 예찰 결과

구제역 예찰에는 임상적 예찰, 혈청학적 예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학적 예찰, 야생동물 예찰 등이 있다.

#### 가. 임상적 예찰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처음 신고된 날부터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2011년 4월 3일까지 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예찰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임상예찰은 수의사, 가축방역사나 예찰요원에 의해 발생지역 주위의 방역지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행해졌으며, 농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예찰에 의해 거의 매일 실시되었다. 2011년 4월 3일까지 누적된 예찰 실적은 <표 3-5>와 같다.

#### 나. 혈청학적 예찰

구제역의 혈청학적 예찰은 안동시 구제역 최초 신고 이전에도 전국의 우세류 가축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었다. 예찰의 주 목적은 국내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혈청학적인 검사에 의해 증명하여 국제적으로 청정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잔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lt;표 3-5&gt; 전국 규제역 임상예찰 조사 실적(2010.10~2011.4)

시도별	역학관련		위험경계지역		일반우제류		기타(잔반농가등)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경기	503	21,585	39	690	1,782	88,139	1,009	24,617
강원	78	5,191	-	-	2,791	81,205	617	9,746
충북	174	6,132	12	560	2,528	77,226	165	2,732
충남	1,802	13,738	748	17,110	3,817	168,620	415	3,280
전북	64	1,722	-	-	2,854	112,738	545	1,707
전남	29	29	-	-	6,519	201,963	1,071	3,565
경북	284	25,706	81	9,658	5,357	241,873	188	7,098
경남	45	11,820	177	12,132	4,647	195,241	638	12,792
제주	-	-	-	-	62	966	-	-
합계	2,979	85,923	1,057	40,150	30,357	1,167,971	4,648	65,537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기간 : '10.11.28 ~ '11.6.22)

&lt;표 3-6&gt; 전국 규제역 혈청학적예찰조사 실적(2010.10~2011.5)

시도별	소		돼지		기타가축		계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서울	197	197	109	550	0	0	306	747
부산	0	0	0	0	0	0	0	0
대구	21	57	42	239	0	0	63	296
인천	0	0	9	142	0	0	9	142
광주	71	206	71	657	5	20	147	883
대전	86	207	17	208	11	44	114	459
울산	36	147	19	152	24	96	79	395
경기	244	880	184	4,169	10	40	438	5,089
강원	158	1,278	100	1,803	21	88	279	3,169
충북	636	3,717	240	9,030	18	72	894	12,819
충남	580	4,137	299	12,600	88	348	967	17,085
전북	235	990	206	3,004	18	72	459	4,066
전남	228	1,442	153	3,047	9	36	390	4,525
경북	993	7,137	432	9,877	9	95	1,434	17,109
경남	297	1,184	154	4,022	41	164	492	5,370
제주	4	120	25	991	0	0	29	1,111
합계	3,786	21,699	2,060	50,491	254	1,075	6,100	73,265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 목적의 혈청검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전국의 소, 돼지, 기타 우제류 농가 및 가축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혈청을 채취해 검사하는 통계학적 예찰, 둘째로 구제역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상황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목적적 예찰, 셋째, 통계학적 예찰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우제류에 대해 검사하는 도축장 검사와 종축장의 가축을 검사하는 종축장 혈청검사 등이다.

2010년 12월 말까지 검사실적은 15,768농가의 130,600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전두수 음성이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4분기 혈청예찰검사는 1,404농가의 15,900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이중 478두가 양성이었다. 여기에는 구제역 발생시 검역원에서 수행한 발생지역 검사두수는 제외되었다.

#### 다. 야생동물 예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찰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농장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야생동물에 대한 구제역 감염 여부에 대한 예찰은 2011년 1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 방법은 총 398마리의 야생 멧돼지와 13마리의 고라니와 기타 야생조수 31마리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RT-PCR법으로 검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두수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3-7>.

<표 3-7> 야생동물의 구제역 감염여부 확인검사 실적

종 류	개 체 수	결 과
멧돼지	398	음성
고라니	13	음성
야생조수	30	음성
기 타	1	음성
합 계	442	

주: 검사방법: RT-PCR, 검사기간: 2011.1.17~2011.8.30

**<쟁점 정리>****구제역 초동진단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채찬희 발표자료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전문가 소위)

이번 구제역에 대한 초동진단의 문제점은 ① 구제역 검사기관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구제역진단을 시행하여 음성판정으로 진단하였고, ② 국내 가축에서 구제역 항체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간이 진단키트를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여 검사한 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최초 발생보고보다 약 1주일이 경과된 후에 구제역을 진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연 진단으로 인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후에야 구제역 방역을 시작하게 된 점이다.

특히 간이 진단 키트에는 항체 검출용과 항원(구제역 바이러스 자체) 검출용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 모두 민감도에서 정밀검사법 보다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항체 검출용 간이 키트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후에 형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데 감염 후에 최소 10일은 경과되어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진단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초동진단 문제로 인하여 이번 구제역 사태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초동 진단 개선으로는 ① 초기 육안검사, ② 구제역 정밀검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 최초 구제역이 발병하게 되면 농장 사양가와 일선 위생소의 수의사 들이 가장 먼저 임상 증상을 보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이 관찰되게 되면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번 구제역 발생사례를 보면 일단 육안검사 후에는 즉시 가검물을 보내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제역이 발병하게 되면 가검물을 이동하게 되어 이동 도중에 오히려 구제역을 더욱 전파시킬 수 있으며, 가검물을 채취하여 의뢰한 사람에 의한 전파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mobile) 진단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과 실시간 중합효소 반응을 접목시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농가에서 1-2시간 내에 구제역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단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쟁점 정리>****구제역 진단소의 분산 설치 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종기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시 지역가축위생시험소가 구제역 진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고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조사 보고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구제역의 진단을 위한 시료채취 및 진단검사 권한이 지역시험소에 주어지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자재 및 인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구제역의 진단업무를 중앙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진단을 요구하는 검사시료가 대폭 증가함에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체되고 그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할 지역 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평도 많았다. 지자체, 특히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가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구제역의 시료 채취 및 진단권한을 지역 시험소에도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전단계에 와 있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된 진단소의 외국 예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구제역의 진단과 연구를 하는 기관을 중앙에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극히 높은 질병으로 최고의 생물학적 안전시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어 질병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년 경부터 2007년까지 세계의 여러 구제역 연구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출된 사고가 10여 차례나 있었다. 유출 원인은 공기정화장치 등 전기시설의 고장이나 연구원, 취급자들의 부주의 등이었다. 이런 안전성 외에도 구제역 연구를 중앙기관에 단일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제역 연구에 많은 예산과 고급 연구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국내 구제역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가축 분포가 높은 경기도에 살아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진단소와 연구소를 설치하려는 조치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지역 시험기관이 구제역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살아 있는 바이러스 취급을 지양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며 동물실험이나 바이러스 연구 등은 중앙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다.



**<소화>****구제역 종식? 방심은 금물**

충북축산위생시험소 소장 박용화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작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자마자 우리 연구소도 긴급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내의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예찰, 축산농가 소독점검 등 여러가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12월 28일 우리 도내에서 구제역 양성농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매우 놀랍고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때부터 나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아닌 전시 상황의 어느 일선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소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출근과 동시에 바라보는 현황판에서 살처분 현장 방역관 배치 및 구제역 양성농장이 표시되어 있는 동그랗고 빨간 스티커가 무수히 찍혀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였다. 새벽에 걸려오는 핸드폰 벨소리는 걱정에 앞서 공포와도 같았다. 방역관이 부족하여 전날 밤샘 근무한 직원을 살처분 현장으로 보내야 했던 일, 새벽에 살처분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머리가 깨져 피가 줄줄 흐르는 직원을 차에 태워 병원을 여러군데 돌아다니다 겨우 찢어진 상처를 꿰맬 수 있었던 일, 다친 그 젊은 직원의 어머니에게 못 지켜줘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화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죄송함, 살처분 현장에서 잘 곳이 없어 밤새 창고바닥에서 움츠리고 있었다는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미안함 등등 많은 일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힘들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었던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전례가 없는 올해의 구제역 상황을 바라보면서 재난적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최상의 조건은 질병방지 제도적 장치나 지원 예산 및 동원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개개인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훌륭한 방역매뉴얼이 있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보이지 않는 질병을 근절하지는 못하리라.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제역 발생이 끝이 났다. 전국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긴 채 끝은 났지만 ‘종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또 머리를 내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근절코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누군가 말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3. 가축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 3.1. 이동제한 지역 지정

구제역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으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역조치로서 발생지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이동제한의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와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9조~11조에 따라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우제류가축, 사람, 차량에 대해 발생의심농장 내외부로부터의 이동제한, 교통차단 및 출입통제를 행하는 것이다.

구제역 의심단계에서 채취 검사한 시료에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 관할지역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주위에 방역지대를 설정하여 고시한다. 방역 지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위의 발생지, 확산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경계지역, 그리고 확산되는지 관찰하기 위해 경계지역 외곽에 설치하는 관리지역의 네 구역으로 구분된다.

<표 3-8> 구제역 방역지역의 유형과 내용

지역 구분	내 용
발생지	발생농장 주위 반경 500m 이내
위험 지역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 이내의 지역
경계 지역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
관리 지역	경계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를 초과하여 20km 이내의 지역

자료: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이들 지역 중 발생지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는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는 이동제한이 가해지는데, 그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 21~23조(부록)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는 예방접종을 행하는 경우와 예방접종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동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제한 내용은 주로 방역지대 내에서 사육되는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 축산물의 이동금지 또는 소독처리, 인공수정 기타 축산관련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출입하는 차량, 사람, 물건에 대한 교통 출입통제와 필요한 소독을 행하는 일이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방역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지역의 지정 기간은 경계지역의 방역조치 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안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2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반면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 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경계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또한,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하며,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구제역 발생종식 시에 그 결과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고 OIE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역 비발생국으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3.2. 가축 이동제한

이동제한을 발병 초기에 엄격히 시행하면 질병 확산 방지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기를 놓쳐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동제한이 살처분과 함께 초동방역에 필수적인 조치임에 반해 이동제한을 실시하면 해당 방역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가나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출하가

<사진 3-3> 구제역 방역 차량통제(연천)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금지된 가축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가축이 차지하는 축사 면적 및 사료급이기의 마리당 점유 비중이 늘어나는데 대하여 가축을 이동시켜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축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가축 복지문제, 도축이나 생산물을 반출, 처리해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의 경제적 피해, 가축이 생산하는 분뇨를 적기에 운반 배출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있다.

따라서 방역 목적으로 이동제한이 실시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최단시

일 내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해 주는 것이 방역당국이 처리해야 될 급선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주위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방역지대가 재설정되고 점차 넓어짐으로써 가축이동 제한의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표 3-9> 전국 시·도 구제역 이동제한 현황(2010.11.30)

시도별	계		500m 이내		500m~3km		3~10km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서울	-	-	-	-	-	-	-	-
부산	22	1,591	2	255	2	53	18	1,283
대구	116	3,445	14	479	66	2,344	36	622
인천	419	40,151	102	11,638	216	17,887	101	10,626
광주	-	-	-	-	-	-	-	-
대전	434	30,645	-	-	18	1,342	416	29,303
울산	11	6,635	4	660	7	5,975		
경기	35,213	6,718,339	298	188,163	6,066	1,291,839	28,839	5,082,353
강원	15,120	828,298	123	25,313	1,805	88,297	13,192	714,688
충북	13,670	1,474,840	387	155,119	2,944	357,881	10,339	961,830
충남	17,795	2,095,899	302	179,499	5,347	561,693	12,146	1,354,707
전남	-	-	-	-	-	-	-	-
전북	-	-	-	-	-	-	-	-
경북								
경남	1,633	267,048	15	6,974	269	67,578	1,349	192,496
제주	-	-	-	-	-	-	-	-
합계	84,433	11,466,891	1,747	568,100	17,240	2,394,889	66,439	8,347,90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의 시·도에 실시된 이동제한은 각각의 발생지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대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3km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의 시·도별 이동제한 농가수, 대상가축의 마리수 현황은 <표 3-9>과 같다.

안동 지역의 구제역 발생 이후에 확산 방지를 위한 우제류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동 발생지와 경계지역에 31개소, 안동시 외곽에 73개소의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안동시 외에도 그 때까지 발생이 없던 타 시도(강원, 충남, 경북)에까지 신속하게 총 131개소의 이동통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0년 11월 30일 당시에 전국적인 설치 현황은 <표 3-9>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표 3-10> 이동통제 초소 설치 현황(2010.11.30)

지역		계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외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경북	안동	31	31	15	15	16	16	-	-	-	-
	외곽	73	73	-	-	2	2	6	6	65	65
	강원	3	3	-	-	-	-	-	-	3	3
	충남	2	2	-	-	-	-	-	-	2	2
	경남	22	22	-	-	-	-	-	-	22	22
	합계	131	131	15	15	18	18	6	6	92	9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가축시장 폐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전국 84개 가축시장 중에서 2010년 11월 30일에 경기(5), 충남(8), 제주(2)를 제외한 69개소(82.1%)를 폐쇄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축협 가축중개매매센터를 개설하여 전화와 인터넷 중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12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양주, 고양 등지로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국도 등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제소

의 숫자가 875개소로 늘어났으며, 12월 19일 현재 이동통제 초소의 분포 현황을 집계한 것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전국 구제역 이동초소 분포상황(2010.12.19)

시·도	계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외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경북	안동	70	70	55	55	10	10	-	-	5	5
	영양	23	23	7	7	9	9	5	5	2	2
	예천	45	45	8	8	20	20	14	14	3	3
	영덕	20	20	4	4	7	7	3	3	6	6
	영주	35	35	8	8	20	20	7	7	-	-
	봉화	47	47	7	7	10	10	30	30	-	-
	의성	17	17	2	2	2	2	-	-	13	13
경기	외곽	182	182	-	-	-	-	-	-	182	182
	양주	32	32	16	16	16	16	-	-	-	-
	연천	12	12	6	6	6	6	-	-	-	-
	파주	34	34	11	11	21	21	2	2	-	-
	외곽	24	24	-	-	16	16	5	5	3	3
부산	6	6	-	-	-	-	-	-	6	6	
대구	6	6	-	-	-	-	-	-	6	6	
인천	2	2	-	-	-	-	-	-	2	2	
대전	2	2	-	-	-	-	-	-	2	2	
울산	11	11	-	-	-	-	-	-	11	11	
광주	2	2	-	-	-	-	-	-	2	2	
강원	42	42	-	-	-	-	-	-	42	42	
충북	33	33	-	-	-	-	-	-	33	33	
충남	36	36	-	-	-	-	-	-	36	36	
전북	38	38	-	-	-	-	-	-	38	38	
전남	76	76	-	-	-	-	-	-	76	76	
경남	79	72	-	-	-	-	-	-	79	72	
제주	8	8	-	-	-	-	-	-	8	8	
합계	882	875	124	124	137	137	66	66	555	54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2월 말 경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동 통제초소의 수는 점차 늘어나 새해 첫날인 2011년 1월 1일에는 1,681개소, 1월 15일에는 2,417개소, 2월 4일에는 2,568개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안동시 최초 발생 이후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이들 초소의 경비와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민간인 등이 총 198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이 24시간 통제작업과 소독 및 매몰작업에 종사하였다.

2011년 2월말 경에 전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제1차·2차 구제역 백신 접종이 종료되면서 구제역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점차 이동제한지역도 해제되고 통제초소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13일경에는 전국적으로 1,322개소의 통제초소만 남아 있었으며 3월 31일에는 전국의 75개 시·군 중 충남 홍성군을 제외한 74개소가 이동제한을 해제하여 구제역 통제 이동초소는 138개만 남아 있게 되었으며, 이 마지막 남은 초소도 2011년 4월 말에 전국의 이동제한 해제와 동시에 전부 철수하였다.

### 3.3. 차단 방역

차단 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 제일선이자 마지막 보루로 특히 축산농가가 책임지고 방어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에서는 가축의 차단 방역을 생물안전(biosecurity)이라고 말할 정도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한 전염병 차단막(barrier)의 설치와 청소 및 소독뿐만 아니라 가축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가축의 공급처에 대한 세심한 선택과 위생상태 고려, 구입 후 축사에 입식하기 전 격리장소에서 일정기간 검역을 하고 그 동안 검사와 백신접종을 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국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실태에 대하여 대한양돈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sup>1</sup>에서 차단방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1 대한양돈협회, “2010년 전국양돈장 질병실태조사 보고서”, 2011.8.



70~75%의 응답농가가 농장 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3~81%의 농가가 돈사 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운영하고 있고, 50%의 농가는 외부구입돈에 대한 격리돈사를 설치하여 구입 전 자체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가축농장의 입지는 약 36%가 타 농가에 인접하고 있었으며, 농가의 70.3%가 1km 이내에 다른 축산농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는 국내 320개의 대표적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서 다른 소규모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화 농장이거나 대규모 농장, 양돈농장, 가금생산업체의 차단방역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한우 농가나 기타 영세 양축농가의 차단방역 시설은 낮은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확산되는 와중에서도 일부 차단방역이 양호한 농가나 지역에서는 구제역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구제역 전염으로 치명타를 입은 많은 농장들이 차단방역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가축사육이 밀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국 몇몇 지역에서 발견된 구제역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계통을 통하여 파악한 구제역 차단방역의 우수사례를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안성시 고삼면에서는 2010년 12월 23일 고삼농협에서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하고 10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모든 축산농가에 휴대용 소독기와 소독요령 매뉴얼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근 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500m 내(소 18농가 381두, 10km 이내 1농가 74

<사진 3-4> 구제역 일제소독(안성시)



출처: 연합뉴스(2010.12.2)

두 포함)에 있는 축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마을에서는 인접한 마을에서 2010년 12월 14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마을방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방역활동에 착수하였다. 마을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축산농가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축산농가 공동모금으로 안개분무식 소독기 15대를 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한 결과, 인근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이 마을에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에서는 2010년 12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농가들이 거출하여 마을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U자형 소독기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이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상교리 마을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2011년 1월 18일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소재 축협 생축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신속한 매몰처리와 3단계 방역대 설치 관리, 대인 소독관리, 발생지 주변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별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의 외부 확산은 인접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였다. 오염지역(반경 500m) 내에 18농가 374두가 있고, 일부 농가는 발생지역과 불과 20m 이내에 인접하고 있음에도, 최초 발생 후에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소독소”를 운영하였다. 2011년 1월 2일에 충북 괴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월 8일부터 보은군청 앞 광장에 사료차·수의사·동물약품 등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대인소독기와 소독장비를 갖추어 공동소독소를 설치하였고, 공동소독소에서 발급하는 보은군수 소독증명서가 없을 경우 마을 단위로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축산관련차량이 자발적으로 소독소를 찾아 완벽하게 소독을 실시해야만 축산농가에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인접한 괴산과 청원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한 건 발생 없이 차단방역의 성과가 나타났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서는 본면 경계지역인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긴박하게 면장과 한우작목반 및 22개리 이장을 중심으로 구제역 비상 상황을 전 주민에게 전파하고 면민이 일치단결하여 방역활동을 수행하였다. 2010년 11월 30일에 직원과 작목반 회원이 중심이 되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였고, 매일 리별 홍보방송과 축산농가 예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면 내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판정 받았으며, 12월 27일에 소 7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살처분하였으나 이후에는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 사례로서, 경기 고양시 젓소개량사업소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사업소에서 40km 거리에 있는 경기 양주와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유전자원(정액, 수정란) 분산 및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전직원 비상근무 체제(퇴근 중지, 사내 숙식)와 아울러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인원 통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차단방역의 성과를 거두었다.

충남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사업소를 통과하는 지방도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사업소 인근 8개 마을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 실시하였다. 또한 천안 성남면 사슴목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후 씨수소 보호를 위해 전직원 출퇴근·휴가 금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차단방역은 가축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가축을 포함하는 국내 양축농가의 전반적인 차단방역 실태는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위생관리에 대한 기본 자료와 함께 상세한 차단방역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례>

**민관협력 차단방역: 경기 안성시 고삼면**

- 축산직 출신 면장(김OO)과 고삼농협 조합장(조OO)이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방역활동 수행
  - 2010.12.23일 고삼농협에서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하여 축사소독
    - \* 10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1일 2회 소독. 면에서 소독여부 직접 확인
  - 2011.1.4일 긴급대책회의 개최. 고삼농협에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에 휴대용 소독기와 소독요령 매뉴얼을 공급
  - 2011.1.7일 고삼면 호동마을 소재 한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고삼면은 예방접종이 완료(1.4~1.7일)되어 발생 농장만 매몰처리하고 반경농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 시행
    - \* 발생농장 반경 500m 모든 도로 매일 소독
    - \* 발생농장 반경 3km내 모든 도로(농로 포함)를 폐쇄하고 지방도 단일노선만 통행 허용
    - \* 1.10일부터 반경 3Km내 사료 공급차량 지정, 운영
    - \* 1.13일부터 1톤 용량 물탱크에 물을 미리 받아놓고, 뱀씨 발아기를 이용하여 수온을 30℃까지 가온하여 사용
- 차단방역 효과
  - 한결농장(\*11.1.5일 발생한 안성 일죽면 농장과 동일한 지대사료 사용)에서 구제역이 발생(1.6일 신고)하였음에도 반경 500m내(소 18농가 381두, 10m 이내 1농가 74두 포함)에 있는 축사에서 발생 사례 없음.

### <우수 사례>

#### 신속한 대처로 구제역 확산 방지: 강원 삼척시

- 2011.1.18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소재 축협 생축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매몰처리와 3단계 방역대 설치 관리, 대인 소독관리, 발생지 주변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별 구분 소독으로 구제역 외부 확산은 물론 20m 이내에 인접해 있는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함.
- 신속한 매몰
  - 의심축 발생일(1.18)에 즉시 살처분 매몰팀을 투입하여 철야작업으로 익일 새벽까지 의심축 사육 축사 한우 73두 살처분 완료
  -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진(1.19)에 따라 당일 살처분을 시작하여 익일 08:30분까지 매몰 완료(한우 285두, 500m이내 염소 6두)
- 방역대별 3단계 완벽 차단방역초소 신속 운영
  - 의심축 발생 즉시 2단계 차단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10km 방역대까지 3단계 방역초소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 철저한 방역대별 방역활동 전개
  - 방역대별 방역차량 별도 지정 관리(광역방제기 2대 지원 업체 : 로템)
    - \* 오염지역 내: 오염지역 전용 광역방제기를 활용 1일 2회 이상 방역활동
    - \* 오염지역 밖의 마을: 농업기술센터 방역차량을 별도 지정 방역 활동
    - \* 마을 외곽: 전용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여 수시 방역 활동
    - \* 마을 내 도로: 군용 제독차량 2대를 활용 1일 2회 이상 방역 활동
  - 전염 매개체 차단: 발생농장 주위 들 고양이 3두 제거
- 마을 출입 통제 및 대인 소독 강화
  - 발생지 거주자 이동 제한: 이동제한명령 준수여부 매일 전화확인
  - 발생마을 차량통행 제한: 차량통행금지(우편물 등: 초소에서 전달 조치)
  - 발생지역 통행인에 대한 중요한 관리지침 준수
    - \* 마을 입구 방역초소에서 방제복 착용 및 회수(소각)
    - \* 소유 물품 가능한 폐기하고 가져갈 것은 철저소독
    - \* 바로 목욕시설 이용시 콧속, 귓속, 등에 대한 꼼꼼한 세척 실시

<우수 사례>

**농가 출입차량 공동소독소 운영: 충북 보은군**

- 2010.12.21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서 발생 이후 충북으로의 출입 전면통제 및 출퇴근 금지 등 한 단계 강화된 차단방역을 수행하였음
  - 군청 광장에 공동소독소 설치 운영
    - \* 1월 8일부터 보은군청 앞 광장에 사료차·수의사·동물약품 등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대인소독기와 소독장비를 갖추어 공동소독소를 설치하였고, 공동소독소에서 발급하는 보은군수 소독증명서가 없을 경우 마을 단위로 출입을 금지
  - 연구센터 진입로 및 인근마을 전면 차단 방역강화로 비상근무 실시
    - \* 마을 이장 및 지역 주민의 협조를 받아 센터로 진입하는 진입로 및 마을 경계로를 전면 차단. 센터 직원이 전담하여 통제초소 설치 운영
  - 통제초소 차단방역 강화
    - \* 2개조(6명)로 24시간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외부인 및 차량 진입 차단
    - \* 부식 등 부득이한 물품 반입 시 통제초소에서 기록 후 2회 소독 실시 후 센터 지정 직원이 물품 수령하여 2단계 소독 실시로 반입
    - \* 물품 배송자, 통제초소 근무자, 센터내 물품 수령자와의 접촉 금지
    - \* 유류 수령 시에도 통제초소 밖에서 유류통으로 받아 소독 후 반입
  - 센터 부지 동선별 소독 강화 및 종축 수시 구제역 임상관찰
    - \* 자체 보유 방역차량 및 이동식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및 모든 직원은 1일 3회 이상 대인소독 실시
    - \* 이동식 동력분무기 3대를 이용하여 축사주변, 목초지, 도로변 등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소독실시
    - \* '10.11.29일 이후 매일 수시로 종축 임상관찰 강화
- 차단방역 효과
  - '11.1.19일 한우 487마리 중 구제역 의심축 6마리(백신+자연항체 2마리, 양성 2마리, 무항체 2마리)가 발견되어 매몰 처리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우수 사례>

#### 이동통제와 철저한 소독: 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 충남 천안 성남면 사슴목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음성 판정) 후 씨수소 보호를 위해 2010.12.21일 이후 전직원 출·퇴근·휴가 금지
  - 사업소(서산)에 근무 중인 전 직원(91명)은 사택, 당직실 및 각 우사별 대기실을 배정받아 잠자리로 활용
  - 소를 관리하는 현장직원(38명)들은 업무상 외출 전면 금지하고 해당 현장 대기실에서 자체 음식조리를 통해 식사 해결
  - 씨수소 분산처(무주 2명, 영양 3명) 인력도 분산처 내에 머물도록 조치
- 방역초소 운영('10.12.24 이후)
  - 사업소를 관통하는 지방도 647호(해미-운산) 양쪽에 2개소 및 야외우사 1개소에 고정식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소독
  - 사업소 보유 방역차량(ULV)을 이용하여 사업소 인근 8개 마을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 실시(1일 100Km 운행)
  - 광역살포기를 이용하여 사업소를 관통하는 지방도(해미-운산) 23Km에 1일 4회 소독약을 살포하여 통행차량에 의해 도로에 존재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방역 실시
  -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 살포기 3대와 농용차량(썰레스)2대를 방역차량으로 활용
- 소독 강화
  - 업무용차량과 방문차량 내부 소독을 위해 개인용 분무기를 공급
  - 2010.1.31일 사업소 내 샤워장에 건식용 사우나 시설(6인용)을 설치하여 방역초소 근무자 및 외부 출입직원들은 고온(90℃) 사우나 실시
  - 각 우사별로 필수 근무인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인력은 1주일간 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음식은 자체 해결토록 하여, 직원 이동에 따른 구제역 외부유입을 차단
- 씨수소 보호 추진
  - 2010.12.3일 경북 영양 분산처에 있던 후보씨수소 27두를 3Km 이내에 한우 농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

## 4. 백신 접종

### 4.1. 구제역 백신의 의사결정

구제역 백신접종은 구제역이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만으로는 확산 차단이 불가능할 때 긴급히 시행되는 방역조치의 일종이다. 특히 감염된 동물을 살처분하면서 병행하여 실시하는 백신 접종은 발생지역 외곽의 구제역 감수성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환축에서 증폭되어 외부로 배출 순환되는 바이러스의 양을 대폭 감소시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당국은 2000년 국내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과 백신접종을 병행하여 구제역 근절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구제역 종식 후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대해 요구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세계의 다른 비백신 청정국들처럼 구제역 방역을 살처분과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등의 비백신 방역정책을 우선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이리하여 2002년의 구제역 발생 시와 2010년 1월~4월 사이의 구제역 발생 시에도 백신 비접종 정책을 고수하여 살처분과 이동제한 만으로 단시간 내에 구제역을 근절하는데 성공하고 구제역 청정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 시에는 초기에 시행했던 살처분 조치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중요한 실패 원인은 첫째,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이 대규모 양돈장이어서 발생 초기부터 다량의 바이러스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간 점, 둘째, 최초 의심축 신고를 받은 후 지역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인검사를 하기까지 약 1주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여 정부의 방역조치가 실시되기 전 감염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벌써 주위의 광범위한 지역에 구제역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러스의 생존에 적합한 기상조건을 갖춘 혹한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독 등 차단방



역이 어려웠던 점, 넷째, 이번에 유행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독주(strain)가 O형 동북아형(O, SEA type)으로 종전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월등히 강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안동의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을 방역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하지 않았으나, 구제역이 경북지방을 벗어나 전국적 확산 양상을 띄기 시작한 12월 15일 이후부터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다. 그리고 한정된 지역과 축종에 한하여 백신 접종을 시도하다가, 다음해 1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는 전면 백신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하에서 안동의 구제역 발생 당시부터 방역당국에 의하여 백신접종 방안이 검토되고 확정된 후 실제 백신접종을 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1.1. 백신 검토 단계

2010년 11월 하순의 안동 구제역 발생 당시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예방접종 범위를 결정한다”라는 행정지침(구제역 행동긴급지침 16. 예방접종요령, 2010.10)이 있을 뿐, 그 외의 상세한 백신접종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법규나 지침은 없었다.

2010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백신접종책을 채택한 이유가 “정부의 구제역 조기 종식 및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 이하 발표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 12.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

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11월 말 경에는 안동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던 구제역이 12월 14일과 15일에 경기도 연천과 양주 및 파주로 확산되자 방역 당국은 곧 위기 대응 발령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다. 그리고 12월 17일 청와대 경제수석 보고회의에서 그 때까지 살처분 매몰 일변도 작전으로 방역에 임하던 것을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 백신접종의 타당성 및 예상효과를 검토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20일 백신 접종 방법을 구제역 방역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내에 미리 구입 보관하고 있던 30만두분의 구제역 백신을 발생 현지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한편, 영국 메리알사 항원 은행에 구매하여 비축 중이던 구제역 백신원료(120만두분)를 단시일 내에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연이어 12월 22일 방역대책협의회 제 7차 회의에 백신 접종안건을 부의하여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결과, 방역대책협의회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때까지 구제역이 계속 만연 확산되고 있던 안동과 예천 지역 및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도 파주, 연천, 고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에 대한 제한적 링 백신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 열린 방역대책협의회 제8차 회의에서는 위의 5개 시·군 발생지역에서 발생농가 주위 반경 3km와 10km 지역을 설정하여 외곽으로부터 안쪽 방향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 당시의 접종 대상 가축은 5개 시·군의 소 133,000여두(7,016농가)였고, 백신 접종을 위해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에서 800여명의 인력을 차출하여 200여

<사진 3-5> 구제역 백신접종(보령시)



출처: 연합뉴스(2011.1.8)

개의 팀으로 구성된 후 접종에 투입하였다.

<표 3-12> 구제역 백신접종 지역별 확대상황('10.12.25~'11.1.13)

일자별	접종지역 확대	농가수(접종두수)	접종시점
'10.12.25	5개발생시군(안동, 예천, 파주, 고양, 연천)	4823(103,287)	'10.12.25~12.31(소에 대한 제한적 예방접종)
12.27	추가(경기남부3개시군 여주, 이천, 양평)	7,496(184,057)	'10.12.27
12.30	추가(포천, 강화, 충주, 영주, 김포)	12,252(313,626)	'10.12.30
12.31	추가(횡성)	14,296(361,149)	'10.12.31
'11.1.1	추가(영천, 경주, 남양주)	18,221(452,063)	'11.1.1
1.3	경기 전지역, 강원4개시, 충북4개시군	26,078(700,905)	'11.1.3
1.5	전국 7개 시도 59개시군	51,859(1,201,515)	'11.1.5
1.8	전국 8개시도 103개시군	100,392(2,151,998)	'11.1.8(중돈과 모든 접종 개시)
1.13	전국 14개시도 모든 우제류가축 일제접종	103,810(2,106,000)	'11.1.16
	소 제1차예방접종	191,292(3,580,970)	'10.11.25~'11.1.23
	돼지 제1차예방접종	7,342,200두	'11.1.8~1.31
	소 제2차 예방접종	190,974(3,524,320)	'11.2.26 완료
	돼지제2차 예방접종	8,162,386두	'11.2.26 완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4.1.2 백신 접종 단계

구제역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실제 발생지역에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을 위한 기술교육을 마친 후 접종이 시작된 것은 2010년 12월 25일이었다. 그리고 안동, 예천, 파주, 연천, 고양 등 5개 지역의 소에 대해 제1차 접종이 완료된 것은 대략 12월 31일 경이었다.

그 후 2011년 새 해가 시작되면서 구제역의 확산 기미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당국은 1월 13일에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일제 백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백신접종이 시행되기까지의 의사결정 및 확대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 <표 3-12>이다.

전국 백신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1월 12일 정부는 총체적으로 구제역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하여 구제역 대응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구제역이 전국 6개 시·도, 50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살처분 매몰 두수가 소 120,630두, 돼지 1,375,529두, 사슴과 염소 등 기타가축 4,472두로 총 150만두에 이르러 국내 축산업의 근저가 흔들리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 주던 시기였다. 대통령 주재의 이 회의에서 그 때까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전국(경남, 전남·북을 포함)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따라서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고 늘어나는 살처분 매몰두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였다.

2011년 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날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제11차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접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즉, ①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② 예방약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를 1) 전국(제주 제외)의 모든 소 및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모돈, 비육돈), 2) 전국의 모든 모돈, 3) 돼지 비육돈 등의 순서로 접종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결정으로 구제역 백신은 2011년 1월 13일에 비육돈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시작하여 1월 31일에는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2월 26일에는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4월 20일 이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접종 후 6개월이 되는 2011년 8월에는 3차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구제역 백신의 전국 일제 예방접종은 제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실적은 <표 3-13>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lt;표 3-13&gt; 전국 규제역 제1차 백신접종실적('10.12.25~'11.1.31)

시도별	소		돼지
	농가수	마리수	마리수(단위:천두)
서울	8	371	0.1
부산	203	3,347	8.3
대구	1,233	23,166	25.4
인천	606	21,169	11.4
광주	373	7,181	8.6
대전	346	5,646	1.5
울산	2,663	36,333	24.8
경기	11,615	475,812	743.2
강원	14,626	246,222	243.8
충북	12,285	243,331	354.7
충남	24,961	515,785	1,469.8
전북	17,431	387,951	1,087.6
전남	35,893	548,512	764.9
경북	38,917	682,450	903.7
경남	30,127	376,682	1241.4
제주	1,095	43,055	457.2
농협	1	2,427	
축산과학원	4	4,585	
총계	191,297	3,624,025	7,346.2

&lt;표 3-14&gt; 전국 규제역 제2차 백신접종실적('11.2.26기준)

시도별	소		돼지
	농가수	마리수	마리수
서울	11	997	39
부산	208	3,382	9,015
대구	1,176	22,304	24,066
인천	597	20,032	11,717
광주	373	6,979	8,217
대전	332	5,342	1,443
울산	2,654	36,971	34,606
경기	11,190	435,317	627,862
강원	14,544	240,600	178,228
충북	12,331	233,899	338,112
충남	25,095	505,985	1,965,400
전북	17,423	381,687	1,290,350
전남	35,893	546,011	913,832
경북	38,191	681,449	1,079,784
경남	30,176	376,395	1,186,457
제주	1,094	42,427	493,258
총계	190,974	3,524,320	8,162,386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한편, 1차 백신을 접종하면서 경기도 한수 이남의 소에서 접종 후에 구제역이 많이 발병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루머가 회자되었지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돼지에서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어 “물백신”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합동으로 백신 효과에 대한 조사를 축산과학원 소속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축농가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혹한으로 인하여 백신이 동결되었다가 해동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었거나 혹한기에 백신접종이 원만하게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기대 만큼의 효과가 거양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sup>2</sup>

## 4.2. 구제역 백신의 수급

정부는 2010년 11월 하순의 구제역 최초 발생 당시에 구제역 백신 완제품을 30만 두 분 정도로 검역원에 비축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백신 제조사인 영국 메리알사의 항원뱅크에 120만두 분을 항원 형태로 구매하여 별도로 비축하고 있었다. 이 항원 형태로 보관해 놓은 제품은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2월 20일 경에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방역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시에 1회분 30만 두 분을 영국으로부터 들여오도록 발주했으며, 이것은 12월 26일 국내에 도착하였다. 연이어 12월 22일에는 남은 90만 두 분에 대해서도 보내주도록 요청하여 2011년 1월 2일 국내에 도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기로 결정한 당시의 백신 확보량

<sup>2</sup> 이 부분의 구제역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 이중복 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은 국내 보관량 30만두를 포함하여 총 150만 두 분이었다.

다음 <표 3-15>는 2010년 12월 24일 이후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확보 공급한 실적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3-15> 구제역 백신 공급 조치(2010.12~2011.6)

일자별	백신 도입계약 내역	도입량
'10.12월	메리알 완제품 비축 30만두분, 항원뱅크 120만두 분	150만두 분
'10.12.30	메리알 250만두 분	250만두 분
'11.1.4	인터베트 400만두 분	400만두 분
'11.1.12	메리알 300만두 분	300만두 분
'11.1.24	메리알 770만두 분, 인터베트 800만두 분	1,570만두 분
'11.1.29 ~3.18	메리알 435만두 분(필리핀,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보 유분 전용)	435만두 분
'11.6.13	인터베트 1,550만두 분(3가 혼합백신)	1,555만두 분
계	메리알 1,905만두 분, 인터베트 2,755만두 분	4,660만두 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편, 구제역 백신의 접종이 추진되면서 백신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면 백신접종 정책을 채택한 이상 향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계속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제역 백신은 예방효과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되는 다른 가축백신과는 달리 6개월 밖에 면역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또 불활화 백신이며 생산공정에 고도의 정제기술이 필요함으로 제조단가가 높아 이를 공급해야 하는 국가나 양축농가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이 백신을 생산치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급히 필요한 경우 시간이 걸리는 것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계나 가축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 문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 있다.

<사진 3-6>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 계획



출처: KBS뉴스(2011.1.24)

### 4.3. 백신 접종 효과

전국의 소 3,580,970두와 돼지 7,342,200두에 대한 제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된 2011년 1월 31일을 전후로 하여 매일의 구제역 발생건수는 1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2월 6일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날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이 완료된 2월 26일 이후에는 경북 영천에서 돼지에 발생한 3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발생이 없었으며, 현재(2011.8.5)까지도 의심축 신고는 간간히 계속 들어오고 있으나, 4월 21일 영천의 돼지 농장 발생을 마지막으로 정밀검사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상태이다.

구제역 예방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 효과를 조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과학원의 공동시험 결과에 따르면 1차 예방접종 후 소는 14일자에 100%, 돼지 성돈은 20일자에 70%, 비육돈은 21일자에 80%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외국의 연구보고에서는 “소는 백신 접종 후 21일째 감염시 구제역 임상 증상을 막을 수는 있으나 재차 구제역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소에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검출되며 보균동물(Carrier)이 될 수 있고, 돼지는 소에 비해 항



체가 비교적 늦게 형성되며 백신 접종 후 28일 쯤에 75% 정도 방어된다”(Parida, 2009)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와 돼지에서 백신 접종 후 초기 1주일 이내에는 구제역 감염 발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이 점차로 상승된다는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은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이 아니며, 감염되더라도 체내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임상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바이러스 배설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서 전파와 확산을 막아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백신 접종 후에도 차단방역이나 기타 방역상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구제역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Parida, 2009)가 소는 백신 접종 후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Challenge)을 받게 되면 장기 보균축(Carrier)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특히 재감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돼지는 감염되더라도 보균축이 되는 일이 없으며 28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은 양돈장의 경우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모든의 면역 수준에 따라 모체 이행항체가 소실되는 10주령 전후의 자돈 구간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2010년 11월 하순 이후에 전국의 축산 농가를 강타한 구제역은 구제역 감수성 가축에 대한 전면 백신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진화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완전 종식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말고 정해진 백신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추가 접종을 하면서 질병 모니터링이나 예찰활동 및 차단방역 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가축질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쟁점 정리>****구제역 백신의 허와 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류영수

축산 농가나 일선 방역 실무자들 중에서도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대대적 백신 접종 결정 이전에 구제역 백신을 직접 접종해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축산 종사자들이 백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은 모체 이행항체의 간섭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접종시기의 결정일 것이다. 보통 모체 이행항체의 반감기는 소와 돼지에서 대략 21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 Kitching과 Salt의 연구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을 반복 접종한 모체의 초유를 통한 모체 이행항체는 자축의 구제역 백신효과에 수개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모체 항체의 간섭이 없는 경우라면 14일 접종이 추천된다. 그러나 모체 이행항체도 같은 어미로부터 태어나는 새끼의 경우 동일한 수준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체 이행항체를 감안한 백신 접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후의 구제역 방역은 더욱 복잡해지고 특히 전국적인 발생과 백신 접종후의 구제역 종식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노력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구제역 백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단 방역 시설이 필요하다. 영국의 백신 생산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가 구제역 상재국으로 갈 것을 계획한다면 몰라도 이를 위한 시설, 조직 및 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투자대비 많은 효과는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구제역 발생국임을 감안한다면 아시아 구제역 방역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해 볼만하다. 각국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하여 연구소 및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첨단 생명공학적인 기술로 연구하여 백신을 개발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또 아시아 지역은 어느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제역이 영원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빈번한 교역과 엄청난 교류가 구제역으로부터 어느 나라도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아시아 지역 구제역 방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쟁점 정리>****구제역 백신의 확보 방안**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최인수

현재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누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완전히 차단된 GMP 시설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소수의 국가에서만 구제역 백신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로 구제역 백신 항원은 행을 운영하여 필요할 때마다 신속히 항원을 제공하거나 백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제역 백신이 생산된다. 영국에 있는 국제백신 은행은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원을 공급한다. 북미 은행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구제역 항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 받고 있는 Merial과 Intervet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구제역 백신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Merial과 Intervet 회사로부터 구제역 백신의 항원만을 공급받은 후 국내의 백신회사에서 완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이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국내에서 자체적인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 혈청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었는데 다행히도 O 혈청형 바이러스는 다른 혈청형에 비해 항원의 변이 내지는 다양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O 혈청형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항원을 수입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방어 효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O Manisa 주를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주를 순화시킴으로써 백신 제조용 바이러스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과 오일 어쥬번트(oil adjuvant)를 교합하여 제조된다. Aluminium hydroxyde를 어쥬번트로 사용하여 제조된 구제역 백신은 돼지에서 효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double oil emulsion 형태가 돼지와 소 및 기타 반추동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구제역 항원은 혈청형 O, A 및 Asia 1이며, 수입된 항원을 이용하여 제조될 백신은 각각의 항원을 포함한 단일백신의 형태 혹은 세 종류의 항원을 혼합한 복합백신으로 제조될 수 있다.

구제역 백신의 방어 효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3 PD50 이상의 용량을 동물에게 주사하여야만 한다. 적절한 주사부위로는 근육주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나 피하주사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의 경우 경부 상부에 주사하며 돼지의 경우 이근부에 주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일 어쥘벤트와 교합된 구제역 백신은 면역원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새끼에서 모체 이행항체가 잔존하는 경우에도 방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에게는 생후 2~2.5 개월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만약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에게는 생후 2주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소, 돼지 및 양 등의 가축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생후 2주가 지난 동물들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매우 우수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후 2주 이후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나 종돈과 같은 동물에게는 1차 백신 접종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권고하는데 그 이유는 2차 접종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방어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후의 백신 보강 접종은 6~12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접종된 동물에서 지속적인 면역력의 유지로 인해 구제역 방어효력이 우수하게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리어 문제도 반복적인 백신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010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소와 돼지를 비롯한 모든 우제류동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신의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가 속출한다면 구제역의 재발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구제역을 빠른 시일 내에 박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역정책에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제역의 종식은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앞으로 구제역 백신의 항원을 수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하루속히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쟁점 정리>****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과 효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중복

**(1)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

□ 구제역백신 완제품 생산 계획: 현재 Merial사와 Intervet사에 국내 분리주 3주를 제공하여 1차 바이러스 증폭시험에 성공한 상태이고, 2011년 9월에는 대량 배양 시험을 수행할 것이며, 2012년 8월 이후에는 국내에 항원의 형태로 수입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양사 혹은 다른 제3의 다국적기업에서 제조한 항원을 수입하고, 도입된 항원에 면역보강제를 혼합하여 완제품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정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구제역백신 생산능력 평가에 참여한 국내 백신제조업체 5개사에 대해서 실사를 하였으며 현재 5개사(중앙전염병, 고려비엔피, 코미팜, 녹십자, 대성미생물)모두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구제역백신 검정시설 및 항원생산시설 검토: 2011년 4월에 축산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여 기획안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구제역백신 연구 및 검정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논의를 거쳐 2011년 5월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T/F팀을 가동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구제역백신 국내 생산 T/F 팀에서 결정한 상황은 구제역백신 연구 및 검정시설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백신항원 생산시설의 건축은 이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사업의 예산발주를 요청하였다.

□ 국내 구제역백신 항원생산을 위한 연구: 국내에서 백신항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크게 사독백신연구와 서브유니트백신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2011년 2월부터 3월초에 이르기까지 지식경제부에서 T/F팀을 가동하여 검토하는 중에 총리실의 결정에 의하여 농식품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예산은 150억 원으로 확정하고 2012년도에 배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과학정책과에서는 농림기술평가원에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서브유니트백신 및 면역보강제(adjuvant)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50억 원을 배정하여 사독백신을 연구토록 하는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 (2) 접종시기와 효과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반추류와 돼지를 따로 분리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반추류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 반추류에서는 생후 4개월에 1회 접종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 추가접종한 후, 매년 1회씩 접종한다.

□ **돼지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 돼지에서는 모체이행항체의 소실과 백신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수행된 후에 접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돈에 6개월마다 접종한 후에 모체이행항체(MDA)가 소실되는 시점에서 백신을 실시하지 않으면 백신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것이 구제역 백신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모체 이행항체가 완전히 소실되는 10주에 1차 접종하고 12주에 2차 접종하는 것이 Merial사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만에서 경험적인 사실에 의하면 2번에 걸친 백신 접종이 축산농가에서 시행하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가중됨에 따라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비육돈의 출하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모돈에는 6PD50를 매 6개월 마다 접종하고 자돈에는 12~14주 사이에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스케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체이행 항체의 지속 기간을 측정하고 백신브레이크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관찰하여 백신접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제언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구제역백신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문제는 경제성 분석과 생산 시설 외부로 구제역바이러스 유출방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구제역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이 최첨단의 기술력 축적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각종 백신 생산의 현대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백신 제조업체의 산업혁명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동물용 백신의 세계화라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lt;우수 사례&gt;

## 구제역 백신 접종 사례

## □ 민·관·군 협력하여 백신 조기 접종: 강원 양구군

- 양구군은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열흘간 관내 모든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 하려고 하였으나, 군청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없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과 개업 수의사 1명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기간내 백신 접종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와 같은 악조건에서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 도움으로 1군단에서 수의장교 2명 파견 및 농림수산식품부 도움으로 외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 총 8명을 추가 확보하여 1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소에 대한 1차 접종을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었음.
- 당초 계획보다 5일이나 빨리 접종이 완료되어 관내 축산농가 불안감을 일찍 해소시키고 추가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음.

## □ 수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경북 경주시

- 경주시 수의사회(회장 김대용)는 2010.12.23. 영천시 소재 산수골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역학농장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산수골 농장 양돈장의 돼지 20,231두를 예방적 살처분하면서 공수의 18명을 자발적으로 동원 12.24~12.26일까지 3일간 혹독한 추위(영하 8.7℃)속에서 전두수를 매몰처리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 2011.1.1부터 구제역 예방백신을 실시하면서 각 농가마다 철저한 방역지도를 실시하여 2011.1.16일까지 집에도 가지 못한 체 단체 숙식을 하면서 경주시 전체 한우사육농가 6,142호 87,729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음.
- 추운날씨에 예방접종 마지막 날 누락된 양북면 1농가에 예방접종을 하다가 소 뒷발에 다리를 차여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목발을 짚고 헌신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음.

## 5.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 5.1. 살처분과 매몰

#### 5.1.1. 살처분

살처분은 영어로 ‘stamping out’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번역할 말이 ‘살처분’이다. 또한 살처분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몇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특정의 가축전염병, 특히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전염력이 고도로 높고 경제적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 전파를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목적으로 감염동물과 감염 위험이 있는 접촉동물을 죽여 없애는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규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과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과 기타 중요한 제2종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당국이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가축의 소유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직접 살처분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방역당국이 살처분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시행할 때는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구제역 감수성 동물뿐만 아니라 그 주위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농장과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에 접촉했을 위험이 있는 농장(역학관련농장이라고 부름)의 가축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대 살처분은 대개 발생농장 주위 반경 500m~3km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에서는 구제역 비발생 청정국일 경우, 발생 초기에 살처분 방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대다수이다.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도 살처분 방법을 초기 구제역 방역의 최우선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필요시 살처분과 제한된 지역에 긴급백신접종법을 병용하여 방역을 하는 정책



채택을 고려하고 있으나 백신접종을 한 경우에도 사후에 접종 받은 가축을 모두 도태시켜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다.

<표 3-16> 각국의 질병가축 처리방법

국가별	사후·처리 방법
한국	매몰·소각, 랜더링(일부질병)
일본	소각·매몰, 랜더링, 발효소독(가금)
호주	매몰(선호)·매몰 불가능시 소각, 랜더링, 퇴비화, 식용공급 일부질병
미국	매몰, 소각, 퇴비화(가금류)
EU	랜더링(SRM 처리 승인된 시설), 매몰, 소각, 식용공급(일부질병)
영국	소각·매몰(감염동물), 랜더링(예방적 살처분, 가금)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부자료.

백신을 접종하여 구제역 방역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이 종식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하여 인증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축산물 수입국의 규제가 가일층 엄격해 지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축산물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피하고 살처분만으로 구제역을 근절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백신접종을 하여 구제역 방역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상 불리한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제역 청정국 회복을 위한 백신 후 가축의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방역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가능하면 살처분 방법만으로 구제역을 근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전통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2000년(이 때는 살처분과 일부 제한적 백신 접종을 병행)을 제외하고 2002년과 2010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시 발생 초기에 살처분 방식만을 적용하여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종식시켰으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의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 전파속도나 범위가 전례 없이 급속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살처분 방식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백신과 살처분을 병용하여 방

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전국 일제 백신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 5.1.2. 사체 처리와 매물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1항 제7호에 “살처분·소각·매물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물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물 후보지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살처분 후 매물하는 것이 능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 제23조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오염물건은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25조와 관련한 별표 5에는 “소각 또는 매물 기준”을 정하여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장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각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매물지의 선정, 매물방법, 매물지의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물이나 소각의 경우에 주변환경 오염방지 방법을 정하여 매물 및 소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의 확산·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살처분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살처분 후 사체로부터 병원체가 퍼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사체를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땅에 구덩이

<사진 3-7> 구제역 가축 살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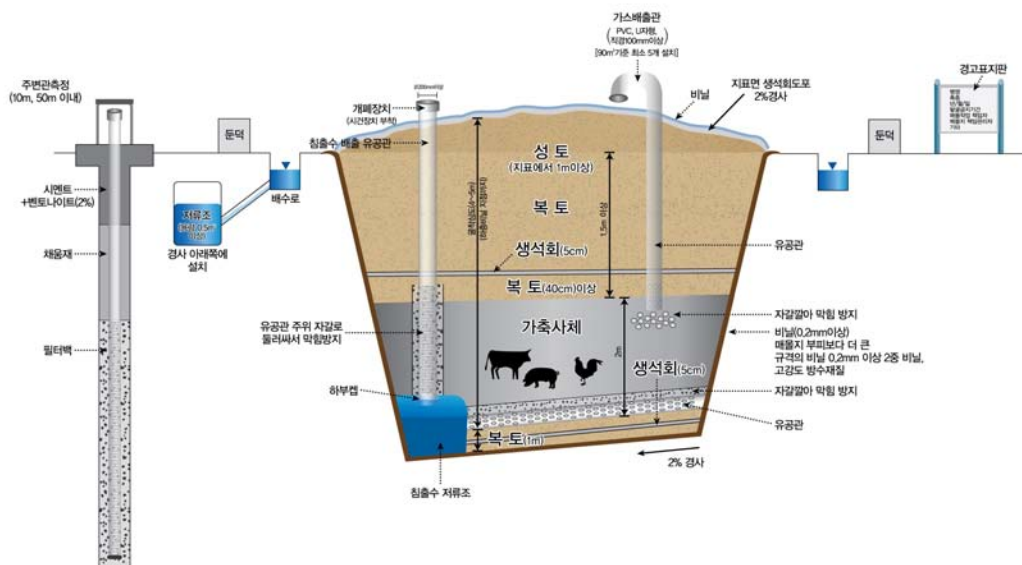


출처: MBC뉴스(2011.1.7)

를 깊게 파고 묻는 매몰법, 불에 태우는 소각법, 그리고 사체에 고열을 가해 지방을 용출 정제시키며 골분과 육분을 만들어 내는 랜더링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퇴비화, 유산발효처리법, 알카리 가수분해법, 혐기성소화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 여러 방법 중에서 소각법(랜더링)과 매몰에 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2항, 23조 1항, 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 별표5 소각 및 매몰기준)와 규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매몰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림 3-9> 매몰지 설치 모식도



자료: 규제역 긴급행동지침.

질병가축의 매몰, 소각, 랜더링 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각법은 노천에서 장작이나 폐타이어 등 보조연료를 쌓아 놓고 그 위에 사체를 올린 후 태우는 노천소각법과 전기나 기름을 이용하여 소각로 안에서 태우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1967년 및 2001년 영국의 대규모 규제역 발생 시 사용되었으나, 공기 중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매연과 유독가스 및 냄

새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어 그 후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되었다.

반면, 소각로 사용법은 비교적 안전하기는 하나 소각로 안에서 처리 가능한 사체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다량의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 구제역과 같은 대규모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참고로, 축산과학원에서 시험개발한 소각로가 있으나, 이는 큰 소(체중 650kg)는 1일 3두, 큰 돼지(체중 100kg)는 50두, 닭은 약 1천 수 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어 처리능력이 1일 2톤 정도에 불과했으며, 장비 가격도 고가(대당 수억원 대)로 다수 설치가 곤란하였다고 한다.

랜더링법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없고 안전한 방법으로 현재 외국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시설 역시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해야 되고, 랜더링 공장이 사체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살처분 후 사체를 랜더링 공장까지 원거리 수송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체를 운송하는 도중에 통과로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다량의 사체가 생기지 않는 평소에는 랜더링 공장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없어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등 경제적 운영이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몰법은 적당한 매몰지만 찾을 수 있으면 다량의 사체를 단시간 내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 가축 전염병 발생시 세계 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체 처리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사체 처리법 중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매몰시 정확한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주변의 토양, 하천, 호소 등 수질계나 지하수 오염을 초래해 심각한 환경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일단 사체를 매몰하고 난 뒤에도 장기간에 걸친 사후관리가 필요해 인력이나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큰 단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 1~4월 구제역 발생시 다른 특별한 사체 처리법이 마련되지 않아 거의 전부 매몰법을 이용하여 가축 사체를 처리하였다. 2000년에는 매몰대상이 우

제류 가축 2,216두, 2002년에는 소 1,372두(124농가), 돼지 158,708두(124농가), 사슴, 33두(2농가) 염소 42두(4농가) 등 모두 160,155 두로 당시 비교적 국한된 지역 내에서 구제역을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매몰처리도 단시간 내에 가능하였고 매몰 후 환경위해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에는 전국에 걸쳐 구제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방역 당국은 단시간 내에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살처분을 해야만 했고, 그 결과 생긴 다량의 사체를 단시간(24~48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매몰 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5.1.3. 2010년 11월 이후의 가축사체 매몰 현황

2010년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매몰작업이 시작되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매몰 작업도 방방곡곡에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집계에 의하면,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2011년 4월 말까지 전국 75시군 지역의 6,240농가에서 모두 3,479,962두의 가축을 살처분되었으며, 이 때 거의 대부분의 사체가 매몰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구제역 발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매일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매몰되었는데, 축종별 살처분 매몰두수의 일별 추이를 보면(부록 1 참조), 2011년 1월 17일에는 하루에 112,041가 매몰처리되어 정점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 후 2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매일 1만두~ 8만두의 가축사체가 매몰되다가 3월 12일 이후 1천두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 23일 이후에는 거의 구제역 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됨과 동시에 매몰작업도

<사진 3-8> 구제역 매몰지(태안군)



출처: 연합뉴스(2011.2.28)

종료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전국의 구제역 총 매몰지 수는 4,583개소에 달하며, 각 시도별 매몰 가축수 및 매몰지 현황은 <표 3-17>과 <표 3-18>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구제역 매몰지 4,583개소 중에서 2,202개소(약 48%)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의 18개 시·군에 걸쳐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 매몰된 소는 총 사육두수의 14.5%인 67,835두에 달하였고, 매몰된 돼지는 총 사육두수의 90.5%인 1,664,669두에 달하였다.

경기도 외의 다른 시·도에 분포해 있는 매몰지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경북 1,124개소(24.5%), 강원도 470개소(10.2%), 충남 407개소(8.9%), 충북 229개소(5.0%), 경남 73개소(1.6%), 인천 64개소(1.4%), 그 밖의 시·도가 합계 15개소(0.3%) 등이다.

<표 3-17> 전국 시·도별 구제역 가축 매몰 현황

시·도	매몰대상농가*	매몰두수	매몰지
경기	2,360	1,735,502	2,202
강원	661	413,330	470
충북	423	336,623	229
충남	427	466,150	407
전북	2	12,531	2
경북	2152	428,660	1,124
경남	87	59,892	73
인천	115	22,914	64
대구	2	671	3
부산	2	646	2
대전	1	2,150	1
울산	8	893	8
합계	6,240	3,479,962	4583

주: 매몰대상농가: 발생신고농장+예방적살처분농가+역학관련농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lt;표 3-18&gt; 전국 시·군별 규제역 가축 매몰 현황

지역명	소		돼지		염소		사슴		소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경기	연천	96	4,339	74	106,059			4	211	174	110,609	
	양주	144	9,823	99	129,116	3	142	1	44	247	139,125	
	파주	165	11,300	135	134,542			37	905	337	146,747	
	고양	71	5,864	17	17,776			10	224	98	23,864	
	가평	38	1,718		45			2	69	40	1,832	
	포천	131	6,758	162	260,891			5	144	298	267,793	
	동두천	14	496	18	19,527					32	20,023	
	남양주	26	1,843	6	6,274	0	5			32	8,122	
	의정부	3	90	1	80	1	41			5	211	
	김포	109	7,993	30	57,012	17	515			156	65,520	
	여주	76	3,592	80	154,610	5	252			161	158,454	
	평택	12	515	47	33,605	1	19	5	164	65	34,303	
	이천	180	8,220	179	370,482	2	121			361	378,823	
	양평	47	1,626	16	27,744					63	29,370	
	광명	1	75							1	75	
	시흥	8	275							8	275	
	화성	3	144	17	27,457					20	27,601	
	용인	34	348	81	111,221	1	49		32	116	111,650	
	안성	49	2,816	97	208,228			1	61	147	211,105	
	강원	대화	19	1,773				215			19	1,988
화천		8	1,353	7	11,681	3	28	3	36	21	13,098	
원주		39	1,264	37	76,348	5	154	2	61	83	77,827	
춘천		13	447	3	4,853		33			16	5,333	
횡성		114	5,266	16	68,233	1	20			131	73,519	
철원		198	6,205	70	139,296	4	491	7	89	279	146,081	
홍천		40	1,898	8	22,605	2	10	1	16	51	24,529	
양구		8	75	2	12,747					10	12,822	
구정		17	373	8	34,763	1	4			26	35,140	
양양				9	21,062					9	21,062	
동해		1	3							1	3	
삼척		1	358			1	6			2	364	
영월		6	292	2	1,152	4	34			12	1,478	
고성		1	86							1	86	
충북		충주	50	2,900	24	45,566	21	799	9	160	104	49,425
		괴산	35	1,006	34	44,783	15	757	3	6	87	46,552
	음성	35	1,371	26	90,008		20			61	91,399	
	진천	13	569	44	78,868	2	9	1	6	60	79,452	
	청원	10	169	31	32,039	18	127	1	2	60	32,337	
	제천	18	301	5	7,890	2	22	1	12	26	8,225	
	증평	11	308	11	28,421	1	120	1	23	24	28,872	
청주			1	361					1	361		

지역명	소		돼지		염소		사슴		소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충남	보령	8	217	31	89,104	3	31			42	89,352
	아산	3	157	27	20,929			1	17	31	21,103
	당진	12	572	89	135,740		22		18	101	136,352
	천안	25	1,298	49	107,520		16		21	74	108,855
	예산	2	44	36	41,978					38	42,022
	연기			5	6,211					5	6,211
	공주	2	10	3	4,589					5	4,599
	논산			3	4,652					3	4,652
	홍성			126	52,575			1	1	127	52,576
전북	태안			1	428					1	428
	김제			1	2,233					1	2,233
	진안			1	10,298					1	10,298
경북	포항	27	844	4	419	1	2		1	32	1,266
	경주	41	1,113	7	31,403		2	1	7	49	32,525
	안동	1,246	34,967	66	108,067	78	1,693	15	128	1,405	144,855
	영주	177	6,471	30	59,799	8	175	1	35	216	66,480
	영천	40	1,822	16	46,548		5			56	48,375
	경산	8	27	42	31,313	13	437			63	31,777
	군위	1	10							1	10
	의성	20	277	6	9,292					26	9,569
	청송	15	502	1	1					16	503
	영양	16	701			8	271		3	24	975
	영덕	17	530	2	1,785	2	28			21	2,343
	청도	2	98	2	3,917					4	4,015
	칠곡			1	2,100					1	2,100
	예천	151	3,436	13	30,048	4	845		15	168	34,344
	봉화	29	1,241	17	39,643		310			46	41,194
	상주	1	142	3	677					4	819
	문경	7	206	3	337					10	543
	울진	1	6	9	6,961					10	6,967
	경남	창녕			1	1,398					1
김해		4	8	69	48,426		7	2	31	75	48,472
양산			1	9	9,947	2	74			11	10,022
인천	강화	44	2,056	13	9,149	16	61	20	133	93	11,399
	계양	2	68	2	380			2	14	6	462
	서구	4	78	7	10,845	3	91	2	39	16	11,053
대구	북구	1	110	1	561					2	671
	동구	1	561							1	561
부산	사하구			2	638		8			2	646
대전	동구			1	2,150					1	2,150
울산	울주			8	893					8	893
총계		3,751	151,425	2,104	3,318,299	248	8,071	139	2,728	6,242	3,480,52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5.2. 살처분과 동물복지 적용

### 5.2.1. 법규 및 국제규약의 적용

여기서는 2010년 11월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의 가축전염병 관련 법규와 국제규약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안동 구제역 당시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 이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구제역 방역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과는 별도로 동물보호법의 규제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우선 이들 법률 규정에 가축의 살처분과 관련된 동물보호 조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시행규칙, 구제역방역요령 등에는 살처분에 관련하여 동물보호를 명시한 조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제 11조)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어 살처분 시의 동물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본래 목적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국민 정서함양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 구제역과 같은 중대한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 목적으로 시급히 가축을 살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죽일 때까지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호해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당시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협약에는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Section 7 Chapter 7.6) 지켜야 할 준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규정의 근본 원칙은 동물을 방역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죽일 경우에도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죽이는 순간까지 일상적인 사양관리방법(사

료와 음수의 공급, 동물의 취급 등)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일 때에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소실시켜 완전히 절명했는지 확인한 후 사체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살처분되는 동물 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는 사람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살처분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에 관한 국내법규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이 국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5.2.2. 가축 살처분시의 동물보호 규정 적용 현황

이번 구제역 방역시 소를 안락사시킬 경우, 주로 약물 주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약제는 썩시콜린 주사약(성분 Succinylcholine chloride)이었다. 원래 이 약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동물용 안락사 약제가 아니고 인체용으로 제조된 마취 근육 이완제이다. 축산 선진 외국에서나 국제기구에서 는 안락사 제제로 바비툴산염 과 기타 약제의 혼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약제의 사용 전에 렘폰(Xylazine)이나 케타민과 같은 진정제 사용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살처분 대상 가축도 예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살처분 시 적절한 안락사 방법을 강구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돼지는 새끼돼지까지 합쳐 300만두 이상을 살처분해야 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단시간에 이를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많은 수의 돼지들이 살아 있는 채로 매몰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에 대한 언론 및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동물보호협회<sup>1</sup>는 2011년 1월 9일에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1 “국내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생매장 살처분을 용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소의 경우, 썩시닐콜린이라는 근육이완제로 주사를 하지만 근육이완제는 말 그대로 근육만 못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이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는 것이므로,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가 아니라 ‘고통사’(苦痛死)

지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시설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잔인하고 끔직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 5.2.3. 구제역 행동지침의 동물보호 관련 항목 개정

정부는 2010년 1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긴급행동지침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이 진정 기조에 들어선 2011년 7월 15일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살처분시 준수해야 될 동물보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삽입하였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4장 살처분 요령 “1. 살처분 기본원칙 1.5. 살처분은 동물중에 따라 전살법, 타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약물사용법 등 동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 중 현장에서 적용이 쉽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살처분 지침에 대해서는 각각의 안락사 방법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약물사용법에 대해서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Xylazine+염화트리메칠암모늄메칠렌, Barbiturates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다. 또한, 돼지의 경우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약 99%가 산채로 땅속에 묻는 ‘생매장’ 살처분이다. 구제역 살처분은 법과 지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시설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산 채로 땅속에 매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는 아니될 것이다. 잔인하고 끔직한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2011.1.9, 다음네트)

### 5.3. 매몰지 관리

#### 5.3.1. 매몰지 현황 및 환경관리

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시 급하게 만들어졌던 매몰지가 봄철 기온 증가와 폭우로 인해 유실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착수하였다. 만약의 사태인 사체 유실과 매몰지의 사체 부패로 생기는 침출수가 주위 수변계나 토양으로 누출되어 지표수나 지하수, 상수원이나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킴으로 일어날 수 있는 2차 환경피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당면 과제였다.

구제역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환경 오염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네티즌들은 구제역 매몰지 분포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정도로 매몰지의 환경 오염을 우려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2011년 1~3월에 걸쳐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일제점검하고 대대적인 긴급 보강공사와 집중 관리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8개팀 380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상수원 상류지역인 낙동강과 한강 인근 188곳의 매몰지를 시작으로 전국의 구제역 가축매몰지 총 4,799개소(그 중 구제역 매몰지는 4,583개소) 중 4,199개소에 대해 1월 24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3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1.24~28/2.10~14)는 상수원지역 188개소, 2차 조사(2.17~2.26)는 1차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전국 2,527개소, 3차 조사(2.27~3.4)는

<사진 3-9>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협업지도



주: 네티즌들이 인터넷 구글지도를 통해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협업지도'(2011.3.2)를 제작하였다.

최근 매몰지 1,412개소였다.

조사 결과, 옹벽과 물막이벽이 함께 필요한 곳이 18개소, 차수(물막이벽) 공사가 필요한 곳 133개소, 옹벽이 필요한 곳 87개소, 우수배제와 배수로 정비공사가 필요한 곳 85개소, 사면 보강공사가 필요한 곳 9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2개소, 강원 44개소, 충남 25개소, 충북 20개소, 경남 6개소, 인천 5개소, 전남 3개소, 전북 1개소 등이었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417개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가능성 문제는 매몰 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침출수가 상수도 수원으로 유입되어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는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가축매몰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중대한 환경위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환경위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매몰지(4,799개소,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216 개소 포함)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매몰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시 ‘정부합동기동반’을 즉각 현장에 파견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하였다. 정부합동기동대응반은 2011년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과장 1명 그리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각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장마철에 대비하여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점검 결과 보완대상 462개소 중에서 405개소는 현지 조치하였고, 57개소는 정밀조사 후에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국 각 지자체별로는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6월 9일부터 7월 말까지를 매몰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지자체별로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주 1회)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6월 16일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하고, 중점 관리대상 매몰지 697개소에 대해서는 6월 21~24일간

관리 실태를 현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특히 태풍 메아리 통과 직후인 6월 27일 중점 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배수로 정비 미흡이나 유공관 설치 미흡 등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2011년 6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각 지자체의 매몰지 보장실적은 다음 <표 3-19>와 같다.

<표 3-19> 전국 가축 구제역매몰지 일반관리상황(2011.6.13~9.12)

보장내역(건)	기간( ~까지) 누계			
	'11.6.13	'11.7.26	'11.8.26	'11.9.12
복토	6,196	6,515	6,600	6,626
비닐덮개보장	7,479	7,839	7,988	8,039
배수로정비	8,702	9,503	9,929	10,013
유공관보완	4,817	4,873	4,892	4,919
관측정설치	1,359	1,554	1,553	1,554
경고판(실명제)	5,061	5,051	5,051	5,051
악취제거제투입				
- 유용미생물	14,112	14,908	15,022	15,050
- 활성탄	2,254	2,391	2,550	2,832
침출수 추출	10,811	14,743	17,638	19,229
침출수추출량(톤)	4175	5,201	6282	6,673

자료: www.구제역.kr

구제역 발생이 종료된 6월 이후에도 정부는 이전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2011년 7월 초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업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매몰지 전문가 협의체'(위원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매몰지 관리방안, 이설 방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가축 매몰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몰 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사체처리 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소각, 랜더링법, 지중 매몰법 이외에 대형액비 저장

조 및 간이 FRP 저장조 이용법, 이동식 열처리 등 친환경적 사체처리법을 신설하였고 매몰지 사후 관리법도 강화하였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축 매몰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 관리하는 지자체가 모든 매몰지에 대해 관리현황카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라도 가축 매몰지 관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 매몰지 관리용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 3-10> 농식품부장관 구제역 매몰지 현장 점검(2011.7.8)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5.3.2. 매몰 방법과 사체 침출수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

가축 사체의 매몰 방법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제4장 구제역 표준 행동요령의 살처분, 소각(랜더링) 및 매몰 요령과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과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발생시에는 이러한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우선 매몰지 선정에 있어 ①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②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많은 양의 가축 사체를 매몰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장소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 장소 선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 직원들이 대단히 고심하였고, 적지를 찾느라고 작업을 위한 시간도 지체되었다. 또한 구제역이 이

정도로 대규모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몰 작업에 필요한 물품,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사전 대비나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았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모든 것이 일어 붙은 흑한기라는 최악의 조건하에서 단 시간(24~48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몰 작업을 서둘렀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살처분과 매몰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급하게 실행된 매몰작업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취약 예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체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음용수 수원 오염 및 환경 오염 문제였다. 매몰작업 당시 매몰 후 사체가 부패할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침출수가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복용 비닐을 깔도록 배려했지만, 사체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나 아직 죽지 않고 생매장 상태로 던져진 돼지들이 구덩이 속에서 발버둥칠 때 많이 훼손되어 지하수 오염의 위험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밖으로 유출되는 침출수를 받아 처리하기 위해 매몰지 속에 유공관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사후에 상당수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sup>2</sup>

이러한 연유로 2011년 봄에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으며, 마침 이 때는 유출수의 안전한 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도 이 시기에 맞추어 구제역 사체 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2 해외에서 연구 조사된 기록에 의하면 가축 사체가 매몰처리된 후 생기는 침출수는 큰 소(체중 500~600kg)에서는 1마리 당 매몰 후 1주일 이내에 가축 체내 수분의 반 이상(약 80리터 정도)이 체외로 나오며, 2개월 이내에는 거의 대부분(160리터)이 나온다고 한다. 이 연구 내용을 참조할 때 이번 경우처럼 겨울철 지온이 낮은 상태로 매몰되었을 때는 침출수 유출속도가 이보다는 좀 느리기는 하겠지만 매몰 직후부터 2~3개월 간은 침출수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시기로 유출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



## 5.4. 매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구제역 발생시 환축과 감염 위험축에 대해 살처분 방법을 주요 방역책으로 선택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매몰을 해야 할 경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첫째로 매몰 장소, 매몰에 참여한 인력, 장비로부터 구제역 병원체가 주위로 비산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매몰 이후 공중위생 및 가축 사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구제역 방역 법규나 매뉴얼에 따라 실행해 온 매몰 작업은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가. 매몰 예정지의 지정

각 지자체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매몰 예정지를 미리 선택하여 지정해 놓을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매몰 적지에 대한 사전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기준을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정하고, 장소 지정 전에 환경 전문가와 협의나 조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보고서(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008)에 의하면<sup>3</sup>, 입지 선정 인자는 대별하여 지상 인자와 지하 인자로 나눌 수가 있다. 지상 인자로는 매몰지와 지표수체, 도로, 주거지, 생산시설과의 거리와 지형을 고려해야 하며, 지중 인자로는 토양, 복토두께, 우물로부터의 거리와 매립지 바닥에서 지하수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토양, 매몰지의 경사 또는 지형, 수리지질학적 특성 등 환경 인자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구제역 발생 시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구제역 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전국의 지자체가 이러한 매몰지 선정 원칙을 지킬 수도 없었고, 이러한 재난의 발생에 대한 사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3 환경부는 지난 2008년 말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관리방안”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가축 매몰지 선정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나. 매몰 방법 준수

구축 매몰시에는 정해진 매뉴얼의 매몰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매몰작업이 끝난 후 이에 참여한 인력, 장비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청소, 소독)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 사체 부패로 생긴 가스의 배출 장치를 개선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규와 지침 및 매뉴얼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보다 정교하게 개정할 필요도 있었다(이 사항은 2011년 7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시 반영되었다).

그러나 실제 매몰지 부실 원인의 대부분이 매뉴얼이나 법규의 미비로 인한 것 보다 매몰 작업시 매뉴얼에 있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데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많았다.

## 다. 매몰 이외의 방법 검토

사체 처리를 위해 매몰 외 소각이나 랜더링 방법 등 환경 오염피해가 적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발하여 매몰을 대체 또는 병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각장이나 랜더링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 주위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 현 실정이나 긴급시 이동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각로의 개발 등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 2011년 3월 3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자체로 하여금 구제역 사체를 지중에 단순 매몰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친환경 처리방식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3월 3일 이후에 사체 처리는 단순매몰 42%, 미생물방식 26%, 랜더링 3%, PE·FRP탱크·콘크리트 액비저장조 등 원통저장조 23%, 스팀멸균처리기 6%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또한 경기, 충남, 경남 등에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폐사축 스팀처리기의 보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사체를 처리한 결과 시간 절약, 침출수 유출 방지로 수질 및 토양오염 차단, 사후관리의 비용절감 및 편리, 악취 저감

등의 큰 성과를 거두 바 있다.

#### **라. 자원 확보와 교육 훈련**

위와 같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몰대책을 강구해 둔다고 할지라도 이에 필요한 재원이거나 이를 운용할 훈련된 공무원이 없을 때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의 사전 확보와 공무원의 교육 훈련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마. 안전사고 대비**

이번 구제역 매몰작업시에는 작업원의 사망이나 부상 등 여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매몰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철저한 교육과 대비가 필요하다.

매몰 작업에 참여하는 각 개인에게는 작업 중 병원체 오염을 방지하고 소독약의 약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복이나 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모든 작업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감독 하에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친환경적 매몰처분 방법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의 가축 살처분과 매몰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매몰 방식에 대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매몰 방식에서 매몰·소각 및 랜더링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액비 대형 저장조 및 간이 FRP 저장조 등을 활용한 사체 처리

살처분 저장조 시설전 트럭평탄작업



① 저장조 설치부지에 대한 평탄작업 실시

외벽체와 내벽체의 방수현 작업완료



② 저장조 설치  
(외부 강판, 내부 방수 처리된 특수 천막)

저장조 내부에 쌓여있는 사체



③ 사체를 저장조 내에 넣음

생석회+물 투입



④ 생석회, 소석회를 투입

트라스를 올린후 지붕감성



⑤ 저장조를 지붕 밀봉 후 가스배출관 설치

- 내용물이 액상으로 변할 때까지 약 6개월  
소요) 보관

- 액상으로 변한 내용물은 소독 처리 후 매  
몰지 침출수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 저장조 처리방식(예시)

### 나. 랜더링 처리



### 다. 이동식 소각 처리

#### ① 소형 이동식 소각 장치



② 중형 이동식 소각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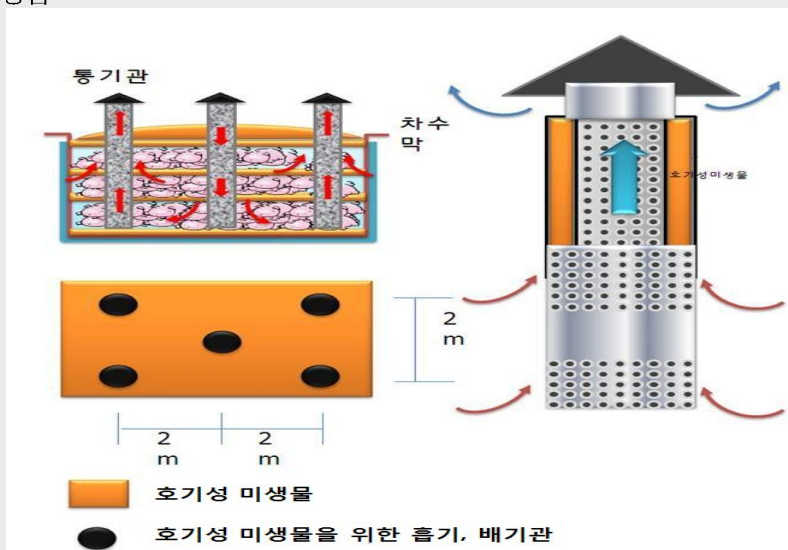


③ 대형 이동식 소각 장치



**라. 호기성(好氣性) 호열 미생물처리**

호기성·호열성 미생물 배양토 및 배양액과 쌀겨를 왕겨에 혼합하여 사체와 매몰하여, 미생물의 번식에 의하여 가축을 분해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하는 방법



**<우수사례>****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예천군****1. 가축 매몰 현황**

2010년 12월 4일 안동시와 인접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의 한우 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168개 농가에서 돼지 30,048두, 한우 3,436두, 염소 등 기타 860두 등 총 34,344두를 살처분하여 110개 매몰지(한우76, 돼지32, 기타 2개소)에 매몰처리하였다. 매몰 후에도 매몰지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현장 확인과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살처분 및 매몰 실시****(1)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매몰장소 선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군청 환경관리과에서는 2010.12.7일에 매몰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안정적인 매몰지 관리를 위해 읍면에서 선정한 매몰지에 대하여 하천 및 집단가옥과의 거리, 지방 및 마을상수도 취수시설과 인접여부 등을 위성지도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굴착 작업시 물이 나는 경우에는 매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2)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매몰관련지침 지도**

매몰에 참여하는 살처분 12개팀 84명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이 매몰지 모식도 및 기 매몰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침출수 유공관 설치, 가스 배출관 설치, 생석회 살포 요령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초 매몰부터 환경관리과 직원이 반드시 매몰작업에 참여하여 매몰깊이 준수, 생석회 살포, 침출수 및 가스 배출관 설치시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실제 매몰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체용기, 우수의 침투 등을 방지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였다.

**(3) 침출수 배출관 하부의 기능 저하 방지**

매몰시 사체 또는 장비에 의한 유공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VC 배출관에 직접 천공하여 설치함으로써 침출수 및 가스 배출관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였다.

**3. 매몰지 사후관리****(1) 매몰 2~3일 경과 후 현장 확인을 통한 정비작업**

최초 매몰 후 일정기간(2~3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환경관리과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확인팀이 매몰지 현장을 확인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상부 복토, 우수 배제시설 설치,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선, 저류조 설치, 탈취제 살포, 톱밥 및 생석회를 비치하여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 매몰지에 대하여 구제역 검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였다.



①매몰지 터파기



②비닐설치 및 고정



③침출수 유공관 설치



④생석회 깔기



⑤흙 깔기(추가성토)



⑥가축사체위 가스관 설치 후 흙 덮기



⑦추가 생석회 설치 및 매물 비닐정리



⑧매물상부 추가복토





⑨ 생석회 살포



⑩ 비닐 덮기



⑪ 추가성토(1.5m)



⑫ 응급저류조 설치

**(2) FRP 저류조 설치로 악취저감 및 토양오염 예방**

매몰 관련 지침에는 0.5m<sup>3</sup>이상의 저류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우시 저류조에 물이 고여 매몰지 내부로 다시 스며들 우려가 있고, 침출수와 우수가 혼합되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FRP저류조(600ℓ용량)를 설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악취 저감은 물론 토양오염을 예방하였다.

**(3) 친환경 미생물제 투입으로 악취 저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배양한 친환경 미생물제(바실러스균 등)를 침출수 및 악취 배출관을 통하여 월 2회 이상 투입하여 사체 분해를 촉진하고 유해가스 및 병원균 발생을 억제하여 악취발생 및 토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4) 침출수 배출관 관리용 YT관 설치**

매몰지 침출수 배출관 상부에 YT관을 설치 개폐 가능토록 하여 침출수 검사, 추출 및 생균제 투입 등 매몰지 침출수 관리에 용이토록 하여 악취를 예방하였다.

**(5) 전 매몰지에 가스 배출관 악취저감을 위한 간이필터 제작 설치**

매몰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악취저감 필터를 전 매몰지 가스 배출관에 설치함으로써 한건의 악취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활용토록 권장하였다. 설



FRP 저류조 연결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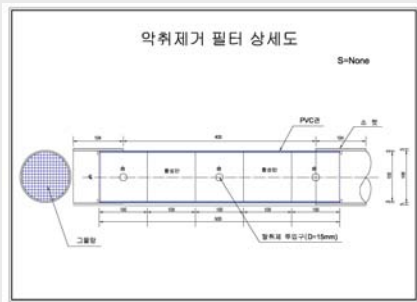
설치완료



친환경 미생물제



YT관 설치 및 친환경미생물제 투입



제작도면



제품모양



약취필터 설치장면



필터 설치후 약취포집



매몰지내 침출수 추출



침출수 장기 저류조

치 방법은 가스 배출관(Φ100mm PVC) 중·하단을 절단하여 망치를 이용하여 삽입한 후 상부에 U자관을 설치하였으며, 활성탄 교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6)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인 예천수질 환경사업소(7,500m<sup>3</sup>/일)에 매몰지 침출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FRP 10m<sup>3</sup> × 2기)을 설치하고 EM을 투입·저류시킴으로써 하수처리장에 유입 부하를 줄이면서 발생 침출수 전량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가능토록 하였다.

**(7) 그 밖의 추진사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흐르는 방향 전방 5m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고 침출수 오염정도를 조사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섰다.

또한 예천군은 110여개의 매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타 자치단체 매몰지 보강정비사업(경북 112개소 7,332백만 원, 예천군 1개소 86백만 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자료: 예천군청

<쟁점 정리>

**동물복지 차원의 살처분 개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중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은 ‘신속한’ 살처분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상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것에 중점을 두으로써 동물의 복지는 물론, 살처분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신속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 ‘작업자의 안전’ 및 ‘차단방역’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야만 보다 효과적인 살처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살처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기준인 OIE의 살처분 기준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제기준으로 인정되는 OIE의 살처분 기준의 틀 안에서 국내 환경 및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접목시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OIE가 제시하는 축종 및 연령별 살처분 방법 >

축종	연령	살처분 방법
소	모든 연령	총살 약물주사
	신생축 제외 모든 연령	관통형 도축총 사용 후 천자 또는 방혈
	성축	비관통형 도축총
	송아지	전살
염소 양	모든 연령	총살 약물주사 전살
	신생축	비관통형 도축총 이산화탄소 등 가스이용
	모든 연령	전살 약물주사
돼지	신생축 제외 모든 연령	총살 관통형 도축총 사용 후 천자 또는 방혈
	신생축	비관통형 도축총 이산화탄소 등 가스이용
	모든 연령	이산화탄소 등 가스 약물주사
가금	성축	비관통형 도축총 전살
	모든 연령	이산화탄소 등 가스 약물주사
	초생추 및 수정란	사료 및 음수에 약물첨가 마쇄
	모든 연령	이산화탄소 등 가스 약물주사

살처분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연령별 살처분 방법을 달리하지 않아도 되며, 차단방역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의 체액이나 혈액이 체외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OIE의 살처분 기준에 의거, 비교적 살처분 개체수가 적은 소의 경우는 약물주사, 살처분 개체수가 많은 돼지는 전살(電殺)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축종·연령·작업인원의 숙련도 및 인원수·농장위치·사체처리방법 및 장소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살처분 방법을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살처분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도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약물주사는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약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 한다. 전살의 경우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감전을 방지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절연복, 절연장갑 및 장화 등 보호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또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데, 약물주사에 사용되는 바비튜레이트(barbiturates) 등 대부분의 마취제는 대부분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해당약물의 비축·관리·사용 등에 있어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사전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OIE는 동물의 운송, 도축 등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질병통제 목적의 동물 살처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문에도 우리나라와 EU는 동물복지에 대해 정보·전문지식·경험 등을 교환하고,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키로 한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즉, 동물복지는 이제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축종별 적합한 살처분 방법 등을 적시하였다.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SOP를 토대로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살처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정리>****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리 방안**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임성재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 내부 구조를 보면, 매몰지 내부에 흙을 약 1m 가량 투입한 후에 사체를 2m 가량 투입하고 다시 흙으로 2m 이상 복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침출수의 일정량은 매몰지 내부 흙층에 흡착되게 되어 있고, 병원성 감염 방지를 위해 복토층 사이에 투입하도록 한 생석회를 매몰 사체 위에 직접 살포함으로써 사체 분해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악취 방지 및 분해 촉진을 위한 유용미생물 제재를 투입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외국 문헌과 같은 양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몰지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매몰지 침출수 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 유공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추출 수집하고,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몰지 관측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침출수 지하유출 여부를 확인하여 침출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측정 설치나 관측정 모니터링을 활용한 침출수 관리 조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매몰지 관측정은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여 대규모 매몰지로서 침출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매몰지 4,799개소 중 1,554개소만 관측정을 설치하였으며, 그나마 지자체에 따라서는 모든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한 경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예산 사정에 맞추어 일부 매몰지에만 관측정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몰두수·주변 지하수, 하천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측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는 빗물 또는 지하수 유입방지 조치의 보완과 함께 침출수 수거 빈도를 확대하고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침출수 유출 또는 의심 매몰지 가운데 매몰두수가 많은 매몰지 및 주변 지하수·하천 등에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이설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매몰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선정한 적정 매몰후보지를 이용하고 차수막으로 고강도 차수재(고강도 비닐, 방수천 등)등을 사전 확보하여 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6. 방역 홍보 및 교육 활동

### 6.1. 방역 홍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며, 이번 구제역과 같은 국가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정책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만연하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축산업의 붕괴, 국내 육류 생산공급 체계와 공중위생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등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때 정부는 이러한 질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오해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안을 해소시키고, 정부의 방역정책과 활동을 이해시킴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방역 홍보의 주된 목적일 것이다. 성공적인 홍보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행동으로 이끌어 내게 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부터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은 2011년 6월 말까지 구제역 방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일간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공공 언론매체에 모두 100건이 넘는 보도자료, 설명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구제역의 전국적 발생, 확산 추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렸다. 또한 언론의 오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실 왜곡에 대해 경위나 내용을 정확히 설명 또는 해명하고 잘못된 사실보도를 바로 잡기에 노력하였다.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은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뉘어진다. 즉,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초까지는 구제역 방역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2월 중순 경부터는 가축 매몰지 대책에 중점이 두어졌고, 구제역 발생이 소강 상태를 보이기 시작한 3월 하순부터는 구제역 이후의 축산 선진화대책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역 홍보 단계(2010.12월~'11.2월 초)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 참여 및 국민 협조

사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 때의 주된 홍보 내용은 축산농가에게는 자체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에 전념해야 하며,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전에 감염된 경우에는 항체 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간(약 2주)을 감안하여 최대한 4주까지 차단방역에 철저할 것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여행을 자제하는 등 구제역의 차단방역에 협조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홍보하는 내용이였다. 특히 소비자들은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육류의 안전성에 대해 염려가 많이 제기되어 소비자들에게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었다.

특히 2월 초에는 설 연휴기간(2.2~2.6)으로 대규모 국민 이동에 따라 구제역 확산 우려 및 구제역 관련 여론 악화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귀성시 축산농가 방문 및 각종 모임 등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설 연휴 모임에서 구제역 및 AI 관련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홍보 방향으로 설 연휴 이전까지 축산농가의 적극적 방역 참여 유도, 소비자의 불안심리 최소화, 정부 노력 등 전파에 홍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사진 3-11> 구제역 관련광고(농식품부·정부합동)



광고기간: 2010.12.2~12월초



광고기간: 2011.1.20~1월말1



광고기간: 2011.2.28~3월초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구제역의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이 강조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홍보가 집중되었는데, 그 실적을 정리하면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0> 구제역 집중 홍보 실적('10.11.29~'11.1.31)

일자	제목	홍보내용
'10.11.29	정부 담화문 발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협조 요청
12월 중	정부 담화문 전파	PCRM 7만건, SMS 9,730건, 축산원 주변 중점관리농가 방역강화(5개 시·군 279농가, 누계 1,327농가)
12.17	구제역 인체무해 홍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00개소
12.17	생산자단체 선거대비 방역대책 강화	집회, 이동, 방문자제 요청, 발생지역 대의원 간접투표 경북도, 경기도 구제역 발생 3km내 읍면동 리스트 단체 송부)
12.19	지하철 홍보 영상	구제역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지하철 홍보영상 방송(1,3,4호선 객실 및 10개 플랫폼)
12.21	국경검역 홍보 강화	입국 축산관계자 신고율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지시(검역원)
12.22	방송자막 협조요청	농가간 또는 유통상인을 통한 가축거래 전면금지, 지역 축협의 가축중개매매센터를 통해 가축거래토록 유도
12.24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사전교육	예방접종 실시요령, 기관별 역할분담, 예방접종지역 및 접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지자체, 공중방역수의사가 축위생방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 참석인원 616명
12.26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홍보	농가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배포(1만부) 5개 시·군 예방접종지역 소 사육농가 7천여 농가 배포
12.27	구제역 백신사용	MBN 뉴스 2.0 가축질병 대응 강화대책
12.29	'구제역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총괄 상황관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12.29	홍보 및 인터뷰	한우 소비촉진 홍보행사, 구제역 방역대책 인터뷰 KTV 정책 와이드
12.31	방역 중요성 홍보	검역원-SMS문자 송부(2만건)
12.31	구제역 방역관련 홍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설명, 축산물 수급대책 및 계획

일자	제목	홍보내용
12.31	방송(KBS-1TV)홍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31, 10:00 생방송 )구제역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설명, 축산물 수급대책 및 계획 동물 방역과장)
‘11. 1.2	일간지 등 신문 광고 게재	구제역 확산방지 관련 광고(96개 매체): 12.2일 주간-일간지 등(66): 정부의 구제역 방역 노력, 축산물 소비 위축 방지 -전문지(30): 축산농가의 방역행동요령 준수, 신고독려 등
1.5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 방역대책 홍보/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속	BBS-R ‘진경운의 아침 저널’(1.5, 제1차관) KBS-1R’홍지명입니다.’(1.6 생방송, 제2차관) * 트위터 및 블로그 홍보지속 (‘10.12.9~), 연말연시 한우 소비이벤트실시 (‘10.12.20~11.1.2), 한우자조금홍보 (전문지) * 전국한우협회 주관 한우소비촉진 행사(12.30~1.6, 이마트)
1.6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 홍보 구제역 조기종식 홍보용 리후렛 배부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 백신 부작용 없고 안전함 - 백신 이후에도 방역수칙 준수 - 구제역조기종식을 위한 조치사항을 홍보 리후렛으로 제작
1.6	구제역관련 홍보활동 및 인터뷰	- KBS 특별생방송 “구제역 비상출구는 있다” (1.6 17:20~, 생방송, 축산정책관) - MBC-R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1.6 18:17~, 생방송, 검역원 역학조사과장) - KBS1-R “열린토론” (1.6 19:20~, 생방송, 검역원 질병방역부장)
1.8	홍보 및 인터뷰	KBS 심야토론: 농식품부장관, 1.8 23:10-24:50
1.12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 관련 언론 인터뷰 - KBS-1TV 뉴스라인 생방송 출연(장관, 21:15~23:30) -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 (2차관, 7:30~7:42)
1.13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방역관련 언론 홍보 - MBC-TV 100분토론 생방송출연(축산정책관, 1.13 4:10)
1.14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방역관련 언론홍보 - MBC-TV100분토론 생방송출연 축산정책관 1.14 00:10~01:50) - MBC-TV 시사매거진2080 인터뷰 질병방역부장 1.14 15:00) - 1.23 23:00 보도

일자	제목	홍보내용
1.15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방역관련 언론 홍보 - KBS-TV 9시 뉴스 인터뷰(축산정책관 등, 1.15 14:00) - 예방백신의 효과, 국내도착 백신검수현장 (인천공항 등)
1.20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 방역관련 언론 홍보 - 월간 서울매거진 대면 인터뷰(장관, 1.20 15:00~15:30)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구제역 방역대책 인터뷰
1.21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관련 중앙지 전문지 홍보 지속 추진
1.25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 방역관련 언론홍보 - (브리핑)구제역 확산 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결과 검역원 역학조사과장)
1.26	홍보 및 인터뷰	백신접종 및 설 연휴 기간 방역대책 등 - KBS1라디오 “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방송출연 장관, 1.26, 18:30~18:40 생방송)
1.27	홍보 및 인터뷰	구제역 방역대책 및 물가대책 - 광주방송 방송출연(2차관, 1.28 10:00~11:00)
1.30	홍보 및 인터뷰	- 백신접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추진 중앙일간지 홍보, TV캠페인(1.26~/1개월) - 구제역 국경검역 홍보·안내용원 운영지속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위해 공항만 안내요원 채용 및 배치(94명, 6개월) -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속 트위터 및 블로그 홍보지속 (*10.12.9~)한우 자조금 홍보(전문지)
1.31	백신접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	중앙 일간지 홍보, TV캠페인(1.26~/1개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다음으로, 2011년 2월 들어서는 매몰지 관련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확산되었다. 특히 2월 초 주요 일간지에서 매몰지 관련 보도 이후에 전 매체가 환경오염 우려 등 매몰지 이슈에 집중하여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가축매몰 매뉴얼 미준수, 매몰지역 관리 부실, 수질오염과 2차 병원성 세균 감염 우려,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위협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월

15일 3개 부처(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월 말로 접어들면서 부실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주말 폭우 우려, 보상금 재정소요 등과 같은 폭로성 보도는 점차 진정되었다.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한 홍보 방향으로 중대본 구성에 맞춰 부처별 홍보 역할분담 및 통일적 메시지 유지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고 환경오염 관련 이슈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 합동으로 매몰지 일제점검 결과, 향후 보완계획 등 언론 발표, 6개 부처 합동 광고, 침출수·매몰지 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기고 등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일브리핑으로 구제역이 진정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매몰지 관련 Q&A를 배포하는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3월 들어서는 구제역 이후의 축산선진화 방안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월 24일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어 정부 합동브리핑을 실시한 후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는 총리실과 농식품부 등 6개 부처가 일간지 등 신문 102곳에 정부합동광고를 게재하였고, 장·차관 인터뷰 13회, 일간지 등 전문가 기고 7회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홍보로 특별홈페이지 개설(3.24), SNS 활용 축산선진화 의견수렴(3.29~4.25), 인터넷 캠페인(4~5월), 정책Q&A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접홍보로는 지하철행선기(1~4호선), 아파트승강기 모니터(21천여대), 위클리공감·농수협객장 등 유관기관의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였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함)은 구제역 발생 경위에 대한 역학 조사, 유입경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상세한 조사 내용을 알리기에 힘썼고 소독이나 차단방역, 구제역 질병의 특성, 공중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술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구제역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기간 중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지나치게 하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검역원은 이번 구제역 유입원인이 축산농가의 해외여행이라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들에게

출입국시 방역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켜 해외여행 신고와 소독에 협조하도록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신고율이 3월 경에는 거의 95% 수준으로 제고되어 홍보의 효과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총력을 다하여 구제역 방역과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활용하여 구제역 방역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축산과학원은 성환에 소재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자체적인 방역은 물론 방역 홍보에도 더욱 진력하게 되었다. 농수산대학에서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졸업생들에게 방역 철저를 협조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 환경부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방역과 홍보에 협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중앙부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의 헤드쿼터가 되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시켜 구제역 방역의 일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역 홍보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환경부는 특히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에 주력하였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및 수입 농축산물에 의한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담당하였다.

농식품부 산하의 민간조직인 가축위생지원방역본부는 ‘방역 위생’이라는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그리고 각종 리플릿, 문자메시지 등 대중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동원해 방역현장과 축산농가에 방역기술 정보나 축산농가 방역수칙 등을 알리기에 힘썼다.

방역 홍보활동은 중앙 가축방역기구에 의한 전국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의 주민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도 이루어졌다. 특히 축산관련단체인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사료협회, 동물약품협회, 기타 축산물 생산자단체들도 소속 지부나 회원사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전달, 홍보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역 프로그램을 홍보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림 3-10> 구제역 방역 홍보 정기간행물



<그림 3-11> 구제역 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 구제역을 조기종식하고 빠른 청정국 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의 필요성**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는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마을차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7개 시도 시군으로 확산함에 따라 구제역 조기종식과 비 발생지역으로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함 조치됩니다.

**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집중과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건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의 80% 보상
- 도축장 출하 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하여 당일 일반가축의 성별·등급별 평균가격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 보전
- 다른 농가에서 접종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형·생산자단체와 공동하여 구매를 알선하고, 지역축협에서 우선 구매도록 조치, 예방접종 가축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수매**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도축·수매 개시 원칙
- 예방접종 실시지역은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축종별·돼지(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수매 개시(1월 31일까지는 경계 지역만 적용, 2월 1일부터는 위험지역까지 적용)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500m 또는 3km 이내 매몰시 해당 농장 포함)의 파멸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한 후
  - 경계 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축종별·돼지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 경계 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예방접종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가축위생지원방역본부

## 6.2. 축산농가 방역 교육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간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은 통상적인 집합 교육보다는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사이버교육이나 방역 현장에서의 교육·지도가 이루어졌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장 현장에서 방역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들도 방역 현장에서의 지도와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단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집체교육이 실시되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월 들어 시·군별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 연기군은 9월 20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한 농가에는 ‘가축질병 방역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가축방역 및 축산사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방역 지원 활동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축질병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는 집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추석 명절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 19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는 우체류 사육농장 경영주 약 4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본부의 역할,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과 예방대책 및 정부의

<사진 3-12> 축산농가 방역교육



출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 정책 등을 교육하였다.

<표 3-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구제역 순회교육 실적(2011.9.19~10.21)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교육인원	4,017	614	51	282	1,695	607	594	174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에서는 구제역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백신 교육자료를 14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축산농협(축협)에 배부하였다. 전국의 축협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방문교육, 집합교육 등을 통해 백신의 접종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제역 방역 활동에 전념해 온 축산 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구제역 방역 우수사례집 “구제역, 우리는 이렇게 막아냈다”(20011.5)를 발간하고, 전국의 회원농협에 배포하여 구제역 종식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은 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가축 재입식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및 전국 집합교육을 통해 축산농협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축협직원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방역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시 농가 사정에 맞게 현장에서 효율적인 방역교육이 유지되고 있다.

축산단체들도 각각 축종별 회원농장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유선통신을 이용하여 수시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산하 조직을 통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협회 도지회 및 각 시군지부 주관으로 ‘11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우산업정책설명회를 겸하여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한양돈협회는 살처분 농가 재입식 및 청소요령 교육(‘11.3.21~4.14), 상반기 돼지구제역 방역교육(‘11.4.13~8.30), 하반기 돼지구제역 방역교육(‘11.10. 1~), 한센인 방역교육(‘11.10.13) 등을 실시하였다.



**<소화>****내가 겪은 구제역**

은아목장 대표 조옥향

올해로 젓소를 키운지 31년 쯤이다. 고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이제 딸에게 대를 물려주고 싶어 후계 수업중인데, 지난 해에는 이 생각을 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아픔 나날들이었다.

구제역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안해진다. 악연으로 축산농가들의 애환덩이로 자리 잡고 있는 듯 싶다. 처음으로 구제역이라는 질병을 알게 된 것은 1996년경인가? 미 군납 우유를 납유회사와 준비하는 중에 중국과 한국과의 거리상 이유로 미발생국가라는 것은 인정받는데 장장 1년 여를 끌면서 협의를 하던 때였다. 그러다 10여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로 진압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목장에서 방역만 하면서 애간장을 녹이며 어서 진압이 되어 우리 목장에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아무도 구제역의 증세를 본적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소가 침을 질질 흘리기만 해도 유두에 추위에 터지고 갈라져도 가슴이 쿵광거리고 손발이 후들 거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는지 막막 답답기만 하고 두렵기만 했었다. 그러다 2010년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1월과 4월 그리고 다시 11월에 구제역 발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설마설마 하였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번에도 쉽게 잡히리라 생각을 했지 내가 사는 곳까지 불어 닥칠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였다.

경상도 안동 지역이면 우선 그 전 발생 지역보다 거리가 멀어 안심을 했고, 남의 목장 출입을 자제하고 방역만 신경쓰면서 쉬 진정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2월 26일 언론 상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병이 기사화되고부터는 아찔하고 어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답답하기만 하였다. 우리 목장과 불과 1.5km 산 넘어 한우농가가의 송아지가 양성 판단을 받았고, 목장에 소를 긴급 도살을 했다는 보도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래져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외부와 출입을 끊고 소독을 해야 하고 매일 소들 상태를 관찰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걸려오는 전화통에 매달려 가슴앓이를 할 뿐 보이지 않는 병원균과의 전쟁을 겪는 일에 안절부절 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행정관청에 문의를 하고 지시 사항대로 대처를 하였다. 목장이 이동제한이 걸려 집유회사에서 집유차도 오지 않고 사료차나 조사료차도 못들어왔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된 작은딸 그리고 남편과 큰딸이 풀과 사료를 실으러 눈길을 다녀야 하였다. 의사도 왕진이나 약품을 사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다행히 소들이 급하게 아픈 일 없이 잘 견뎌 주었다.

이웃농장 방문도 자제했고 농가들 교육이나 모임도 다 취소하였다. 목장체험도 일정을 최소화하고 외국여행사에는 군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발송해 사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일상이 불편했지만 어찌는가 상황이 전시상태처럼 위급하고 불안한 것을. 내 목장에서 발생해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손해를 줄 것이 우려되어 어떻게든 구제역 병원균이 발현되지 않기만을 소원하면서 적극 행정에서의 보도 자료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상황판단을 했고, 검정회 농가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였다.

들려오는 뒤송송한 소문은 황망하고 조여 오듯이 확인되는 이웃 축산농가들이 피해와 아픔과 고통 속에 콩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뽕뽕 얼어 붙는 추위 속에 소독약만 틀어 댈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태우고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 하였다. 이웃 축산농가들이 속절 없이 쓰러져 가는데도 생때 같은 가축을 파 묻고 죽이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변변히 위로조차 못하고 사는게 사람이 살 짓인가 싶었고, 행여 내 집에서 그런 황망스러운 고통의 시간이 닥칠까 전전 궁궁하면서 이 직업이 죽도록 싫어 목장을 폐업하고 싶기도 했었다.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신의 도우심을 기도할 뿐 소들이 자식 같은 소들이 잘 견뎌 주기만을 간구할 뿐이었다.

백신이 도입되고 다행히 우리 목장은 소를 죽어야하는 화는 면했지만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당했고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 지금도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매일 퍼 붙는 눈속에 눈길 치우고 뽕뽕언 소독약 녹이면서 소독하고 석회 뿌리고 행여 소에게 이상 징후가 발현될까 가슴 조이던 지난 겨울이 기억조차 하기 싫고 닥칠 겨울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난 겨울 구제역은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고통을 주었지만 다시는 이런 아픔과 환란은 없었으면 한다. 평생 자식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길러온 가축들을 잃고 실의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딛고 재기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살면서 이젠 축산농가들이 질병과 방역의 대처하는 능력과 방안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산학연 모두 역할을 분담하고 제도화 전문화되어 우왕 좌왕, 네탓 내탓이 아닌 체계적인 대처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사육두수가 늘어 목장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목장 관리인은 이제 대부분 외국인인데 외국과의 잦은 왕래 등으로 방역을 어찌 대처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나 농가 지도교육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뼈 아픈 고통을 교훈으로 구제역 만연하는 가축질병에서 벗어나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젖소를 키우고 싶다.

## 7. 방역조치 해제

### 7.1. 이동제한 해제의 추진경과와 내역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 5항에는 위험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을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여 방역을 한 경우와 예방접종을 았고 방역을 한 경우를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1)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해제한다. 다만 2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 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해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의 이동제한 규정은 이번 구제역 방역시 여러 차례 조정하여 실시되었다. 2010년 12월 25일부터 발생지역과 주변의 소에 제한적 구제역 예방주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1년 1월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전파되자 1월 13일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게 전면 예방주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이동제한 해제조건을 조정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자별 중요 조정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1월 12일 방역당국은 구제역 예방접종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대상을 변경하였다. 발생시·군 전지역의 소를 예방접종할 때, 당초 발생시·군 전지역의 소를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을 조정하여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소에게만 이동제한을 적용토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1월 17일에는 이동제한 해제기준을 전국의 시·도에 통보하였다.

2월 10일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별로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형성 상태를 감안하여 이동제한 해제 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즉, 조정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하여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 매몰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단위로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제 1차 접종 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검사 여건을 반영하여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하였다.

혈청검사 방법은 기존에 방역지역 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 이상이던 것은 조정하여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로 하였다.

따라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임상증상 포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된다. 또한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이 허용된다. 구제역 발생

<사진 3-13> 가축 재입식을 위한 축사 청소(홍천)



출처: 연합뉴스(2011.4.4)

농장 중에서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 후 발생 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후에 임상·혈청검사를 거쳐 해제된다.

2011년 2월 15일에는 전국 71개 구제역 발생 시·군 중에서 대구 북구(완전해제), 경기 일부(가평, 광명, 시흥), 충북 일부(청원), 경북 일부(의성) 등 6개 시군에서 2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2월 15일 현재 이동제한에 처해 있던 지역은 소가 64개 시·군, 돼지가 65개 시·군이였다.<표 3-22>

이들 지역은 2011년 2월 15일 이후에 시·군별 이동제한이 점차 해제되었으며 일자별 해제 현황은 <표 3-23>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2011 4월 3일 충남 홍성군의 돼지농장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양성축이 발견되어 부분 매몰한 농장은 농장별로 이동제한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으며, 4월 3일 전국의 부분 매몰농장(대구, 경기, 강원, 충북) 1,128개소 중에서 소 농가 468개소, 돼지 농가 535개소, 기타 가축 1개소가 남아 있었다.

2011년 3월 26일에 부분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종전 절차:** 해당농장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검사, NSP(비구조단백질, 구제역바이러스 감염항체로 예방접종 가축에서는 검출되지 않으나 자연감염된 돼지에서만 검출됨)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소, 사슴, 염소는 전두수, 돼지는 모돈은 전두수, 비육돈은 돈방별 3두 이상을 검사한다.

**조정 절차:** 해당농장 마지막 매몰 3주후 축종별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소, 사슴,염소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농장당 16두), 환경검사를 하고 돼지는 임상검사와 환경검사를 한다. 환경검사라함은 농장 분변, 사료통, 축사바닥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항원(바이러스)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제역 양성 가축의 이동·출하에 대하여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NSP 양성축 및 동거축만 도축장 출하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동제한 해제 후에는 소, 사슴, 염소는 NSP 양성축의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며, 동거축은 농장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허용한다.

<표 3-22> 구제역 발생 및 이동제한 해제 시·군 현황(2011.2.15)

시도별	발생 시·군	이동제한 해제 시·군		잔여 시·군	
		소	돼지	소	돼지
부산	사하구(1개소)	-	-	사하구	사하구
인천	강화,서구,계양(3개소)	-	-	강화,서구,계양(3개소)	강화,서구,계양(3개소)
대구	북구(1개소)	북구	북구	-	-
대전	동구(1개소)	-	-	-	동구
경기	연천,양주,파주,고양,포천,김포,가평,여주,양평,이천,남양주,광명,외정부,용인,안성,화성,평택,동두천,시흥(19개소)	가평,광명,시흥(3개소)	가평,광명,시흥(3개소)	연천,양주,파주,고양,포천,김포,여주,양평,이천,남양주,외정부,용인,안성,화성,평택,동두천(16개소)	연천,양주,파주,고양,포천,김포,여주,양평,이천,남양주,외정부,용인,안성,화성,평택,동두천(16개소)
강원	횡성,대화,화천,춘천,원주,철원,홍천,양구,강릉,양양,삼척,영월,고성(13개소)	-	대화(1개소)	횡성,대화,화천,춘천,원주,철원,홍천,양구,강릉,양양,삼척,영월,고성(13개소)	횡성,화천,춘천,원주,철원,홍천,양구,강릉,양양,삼척,영월,고성(12개소)
충북	충주,괴산,진천,음성,청원,제천,증평(7개소)	청원(1개소)	-	충주,괴산,진천,음성,제천,증평(6개소)	충주,괴산,진천,음성,청원,제천,증평(7개소)
충남	공주,아산,천안,보령,당진,예산,연기,홍성,논산(9개소)	-	-	공주,아산,천안,보령,당진,예산,연기,홍성,논산(9개소)	공주,아산,천안,보령,당진,예산,연기,홍성,논산(9개소)
경북	안동,예천,영주,영덕,봉화,의성,영천,영양,청송,경주,포항,상주,문경,울진,경산(15개소)	의성(1개소)	의성(1개소)	안동,예천,영주,영덕,봉화,영천,영양,청송,경주,포항,상주,문경,울진,경산(14개소)	안동,예천,영주,영덕,봉화,영천,영양,청송,경주,포항,상주,문경,울진,경산(14개소)
경남	김해,양산(2개소)	-	-	김해,양산(2개소)	김해,양산(2개소)
계	71개소	6개소	6개소	64개소	65개소

<표 3-23>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일자별 현황

일자별	발생시군수	해제 시·군		잔여 시·군	
		소	돼지	소	돼지
'11.2.21	73	32	19	38	54
2.27	75	48	31	23	44
3.10	75	64	48	7	27
3.20	75	70	70	1	5
3.26	75	71	73	-	2(보령,홍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7.2. 가축 재입식

2011년 2월 중순경 전국의 구제역 발생 시·군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시작하여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구제역 살처분 매몰농장은 종전의 규정(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요구되던 입식시험 없이 가축의 재입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조정된 재입식 절차는 가축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방역을 행한 모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살처분 매몰농장의 청소, 소독 그리고 철저한 환경점검을 끝낸 후 입식 시험 없이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반면, 종전처럼 예방접종을 앓고 방역을 한 경우에는 청소, 소독, 점검 및 입식시험을 하도록 하였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전국 75개 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총 6,250농가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으므로 이 들 농장에 대해 전부 종전처럼 입식 후 임상관찰이나 혈청검사 등과 같은 입식시험을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농장점검과 검사를 위한 인력 확보도 어려웠고 시간도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농장의 생산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입식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 대신 청소와 소독, 그리고 축사환경의 바이러스 오염 잔존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하여 입식 후 구제역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2011년 8월 말 현재 전국 각 시·도의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상황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살처분을 실시한 도내 19개 시·군 1,881개소의 농가 가운데 71%인 1,339개 농가가 재입식을 앞두고 축산위생연구소의 위생검사를 완료했으나 그 중 504개 농가(전체 살처분 농가의 27%)만이 재입식을 끝냈다고 보도하였다. 재입식을 하지 않은 농가 940개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조사한 설문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입식 후보 가축의 가격 급등(모돈)과 가축가격 동향의 변동(한우) 때문인 것으로 많은 농가가 가축가격 동향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구제역 살처분 매몰이 끝나고 이동제한이 해제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재입식을 앞두고 많은 축산농가가 인근 주민들의 재입식 반대에 직면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대규모 양돈장의 분노에 의한 상수원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이며 그 외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 시·군 당국은 주민들의 요구와 양축농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입식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현상은 현재의 열악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의 허가제, 청정환경 축산업의 정립 등에 의해 축산업의 선진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미래의 시점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3-14> 구제역 살처분농장 돼지 재입식 반대 현수막(횡성)



출처: 동아일보(2011.4.6)



**<해설>****백신 청정국 유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조옥현

구제역은 국가간 축산물 교역관계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청정국 유형과 유형별 구비 요건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고 있으며, OIE의 심사 과정을 거쳐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국제적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청정국 유형 및 구비 요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구비 요건								
① 정기 예방접종 (가축 80% 이상) ② 최근 2년간 구제역 비발생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없음 ④ 지속적인 예찰 등 방역 추진	신규 신청	OIE 본부	(정례 회의)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	(YES) 총회 추천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MS)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등재

둘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구비 요건								
① 최근 1년 구제역 비발생 ② 최근 1년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③ 최근 1년간 예방접종 미실시 ④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 도입하지 않음	신규 신청	OIE 본부	(정례 회의)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	(YES) 총회 추천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MS)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등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여건상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2~3년간 예방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1단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2단계로 국내 방역 여건과 주변 국가의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

우리나라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해 매년 80%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② 청정국 신청 전 최근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③ 최근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과 ④ 정기적인 예찰활동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2011.4.20, 경북 영천) 이후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청정국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가 되면 2013년 4월 20일에 청정국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그 이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철저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소독·예찰활동 및 외부인 통제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외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철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다음에는 OIE 규정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 1년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순환되고 있지 않다는 증명과 예방접종 중단 후 외국으로부터 예방접종된 가축을 수입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청정국 지위의 획득이 가능하다.

축산업계에서도 우려하듯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예방접종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구제역 청정국가로부터 축산물 수입 요구가 있을 경우 불리한 입장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하지만, 그 시기는 국내 방역여건, 주변 국가들의 구제역 확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문가, 축산단체 및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고 축산 농장에 대한 일제소독, 외부인 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와 해외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국경검역 조치 등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도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구제역이 재발되면 축산업의 근본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각종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로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제4장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역 활동

### 1.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 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0년 12월 23일 강화군 양도면의 돼지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12월 26에는 서구 오류동의 돼지농장, 2011년 1월 6일에는 계양구 갈현동의 젓소농장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2011년 1월 29일 이후에는 추가발생이 없었다.

인천에서는 2010년 4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방역대책 본부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주의 및 경계 단계에는 시청 농축산유통과가 담당하였으며, 심각 단계 때는 시청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구제역 방역에서 잘한 점은 무엇보다도 지난 해 경험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차단방역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12월 23일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문 예찰 258회(3,517농가), 전화 예찰 15,642농가, 문자메시지 예찰 21,056건, 혈청 예찰 2,788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체 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하여 도축장, 농장 등 2,135농가의 소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도축장에 가축 방역관 지정 및 출입자 소독기 배치 등 도축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다. 특히 동절기에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70% 알코올, 데톨스프레이와 휴대용 손스프레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환경하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

<사진 4-1>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출처: 뉴스시스(2010.12.28)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점검 및 농장방역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하였다. 구제역 발생농장 매몰 당시 가축방역관 주도하에 원칙에 근거한 매몰 실시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매몰지 유실 등의 피해 없이 전반적으로 매몰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첫째,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관이 절대 부족하여 초기에 축산 밀집지역인 강화지역에서 전 직원이 살처분과 차단방역에 매진하다보니 서구 및 계양구에 방역지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서구에서는 대부분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다.

둘째,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의 자율방역 의식이 미흡하였다. 젓소와 양돈농가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절반 정도의 농장에서 축사 내외부 소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소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형식적 작성 등 소독 소독이 미흡한 농가가 존재하였다.

셋째, 축산시설의 노후화 및 영세농가 방역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동절기의 경우 소독설비 시설이 농가에 있어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생존능력 또한 증강되어 차단방역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영세농가의 노후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영세농가가 실시 곤란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넷째, 구제역 백신의 수입 병이 규격화(25두분)되어 있어 백신 소분시 문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돼지열병처럼 10cc(5두분)으로 소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동물 살처분 및 백신 접종 가용 인력이 지자체별로 부족한 실정이며, 동물살처분 및 백신접종 등 경험 있는 대동물 수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 1.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2011년 2월 14일 동구 하소동의 돼지농장에서 자돈 폐사 발생, 콧등, 발굽주위 수포 및 상피조직 탈락, 파행 등의 임상증상을 의심스럽게 여긴 농장주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며, 당일 구청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제역 검사를 의뢰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방역관이 임상증상 확인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동구청에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일 오후 8시에 구청장 주재로 구제역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제제한 등의 차단방역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2010년 12월 30일부터는 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방역대책상황실은 동물위생연구부장을 실장으로 총괄지원반, 현장검진반, 방역지원반 등 총 3개반 13명으로 운영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매몰지 조성에 있어 매뉴얼보다 강화된 매몰 작업으로 주민과 마찰을 줄이고, 참관한 주민도 만족하는 매몰지를 조성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대전광역시는 매몰지에 가스배출관 30개, 침출수배출유공관 3개, 주변관측정 4개, 경고표지판 1개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반(T/F팀 / 환경+재난+축산 참여) 구성 운영, 야생동물 접근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통장)을 지정 즉시 보고 체계 구축, 매몰지역 주변 상수도 공급, 매몰지 주변 가구(131가구)에 상수도 우선 공급 등 과학적인 매몰지 관리와 철저한 예찰

로 구제역 차단 및 주민 불안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대전광역시의 방역활동 중 또 다른 잘한 점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중앙부처의 가축방역 예산 지원 등을 꼽는다. 반면, 방역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구제역 발생증임에도 발생지역 여행, 자우·자돈 구입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방역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는 2011년 4월 17일 북구 연경동의 김모씨 한우농가에서 의심축이 발생하였다. 이 농가는 축사 1동에서 110마리 거세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1월 17일 오후 5시 10분경 거품섞인 침흘림과 보행불량 개체를 발견한 축주가 북구청 경제과로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고, 즉시 북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심신고 접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긴급 조치로 축사 내·외부 소독 및 관련물품 반출 금지, 과거 21일간 가축이동 및 출입자 등 역학조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방역관 1명 농장내 상주 등 출입구 폐쇄·출입통제, 축주 관리인 및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뒤, 즉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기까지는 방역대별로 농가현황을 파악하여 방역대 10km 이내의 277개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 없음을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보고하고,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수의과학검역원과 타 시도에 통보하였다. 동시에 장비·약품 조달계획 수립 및 공무원 비상동원령을 발령하고, 다음 날 오전 제50사단, 대구지방경찰청에 방역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비축 소독약품 5톤을 긴급지원하고, 긴급방역비 1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다.

동시에 북구 연경동 구제역 의심축 발생관련 언론브리핑이 18일 10시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4시 40분경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RT-PCR, ELISA 검사에서 3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즉시 2일에 걸쳐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장통제본부 설치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한 뒤, 1월 28일에는 살처분 보상금의 50%인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후 2월 28일 동구 사북동 서모씨의 돼지농장에서 임상증상 발현축이 발생하였다는 의심신고를 접수하였다. 이 농장은 2개 축사에서 1,98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였다. 축주가 오후 1시 10분경 동구청 경제과에 신고하고, 즉시 관련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하였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 2명이 현지출장을 가 확인한 결과 발굽궤양, 파행 등의 증상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소견을 농식품부와 검역원에 보고하였다. 3월 2일 오후 2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성 통보를 받기까지, 긴급 조치들은 앞의 북구 연경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방역활동 조치와 같았다.

대구광역시의 구제역 방역활동 특징은 대구시 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북 안동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후, 경북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던 구제역이 12월 15일 경기도 양주·연천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관내 차단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인 '대구광역시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를 강화 구성, 운영하였다.

대구광역시 구제역 방역조치 중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위기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위기경보 발령(주의) 전파,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등 비상방역체계 가동, 신속한 현지(역학)조사 및 정밀진단 조치, 축사 등 감수성가축 관련시설 출입통제 강화,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예찰, 소독의 생활화, 위험지역산 가축입식과 무분별한 투매가 없도록 철저한 농가 지도, 시·구·군 경계지역 및 발생지역 진출입 주요도로 방역대 설치와 운영 및 구·군별 살처분 등 매몰지 확보 등 사전준비,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 홍보활동 강화, 소비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 강화 등이었다.

대구광역시 방역활동 중 특징적인 점은 발생농장 입구에 이동통제 초소반, 소독 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통제초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운영하며, 대구광역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현장방역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매몰지와 관련한 특이사항으로는 전국 최초로 동구 사북동 구제역 매몰지 시설하우스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였고, 남구 구제역 예방 ‘쌀뜨물 EM발효액’을 청도군 및 대구 북구청, 경산 축산 농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구제역 약제살포 등 관련 군 제독차량(K2 공군기지) 1대를 북구에 지원하였으며, 북구 야생동물 접근차단을 위한 펜스 설치, 대구은행 구제역 관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실시, 시, 구·군, 대구축산농협 주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청정축산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을 든다.

구제역 방역 평가 결과 잘한 점으로는 첫째, 농장주의 신속한 신고, 둘째, 군·경·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통제, 셋째, 구제역 확진이전 임상증상 발현축을 살처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조기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의 초동대응 조치, 넷째, 시, 구군 간부 공무원의 현장 지휘 통제로 일사 분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든다. 또한, 다섯째, 비상시를 대비한 방역물품 비축과 긴급 방역비 신속 확보 지원으로 비상방역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으며, 여섯째, 발생지역내 피해농가 조기 보상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적극적인 협조 유도, 일곱째, 의심축 발생상황, 방역조치사항, 지원대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 등 적극적인 언론대응으로 잘못된 보도 최소화 및 시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 여덟째, 달성군 소재 인공수정센터의 경우 발생지역 종돈 반입금지 등 구제역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 북구소재 사료공장의 경우 자체 소독시설 강화운영 및 고객농장 소독용 차량을 운영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 북구소재 도축장의 경우 출입차량 소독용 자동소독시설을 2층으로 설치하고, 작업장내 소독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등 소독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협조 등도 꼽는다.

한편, 구제역 방역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 의심신고 초기 대응 미흡,

<사진 4-2> 매몰지 비닐하우스 설치



출처: 대구광역시청



2) 장비·인력동원 계획, 통제초소 설치 장소 등 비상시를 대비토록 하였으나 사전 준비 미흡, 3) 농장 출입자(출하반, 백신접종팀, 유통상인), 가축사료, 분뇨 등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관리 미흡 등이 꼽힌다.

####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는 2011년 2월 25일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백모씨 돼지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되었다. 이 농가의 사육규모는 축사2동에 178마리로 모돈 60두, 자돈 52두, 비육돈 66두이다.

2월25일 오후 3시경 축주가 돼지 178마리 중 모돈 5두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축을 신고하여 긴급조치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지출장하여 모돈 6두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였다. 이어 즉시 시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였다. 동시에 매뉴얼에 입각하여 조치를 취했다. 특히, 위험지역(3km이내)의 10농가 6,625두에 대해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인근 농장 및 타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환축발생농장 전두수를 예방적 살처분하였다. 발생농장 인근 지역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추가설치 및 2개소의 도로도 폐쇄하였다. 긴급 돼지 2차 예방접종 완료한 것은 2월 25일부터 이틀간에 이루어졌다.

구제역 양성통보를 받은 것은 2월 26일이었으며, 즉시 위험지역 내의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환적장을 언양가축시장에 설치하였다. 동시에 발생농장 주변(위험지역 내) 농가 매일 예찰 및 소독실시, 발생농장 정액공급 차량 방문 역학관련 농장(2개소) 이동제한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오전 삼남 지역 인근농가인 상천 정모씨, 돼지 1,200두중 모돈 2두 의심증상(자돈 11두 폐사)이 신고되고, 3월 3일 구제역 양성통보를 받았으며, 3월 2일 삼남 가천 강모씨 돼지 178두 중 모돈 1두 의심신고, 3월 3일 삼남 상천 김모씨 돼지 10두중 3두 의심증상, 의심축 신고, 3월 4일 상천 돼지 4농장 유씨농장 3100두 중 36두 의심증상 신고, 김모씨 비육돈 210

두중 10두, 김모씨 비육돈 200두중 1두, 손모씨 비육돈 150두 중 5두 등 36두 의심증상이 추가로 신고되어 이 중 3농가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울주군 구제역 방역조치 중 특징적인 것은 2월 26일부터 7월 9일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매몰지를 점검하였다는 점이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구제역 방역평가 중 잘한 점으로는 1) 타 지역 가축·사료 반입 금지 및 울산광역시 지역 가축 반출 금지 조치, 2) 경북 안동 최초발생 이후 즉시 주요도로 방역초소(6개소) 신속 설치 운영, 3) 주민과 행정의 합심하여 마을단위 자율초소 운영(16개소), 4) 민·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발생 상황 전파를 통한 확산 방지, 5)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현장투입, 농가 출입통제, 인근도로·발생농장 주변 및 마을 소독, 감염축 살처분 등 적극적인 초동방역으로 추가확산 방지에 기여, 6) 경찰, 마을주민, 축산농가 협력으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마을의 주요 진입도로 26개소를 자율 폐쇄 하여 구제역 확산 및 전파방지에 기여, 7) 일반 매몰지 1개소를 제외한 5개소는 원통형 저장조를 활용하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원천 차단 등을 꼽는다.

한편, 구제역 방역조치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통제초소 운영 시 소독기의 동파,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2) 방역초소를 통과하는 사료, 분뇨 등의 축산관련차량의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 소독 등 집중방역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든다.

## 1.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는 2월 6일 사하구 장림1동 이모씨의 한우 및 돼지, 염소 등 2개동에서 556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되었다. 이후 매뉴얼에 따라 발생 확인 시까지 조치사항을 운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 사하구 장림1동 이모씨 돼지농장 1동 92마리 중 27두 의심증상 신고가 있었으며, 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

를 의뢰하였다. 물론 이후의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후 발생이 없어 비교적 피해 규모는 적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통제와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활동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도심지를 끼고 있어 바이러스의 대량이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구제역 방역조치의 특징은 도심지를 거쳐 외곽지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하는 도로통제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구제역 방역평가 중 잘한 점으로는 첫째, 발생 시 초동방역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둘째,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과 이동초소 운영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꼽는다.

한편, 구제역 방역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구제역 가축 살처분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없는 공무원 투입으로 진척에 애로를 겪었다는 점을 든다.

## 1.6.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양주시 남면 상수리,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권모씨의 돼지농장(사육규모 3,041마리)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새로운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첫 신고 다음 날인 12월 15일에는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박모씨 젓소(사육규모 180마리)농장, 12월 18일에는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황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87마리), 12월 19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정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53마리), 12월 20일에는 가평군 하면 신하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71마리), 12월 21일에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오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0,533마리), 같은 날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신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31마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홍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6,781마리), 포천시 관인면 중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1마리) 등으로 계속 발생하였다. 연말연시에도 12월 25일에는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

규모 141마리), 12월 26일에는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이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5마리), 12월 30일에는 남양주군 진건읍 사능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28마리) 등으로 발생이 이어졌다.

2011년 들어서도 새해 첫날인 2011년 1월 1일에는 광명시 가학동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75마리),

1월 3일에는 의정부시 산곡동 강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57마리), 1월 4일에는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 김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197마리), 1월 5일에는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이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420마리), 1월 6일에는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이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5,900마리),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정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3,345마리), 1월 7일에는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박모씨 돼지 농장(사육규모 1,519마리),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황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1,763마리),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곽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735마리),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박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5,421마리) 등 연말연시에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1월 21일에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조모씨 염소농장(사육규모 38마리) 등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초 발생에 의한 방역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치하였다. 경기도 구제역 방역내용 중 특징적인 것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자등. 수의사 등에 대해 농장내 상주 조치를 하여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점과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대책상황실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 4개반으로 편성하여 33명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단계별 대응을 하고, 상황실 비상근무조를 지속 운영하였다.

<사진 4-3>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의 구제역 방역활동 중 잘한 점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및 환경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2월 5일부터 5일간 200개팀 540명이 동원된 가축매몰지 전수 조사, 2월 26일부터 2일간 구제역 발생 18개 시·군 2,233개소에 호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때 점검결과 배수로, 유공관, 관측정 등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며, 침출수, 악취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3월 16일부터 2일간 팔당수계지역 6개 시군(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592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309명이 동원되었다. 점검결과, 배수로 정비 및 매몰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매몰지 현장 경고표지판과 도의 현황과 불일치(주소지, 매몰두수, 연락처 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5월 18일부터 14일간 1,190소를 대상으로 장마대비 중앙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57개소에 대해 정비보완을 요구하였다. 5월 24일부터 3일간은 2,273개소에 대해 922명을 동원하여 가축 매몰지 정기점검을 실시, 배수로정비, 추가성토 등

<그림 4-1> 경기도 가축매몰지 관리시스템



출처: 경기도청

259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5월 31일부터 4일간은 가축 매몰지 정기점검을 실시, 배수로정비, 추가성토 등 100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어 6월 7일부터 3일간에도 가축 매몰지 정기점검을 실시, 배수로정비, 추가성토 등 77건을 지적하고, 6월 14일부터 3일간 실시된 가축 매몰지 정기점검에서도 배수로정비, 추가성토 등 62건을, 6월 21일부터 3일간 실시된 가축 매몰지 정기점검에서는 배수로정비, 추가

성토 등 60건을 지적하였다.

한편, 경기도의 구제역 방역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제역 감염 초기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오진할 수 있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타 질병검사 의뢰 시에도 수시 검사 가능하도록 정밀검사 권한 조기 지방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밀검사 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다.

둘째, 구제역은 대량 발생으로 특히, 가축방역관, 안락사약품, 장비 등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발생 후 48시간 내에 살처분 대상농가 15개소 이상 처리할 수 있는약품, 장비와 인력 등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한 민간 수의사 사전 계약제도를 도입(보험가입, 시술비 지원 등) 하는 등 지역 실정에 알맞은 경기도 위기 대응 매뉴얼 계획 수립에 노력하였다.

셋째, 백신접종 사용 의사결정이 늦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백신접종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10km 내 접종대상에 필요한 접종인력(사전 편성 또는 계약), 백신운송 차량, 물품 등 시군별 사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넷째, 살처분가축의 매몰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3년간 사후관리, 많은 인력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살처분가축 처리를 위하여 이동식소각기 및 이동식열처리기 장비 도입 및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섯째, 매년 현지 또는 웹사이트상에서 가상훈련을 실시하나, 단계별 방역 조치의 흐름 위주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여, 축산농가 등의 정기적인 교육과 의사소통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시군,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상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별 위기대응 및 초동 방역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축산농가 등의 구제역 방역교육 의무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축종별 협회를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구제역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해, 국비 15억 원, 도비 15억 원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구제역 정밀검사 실험실 건립을 추진하였다.

## 1.7. 강원도

강원도에서는 2010년 12월 21일 평창군 대화면 신2리 김모씨 한우농장(육규모 1개동 26두)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 왔다. 같은 날 화천군 사내면 명월1리 이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5두)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춘천시 남면 가정리 유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56두), 원주시 문막읍 취병2리 원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3개동 96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이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2개동 27두)에서, 23일에는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55두), 횡성군 서원면 유현3리 최모씨 소농장(사육규모 2개동 젖소 92, 육우 3, 한우 1 총 96두)에서, 24일에는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4개동 280두), 27일에는 춘천시 동면 상걸리 신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11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2리 최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6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엄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3개동 120두)에서, 29일에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심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5개동 13,407두)에서, 30일에는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최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4개동 1,622두), 31일에는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황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46두)로 2010년에만도 이곳저곳에서 15건이나 신고되었다.

2011년 들어서도 1월 1일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황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59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길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96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김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23개동 12,717두), 2일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71두), 3일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박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2개동 194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이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37두), 4일에는 춘천시 남면 추곡리 정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35두), 양양군 손양면 삼존리 김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2,968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김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8개동 36,938두), 6일에는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15두), 7일에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성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20개동 8,556두), 8일에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이모씨 농장(사육규모 젖소 440, 한우 203, 육우 177, 면양

142, 산양 48, 총 1,010두), 9일에는 춘천시 서면 방동리 조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25두), 10일에는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조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6개동 1,149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전모씨 농장(사육규모 한우 37, 염소 9, 총 46두), 18일에는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김모씨 농장(축협생축장, 사육규모 한우 358두), 영월군 수주면 무릉1리 이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개동 75두), 19일에는 횡성군 둔내면 현천3리 최모씨 한우농장(축산기술연구센터, 사육규모 8개동 487두), 21일에는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전모씨농장(축협 생축장, 사육규모 한우 86두) 등 총 강원도 거의 전역에서 33건의 지속적인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강원도는 매뉴얼에 따라 긴급조치 사항 및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발생 확인 시까지 의사환축 발생사실 검역원, 타 시도 통보, 방역대 설정 및 감수성 가축 사육현황 조사, 도 가축방역관 구제역방역대책본부 파견, 검역원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협조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는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 최초발생 확인 시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방역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고, 12월 15일 경기지역 확산으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 강화 운영하였다. 또한 12월 21일 도내 발생에 이어 12월 29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하였다. 방역대책반은 총 4개반 53명으로 구성하여 소독부터 매물처분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치들에 만전을 기하였다.

강원도 구제역 방역조치의 특징은 구제역 발생관련 의심축 신고, 농장 임상검사 등 구제역검색 활동을 활발히 하고, 구제역 조기검색·종식을 위한 검사·

<그림 4-2> 구제역 방역 포스터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예찰 활동 그리고 소, 돼지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도축장, 취약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및 매몰지 관리를 위해 10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강원도의 구제역 방역조치 중 잘한 점을 꼽는다면, 첫째,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체계적 방역추진 및 사후관리 총괄을 들 수 있다.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제1군 사령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농협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참여 협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시군의 자발적인 이동통제초소 확대 설치·운영으로 확산을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발생지, 축사밀집지역, 고속도로 TG, 도 및 시군 경계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 통제 강화로 확산 차단 및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원활한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244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 넷째,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송아지 매매일선제 추진, 다섯째,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차를 동원하여 축사 밀집지역 및 발생지 주요도로 소독, 여섯째, 도축장 검사관 증원 배치로 소독·통제 등 방역, 생·해체 검사 등 강화, 일곱째, 지역별 사료전용운반차량 지정 및 위험·경계지역 고정 배치 운영, 여덟째, 겨울축제 등 행사 취소 및 관광숙박 시설 방역강화로 확산 차단에 이바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주관 “우리마을 지키기 운동” 전개로 마을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 언론대응으로 오보 최소화 및 도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민·관·군·경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총력 대응, 도, 시군 간 부 공무원 현장 지휘 통제로 일사분란한 방역조치, 피해농가 조기 극복 위한 신속 보상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실사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조정 등은 특징으로도 꼽을 수 있다. 특히, IOC 실사단 동선에 위치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일시 조정(철거 및 재설치), 실사 전·후 가용가능한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소독 실시 등 구제역 방역 우려를 해소한 것은 타 시도와는 다른 특징적인 업무에 속한다.

한편, 강원도의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꼽는다. 첫째, 혹한기 발생으로 인해 긴급방역 원활한 추진 어려움, 둘째,

구제역 심각성에 대한 일부 축산농가 및 기초단체장 방역의식 부족, 셋째, 정부 지침 잦은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업무혼선 및 농가 불신, 넷째, 백신접종 결정권 시장·군수 부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백신접종 최초 결정과정 혼선 초래 및 결정에 오랜 시간 소요, 다섯째, 발생초기 시군 축산부서 가축방역 담당자에게 구제역 방역업무가 집중되어 체계적 초동방역 어려움 초래 발생, 여섯째, 구제역 SOP상 이동통제초소 설치 규정이 불분명하여 방역 상 결정이 아닌 여론 주도형 방역초소 설치 등 비효율적 운영사례 다수 발생, 일곱째, 일부 시군 축산부서에 축산·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행정·농업 등 비전문가를 직원으로 배치하여 체계적 방역추진 애로 및 혼선 초래 등이 지적되었다.

## 1.8.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 12월 26일 충주시 양성면 중전리 성모씨 소농장(사육현황 한우 135, 육우 116두 등 총 251두)에서 1두에 대해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최초발생농장으로부터 16일 후인 2011년 1월 11일부터 2월14일까지 충주지역에서만 총 61농가에서 추가 발생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유입요인으로는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만연된 구제역의 침습전염으로 추정되며, 축산 밀집지역인 주덕읍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였다

2011년 1월 3일에는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장모씨 돼지농가(사육규모 2,700두)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1월 7일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연모씨 농장(한우 33두), 10일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김모씨 농장(돼지 450두), 16일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김모씨 농장(한우 186두), 18일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정모씨 농장(돼지 6,000두), 20일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강모씨 농장(한우 19두), 22일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이모씨 농장(돼지 1,874두), 2월 4일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배모씨 농장(한우 26두), 8일 괴산군 칠성면 읍원리 김모씨 농장(돼지 600두), 11일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김모씨 농장(염소 100두)에서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

진천지역에서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1년 1월 4일이었다.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이모씨 농장(돼지 8,500두)에 이었다. 초기에는 문백면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성지역, 증평지역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진천군 초평·광혜원·덕산면까지 추가로 침습된 경향이 있었다. 2월 28일까지 지속 발생하여 총 49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하였다

음성지역의 첫 발생 신고는 1월 5일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김모씨 농장(한우 10두 규모)와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곽모씨 농장(돼지 23,000두)이었다. 음성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경기도 안성, 이천, 여주 등과 교통 및 인적 왕래가 빈번한 지역으로, 특히 방역 상 취약지역에 해당된다. 음성에서 발생되기 이전에 경기도 울면·일죽면 등지에서 이미 구제역 발생이 많았으며, 특히 이들 지역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삼성면에서 집중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1월 5일 발생을 시작으로 2월 8일까지 가장 짧은 기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7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양돈농가의 피해가 컸다

청원지역에서는 2011년 1월 8일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박모씨 농장(젓소 29두)에서 첫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청원지역은 도내 발생에서 나중에 발생한 편에 속하고, 발생 이전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으나, 면역형성 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채 병천~증평간 도로를 중심으로 2월 14일까지 총 39호에 전염되었다. 특히 북이면은 교통 요충지로 주로 양돈농가 중심으로 발병했다. 이는 증평군·진천 초평면 발생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에서 가축 사육이 가장 많고 밀집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 발생율이 낮았으며, 특히 청원군 남부지방에 속하는 가덕, 남일, 문의, 미원 등지까지 전염이 되지 않고 큰 피해를 예방하였다.

제천시에서는 2011년 1월 15일 제천시 송학면 도하리 유모씨 농장(한우 8두)에서 첫 의심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2월 23일까지 18개 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하였다. 제천시 남부지역인 봉양, 금성 등지 추가 발생으로 관내 박달재 LPC가 강원, 경북지역의 발생농가와 상당한 역학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 방역으로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평지역에서는 2011년 1월 15일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연모씨 농장(한우

41두)에서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2월 2일까지 증평읍 연탄리 등 양돈단지까지 확대되어 총 19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나 가장 먼저 종식되었다.

청주지역에서는 2011년 2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김모씨 농장(돼지 1,100두)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추가발생은 없었다.

충청북도의 구제역 방역과정의 특징은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다. 매몰지 사후관련 조치 및 일제점검 결과,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및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축산과-4568호, '11.2.7) 등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 돼지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하는 등 예찰활동이나 방역활동 모든 측면에서 공무원, 관련기관, 농가, 수의사, 축협 등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사진 4-4>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출처: 충청북도청

충청북도의 구제역 방역평가에서 잘한 점으로는, 1) 초기 안동 발생시 선제적 도 경계지역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하여 농가별 자율방역 의식이 고취되었고, 2)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회 방역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3) 시군별 공동소독소 운영으로 기존의 길거리 소독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4) 구제역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전 공무원 및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였으며, 5)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 조기에 판단하여 피해확산을 최소화로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든다.

한편, 구제역 방역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 충청북도의 지리적 여건상 방역에 취약한 지역이고, 예년과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접종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2) 여러 시군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자체적으로 지적되었다.

## 1.9. 충청남도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 1월 1일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최모씨 농장(젓소 73두 규모)에서 첫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 같은 날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 박모씨 농장(돼지 3,500두 규모), 2일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정모씨 농장(사육규모 돼지 23,000두, 한우 44두),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박모씨 농장(사육규모 젓소 66두, 한우송아지 3두), 5일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이모씨 농장(사육규모 돼지 7,840두)까지 정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잠시 뜸하다가 17일에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차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3,000두),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또다른 차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25두), 20일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임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8두),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김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44두), 21일 아산시 음봉면 신희리 임모씨 한우농장(사육규모 103두),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현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1,400두), 24일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백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모돈 116두)로 확산되었다.

그 후 1월 31일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정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4,300두, 6개동), 2월 1일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이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3,754두), 5일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축산과학원 농장(사육규모 돼지 1650, 젓소 354두)으로 번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가 다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이중 대부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13일 만인 18일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이모씨 돼지농장(사육규모 500두)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게 하였다.

충청남도 방역의 특징은 특히 천안시 성환읍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감염에 따른 조치들이었다. 국가 종축개량의 산실이 감염된 만큼 해당 조치 또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방역과정 중 잘한 점으로는 1) 암롤박스 및 CO<sub>2</sub> 가스를 이용한 돼지 안락사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2) 구제역 SOP 개정시 동 방법을 수록하고, 3) 2월 2일 구제역 임상 발현농가를 대상으로 호기·호열성 사체처리 방법을 시범 공법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을 든다.

구제역 방역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 대규모 발생으로 인한 매뉴얼의 잦은 변경으로 일선에서 혼란을 초래하였고, 2) 지방방역기관에서 항원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신속한 초동방역이 지연되었으며, 3) 살처분 가축 매몰방법에 대한 SOP 미비로 원통형 저장조 등 기타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 애로가 있었

다는 점들을 든다. 또한, 4) 2010년 구제역 발생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의식이 부족하였고, 5) 사료차량, 축산관계자 등이 농가 방문 시 통제·소독 등 자율방역조치도 미흡하였으며, 6) 타 지역 가축의 도축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4-5>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출처: 홍성군청

## 1.10.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단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라북도의 구제역 방역활동 중 잘한 점으로는, 첫째, 신속하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조치로 전북 구제역 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였으며, 둘째, 도내 구제역 방어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든다. 이를 통해 청정 축산물 이미지 구축으로 직접 생산액 약 4,062억 원, 부가가치 약 1,827억 원, 고용유지 9,936명의 경제적 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계산되었다(전북발전연구원).

한편, 구제역 방역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 시·도간 확산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IC에 상시 소독시설을 설비한 점, 2) 소독통제초소의 도로파손시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복구지원한 점, 3) 구제역 예방백신의 손실율을 줄이기 위해 병당 두수분을 최소화해서 생산 공급한 점 등을 든다.

### 1.11.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단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전라북도의 구제역 방역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기능·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타 지역에 전파된 사례가 많다. 전남도에서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축산 5개년계획 수립·운영, 2008년부터 동물복지에 가미한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운영, 사육밀도 준수, 환기개선, 운동장확보 등을 통해 개체별 면역능력을 향상하여 구제역 유입을 막았다.

둘째, 예산절감 사례이다. 전남도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직·간접 비용을 원천적으로 절감하였고, 방역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시연을 통해 시행착오를 막음으로써 중복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절감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 초소운영 등 구제역 방역추진 시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운영하였다.

셋째, 방역이나 매몰지 관리에 공이 큰 민간인(자원봉사자) 사례 및 민·관 협력 사례가 많았다. 살처분 매몰조치에 따른 인력부족 시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 축산관련단체 등), 구제역방역초소 운영 및 축산농가 소독 등 방역조치에 자원봉사자 적극 동참 등이 그 예이다.

넷째, 다른 시도에 비해 홍보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2006년 친환경축산 5개년계획, 2008년 녹색축산 5개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축적된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산농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조례를 4월 29일 공포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다.

### 1.12.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10년 11월 28일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안동

시 와룡면 지역이 속해있는 도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구제역 기간 동안 총 86건의 신고에서 16개 시군에서 63개의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한 가축 매몰현황은 총 428,738두로, 소 52,395두(경북 총 사육두수의 7.1%), 돼지 372,307두(동 25.2%), 기타 4,036두이다. 도내 사육두수의 19%정도를 매몰한 셈이다.

<사진 4-6> 안동시 가축질병방역대책협의회(2010.12.1)



출처: 안동시청

경상북도의 구제역 대응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경상북도 구제역 특별지원반내 급수지원반 운영(반장: 소방본부장) 둘째, 119종합상황실 구제역관련 지원실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셋째, 구제역 발생지역(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에 물탱크차량 11대(소방학교, 의성, 영주, 문경, 상주 포남, 경산, 칠곡, 구미, 성주) 광역지원

및 24시간 급수 지원체제 구축 넷째, 살처분 및 예방백신접종, 매몰지관리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동원 다섯째, 안동시 이동통제초소에 소방본부 인력 지원 여섯째, 안동시 수도사업소와 협의 상수도배관 직수연결 자체급수(21개 이동통제초소) 및 소화전 1개소 신설 일곱째, 구제역 발생 지역(안동소방서, 문경소방서) 근무체제 일시 전환(3교대 ⇒ 2교대) 등이다.

경상북도 방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계통조직 전사적 방역 활동 전개이다. 관내 축산사업장에 대한 상황 지시 전파 및 소독실태 점검, 소규모 양축농가 등 방역활동 수행, 각종 행사 및 모임자체 지도 등이 그 예이다.

둘째, 농협사료 방역대별 사료 공급대책 수립이다. 안동공장 인근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사료반출이 중단(2010.12.5)되자, 광역하치장(칠곡 소재) 설치 및 타도 농협사료 조달, 공급을 하였다. 또한, 위험지역, 경계지역 구간별 하치장 운영으로 차단방역 공급체계를 유지하였다.

셋째, 가축 관외반출 금지에 따른 출하물량 수립 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구제역 피해 농·축협에 중앙회가 자금을 지원하였다. 관내 농·축협 자체 자금



으로 151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30억 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시행 최고 3억 원 총 86억 원, 안동시 관내 소상공인 자금지원(농협 중앙회와 안동시 100억 원 지원 협약체결), 구제역 피해 농·축협에 중앙회 자금지원(615억 원)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경북농협 임직원의 성금모금이다. 모금액은 2억 2,300만원이다. 여섯째, 한우고기 안전성에 대하여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청정(CLEAN) 축산운동을 추진(전 지역 축협)하였다. 여덟째, 환경특별관리단을 운영하고 악취방지 대책을 매몰지 단계별로 등급관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매몰지, 친환경 매몰방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즉, 기존의 구제역 행동지침은 매몰(소각)방식을 기준하여 처리하던 것을 2차 환경오염예방, 사후관리비 절감을 위한 매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아홉째, GIS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입력으로 매몰지를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하였다.

### 1.13.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 온 것은 창녕군 창녕읍 신촌리의 여모씨 돼지농장(1,398두)으로 2010년 12월 10일 이었다. 다행하게도 이 농장은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예방적 살처분에 의해 전두수가 살처분되었다. 이 농장의 경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살처분 등 조치)제1항 2호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에 해당(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과-6476, ‘10.12.3)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7795, ‘10.12.3)하였는데, 이는 이 농장이 2010년 12월 2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김모씨)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1월 23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심모씨 돼지농장(988두 사육)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김해시 한림면을 중심으로 발생하다가, 인근의 생림면과 상동면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김해지역에서만 3월 7일까지 총 93건이 신고되어 이 중 71건이 양성

관정을 받았다. 1월 29일에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서모씨 돼지농장에서 임상 증상을 보여 신고되고, 이튿날 양성으로 판정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10건의 의심신고가 있었으며, 그 중 9개 농장(총 10개 농장)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3월 2일에는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에서도 신고가 있었으나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동기간 중 축종별로는 김해지역에서 돼지 54농가, 한우 4농가, 사슴 1농가에서 발생하였고, 양산지역에서 돼지 10농가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상남도의 구제역 방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연 수리나 마을공동 수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 급수로 방역을 실시하는 초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제역 방역초소는 관할 소방서의 급수지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김해에서 2011년 1월 23일 11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확정 판정 후 김해지역은 의심신고와 함께 구제역은 계속 확산되었다. 또한 양산 지역은 1월 29일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후 12월 31일 확정 판정받았다. 김해 35개소, 양산 13개소로 증설되면서 급수지원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2011년 2월 말에는 경남지역 196개 방역초소 중 20개소방서 관내 173개소에 소방장비 및 인력이 총 동원되어 급수지원을 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말에는 한파급습으로 인하여 동파지역 생활용수의 지원과 구제역 급수지원으로 일선소방관들은 더 많은 출동으로 잠시의 틈도 없었다. 구제역이 확산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구제역 방역초소도 2011년 3월 중순부터 서서히 철수하였고, 3월 31일에 구제역 방역초소가 완전히 철수하면서 숨막혔던 124일간의 급수지원도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

김해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멸될 때까지 전 소방서에서 인원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급수지원 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 4-7>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



출처: 김해시청

둘째, 부분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절차를 조정(2011.3.26)하였다. 과거에는 해당농장 마지막 매몰 3주 후에 임상검사, NSP(비구조단백질, 구제역바이러스 감염항체) 혈청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소·사슴·염소에서 전 두수로), 돼지는 모든 전두수, 비육돈은 돈방별 3두 이상이었던 것을 해당농장 마지막 매몰 3주후 축종별 검사, 이상 없으면 해제, 소, 사슴, 염소는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환경검사, 돼지는 임상검사 + 환경검사로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환경검사는 농장 주변, 사료통, 축사 바닥 등 채취, 항원(바이러스) 검사 등을 말한다.

한편, 경상남도 구제역 방역조치 중 잘한 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구성·운영(단장 행정부지사)하여, 구제역 매몰지 74개소를 대상으로 매몰지 긴급보완 및 정비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2011년 2월 16일부터 계속), 매몰지 실명제(관할시군 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투명화하였으며, 철저한 매몰지인근 지하수 관리, 매몰지 주민 식수대책 추진, “매몰지 주민신고제” 운영 및 홍보 추진, “관측정” 설치로 환경오염 방지, “우기대비 가축매몰지 특별관리대책” 수립,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친환경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양산에서는 1개소 1500두의 돼지를 액비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살처분하였고, 이동식폐사가축 처리장비도 김해에서 돼지 22두를 살처분하였다. 또한, 친환경 비매몰식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발주(2011년 3월 18일)하였으며, 향후 폐사가축 처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사가축을 고온고압(250℃, 4기압) 스팀으로 완전 멸균처리하고, 처리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를 구입하여 살처분에 이용하였다.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를 시범도입해 본 결과, 폐사축 발생지역에 차량으로 이동 후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되었고, 특정장소에 고정돼 있지 않고 차량을 이용, 기동성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매몰방식 처리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었으며, 임대농가 등 매몰지 없는 농가의 경우 폐사축 처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처리부산물은 퇴비로 전환하여, 매몰지 악취·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이 예

방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처리용량 제한으로 폐사가축 대량발생시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매몰식 처리에 비해 처리 시간 및 방역처리 투입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구제역·AI 등의 1종 전염병 발생농가 이용시 전염병 확산 매개체로 작용이 가능하여 비발생농가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구제역 방역 종료를 즈음하여 평가단을 운영, 조기에 경상남도 구제역 백신을 발간한 일이다. 평가단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추진대책을 작성하여 구제역 백신을 제작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평가, 분석, 도 실정에 맞는 방역·가축매몰지 사후관리대책 수립 등이다. 평가단은 주 1회 이상 방역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팀별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제역 방역초소 급수지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가용 소방력을 투입하여 원거리 급수지원을 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동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방역초소 인근 공설소화전 및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력 동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소방업무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예측치 못한 많은 시간과 인력·장비가 동원되는 자연·인적 재난대비 소요경비가 전무하여 불특정 시간대 급수지원으로 현장에 동원되는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경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일시에 다량의 매몰처분 대상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매몰처분이 완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된 역학관계 규명이 미흡하고, 구제역 간이키트에 의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쟁점 정리>****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공동방제단 운영 방안**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장 송택호

**1. 민간 방역과 자치단체 공동방제단의 개편**

전국 지역축협에는 마을별로 대의원이 구성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업농이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농이 대부분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겸하는 복합영농 형태를 취하고 있고,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미흡한 사육규모가 적은 부업농은 체계적인 방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제안한다면 생산자단체 위주로 취약계층 공방단사업과 전업농의 축협 방제단을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본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방역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정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축질병이 사람의 질병으로 전이되는 사슬을 차단하고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초 식량산업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취약계층 정부 공방단사업과 전업농의 축협 방제단을 통합하고 전문 방역장비를 구비하고 전속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입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해 지리라 본다. 방역의 핵심은 사전 예방·예찰·소독·농가지도를 함께 병행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방역 장비의 구성**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는 축산 현장의 축사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에 적합한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개 전업농이상은 진입로가 넓어 1톤 방역차가 적당하고 부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는 축사도 작고 진입로가 좁아 소형 트럭을 이용한 장비를 마련해야 구석구석 소독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의 축사규모를 보면 전업농이상은 대규모 축사로 소형방제기로 소독이 어려운 구조이고 소규모농가는 소독장비 마련과 소독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화여건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방제장비와 전문인력에 의한 소독과 예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 해지고 있다. 전업농은 축사 규모가 크고 넓어 주로 송풍원거리분사를 통한 기계적 소독이 유효하고 부업농 이하는 원거리 송풍소독보다 고압노즐 근거리소독이 효과적이다.

### 3. 소독약품의 구성

소독약품도 동일한 소독약만 살포하지 말고 봄철은 외부 기생충약 살포를, 여름철은 모기·파리 등 해충 구제약제과 소독약을 병행 소독하면 해충과 병원체를 함께 박멸할 수 있고 가축도 해충과 기생충으로 인한 성장지체를 해소하여 생산성도 높아지면 축산농가의 소독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전업농은 해충과 외부기생충 구제를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체계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못해 봄철에 진드기나 이 등 해충에 시달리고 여름철에 모기파리에 시달리면 가축이 허약해져 질병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낮고 생산비도 높다. 모기와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매개도 주요한 질병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체계적인 소독이 필요한 이유다.

### 4. 방역인력의 교육훈련

방역인력의 교육 훈련은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정기적인 훈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교육항목에는 축종별 가축 사육방법, 차단방역 기법, 축산업 경영, 방역정책과 법령, 소독제의 선택과 적용법, 가축의 질병, 소독장비의 운전과 점검기술, 질병의 예찰기법, 병성검사 절차, 농가단위 차단방역기법, 농가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이 포함된 계획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의 질병은 축종별 중요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역사가 탄저나 기종저 등의 질병에 걸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역요원의 개인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5. 기대효과

가축과 국민의 보건을 위해 추진하는 방역사업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부방역사업과 민간자율방역기구와 연합하여 합동방역을 추진하면 동일예산으로 더 많은 분야에 다양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상호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공방단과 축협방제단을 합동 운영하면 전문장비와 인력확보가 보장되고 체계적인 전문소독서비스와 질병 예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정부도 비상시 기동방역단의 동원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의 질병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lt;구제역 관련 사상자

## 구제역 관련 사상자 공상처리 현황('11.7월 기준)

## ① 사망

소 속	성 명	공상 여부
경북 안동	금○○	공상 승인
경북 영양	김○○	공상 승인
경기 의정부	원○○	공상 승인
전남 보성	심○○	공상 승인
경북 상주	김○○	공상 승인
경북 영천	김○○	공상 승인(재심)
경북 고령	곽○○	공상 불승인
경기축산위생연구소	김○○	공상 불승인
경남 하동	임○○	공상 승인

## ② 부상

구 분	계	중상	경상	처리현황		
				승인	불승인	신청취소
	180	78	102	106	12	6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	1	1	-	-
대전광역시	1	1	-	1	-	-
인천광역시	1	1	-	1	-	-
대구광역시	1	-	1	-	-	1
광주광역시	1	-	1	-	-	1
울산광역시	2	-	2	1	-	1
경기도	64	22	42	29	3	32
강원도	22	10	12	14	4	4
충청북도	35	16	19	18	2	15
충청남도	8	2	6	2	-	6
전라북도	8	5	3	6	2	-
전라남도	6	3	3	5	-	1
경상북도	24	15	9	22	1	1
경상남도	6	3	3	6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방역 활동

### 2.1. 유관기관의 방역 지원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함으로써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외에 많은 정부부처들이 구제역 종식을 위해 협조하였다. 각 부처별 역할·협조사항은 <표 4-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국무총리실은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간 협조·조정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제역 방역비, 가축 구매자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대책 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하였고, 관세청에서는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한 동물, 축산물, 사료 등 불법 반입을 단속하였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동향 등의 정보 지원 및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데 협조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을 협조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이동제한 초소운영 및 소독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매몰처분 농장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발생농장 인근 도로 소독을 위한 군 제독차량 동원, 경계지역(10km) 내 군사훈련 제한 등을 협조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비발생 지자체에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지시, 위험·경계지역 내 가금류 및 축산물의 주야간 불법이동 통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방역비 지원 등을 협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언론기관에 구제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송 자제,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 홍보 등을 협조하였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서는 이동제한 초소 운영을 위한 전력공급을 지원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관리를 협조하였다.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공항만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연중 홍보, 발생지역 공공기관에 발판소독조 설치, 어선을 이용한 동물·축산물 밀수입 지속적 단속 실시, 무역선과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구제역 방역 홍보 등을 협조하였다.



&lt;표 4-1&gt; 정부부처의 구제역 관련 협조 내역

구 분	세부 활동내역
국무총리실	○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간 협조·조정
기획재정부 (관세청)	○ 구제역 방역비, 가축 구매자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 대책 관련 소요 예산(추후 산정) 지원 ○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한 동물, 축산물, 사료 등 불법 반입 단속
외교통상부	○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발생과 동시에 투입)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법무부	○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지원 협조
국방부	○ 이동제한 초소운영 및 소독 등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 매몰처분 농장 사후관리(분뇨·사료·깔짚 등 잔재물 매몰·소각 처리)를 위한 인력 지원 ○ 발생농장 인근 도로 소독을 위한 군 제독차량 동원 ○ 경계지역(10km) 내 군사훈련 제한
행정안전부 (경찰청)	○ 비발생 지자체에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 지시 (마을방송을 통해 축산농가 모임자제 등 준수사항 홍보 등) ○ 위험·경계지역 내 가금류 및 축산물의 주야간 불법이동 통제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방역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기관에 구제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송 자제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 홍보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 이동제한 초소 운영(소독 장비 운영, 야간 조명 등)을 위한 전력공급 지원
환경부	○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관리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공항만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연중 홍보(공항만 전광판, 기내 방송 등 활용) - 기내식, 남은 음식물 소독처리 협조 등 ○ 발생지역 공공기관(관공서, 기차역 등)에 발판소독조 설치 ○ 어선을 이용한 동물·축산물 밀수입 지속적 단속 실시 ○ 무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구제역 방역 홍보

자료: 행정안전부.

이하에서는 이번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활동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환경부 등의 사례를 몇 가지만 정리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 자료는 해당 부처의 자료 협조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 2.1.1.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구제역의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서 구제역 관련 업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구제역 방역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긴요하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이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구제역 위기경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통합적 재난대응을 총괄하였다. 즉, 정부는 구제역 발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2010년 12월 29일부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동시에 시·도(시·군·구 포함)에도 지역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번 구제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먼저, 주의 단계(‘10.11.29 이후’)에서는 상황관리관(담당사무관)을 구제역이 발생한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현장 지도 관리, 재난상황 파악·보고, 현장 건의사항 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경계 단계(‘10.12.15 이후’)에서는 정부합동지원반(반장: 재난안전관리관, 관계부처 파견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안부, 총리실 등 과장급)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지원사항 통합관리, 현장지도 및 상황관리 총괄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심각 단계(‘10.12.29 이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구제역에 대한 범정부 통합적 재난관리를 총괄 조정하였다.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한 합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앙수습본부장(농식품부부 장관) 및 지역대책본부장(시·도지사)에서 요청하는 부처간 및 지역간 협조사항의 협의·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lt;표 4-2&gt; 행정안전부의 구제역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징 후	주요 조치사항
관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위험성 인지</li> <li>• 인접국가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및 국내 유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li> <li>• 관계부처간 정보공유</li> </ul>
주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구제역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방역 조치사항 지도 관리</li> <li>• 농식품부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li> <li>• 피해지역 방문 및 현황 파악(직원)</li> </ul>
경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구제역 타시도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방역 조치사항 통보 등</li> <li>• 피해 지자체 특교세 등 행·재정 지원</li> <li>• 피해지역 방문 및 현황 파악(국·과장)</li> <li>•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여, 현장방문(장·차관)</li> </ul>
심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발생 구제역이 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시 대규모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대책본부 운영</li> <li>• 범정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li> <li>• 시·도 방역체계 관리 및 강화 지시</li> <li>• 정부 방침 협의, 행정재정 지원(장·차관)</li> <li>•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장·차관)</li> </ul>

자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이었다. 따라서 대책본부는 우선 구제역 방역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군인·경찰·소방 등 다양한 인력을 총괄·조정하여 구제역 기간 동안 연인원 1,970천명과 장비 18천대를 지원하였다. 지원 인력의 구체적 현황은 공무원 488천명, 군인 338천명, 경찰 146천명, 소방 306천명, 민간인 692천명 등으로 이들 인력과 장비는 방역초소 운영, 소독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현장에 투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원활하게 추진위한 예산 지원도 담당하였다.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34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 현황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재원 553억 원, 매몰지 조성·관리에 필요한 225억 원, 상수도 확충용 예산 555억 원, 이동식폐사축처리기구 구입 비용 7억 원 등이었다.

## 2.1.2. 국방부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국방부는 지원 지침으로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작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병력과 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특전사, 특공·강습부대, 예비사단 등의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방역 지원 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였으며, 지원 실적은 병력이 342,414명이고, 굴삭기, 제독차, 덤프트럭, 급수차 등의 장비가 3,931대로 집계되었다. 지원 내용은 합동이동통제소 운영, 제독차에 의한 방역 활동, 농장 축사 정리, 살처분 작업 지원, 굴삭기에 의한 매몰작업, 백신 접종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발생 지역의 지휘관 및 참모들이 시·도청 및 시·군청을 수시 방문하면서 협조하도록 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시·도청에 58명의 연락관을 파견하였고, 합동이동통제소 622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55개 부대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이상의 방역 지원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합동이동통제소 운영시 군·경·관 합동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경찰인력이 부족하여 군·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또한 야간에는 공무원이 휴식을 취함에 따라 군 병력만 이동통제소에 남게 되어 피로가 가중되었다.

<사진 4-8>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55사단)



출처: 국방부

<사진 4-9> 구제역 방역 차량소독(57사단)



출처: 국방부

### 2.1.3. 환경부

환경부는 2010년 11월 29일 농식품부로부터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 상황에 대해 통보를 받고, 다음 날 구제역 발생 상황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전파 및 상황반 구성·운영 등을 시달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은 상황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구제역 및 매몰지 발생상황 파악, 지자체에 대한 매몰처리 환경관리 기술지원,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11월 30일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자체에 가축매몰지 설치시 환경대책 추진을 시달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처리시에 환경부서 참여 및 매몰기준 준수를 독려하였다. 특히 경북 안동에는 대구지방환경청(한국환경공단 포함)에서 현장 상주하며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제역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12월 6일에는 정부합동지원단이 구성되어 환경부도 참여하였다. 그 후 12월 하순부터 구제역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합동지원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환경부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10.12.29~'11.3.26). 이 기간 동안에도 구제역 발생 상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지자체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매몰 처리시에 매몰 기준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다.

2011년 1월부터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환경관리 T/F 팀을 구성·운영하고, 시·군(경북, 경기, 충남, 충북, 강원지역 등)에 매몰지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축 매몰에 따른 낙동강, 한강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부실 우려되는 매몰지를 점검하고 정비 보완을 지원하였다. 수시로 경사지, 하천변 등에 위치되어 부실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중심으로 정비 보완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3월 24일까지 정부합동 전수조사에 참여하였다.

가축 매몰지에 대한 1차 합동 전수조사는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통해 정비대상 매몰지 417개소를 선정하고, 지자체로 하여

금 정비·보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고 360억 원을 지원하고 3.31일까지 완료하였다. 이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는 장마철 등 우기대비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2011년 2월부터 착수하여 '13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은 대규모 매몰 및 지하수 영향이 큰 매몰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매몰지 중심으로 300개소(한국환경공단)를 예정하고 있다.

가축 매몰지 주변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2011년 2월부터 추진하여 2013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이화학 조사(매분기)는 국립환경과학원(2,500개소), 지방환경청(500개소), 지자체 약 4,930개소 등이 담당하며, 고농도 검출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미노산, mtDNA 분석 등의 병원성미생물 조사(매반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한다(1,000개소).

또한 관련기관에 매몰지 침출수 수거 연계처리 방안을 시달하였으며('11.1.5, 2.10), 주요 내용은 매몰지 상부 유출 침출수(체액) 등 재매몰처리 방안, 배출 유공관을 통한 침출수 수거후 수질검사, 운반·이송, 공공처리장 연계처리 등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몰지 악취관리요령(악취 문제 매몰지 선정·관리, 악취발생 현황 및 저감 방법 등)을 제공하였고(3.30), 유용미생물의 탈취효과에 대한 현장 조사(7개 매몰지, 2.22~3.14)를 실시하였다.

그 밖의 주요 활동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9개 시·도 71개 시·군에 '11년 3월까지 국비 3,0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에는 지자체의 추가 소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의 먹는샘물 취수정 및 제품수 수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11.2.26~3.31), 취수정 및 제품수에서 가축매몰 침출수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가축 매몰지 안정화 등의 연구사업에 착수하여 매몰지 침출수 발생 원단위, 발생 특성 등 파일럿 실험, 악취관리 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매몰지역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도 착수하여 매몰지 위치,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 현황 등의 환경정보D/B를 구축하고 있다.

## 2.2. 축산단체의 방역 활동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정부기관 이외의 지원조직으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대한수의사회 그리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먼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00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간 가축방역 전문기관(특수법인)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채취, 축산물의 위생검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 이력관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등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중앙본부와 전국 8개 도 본부, 제주출장소 등 10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였다. 방역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종합상황반, 초동방역·이동통제 초소반, 예찰 및 예방접종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 5개반을 가동하였다.

<표 4-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구제역 방역 지원실적

구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인력·차량지원	전화예찰	시료채취	매몰지 침출수·토양 시료채취
지원 내역	인원/차량	314명/ 293대	39천명	504명/319대	139명/105대
	실적		1,360천호	3,179호/34천두	523개소/1,581점
구분		백신접종	초동방역팀 투입·운영	이동제한 해제 및 가축수매 인력지원	통제초소 운영실태점검
지원 내역	인원/차량	2,165명/979대	1,710팀/2,855명	186명/149대	572명/554대
	실적	19.7천호/238천 두	509회	6.5천개소	1,341대
구분		발생지역 소독인력 지원	구제역 시료운반	매몰처분농가 통제선 설치 인력지원	
지원 내역	인원/차량	88명/56대	8명/8대	18명(경북)/9대	
	실적	경기, 충남, 경북, 경남지역 지원		22개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들은 구제역 발생 현장에 투입되어 방역에 필수적인 초동대응, 이동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시료채취·운반, 방역기자재 공급, 예방접종, 구제역 지역 대 농가 및 대민 홍보 등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등과 함께 4월 중순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 밤낮 없이 전력을 투구하여 업무에 헌신하여 구제역을 진정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2011년 3월부터는 “전화예찰 및 질병 신고·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함으로써 질병 조기 검색 및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가축방역기관의 효과적인 방역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축사육 농가정보 및 위치정보를 현행화하여 신속한 가축방역 활동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한수의사회는 1957년에 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 발생 직후 16개 시·도 수의사회 및 7개 산하단체와 전국 임상수의사들에게 비상연락망으로 구제역 발생 상황을 전달하였고, 문제 발생시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국 수의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의 구제역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평소에 농가를 방문진료하면서 질병예찰을 수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 신고하여 초동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수의사법에 따라 방역업무에 동원되는 체제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시에도 대한수의사회에서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분회, 산하단체 등을 통해 수의사를 모집하여 방역인력이

<사진 4-10> 대한수의사회 방역 지원



출처: 대한수의사회



부족한 인천, 경기, 경북 지역에 400여 명의 민간 수의사를 투입하는 등 민간 차원의 방역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 수의사들은 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살처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국 수의과대학의 교수와 재학생들도 자율적으로 방역 작업에 참여하여 예방접종, 살처분, 매몰, 소독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건국대와 서울대의 수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활동하였고, 지역별로는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등의 수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솔선수범하면서 방역작업에 참여하여 큰 힘을 보태었다.

축산관련 단체로서 농협중앙회와 전국의 지역농협, 그리고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기타 생산자단체들도 기관별로 비상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방역에 협조하였으며, 이 단체들의 활동도 구제역이 진정되고 종식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로 구제역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한 방역 조치를 수행하였다.

<표 4-4> 농협중앙회의 구제역 방역 지원실적

구분	축사소독	전화예찰	문자발송	생석회	소독약
실적	148,784호	324천건	3,934천건	387천포	404천병
구분	방역복	휴대용소독기	백신주사기	전신소독기	발판소독조
실적	124천벌	32천개	955개	17개	1403개
구분	장비수리	방역수칙	매체홍보	방역차	
실적	51대	114천부	5회	44대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10년 11월 28일에 중앙에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으로 지역 사무소 318개소를 운영하였다. 구제역 방역 활동은 중앙대책본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계통 지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방역차량을 180대 지원하였고, 방역 현장의 인력

지원은 전국 142개 축협에서 연 인원 6만 1천명이 동원되었다. 특히 구제역 가축의 매몰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위임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기관(매몰지, 방역용) 및 농·축협에 생석회의 조달 공급을 총괄하여 매몰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국한우협회는 2010년 12월에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초기부터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우농가로 하여금 차단방역에 철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협회의 136개 지부를 대상으로 방역관련 업무협조 문서를 수시로 발송하였다. 특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1년 겨울철에는 전국 150개 시·군에 방역성금과 물품(방역복, 방한복, 방역기기, 소독약, 식품 등)을 기탁하였고,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군부대에 62,500여명 분의 불고기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대한양돈협회는 중앙회와 9개도 협의회 실무자 및 해당도에 소속된 지부(전국 124개 지부)의 실무자 간에 ‘FMD 비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였다. 협회 홈페이지, 문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 지침을 받아 구제역 발생 상황, 일일 주요사항,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차단방역 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한돈자조금을 재원으로 1억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작하여 전국 구제역 방역 초소 근무자에게 배부하였으며, 구제역 이후에도 8월까지 양돈산업 발

<사진 4-11> 수원농협 방역 지원



출처: SUWON.com

<사진 4-12> 구제역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전달(대한양돈협회)



출처: 대한양돈협회

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모금하여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원활하고 효과적인 상황 대처를 위해 구제역 기간 동안 협회 내부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활동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월간 낙농육우(매월) 및 낙농자조금 소식지(월2회),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제역 방역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특히 소식지에는 구제역 속보, 구제역 정보 및 예방요령 등을 공지하였다. 또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협회 임직원이 출연하여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사료협회도 2010년 12월부터 구제역 관련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각 회원사 담당자와 함께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처하였다. 협회 홈페이지에 이슈 자료실(ISSUE LIBRARY)을 개설하여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조기 종식을 위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구제역 발생지역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각 회원사(사료공장)에 구제역 관련 안내 공문 및 SMS문자를 발송하였다. 또한 협회 격월간 사료지에 특집코너를 마련하여 구제역이 축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방역 당국에서 구제역 확산의 배경에 대하여 사료수송 차량에 의한 영향이 논의되면서, 농식품부에 구제역 발생지역의 사료공급 및 방역 대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축산관련 단체들도 이번 구제역 기간 동안에 다양한 형태로 방역 활동에 참여하여 구제역 확산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상세히 게재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 &lt;소화&gt;

## 안동 구제역을 경험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 하종엽

11월 29일 시작된 안동의 구제역은 힘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으로 또 축산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후로 너무도 중요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안동으로 가라는 도본부의 명령에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멀리 떨어져있어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우리 동료들을 만난다는 약간의 설레임까지 더해져 출발하였는데 집은 한 달 후에야 도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그 전까지의 설레임, 즐거움은 싹 가시고 이것이 구제역이구나 하는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하고서 일단 우리는 농장 안에 먼저 진입한 방역사와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방역사와 달리 현장이 통제·관리하기에는 연결된 도로가 많은 관계로 도로통제에 투입이 되었다. 우왕좌왕하던 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어가고 현장은 살처분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즈음 현장에는 우리 방역사와 더불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온 방역관과 안동지역의 공수의 한 명이 농장 안에 진입해서 살처분을 진행하려는 시점이었다. 그 상황에서 현장의 방역관은 살처분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사적으로는 대학 후배이기도 한 방역관과 공수의의 요청에 협조하고픈 마음이었으나, 방역본부의 방역사는 매몰처분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방역관과 공수의는 매몰처분 현장을 이끌기에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매몰처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방역사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매몰처분 현장은 점점 늘어나 안동 지역에는 전국 각지의 수의사들이 매몰처분 인력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 인력으로는 매몰처분 현장을 원활하게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자 지역의 축협직원과 또 일용직으로 채용한 듯한 우리 눈에 보기에 비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매몰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매몰처분 인력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다른 아닌 매몰처분 장비들이었다. 매몰처분 장비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매몰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장비가 부족해서 기다리기가 다반사였고, 현장의 장비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현장에서 완전한 소독 후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우리의 임무가 현장에 오염원을 차단하는 일임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꼭 수정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물론 앞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가축질병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상시적으로 준비된 전문 인력이 있으면 초반에 차단방역에 조금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정신없이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어가면서 매몰지 관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매몰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매몰로 구제역을 관리하는 것이 꼭 올바른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배우고 알기로 매몰 방법 말고도 소각을 통한 방법은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소각을 통하면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매몰지를 관리하기 위해 드는 차후의 관리·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물론 구제역 발생시 매몰지를 구하였다가도 주위의 반대 때문에 또 매몰지를 구하지 못해 매몰이 늦춰지고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기에 매몰 방법을 소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동 구제역이 우리나라 전반 및 축산 현장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이지만 평생을 축산방역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나은 가축방역의 현장에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lt;소화&gt;

## 한우산업과 구제역

(사)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

한민족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숭한 외세의 도전과 역경을 딛고 극복해 나온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상과 역량은 계속 올라 향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언하는 미래학자가 많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애환을 같이 해온 가축이 한우이다. 한민족의 불행한 시대인 일제 강점기에 한우는 무려 150만두나 일본에 공출되는 수난을 겪었고, 불과 3년 남짓의 한국전쟁에서 불과 17만두 밖에 남지 않는 참상을 겪었다. 즉 한우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험난했던 과거를 슬기롭게 헤쳐 나온 한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한우에 대해 우리 민족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한우와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한우농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인 한우농가들은 매몰, 환경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비취질 때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2011년은 구제역으로 인한 우리 축산업의 이미지 쇠퇴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구제역을 통해 느낀 점을 몇 가지 기술해 본다.

첫째, 구제역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나? 내가 소를 35년이상 사육해 왔지만 구제역에 대하여 접하게 된 것은 2000년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축산인들이 구제역에 대하여 생소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였다.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자 그 발생의 원인이 황사, 철새,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렇듯 농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구제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지 못했다.

둘째, 구제역의 방역체계는 건설했는가? 그러나 2002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와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세부 기준에서 허점이 있었음을 2010년과 2011년의 구제역을 보고 깨달았다. 2000년과 2002년에 좀더 세부적인 상황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에 대한 행동요령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셋째, 구제역 발생 후 대처는 적절했는가?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방역이 소홀하였으며 또한 발생 후의 대처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대책을 추진하다가 조기 방역이 되지 않아 확산된 경향이 있다. 특히 발생원인과 경로를 추적하는데 전문적인 역할이 미흡하여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넷째, 농가와 정부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이러한 국가적 질병에 대하여는 농가가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서 조기수습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원인규명과 전과경로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농가들의 신뢰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구제역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질병의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구제역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으며 농가들은 농가대로 불안과 불만속에 시름해야 했다. 다소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전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산업의 소비자 신뢰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었다. 축산업의 최종산물인 축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알리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어떤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비주체들에게 안전성 홍보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한우 사육 농가들이 하루 빨리 크나큰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우에 대한 믿음과 격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한우농가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화>****구제역 시련, 변모하는 한국 축산업**

(사)대한양돈협회 회장 이병모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약 4개월여 동안 돼지는 330만두, 소는 15만두 등 350만두의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축산농가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동시에 주었다.

특히 양돈산업은 국내 사육두수의 34% 이상이 매몰 처분되면서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양돈산업은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 피해액만 3조원이 넘고, 연관산업의 피해도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방역도중 순직한 공무원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구제역이 진정된 이후에도 돼지고기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으며, 급등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수입물량의 2배에 육박하는 무차별적인 수입육 무관세 조치가 이뤄지는 등 구제역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단계보다 업그레이드 된 방역체계와 사육환경, 그리고 생산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한국 축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먼저, 이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관계 당국의 초동 대처 시스템의 부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병 발생시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과 합리적인 신고체계, 검사 그리고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능동적이고 강화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지난 구제역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부디 이번 정책 개선안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표하는 양돈협회 역시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정책이 현장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효적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강한 축산업,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둘째로,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의 축산업 현장이 스스로 변화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쟁력은 농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어느 누가 축산업 경쟁력이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는 우리 축산농가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구제역 사태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차단방역 시설



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축의 사육환경을 돌아보면서 지적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견고히 다져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다가오는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 공세와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단백질 식량 공급원으로서 우리 축산업을 국민과 함께 국민이 희망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구제역의 교훈을 잘 새기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량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국, 미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농식품산업이 강한 국가들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의 바탕 위에 농식품산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관련법령 제정과 조직 개편, 선진화를 위한 예산 분배에 소홀함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과 보상금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은 축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구제역 기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차량방역과 이동통제 등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양돈협회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해외와 국내 사례를 철저히 고찰하여 한국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 5 장

#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보상

## 1.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1.1.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의 이동제한과 아울러 가축시장이 폐쇄되고, 직접적으로는 발병한 가축 및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 실시됨으로서 축산물의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사상 초유라고 할 만큼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 1.1.1. 쇠고기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가축시장은 4월 8일부터 다시 개장되었다. 가축시장 재개장 이후 송아지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큰 암소 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6~7개월 된 한우 수송아지 두당 가격은 2011년 4월 217만 9천원에서 6월 187만 9천원으로 하락하였으며, 큰 암소가격은 동 기간 동안 두당(600kg기준) 438만 4천에서 377만 4천원으로 하락하였다.

&lt;표 5-1&gt; 한우 송아지 및 큰 암소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두

구분	'10. 8	'10. 9	'10. 10	'10. 11	'11. 4	'11. 5	'11. 6
암송아지	2,369	2,309	2,266	2,072	2,210	1,984	1,838
수송아지	2,632	2,613	2,511	2,228	2,179	1,989	1,879
큰 암 소	5,012	4,850	4,877	4,824	4,383	4,106	3,774

주: 1. 송아지는 6~7개월, 큰암소는 600kg(생체기준)  
 2. '10. 12~'11. 3월은 구제역으로 가축시장이 폐쇄됨.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우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설 성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0년 12월 대비 2011년 5월 한우고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21.0% 하락하였다. 동 기간 동안 1<sup>++</sup>등급 한우고기 도매시장가격은 17.4% 하락하였고, 2등급은 19.9% 하락하였으며, 그리고 3등급은 30.0% 하락하였다. 한우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육질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lt;표 5-2&gt; 한우고기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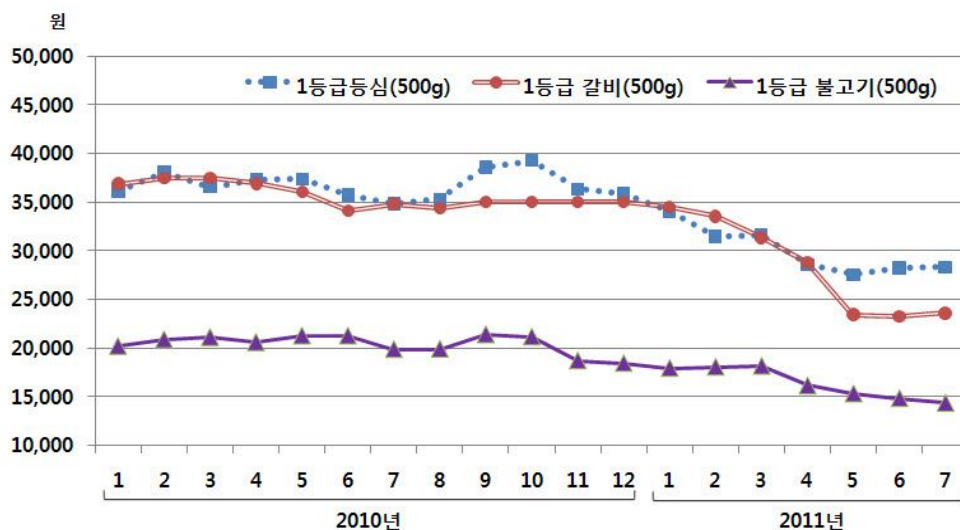
단위: 원/지육kg

등급	'10. 12 (A)	'11. 1	2	3	4	5(B)	B/A(%)	
한우 전체	14,900	15,285	13,829	13,055	12,638	11,770	-21.0	
육질등급	1 <sup>++</sup>	19,216	18,793	17,522	16,815	16,533	15,868	-17.4
	1 <sup>+</sup>	16,436	16,471	15,018	14,690	14,299	13,573	-17.4
	1	14,678	15,161	13,410	13,315	13,196	12,075	-17.7
	2	12,131	13,180	11,752	11,542	10,768	9,711	-19.9
	3	10,428	11,753	9,775	9,643	8,407	7,300	-30.0

주: 한우 육질등급별 가격은 거세우 기준임.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인해 2010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쇠고기 소비자 가격에 의하면 1등급 등심가격은 2010년 12월 500g당 35,850원에서 2011년 5월 27,532원으로 23.2%하락하였으며, 1등급 갈비가격은 동 기간 동안 35,000원에서 23,439원으로 33.0% 하락하였다. 그리고 불고기가격은 동기간 동안 18,420원에서 15,307원으로 16.9% 하락하였다.

<그림 5-1> 한우고기 월별 부위별 소비자가격 추이(1등급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구제역 발생 등 여파로 2011년 2월까지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3월부터 회복세를 나타냈다. 2011년 1~5월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정상 출하가 어려워짐에 따라 출하제한지역 한우의 출하체중이 증가하여 도체중과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1년 1~5월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4.7% 증가하였다. 2010년 한우 평균 도체중은 641kg이었으며, 2011년 1월 평균 도체중은 652kg, 3월 688kg, 5월 677kg이었다.

&lt;표 5-3&gt; 한우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

단위: %

구 분		1~2월	3월	4월	5월	합계
'10년(A)	도축두수(두)	142,627	54,185	54,720	48,361	299,893
	쇠고기량(톤)	35,403	13,245	13,495	11,944	74,087
'11년(B)	도축두수(두)	118,234	54,395	60,681	65,910	299,220
	쇠고기량(톤)	30,708	14,049	15,710	17,074	77,541
증감율 (B/A,%)	도 축 두 수	-17.1	0.4	10.9	36.2	-0.2
	쇠 고 기 량	13.3	6.0	16.4	42.9	4.7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협중앙회.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소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2011년 1~6월 쇠고기 수입량은 12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43.5% 증가하였다. 이중 3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84.6%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노선은 호주이다. 그러나 3~5월 수입된 쇠고기 중 많은 물량이 비축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이다.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와 수입량 증가로 당분간 소 가격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lt;표 5-4&gt; 수입 노선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톤

구 분		'11. 1월	'11. 2월	'11. 3월	'11. 4월	'11. 5월	'11. 6월	1~6월 누계
호 주		9,999	8,125	18,400	13,685	10,626	12,058	72,891
미 국		7,097	7,181	13,411	13,603	7,539	9,092	57,928
뉴 질 랜드		2,926	3,303	4,706	3,121	3,805	3,575	21,441
멕 시 코		153	233	423	235	293	208	1,545
총 계	'11년(A)	20,175	18,843	36,939	30,643	22,263	24,933	128,862
	'10년(B)	17,257	14,664	20,013	18,922	18,929	25,124	89,785
	증감(AB,%)	16.9	28.4	84.6	61.9	17.6	-0.8	43.5

자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1.1.2. 돼지고기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가 332만두 살처분 매몰됨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 12월 988만두에서 2011년 3월 704만두로 감소하였다.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2011년 1월부터 가격은 상승하였다.

정부는 돼지고기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으로 13만 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월 이후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 삼겹살 성수기 도래로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2011년 1월 500g당 8,902원에서 2월 10,658원으로 상승하였으나 3~4월에 9,499~9,794원으로 하락하였으며 5월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2008~2010년 삼겹살 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500g당 8,615원이다.

<표 5-5> 삼겹살 소비자 가격 추이

단위: 500g/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12월	평균
2008 ~ 2010평균	7,782	7,642	7,666	8,546	8,672	9,094	9,246	...	8,468	8,615
2010	7,947	7,609	7,317	8,207	8,566	8,385	8,794	...	8,038	8,315
2011	8,902	10,658	9,499	9,794	10,691	12,300	11,920	...		10,53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살처분 매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은 감소하였으나,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이 증가해 총 공급은 약간 증가하였다. 2011년 1월~5월 총공급량은 평년동기간 40만 톤보다 3.9% 증가한 41만 6천 톤이었으며, 동 기간 수입량은 평년동기 12만 2천 톤보다 47.8% 증가한 18만 톤이었다. 그리고 도축량은 평년동기 30만 3천 톤보다 22.2% 감소한 23만 6천 톤이었다.

돼지수입육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공급확대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국내산 돼지고기는 냉장육인 반면 수입 돼지고기는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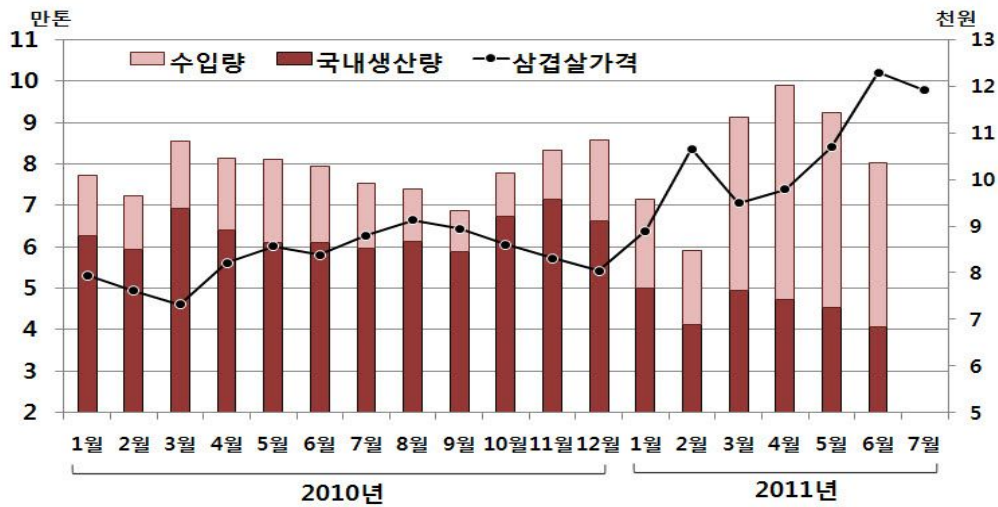
냉동육이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냉장 돼지고기는 보관 및 유통기간의 한계 등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산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표 5-6> 월별 돼지고기 공급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	국내산	68.8	54.8	60.3	59.3	58.1	52.4	56.0	55.6	57.4	68.7	61.8	66.2
	수입	23.7	18.7	22.2	20.5	21.4	18.3	18.4	16.5	13.5	13.8	12.8	14.4
	계	92.6	73.4	82.5	79.8	79.5	70.8	74.4	72.1	70.9	82.5	74.6	80.6
'09	국내산	59.0	58.5	61.4	59.8	53.7	59.1	59.3	57.8	64.9	59.8	64.5	67.2
	수입	15.2	15.1	23.4	23.7	25.7	19.6	17.5	12.8	13.2	12.5	12.2	19.1
	계	74.2	73.6	84.8	83.5	79.4	78.6	76.8	70.6	78.1	72.3	76.7	86.3
'10	국내산	62.6	59.3	69.2	63.9	61.0	61.0	59.7	61.4	58.8	67.4	71.5	66.4
	수입	14.6	12.9	16.4	17.6	20.0	18.5	15.7	12.5	9.9	10.4	11.7	19.4
	계	77.1	72.2	85.6	81.5	81.0	79.5	75.4	73.9	68.7	77.8	83.3	85.8
'11	국내산	50.1	41.2	49.4	47.2	45.4	40.7						
	수입	21.2	18.0	42.0	51.7	47.1	39.6						
	계	71.3	59.2	91.3	98.9	92.5	80.3						

주: 월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월별 도축두수×정육률” 로 계측함.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행정정보공개 각 연도.

<그림 5-2> 월별 돼지고기 공급 및 삼겹살 가격





## 1.2. 축산물 수급안정 조치

정부는 이동제한 물량이 해제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한우고기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월까지 농협을 비롯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 한우고기를 20~50%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협은 국회, 청와대, 과천바로마켓 등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약 2개월(6.11~8.7) 간은 농협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전국 농축협판매장 800개소에서 대대적인 한우불고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하여 약 9만두의 한우가 소비되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이용하여 한우전문식당의 할인판매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전국의 식육판매점 고객 대상 경품행사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였다.

둘째, 한우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5.31),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행정기관에서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의 한우고기 가격인하를 지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음식점 등을 상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였다.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한우고기 소비촉진 연석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축산기업조합중앙회 및 음식점중앙회에 산지 한우가격 하락에 상응하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4.28),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6.3~6.10)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한우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6.3)를 개최하고, 청와대 농수산비서관 주재로 한우가격 및 돼지고기 가격 안정 방안을 협의(6.3)하였다.

셋째,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13만 톤, 하반기 13만 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보모돈 할당관세물량 31,000두를 배정하였으며,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

기로 하였다.

<표 5-7>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 동향(2011.6.10 기준)

단위: 톤

구분	냉동 삼겹살 (판매용) 1차	냉동 삼겹살 (판매용) 2차	냉동 삼겹살 (가공용)	1·2차 반납물량 (선착순)	냉동 삼겹살 소계	냉장 삼겹살 (선착순)	육가공 원료육	계	
할당관세물량	5,351	36,757	6,000	11,892	60,000	20,000	50,000	130,000	
추천	금일	-	77	22	140	239	87	1,073	1,399
	누계	3,835	27,904	1,957	3,585	37,281	1,063	37,200	75,544
수입	금일	140	154	109	72	475	72	541	1,088
	누계	3,508	25,743	1,848	2,977	34,076	1,018	30,879	65,973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이와 같이 할당관세 물량 등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0년보다 전체적으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냉동삼겹살 수입량 증가로 전체 삼겹살 공급량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나 냉장 삼겹살 공급량은 전년도보다 2만 5천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도 6~12월 냉장 삼겹살 예상부족분 2만 5천 톤 중 2만 톤은 민간업체에 의해 수입되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공급되고, 부족분 5천 톤은 민간자율 수입으로 충당한다. 냉장삼겹살 부족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6~7월 수입되는 2만 톤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이윤을 포함하여 미리 구입단가를 설정하여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정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냉동육으로 전환되는 물량에 대한 손실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8월 이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축산기업중앙회, 유통·판매업체, 그리고 대형수요처 등과 입찰을 통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물량

을 수입하여 공급한다. 매주 입찰을 실시하여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입찰업체당 입찰물량 한도는 10톤 이상이다. 냉장 삼겹살 수입·판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국방부와 협의하여 돼지고기 군납물량을 쇠고기로 대체하여 공급하고, 돼지고기 냉동상태의 수매육에 대해 일반시중에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돼지고기 성수기인 8월말까지 돼지고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한우 불고기 부위를 반값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다. 쇠고기 반값 할인 판매에 농협, 한우자조금, 정부 등이 참여하고, 판매 물량은 4만두 분이며, 가격 수준은 2010년 말 가격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육류 할인판매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물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삼겹살 중심의 소비패턴을 안심 등 저지방부위로 전환토록 하여 특정 선호부위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홍보 실시 중이다.

## &lt;해설&gt;

## 가축시장 거래 관행

가축시장은 송아지, 육성우, 성우 등 생우의 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산지에 설치된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시장은 80개소이며, 연간 300천두 정도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참여자는 주로 사육농가와 산지수집상 등이다. 가축시장의 생축거래 및 가격결정은 경매와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중개 시 가격결정은 경매가격에 근거한다. 경매 및 중개 업무는 축협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가축시장에서 성우거래는 비거세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 가축시장 현황

구 분	횡성	음성(감곡)	홍성		
			홍성	광천	
계류능력	11,022㎡(450두)	7,709㎡(560두)	9,174㎡(600두)	16,698㎡(4800두)	
거래 두수	'08(전체) '09(1~7)	9,613 4,187	1,279 890	7,679 4,855	12,916 6,179
평균출품두수	130~180	30~50	200~250	250~300	
축종별비율 (성우:육성우:송아지)	2 : 3 : 5	1 : 2 : 7	10 : 0 : 0	9 : 0 : 1	
개장일(5일장)	1, 6 일장	4, 9 일장	1, 6 일장	4, 9 일장	
매매수수료	250kg이상 10,000 250kg미만 5,000	성우: 8,000 송아지: 3,000	성우: 20,000 송아지: 10,000	성우: 20,000 송아지: 10,000	
중개인 유무	없음	없음	농협위촉 중개인 22명		

주: 홍성지역 성우 매매수수료에는 중개인 중개료 10,000원 포함

가축시장은 거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홍성·광천시장에서는 비육우(고기소) 거래가 활발한 반면에 횡성시장과 음성시장은 송아지와 번식용 암소 거래가 많은 편이다. 또한 가축시장의 개장은 도축장 개장시간과 연계되어 있다. 도축장 개장에 맞추어 거래된 가축의 도축을 위하여 가축시장은 새벽 5시에 개장되며, 동절기에는 6시에 개장된다. 비육우 거래의 경우 가축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산지 유통인들이 소를 미리 둘러보고 개장과 동시에 중개인을 통해 가격 흥정이 이루어진다. 가격이 결정되면 소를 구입한 사람이 계근 후 대금과 중개료를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 2.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 2.1. 농가 보상 체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8조 2항과 제 49조 1항에 의하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표 5-9>와 같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지역(500m 또는 3km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며, 이동제한 지역(3~10km이내)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에 대해 정부에서 구매한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소득세 공제,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조정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살처분 보상 기준은 신고일과 조치이행 여부에 따라 100%에서부터 40%에 이르기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0.12.29) 제 11조 제 1항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약물 및 주사투약 금지, 소독, 이동제한, 살처분 등 4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살처분 당시의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한다.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하고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살처분 당시의 가축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한다.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다음날부터 5일 지난 후에 신고하고 2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살처분 당시의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을 지급한다.

<표 5-8> 가축 전염병 피해농가 등 지원 대책(2010.12)

구분	지원 대책	지급시기
살처분 지역	<b>살처분 보상금</b> ○ 살처분 농가에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국비100%) * 짓소는 6개월분 유대 추가보상(국고 70%, 지방비 30%) *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인정(국고 50%, 지방비 50%) ○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국비 100%) -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b>생계안정 자금</b> ○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70%, 지방비30%) -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 지급 -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 3~6개월 -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b>가축입식 자금</b> ○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음자 100%)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이동제한 지역 (10km)	<b>경영안정 자금</b> ○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음자100%) - 농가: 최고 5천만 원 이내 지원 - 도축장: 1일 평균 도축두수 × (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 × 도축수수료) -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발생 직전 1개월 평균 × (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 × 사료판매가격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농가: 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b>수매자금</b> ○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수매지원(국비 100%)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기타 지원 방안	<b>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b>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사료구매자금이자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b>학자금면제</b> ○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b>소득세공제 등</b> ○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b>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b> ○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 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 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을 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발병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 중 1개만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보상금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브루셀라(소), 돼지열병, 결핵병(사슴)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 돼지, 사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신고와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면 돼지는 살처분 일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하며, 사슴은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을 지급한다.

브루셀라, 돼지열병, 결핵병의 경우도 신고 지연 여부와 조치이행 정도에 따라 보상금은 차등 된다. 소, 돼지의 보상금 지급범위는 5분의 4에서 5분의 1까지이며, 사슴은 5분의 3에서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 2.2.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인천 등 전국 75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축의 이동제한 지역 양축농가의 출하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2일부터 이동제한 지역의 가축을 대상으로 수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4월 6일 충남지역을 마지막으로 생체 수매를 종료하였다.

수매대상 농가는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이며, 대상 가축은 시·도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로 부터 임상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대상축이다. 1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84일간 우제류 수매두수는 45만 3천두이며, 이 중 소는 14,660두, 돼지 437,961두였다. 금액기준으로 생체 수매비용은 3,322억 원이며, 이 중 소가 805억 원이고 돼지가 2,517억 원이다.

가축 수매에 투입된 인력은 총 41명이며, 지역별로 보면 중앙본부가 7명, 경기지역 6명, 인천지역 3명, 강원지역 6명, 충북지역 5명, 충남지역 6명, 경북지역 5명, 그리고 경남지역 3명이다.

<표 5-9> 지역별 생체 수매현황(2011.1.12~4.6)

단위: 두, 억 원

구 분	소		돼 지		소 계	
	두 수	금 액	두 수	금 액	두 수	금 액
경 기	5,490	274	89,230	515	94,719	789
인 천	508	27	4,176	26	4,684	53
강 원	4,127	251	19,980	117	24,107	368
충 북	2,916	159	42,494	240	45,410	399
충 남	345	17	229,563	1,323	228,969	1,340
경 북	1,230	75	29,422	176	30,652	251
경 남	44	2	23,096	120	23,140	122
총 계	14,660	805	437,961	2,517	451,681	3,32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본부 인력의 담당업무는 농식품부 지침 창구업무, 지역본부 지도업무, 자금지원업무, 지육입찰업무(전국), 입찰업체 계약업무, 열처리부산물판매업무, 판매대금 회수업무, 거래처별 정산업무, 차액보전 정산업무, 정액폐기 정산업무, 냉동육 판매업무, 기타 민원성 처리업무 등이며, 지역수매인력의 담당업무는 농가수매 정산업무, 계약 및 정산업무(도축장, 가공장, 랜더링, 운수회사, 보관창고 등), 도축현장 파견인력 지원업무, 농가민원 대응 업무, 입찰준비업무 등이다.

수매된 가축의 도축 및 가공처리를 위해 전국 도축장 및 가공장에 투입된 파견 근무인력은 평균 45일간 1일 12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62일 동안 도축장에 일 평균 10명, 가공장에 26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인천시는 19일 동안 도축장과 가공장에 각각 1명과 3명이 투입되었으며, 강원도는 45일간 4명과 11명, 충북도는 각각 9명, 충남도는 6명과 21명, 경북도는 6명과 9명,



경남도는 1명과 10명이 투입되었다.

수매된 가축은 지육입찰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지육 입찰기간은 2011년 1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84일간이었다. 입찰 장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구제역 발생 지역이었으며, 지육 입찰 횟수는 총 255회였다. 이 중에서 소 지육 입찰이 105회, 돼지 지육 입찰이 148회, 열처리 부산물이 2회였다.

<표 5-10> 지역별 도축장 및 가공장 파견근무 현황(2011.1.12~4.7)

구 분	도축장	가공장	비고(운영기간)
경 기	10	26	1/22-3/25 (62일간)
인 천	1	3	1/24-2/12 (19일간)
강 원	4	11	1/25-3/11 (45일간)
충 북	9	9	1/19-3/16 (56일간)
충 남	6	21	1/29-4/7 (68일간)
경 북	6	9	1/12-2/28 (47일간)
경 남	1	10	2/13-2/28 (15일간)
계	37	89	

주: 평균 45일간 총 126명/일 투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5-11> 지역별 지육판매 실적(2011.1.12~4.6)

단위: 백만원

구 분	소	돼지	우피	열처리 부산물 외	계
경 기	9,827	35,030	187	351	45,395
인 천	660	1,595	18	-	2,273
강 원	9,365	10,126	142	31	19,664
충 북	7,083	17,972	100	11	25,166
충 남	481	97,414	12	1,552	99,459
경 북	4,001	13,030	22	98	17,151
경 남	124	9,385	2	-	9,511
계	31,541	184,552	483	2,043	218,61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매된 가축의 지육 입찰 판매실적은 총 2,186억 원이다. 이중 소 지육판매는 315억 원, 돼지는 1,846억 원, 그리고 부산물 및 우피 판매는 25억 원이었다. 수매가축의 부산물 및 우피의 입찰 판매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10월 31일 현재 수매된 가축의 냉동보관육이 1,814톤이며, 매출액은 126억 원이다. 따라서 수매된 가축의 총 판매금액은 2,312억 원이다.

<표 5-12> 수매 가축의 냉동보관육 판매량 및 판매단가

구 분	판매물량 (톤)	판매단가 (원/kg)	매출액 (백만원)
소	964	8,006	7,719
돼지	850	5,786	4,915
계	1,814		12,63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의 수매 및 지육 등 판매과정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소의 수매 수수료는 수매가격의 1%, 돼지는 2%이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 이내 이다. 또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지역의 정액폐기와 차액보전 비용이 각각 14억 원, 26억 원이 소요되었다.

2011년 구제역 발생 수매 및 판매 실적을 2010년과 비교하면 가축수매 두수가 45만 두 증가하여 생체구입비는 3,133억 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손율이 12% 정도 개선되어 약 448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부산물과 우피를 판매하여 25억 원 정도의 정부 수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번 수매과정에서 농가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수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 지급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지육 입찰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지역별 순회 입찰실시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 도입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매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서 농협중앙회에 과체중 차액보전 등 정산요청을 하고 있으나 기한 명시가 없었으며, 수매 종료 후 일정기간 지정으로 신속한 정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정산업무 기한의 명기를 요청하였다.

&lt;표 5-13&gt; 전년대비 가축 수매 실적 비교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가	비 고
수 매 두 수	51천 두	453천 두	402천 두	
생 체 구 입 비	189억 원	3,322억 원	3,133억 원	
결 손 률	51%	약39%(추정)	12% 개선	약 448억 원 개선
냉 장 판 매 액	74억 원	2,161억 원	2,087억 원	
냉 동 판 매 액	39억 원	126억 원(추정)	87억 원	
부 산 물 판 매 액	-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 개선
우 피 판 매 액	-	5억 원	5억 원	5억 원 개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3.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가축은 2011년 6월 30일 현재 6,241농가 348만 두이며, 이중 소는 15만 1천두, 돼지 331만 8천두이다. 보상금 총 소요예상액은 1조 8,863억 원이며, 시도에 배정된 금액은 10월 30일 기준으로 1조 7,634억 원이다. 그리고 농가에 집행된 금액은 1조 6,702억 원으로 예상 소요액 대비 지급율은 88.5% 수준이다.

구제역 발생 장기화에 따른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긴급매몰 과정에서 두수, 체중, 임신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시·군 평가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한육우의 경우 체중 평가, 임신율(25~30%) 적용 등에 대해 농가들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목측 두수와 평가 두수 간 차이, 과체중 미보상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7월 12일 여의도에서 축산단체가 보상금 신속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정부는 농가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보상금 조기지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 4월까지 매몰 직후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5월 26일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보상금 신속지급방안」을 시달하였다.

<표 5-14> 시·도별 보상금 지급 상황(2011.10.30)

단위: 백만원 %

시·도	총소요액 (A)	시·도배정액 (B)	농가지급액 (C)	지급율 (C/A)
강원	230,000	229,814	227,271	98.8
경기	922,882	768,020	719,749	78.0
경남	19,800	25,062	22,161	111.9
경북	361,500	362,004	349,274	96.7
광주	1,400	1,366	955	68.2
대구	800	2,800	1,524	190.5
대전	600	757	546	91.0
부산	200	568	399	200.0
서울	1,200	1,468	1,268	105.7
울산	500	700	633	126.6
인천	17,600	19,000	17,208	97.8
전남	31,700	38,440	37,284	117.6
전북	7,100	16,920	16,407	231.1
제주	-	334	333	-
충남	151,000	161,098	146,866	97.3
충북	140,000	135,086	128,281	91.6
합계	1,886,282	1,763,437	1,670,159	88.5

주: 시·도 배정액 및 농가 집행액에는 구제역 이외에 AI 및 브루셀라 보상금 평시 소요금액 일부 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6월 22일에는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지자체별 보상금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6월 24일 “보상금 신속지급 점검 T/F”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축산단체 등에서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한우 임신율 인정기준을 25~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에 대해 일일 증체량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한우암소 월령별 체중표를 현행 40개월에서 60개월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담당 인력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독려 및 협조를 부탁하고 보상금 집행 등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회 독촉 후 보상금 공탁이 추진되었다.

#### 2.4. 생계 및 경영 안정 지원

정부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 내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 내 축산농가에게 배정된 생계안정자금은 191억 8,804만원이며, 도별로는 피해가 가장 컸던 경기도에 84억 원이 배정되었고, 다음으로 경북도에는 51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2011년 7월 4일 기준으로 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으로 2,358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차보전액이 44억 원이었다. 경영안정자금 배정 대상은 축산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로, 축산농가, 사료업체, 도축장, 가공공장, 유가공업체 등이다. 경영안정자금 배정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축산농가 9,099가구에 1,814억 원, 사료업체 20개소에 400억 원, 도축장 15개소에 104억 원, 가공장 10개소에 39억 원 등이다.

<표 5-15> 시·도별 생계안정자금 교부내역(2011.6.30 기준)

단위: 천원

시도별	'10년 배정액 (11.28~12.31)	'11년 배정액 (6.30까지)	소 계
부 산 시		9,800	9,800
대 구 시		9,800	9,800
인 천 시		300,000	300,000
광 주 시		19,600	19,600
대 전 시		9,800	9,800
경 기 도	300,000	8,100,000	8,400,000
강 원 도		1,861,000	1,861,000
충 북 도		1,110,000	1,110,000
충 남 도	14,000	930,000	944,000
전 북 도		56,600	56,600
전 남 도		1,204,340	1,204,340
경 북 도	1,876,588	3,223,318	5,099,906
경 남 도	7,000	156,200	163,200
총 계	2,197,588	16,990,458	19,188,04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5-16> 업종별 경영안정자금 배정 현황(2011.7.4 기준)

단위: 호, 백만원

업 종	개소(호)수	배정액	이차보전액
사 료 업 체	20	39,958	747
도 축 장	15	10,378	194
가 공 장	10	3,870	72
유 가 공 장	1	199	4
농 가	9,099	181,393	3,39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lt;표 5-17&gt; 시도별 경영안정자금 배정 현황(2011.7.4 기준)

단위: 백만 원

시 도 별	업 종	개소(호)수	배 정 액	이 차 보 전 액
대 구 시	농 가	28	361	7
인 천 시	농 가	200	4,050	76
	사 료	1	80	1
울 산 시	농 가	2	33	1
강 원 도	농 가	1,323	24,781	463
	도 축 장	2	440	8
	가 공 장	1	46	1
경 기 도	농 가	2,513	56,416	1,055
	사 료 업 체	7	3,754	70
	도 축 장	5	4,921	92
	가 공 장	4	550	10
경 북 도	농 가	1,925	37,029	692
	사 료 업 체	4	13,521	253
	도 축 장	2	828	15
	가 공 장	2	300	6
	유 가 공	1	199	4
충 남 도	농 가	2,130	37,593	703
	사 료 업 체	4	7,896	148
충 북 도	농 가	708	14,346	268
	사 료 업 체	4	14,707	275
	도 축 장	3	3,991	75
	가 공 장	3	2,974	56
전 북 도	농 가	10	64	1
경 남 도	농 가	260	6,720	126
	도 축 장	2	198	4
총 계			235,798	4,409

자료: 농림수산물부.

## 2.5.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

정부는 가축매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몰 직후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지급한 바 있으나, 그 후 지자체의 보상금평가 지연과 더불어 보상금지급이 늦어져 농가의 불만을 샀다. 정부는 6월 22일 지자체에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지급하도록 촉구하였지만, 7월 4일 현재 매몰보상 추정액 18,617억 원 중 55.9%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구제역 발생 소요예산 종합(2011.6.30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소 요 예상액 (A)	예 산 확보액 (B)	시·도 배정액 (C)	농가 집행액 (D)	집행율 (C/A)	집행율 (D/A)	과부족 (B-A)
매 몰 지 역	매몰 보상금	18,617	14,068	13,019	9,740	69.9	52.3	-4,549
	생계 안정	232	218	182	182	78.5	78.5	-14
	가축 입식	236	51	41	41	13.0	13.0	-264
이동 제한 지역	경영 안정	79						
	가축 수매	1,400	247	-	-	69.2	-	-1,153
	가축방역	1,200	1,200	830	830	100	69.2	-
	매몰지 정비	121	121	121	121	64.9	100	-
	합 계	21,885	15,905	14,193	10,914		49.9	-5,9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상금지급이 늦어지면 살처분 농가의 생계는 물론, 가축의 재입식이 늦어져 생산기반 복구에 차질을 초래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선안’에서 “보상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지자체에게는 경고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정책지원 등에 있어



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일부 농가는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상기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 두 차례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하였다.

또한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한 농가는 보상금액과

지급시기를 사전에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상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재입식 준비를 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진 5-1> 구제역 피해농가 현장조정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관계기관장 및 농민대표들과 ‘안동·예천 구제역 살처분 보상’ 요구민원을 합의조정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2011.6.30)

## 2.6. 피해농가 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 2.6.1. 농가의 채무부담 완화

구제역 피해농가들이 직·간접적으로 농·축협에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살처분 후 생산이 중단되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대가축의 경우 재입식을 거쳐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정부의 지원제도(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경북]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 방안, 2010.12.8)에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원금(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

간 연장 및 이자감면, 사료구매 자금은 1년간 상환기간 연장의 내용이 있지만, 대가축의 경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6.2. 학자금·소득세·보증한도

상기 ‘지원제도’에는 피해농가 중·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감면, 소득세 공제 및 납기연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피해농가의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 원) 내에서 기 보증부 대출금 외에 추가로 3억 원까지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각종 지원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 빠른 경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어떤 것이 시급하고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6.3. 전직(轉職) 지원 프로그램

일부 피해농가에서는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과 더불어 축산업의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차제에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 2.6.4. 정신회복 지원 프로그램

가족처럼 아끼던 가축을 일시에 눈앞에서 살처분한 농가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정신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배려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쟁점정리>****구제역 피해보상에 관한 쟁점**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이병오

구제역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농가의 요구 또는 정부와의 의견 차는 이동제한 조치로 발생한 과체중 가축의 보상,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두수 판정, 임신축 등 번식용 가축에 대한 보상기준, 고능력 가축에 대한 평기기준, 지역에 따른 가격차이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하 축종별로 보상기준과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우**

한우의 경우 살처분한 임신우의 기준 설정, 암소의 체중, 고능력우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1. 임신우의 기준**

특히 암소의 임신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 농가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에만 태아가격을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 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미경산우는 태아가격의 30%, 경산우는 태아가격의 25%만 인정한다고 하였다.

농가는 젖소에 대해서는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으면 100% 임신우로 인정하면서 왜 한우는 다르냐고 반발하였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인공수정 시 한우의 평균 임신율 등을 감안하여 태아가격의 70%를 보상하기로 하였다.

**1.2. 암소의 체중**

농가는 한우 암소 보상금 지급 시 체중상한을 516kg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암소도 3산 후 비육시키면 550kg~700kg까지 체중이 올라가는데 일률적으로 516kg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미계측 한우 암소의 월령별 체중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즉, “매몰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하던 기존의 지급 기준을 40개월 이하의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매월 1~2kg 증체를 인정하기로 개선하였다. 이럴 경우 40개월령이 516kg이었다면 60개월이면 최대 540kg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3. 고능력우에 대한 평가

정부는 고능력우에 대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에 한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가는 한우의 경우 젃소와 달리 개체별 세부기록이 없으므로, 한우 개량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고등 등록우 만이라도 이력제상에 세부적인 개량성적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 1.4.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

피해보상이 지역별로 산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도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손해를 보는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은 경제권이 경기도이다 보니 소의 거래를 경기도 시세로 하는데, 보상은 경기도보다 낮은 강원도 기준으로 받아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다른 축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 젃소

젃소의 경우에는 한우나 돼지와 다르게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일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처분 매몰두수가 적었다는 점도 있지만, 유대정산을 위해 비교적 정확하게 관련 기록들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코드 9자리를 입력하면 개체별로 산유량, 체세포수, 세균수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젃소는 보상평가 기준이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 초임단계, 초임만삭, 초산우, 2산우, 다산우, 노산우, 초산우 이상 임신우, 고능력우 등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기준도와 젃소의 우유 생산 가치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이 점은 한우의 고능력우에 해당하는 종축의 보상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살처분 당시 시가와 다시 재입식하기 위한 시점의 가격차이가 너무커서 농가의 불만이 야기된 부분과, 한우에서도 제기된 지역별 시세차이에 따른 보상금의 차이 발생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3. 돼지

돼지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매몰두수가 많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매몰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은 미계측 매몰두수의 추정, 번식돈의 인정범위, 이동제한으로 발생한 과체중의 피해 인정, 비육돈에 대한 지급률 등이다.

#### 3.1. 미계측 매몰두수의 추정

정부는 미계측 매몰두수를 추정하는데 사료소비량과 MSY(모돈 1두당 연간 출하량)를 이용하였다. 매몰두수 1천 두 이상은 MSY를 13두에서 23두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으나, 1천 두 이하의 경우에는 15로 고정시켰다. 이 때 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3.2. 후보돈의 인정

정부의 ‘지침’에는 “순종돈을 구입하여 자체 생산 시 후보돈으로 인정하며, 비육돈에서 자체 선발한 후보돈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비육돈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선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농가의 불만의 소지가 있다.

#### 3.3. 이동제한으로 발생한 과체중

이동제한으로 발생한 과체중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동제한 기간 동안 자돈이 생산되고 기존의 자돈과 육성돈 등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농가피해가 크지 않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한양돈협회는 돼지 체중이 110kg을 넘어서면 사료섭취량이 많은 반면 증체율이 떨어지며, 이동제한 당시 상당수 농가에서 밀사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결국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되었고, 동 기간에도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소요된 점을 반영하여, 이동제한과 1일 증체량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를 보상하기로 하였다.

#### 3.4. 비육돈에 대한 지급률

농가에서는 “돼지가격 정산 시 지급률이 수년전부터 69%를 넘어서고 있고, 2011년에는 7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급률을 68.8%인 농협중앙회의 박피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정리>****구제역 피해보상 대책의 형평성 문제**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장기선

구제역 사태가 전국 75개 시군으로 광역화되고 6개월이나 지속되면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대책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나타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살처분보상금의 기준가격 설정과 이동제한 지역 가축수매의 효율적 운영이었다.

살처분보상금의 기준가격은 한우의 경우 시도별 산지거래가격(가축시장가격)으로, 돼지는 거래시세(자돈)와 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이다. 이러한 축종별 차이가 시행과정에서 살처분 피해농가의 불만 요소로 작용했다.

한우는 전국 85개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살처분보상금 기준가격이 11월말~12월초 산지거래가격으로 고정되어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반해 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 기준인 110kg 기준 비육돈 산지거래가격은 2010년 11월에 30만원에서 12월에는 32만9천원, 2011년 1월에는 48만원, 3월에는 49만7천원, 5월에는 54만5천원까지 지속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한우는 소비위축으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되었음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양돈농가 보상금은 극심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구제역 막바지인 3월에 살처분한 양돈농가 보상금은 11월이나 12월에 살처분한 양돈농가의 보상금에 비해 60%나 더 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보상금의 극심한 격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불만 해소와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돈농가의 큰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한우는 살처분보상금 기준가격 적용의 문제가 시도간 차이에서 발생했다. 지정시점의 가축시장 시세가 없거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도의 경우 대상 농가의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살처분보상금에 있어서의 축종별 차이는 이동제한지역 수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우의 경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어 수매 요구가 점점 거세질 수 밖에 없었으며, 돼지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 과제중 돼지를 대상으로 한 수매 확대 요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적 요인보다도 축산농가의 불만은 수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강하게 분출되었다. 이동제한 가축의 수매요령에 따르면 수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매대상농가 및 물량 통보에 따라 시도가 수매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도축·가공장을 지정해 운영토록하고 있다.

문제는 도축·가공장 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발생했다. 전국 75개시군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수매를 진행할 수 있는 도축·가공장이 한정되었고, 시도간 가축 이동이 금지됨으로써 수매대상 물량이 다른 시도 도축·가공장으로 옮겨 수매를 실시하는 것도 어려웠다. 따라서 수매물량은 그 당시 시도의 도축·가공장 확보와 도축·가공 능력에 맞춰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경우 한우는 수매 희망물량의 20%, 돼지는 36%선에서 수매가 이뤄졌으며, 더 나아가 최대 피해지역인 경상북도는 도축장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15%선의 수매 실적을 나타냈다. 한우농가의 경우 수매가 과체중 돼지 우선으로 이뤄지고, 희망물량의 20%에도 못미치는 선에서 결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만의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84일간의 수매물량은 한우 14,660두, 돼지 437,021두에 머물렀던 것도 도축·가공장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수매물량 축소에 그치지 않고, 농식품부가 수매물량의 즉시 방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한우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매물량이 30% 이상의 낮은 가격에 시장에 방출됨으로써 가격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의 형평성 문제는 결국 제도의 운영이 경직화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구제역 피해농가임에도 보상금의 차이가 너무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수매제도가 있음에도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이었다.

## &lt;외국사례&gt;

## 외국의 구제역 보상 대책

## 1. 일본

구제역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100%를 (‘10.6.4) 지원하고 있다. 가축의 월령, 혈통, 능력, 품종 등을 고려하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경영지원상호지원금, 사체 등의 소각 및 매몰 필요 비용 등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환축의 경우 평가액의 1/3이며, 의사환축은 평가액의 4/5이다. 의사환축 수당금은 적당한 평가에 의해 신속히 교부하며, 의사환축 평가액과 수당금의 차액(1/5)은 지방정부 부담 시 총무성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조치한다. 경영지원상호지원금은 방역조치 종료 후 경영 재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비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상당액의 절반 수준이 지원된다.

경영지원 자금 대책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의 용자범위를 확대한다. 대출 대상을 반출 제한 구역 내 농가 및 가축시장의 영업중지로 피해 입은 지역의 새끼 가축 출하농가까지 추가하며, 용자범위를 300억 엔으로 확대 및 대출 한도액을 인상한다. 농림어업 안정(Safety net)자금 대출한도를 인상한다. 살처분 또는 조기 출하 농가가 우량 종축을 리스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지원한다.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에도 해당 용자 보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특례 조치하고 있다.

송아지, 비육우, 자돈 출하지연 세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송아지의 경우 해당 농가의 평균 출하일령 이후 30일부터 첫 번째 시장 개장일 또는 두 번째 시장 개장일 사이까지 송아지 1마리당 하루 400엔을 지원한다. 출하 적기를 놓친 비육우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평균 출하 일령보다 40일이 초과하여 출하되고 지육 중량이 540kg 이상의 비육우에 대해서는 마리당 21,000엔을 지원하며, 출하 적기를 놓친 자돈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2010년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동제한구역(10km 이내)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전제로 한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백신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장려금, 가축방역호조기금의 경영지원호조금, 동등한 금액의 경영재개지원금, 백신접종부터 처분일수까지의 사료비용(가산금)을 지원하였다.



가산금 수준은 12개월 미만 육용 번식우의 경우 하루에 400엔, 12개월령 이상은 하루 680엔이며, 12개월 미만의 육전용종, 젖소, 교잡종 비육우는 하루 400엔, 12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는 600엔이었다. 낙농의 경우 12개월 미만은 400엔, 12~24개월령은 680엔, 24개월령 이상은 1,050~1,440엔의 가산금을 지원하였으며, 종돈과 비육돈에 대해서는 120엔을 지원했다.

## 2. 대만

살처분 가축은 「동물전염병예방조례」에 의거 지방정부에서 보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 가격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축은 평가액의 3/5 범위 내에서, 의심 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경우는 평가액 이내에서 보상을 실시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방역작업에 관련된 비용은 대만성에서 부담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1회 접종 시 5NT\$를 농가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행정원의 구제법에 의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시중 통상금리 7.9%보다 저렴한 3년간 3.0%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액은 800만NT\$(한화 272만원)이다.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도살한 후 냉동보관을 위한 보조가 있다. 돼지구입 보조 및 냉동보관료를 보조하는데 연이자 3%를 적용하며 1년 후에 상환한다. 폐사돈이나 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 3. EU의 구제역 재정 지원

유럽공동체(EC)의 회원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살처분된 동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의 살처분 후 90일 이내에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지원한다. 동물 및 오염된 생산품의 강제적인 살처분 및 폐기, 건물과 오염된 장비의 세척 및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며, 백신접종 조치와 같이 EU 방역규정 시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에서는 60%를 부담하고, 발생 회원국이 40%를 부담한다. 60%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다. 공동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구제역에 따른 동물의 강제적 도축과 관련된 비용, 도축의

폐기 관련 비용, 농장(시설)의 세척·소독 관련 비용, 오염된 사료 및 우유의 폐기 관련 비용, 오염된 장비의 폐기 관련 비용, 백신접종과 관련된 소모품 및 장비, 백신 구입비용과 백신투여를 위해 고용된 작업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다.

동물의 강제적 도축과 관련된 비용에는 살처분 작업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작업원의 봉급 및 보수, 살처분 작업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 및 구체적인 장비, 동물을 살처분 장소로 실어가기 위한 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대 등이 포함된다. 도체의 폐기와 관련된 비용에는 렌더링, 매몰, 소각 등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렌더링의 경우, 도체를 렌더링 업체로 수송하기 위한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대, 렌더링 업체에서 도체 처리, 육골분 폐기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매몰의 경우, 매몰을 위해 고용한 작업원, 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대, 해당 농장 소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소각의 경우, 특별히 고용한 작업원, 사용된 연료 또는 기타 물질, 서비스 구입 또는 도체 수송수단 임대비용을 지원한다.

유럽공동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및 여타 세금, 공무원 또는 공익근로자의 봉급, 공공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출, 비강제적인 살처분 보상, 농장 건물 파괴 또는 수선과 관련된 비용, 질병의 존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실업 또는 재입식 금지와 관련된 비용 등이다.

#### 4. 국가별 살처분 보상정책 비교

일본 및 대만의 구제역 발생 시 피해농가 지원 대책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축 시가의 100%를 정부에서 부담한 반면 일본은 가축평가액의 80%를 중앙정부, 나머지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대만은 중앙정부에서 가축평가액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정상 출하가 어려울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하지연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으며, 가축의 수매 및 보관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한국과 대만이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살처분 가축의 보상 기준은 기본적으로 살처분 가축의 시장가격이며, 수의관 등 가축 평가자가 평가액을 산정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국, 독일, 브라질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살처분 보상이나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 브라질, 호주, 네덜란드 등은 생산자나 관련업체가 기금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일본·대만의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비교 >

		한국	일본	대만
살처분 지역	살처분 보상금	◦ 가축시세의 100% (중앙정부 100%)	◦ 가축평가액의 100% (중앙 80%, 지방 20%)	◦ 가축평가액의 60%
	생계안정자금	◦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 지급 (상한 1,400만원)	◦ 경영유지자금 무이자 융자(상한: 가축평가액) ◦ 가축공제금 및 상호부조금(가입자)	◦ 양돈농가 긴급대출 (3%, 3년 상환, 상한 설정)
	가축입식자금	◦ 살처분 보상금 한도 내 융자 지원	◦ 우량가축 입식(리스) 지원	-
이동제한 지역	경영안정자금	◦ 5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3%)	◦ 출하지연에 따른 지원	-
	수매자금	◦ 가축 수매 지원	-	◦ 돼지 구입 및 냉동보관 보조
기 타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자녀 학자금 면제 ◦ 소득세 공제 등 ◦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 생산자(양돈) 거출금 면제 기간 연장 ◦ 가축시장재개 지원사업 ◦ 기타	◦ 백신 구입 비용 지원 ◦ 기타



## 제 6 장

### 종합 평가 및 정책 과제

#### 1. 구제역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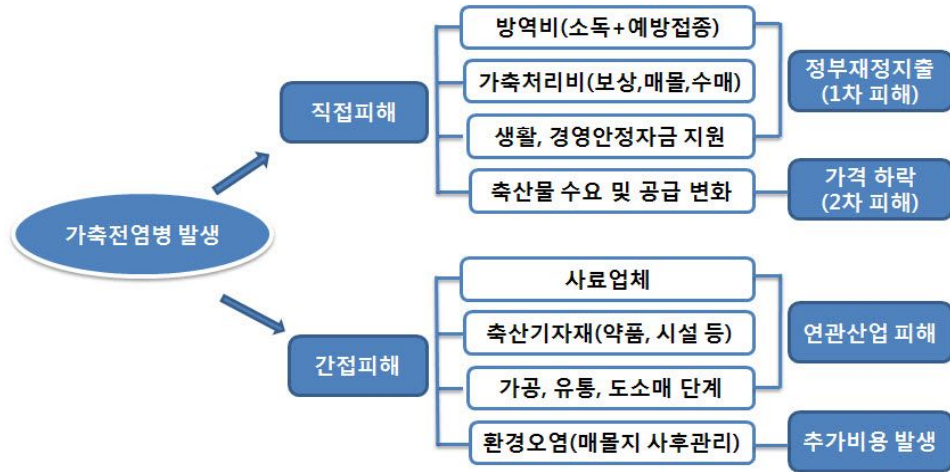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피해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이며, 간접피해 효과는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직접피해 항목으로는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국가 재정지출, 방역비용 및 매몰비용 지출, 수요와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변화, 수출 감소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피해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료, 시설(투입재), 도축 및 유통업체의 판매 감소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축산물 생산농가와 그 전·후방 산업 모두에 유·무형으로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모두 계측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정부 재정지출, 축산물 가격 하락, 관련산업 피해 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림 6-1>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 구조



### 1.1. 가축의 매몰 처분

먼저, 구제역의 직접 피해에 해당하는 가축 매몰 실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점차 확산되면서 가축의 매몰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확진 판정과 동시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발생 농장 인근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 1월 20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감염 매몰·처분 대상 가축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즉, 종돈장의 경우 종돈이나 후보 모돈이 감염되면 해당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처분하고 비육돈이 감염되면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 하지만, 일반 양돈장은 모돈이 감염되면 모돈과 예방접종 이후 태어난 자돈 모두 매몰·처분, 비육돈이 감염되면 해당농장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소의 경우에는 감염 가축 개체에 한해서만 매몰·처분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한 후 2011년 5월 3일까지 총 206건<sup>1</sup>의 구제역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구제역 양성 판정 건수는 153건이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달한다.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매몰 가축의 농장 수와 마리 수는 <표 6-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돼지는 2,103개 농장에서 331만 8,202두, 소는 3,750개 농장에서 150,864두, 염소는 229개 농장에서 7,559두, 사슴은 156개 농장에서 3,241두 등으로 총 3,479,866두에 달하였다.

구제역 발생 가축의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총 4,583개소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27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 1,135개소, 강원 470개소, 충남 417개소, 충북 229개소 등이다.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환경오염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자체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상태가 부실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차수, 사면보강, 옹벽, 우수배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몰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 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6-1>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두수(2011.4.12 기준)

축 종	가축 매몰 농장 수	매몰 마리 수
소	3,750	150,864
돼지	2,103	3,318,202
염소	229	7,559
사슴	156	3,241
소계	6,238	3,479,8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 매몰·처분 대상 지역 내에서 재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 1.2. 구제역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구제역은 일단 발생하면 전염병의 피해규모가 커서 긴급방역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2010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구제역은 2000년, 2002년, 2010년 1월과 4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비교하여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범위도 매우 넓었다. 앞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1년 5월 18일까지 총 153건이 발생하였고, 매몰·처분 가축도 3,479,866두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액도 그 이전과 비교하면 대단히 막대한 액수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한 구제역에 소요된 재정지출액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1조 8,240억 원,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1,200억 원, 생활안정자금 232억 원, 가축수매 3,772억 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15억 원, 환경부 4,46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표 6-2>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 관련 재정지출 추정액

구 분	2010년 11월~2011년 5월
발생	- 기간 및 건수: 2010년 11.29~2011년 5.18(171일간), 153건 ※ 경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방역조치	- 매몰·처분 3,479,866두, 예방접종
국내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청정국 회복 : 상당 기간 소요 예정
재정지출액	- 3조 1,759억 원(추정치) ·매몰·처분 보상금: 1조 8,240억 원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1,200억 원 ·생활안정자금: 232억 원 ·가축수매: 3,772억 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15억 원 ·환경부: 4,466억 원(상수도 4,203억 원, 매몰지 환경 관리 142억 원, 매몰지 정비 121억 원)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잠정치.



&lt;표 6-3&gt; 2010년 하반기 이후 시·도별 구제역·AI 보상금 지급 상황(2011.6.30 기준)

시·도	소요 예상액 (A)	시·도 배정액(B)	농가 집행액(C)	비중(C/A)
강원	2,209	1,883	1,182	53.5%
경기	8,266	5,869	4,283	51.8%
경남	198	208	114	57.6%
경북	4,201	2,170	1,943	46.3%
대구	8	18	12	150.0%
대전	6	8	4	66.7%
부산	2	3	1	50.0%
서울	12	15	12	100.0%
울산	5	6	2	40.0%
인천	302	180	93	30.8%
전남	331	318	313	94.6%
전북	71	139	108	152.1%
충남	1,614	1,231	1,111	68.8%
충북	1,392	971	562	40.4%
합계	18,617	13,019	9,740	52.3%

주: 시·도 배정액 및 농가 집행액에는 구제역·AI 이외에 브루셀라 보상금 등 평시 소요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잠정치.

구제역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시·도별 분포를 보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보다는 축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의 보상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경북, 강원, 충남, 충북의 순이다.

정부는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2011년도의 방역 소요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정부의 재정지출 추정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 예산규모를 정리한 것이 <표 6-4>이다. 이 표의 매몰보상금 소요예산액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보상금 소요액 76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몰지 전체 예산 362억 원 중에서 구제역에 의한 재정지출은 300억 원으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다.

&lt;표 6-4&gt; 구제역·AI 관련 소요예산 현황(2011.6.29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소 요 예산액 (A)	예 산 확보액 (B)	시·도 배정액 (C)		농가 집행액 (D)		과부족 (B-A)	
			집행율 (C/A)	집행율 (D/A)				
매 몰 지 역	매몰 보상금	18,617	14,068	13,019	69.9	9,740	52.3	△4,549
	생계 안정	232	218	182	78.5	182	78.5	△14
	가축 입식 경영	236	51	41	13.0	41	13.0	△264
이동 제한 지역	79							
	가축 수매	1,400	247	-	-	-	-	△1,153
가축 방역		1,200	1,200	830	69.2	830	69.2	-
매몰지 정비		121	121	121	100	121	100	-
합 계		21,885	15,905	14,193	64.9	10,914	49.9	△5,9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잠정치.

### 1.3.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

#### 1.3.1. 과거 구제역 발생시의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sup>3</sup>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2000년에는 구제역 발생 후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1.4%, 돼지 산지가격은 15.9% 하락하였다. 농가의 심리 불안으로 조기출하가 급증하면서 한우와 돼지 도축두수는 구제역 발생 전후 20% 이상 증가하였다. 즉, 발생 기간 동안 공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가격 하락폭은 작아 최고

3 구제역 발생에 따른 2000년과 2002년 수요 감소 추정량은 「2002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영향」에서 재인용.

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8~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2년 구제역 발생 기간에는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1.6%, 돼지 산지가격은 1.8% 상승하였으며, 소, 돼지 도축두수는 4~15% 감소하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3~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 전후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2009년 12월 대비 1.3% 상승하였다. 2000년과 같은 홍수출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월에 가축시장 폐쇄로 송아지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개장 후 입식 수요 증가로 수송아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2010년 1월 돼지 지육가격은 2009년 12월 대비 6.5% 하락하였으나, 2월 이후 돼지 가격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0년 4월 구제역 발생 당시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3월 대비 1.5% 하락하였다. 돼지 지육가격은 3월 대비 8.4% 상승하였다.

<표 6-5> 구제역 발생 전후 산지가격 및 도축 두수 변화

단위:%

구분		2000년(1차)	2002년(2차)	2010년 1월(3차)	2010년 4월(4차)
한우	수소 산지 가격	-1.4	1.6	1.3	-1.5
	도축두수	20.0	-15.0	13.0	-1.4
돼지	산지가격	-15.9	1.8	-6.5	8.4
	도축두수	23.0	-4.0	-8.1	-8.2

주: 전월대비 증감률.

다음으로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계절성을 고려한 수급 변동률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수소와 돼지 산지가격의 계절성을 살펴보면, 1월 수소 산지가격은 설 수요로 12월보다 상승하며 4월에는 3월보다 하락하였다. 돼지의 경우 1월 돼지 지육가격은 12월보다 하락하고 4월에는 3월보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 후 계절성을 제거하고 보면, 수소 산지가격은 6.8% 상승, 돼지 산지가격은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축두수(국내 공급량)를 고려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다. 4월 구제역 발생 당시 계절성을 제거할 경우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1.1% 상승, 돼지 산지가격은 0.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공급량을 고려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7~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6> 구제역 발생 전후 국내산 수요 감소 수준 추정

단위: %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1월	2010년4월	2010년12월 (소비자조사)
한우	수소가격	-1.4	1.6	6.8	1.1	-
	도축두수	20.0	-15.0	-14.8	-8.8	-
	국내산 수요	-8.0	-15.0	-7.0	-7.2	-1.0
돼지	산지가격	-15.9	1.8	-4.6	-0.8	-
	도축두수	23.0	-4.0	-1.8	-5.1	-
	국내산 수요	-10.0	-3.0	-1.2	-8.0	-1.5

주: 전월대비 증감률임. 국내산 축산물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가격과 도축두수의 계절성을 제거하고자 평년과 실제치의 차이를 적용하였음. 국내산 수요 추정에 이용된 계수 값은 쇠고기는 0.94, 돼지고기 1.67임. 2000년과 2002년의 경우 「2002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영향」에서 재인용.

### 1.3.2. 2010년 하반기 이후 축산물 가격 및 수급 변화

위와 같은 기존 구제역 상황에서의 수급 및 가격 변동 경험을 참고하여 2010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한 구제역 상황에서의 영향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구제역 발생 이후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0년 12월에는 구제역 발생 이전 상황을 고려한 추정치와 구제역 발생으로 실제로 나타난 실제치와 차이가 거의 없지만, 2011년 3월에는 2만두가 추정치보다 적으며, 6월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돼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에는 실제치와 추정치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3월에는 실제치가 추정치보다 27.7%, 6월에는 23.4% 내외 적게 나타났다.

&lt;표 6-7&gt; 구제역 발생 전후 사육두수 추정치 및 실제치 차이

구 분		2010년 12월	3월	6월
한우 사육두수 (만두)	기존 추정치(A)	292	294	303
	구제역 이후(B)	292	288	305
	감소율(B/A, %)	-	-2.0	0.6
돼지 사육두수 (천두)	기존 추정치(C)	9,841	9,733	9,550~9,600
	구제역 이후(D)	9,881	7,036	7,330
	감소율(D/C, %)	0.4	-27.7	-23.2~-23.6

한편, 2010년 1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도매시장 공급이 증가하여 12월 도매시장 한우고기 1등급 가격은 14,521원(지육 kg당)으로 11월보다 2.1%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1년 들어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 한우가격이 폭락을 시작하면서, 4월까지의 줄곧 추정치와 실제치간 차이가 벌어졌다. 수요가 다소 회복을 시작하여 5월에 잠시 차이를 줄이는 듯하였다. 그렇지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고되면서 조기출하가 늘어 6월 들어 차이가 다시 벌어졌다.

2010년 12월의 돼지 지육가격은 4,329원/kg으로 11월 대비 9.2% 상승하였다. 이후 2011년 들어 국내산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줄곧 추정치와 실제치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3</sup>.

분석 결과, 한육우의 경우 소비자가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3 한육우 도축두수는 기존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하여 가격차이 만큼을 곱해 구제역 이후와 이전의 생산액 차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정부 재정지출과 더블 카운팅되는 계산의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실제 도축두수와 가격 차이를 곱하여 그 차이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계산에 사용되는 가격의 단계가 소비자 가격이어야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부위별로 발표되어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이에 산지가격으로 가격을 대체하고 도축두수를 곱하여 얻는 방법이 사용 가능한데, 이 경우 소비자 잉여의 증감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비율만큼 중간 소비자 구입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라는 용어 대신 소비자 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어 소비자 이익((추정가격-실제가격)×도축두수)이 증가하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육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이익 감소분을 계산해 보면, 대략 4,173억~5,57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sup>4</sup>.

<표 6-8> 구제역 이후 도축두수

	2010년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육우	63,645	83,259	31,151	50,921	56,377	64,062	70,161
돼지	1,274,060	962,309	791,004	947,299	906,443	870,793	780,913

<표 6-9> 구제역 발생 이전과 이후의 가격 추정치와 실제치 차이

구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우 수소가격 (만원 /600kg)	기존 추정치(A)	480~500	470~490	460~480	450~470	440~460	440~460
	구제역 이후(B)	465	414	383	367	380	320
	(B/A,%)	-3.1~7.0	-11.9~15.5	-16.7~20.2	-18.4~21.9	-13.6~17.4	-27.3~30.4
돼지 지육가격 (원/kg)	기존 추정치(C)	4,200~4,400	4,200~4,400	4,200~4,400	4,300~4,500	4,500~4,700	4,600~4,800
	구제역 이후(D)	6,342	6,372	6,565	5,786	7,200	7,675
	(D/C,%)	44.1~51.0	44.8~51.7	49.2~56.3	28.6~34.6	53.2~60.0	59.9~66.8

주: 1~3월 한우 수소가격은 2등급 경락가격(지육kg)에 지육율(59.1%)을 고려하여 생체 600kg으로 환산함.

4 한육우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줄곧 소비자 이익 증가로 나타나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분이 워낙 크고 소비자 이익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의 합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국민경제 파급 영향

2011년 2월 16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생산액 감소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낙농 8.37%, 한육우 3.90%, 양돈 3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생산액 감소를 바탕으로 구제역 발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sup>5</sup>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낙농, 한육우, 양돈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감소액 4조 93억 원, 부가가치 감소액 9,550억 원이며, 고용감소효과는 47,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구제역 발병에 의한 축산업 생산액 감소가 관련 산업에 작용하여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0.1%에 달하는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은 관련 산업 중 도매업과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경종농업,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운송업계, 금융업계 등에도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1. 구제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 지역축제 취소의 영향<sup>6</sup>

지자체들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지역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양 매화축제의 경우 2010년에는 60여만명이 다녀갔고

<sup>5</sup> 산업연관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이다.

<sup>6</sup> 이 부분은 각 지역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각 지자체 청취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174억 원에 달했으나, 축제가 취소되면서 방문객이 30~40% 가량 줄어들어 7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례 산수유축제도 관광객이 30%정도 줄어 간접효과까지 더해 1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감소하였다고 하며,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의 경우에는 500억 원 정도,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295억 원 정도, 해남 땅끝매화 축제의 경우 7~8억 원 정도, 담양 추월산벚꽃축제의 경우 1억 2천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천어축제는 겨울철 대표축제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533억 원, 간접효과까지 합칠 경우 1,16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축제 취소로 축제준비를 위해 이미 투입한 예산 40여억 원도 피해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농민들이 산천어축제에 맞춰 출하해 비축해 놓은 10억 원 규모의 농·특산물의 판로도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태백산눈꽃축제의 경우 이미 지출한 4억 원 이외에도 300억 원 정도, 인제 빙어축제의 경우 153억 원, 내설악강변축제 5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나. 상가 매출 감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지역의 경우 사랑의 김장나누기, 하회마을 관광객 감소 등 지역의 주요행사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그동안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축산업이 무너진 점을 더 큰 피해로 보고 있다.

구제역 여파는 가장 먼저 육류시장에 영향을 미쳐 구제역 사태 이후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으며,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음식점들의 매출도 20~90% 정도 줄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비단 경북지역에 그친 현상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1월에 육가공 및 육류 도·소매업체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곳이 53.0%에 달했다. 응답 기업들의 평균 매출 감소액은 40.1%였다.



## 1.5. 사회적 갈등 사례

### 1.5.1. 축산업 내의 갈등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지역 갈등 발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이다. 최초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마을에선 주민 간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검역원이 구제역 전파 원인으로 최초 발표한 베트남 여행자의 추후 거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서현단지 내 양돈농가의 구제역 최초 전파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구제역 최초 발표일로 알려진 지난해 11월 29일보다 6일 앞선 23일에 농가가 첫 의심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당시 간이키트 검사만 실시하고 구제역 음성이라고 판단한 검역당국의 부주의를 비롯하여 농장주에게 신고날짜를 28일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태까지 이르러, 경찰까지 사태에 개입하면서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최근에 와서는 돼지 1만 6000여마리를 매몰·처분한 서현양돈단지(6만 4,900여㎡) 내 7개 농가도 2만여 마리의 돼지 재입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근 서현리 28가구 주민 60여명은 단지 폐쇄 요구와 함께 돼지 재입식을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돼지 재입식에 있어서도 구제역으로 종돈 90만 마리 가운데 30만 마리가 매몰되면서 두당 50~60만 원 하던 가격이 90만원 이상까지 상승하여 거래되고, 모돈과 후보돈 역시 구제역 이전의 2배 정도인 100만원까지 상승하여 같은 업종 내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 1.5.2. 농업 내 업종간 갈등

안동 서현양돈단지에 재입식을 반대하는 주민 항의와 더불어 이러한 재입식 저지 하의 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주시 갈산리 양돈단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등의 사례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

는 사례들이다.

### 1.5.3. 정부와의 갈등

구제역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농식품부가 보상금 지급기준을 내놓으면서도 축산농가와 정부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의견의 차이는 주로 구제역 매몰·처분 보상 기준에 있으며, 보상

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중 표준체중 정보에 대해서는 농가와 정부간 의견차이가 크다.

실제로 매몰·처분 당시 목측한 데이터와 농식품부가 하달한 표준체중정보에서 황소와 암소 모두 100kg 가량 무게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안동시의 경우 이번 구제역으로 지역에서 매몰한 한우는 총 34,000여두로, 전체적으로 약 3,400,000kg의 차이를 보이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관세 0%)하는 물량이 적지 않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와 정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 6-1> 돼지 재입식 반대 현수막



출처: 부산일보(2011.4.6)

**<해설>****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2009년 국내 총생산액은 1,063조 590억 원 이었다. 그 중 농림어업 생산액은 2.6%를 차지하는 24조 9,288억 원이었다. 같은 해 축산업 생산액은 16조 5천억 원으로 농림어업 전체 생산액 중 39.9%에 해당하였으므로, 축산업이 국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 해당한다.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백억 원에서 2009년 16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축산업의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09년 39.9%로 증가하였다. 이는 축산업의 성장 속도가 여타 농산물의 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2009년 축산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4.8%, 돼지는 33.2%, 우유는 10.5%, 육계는 12.3%, 계란은 8.2%, 오리는 7.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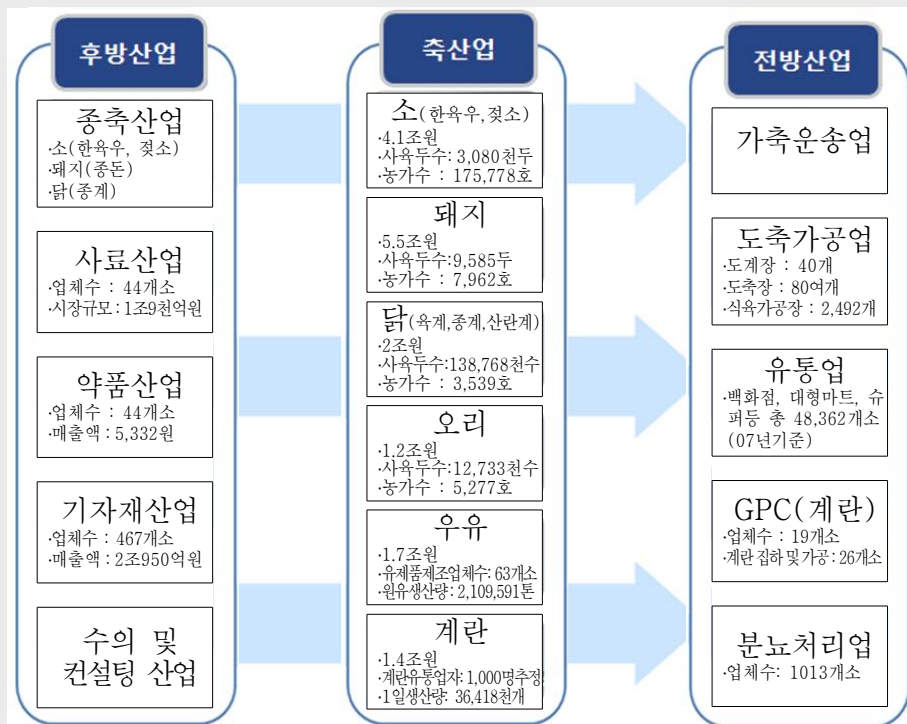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는 2009년에 61조 6,0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실적은 30조 8,320억 원으로 추계되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농림수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10.9%, 식품산업은 2.0%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2009년의 12년간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작물의 평균 부가가치는 70~80% 라는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축산업은 10~20% 수준, 어업은 5~10% 수준, 임업과 농림어업 서비스는 5% 이하에서 변동하여 왔다. 2005년 이후 2009년 기준으로 축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13% 수준이다.

축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축산물 생산에 따라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 증대 효과를 말하며, 축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를 생산유발계수로 추정하면 약 29조원 정도이다. 이 중 육류 및 육가공품이 7.2조, 제조업 5.3조, 배합사료 4.7조, 낙농품 3.3조, 농림수산광업 2.5조, 서비스 2.0조, 음식점 1.0조원 등이 된다.

한편, 축산업의 취업유발 효과(축산업 생산액 1억 원당)를 계산해 보면, 육류 및 육가공품 29.5명, 낙농품 13.3명, 농림수산물업 4.9명, 음식점 3.0명, 도소매 2.7명, 배합사료 1.2명, 빵·과자·국수류 1.1명 등이다. 축산업 생산액 기준으로 총 취업유발 인원은 98만 5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육류 및 육가공품 30만 명, 낙농품 13.5만 명, 농림수산물업 4.9만 명 등이다. 이러한 의미는 축산물의 국내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은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



## 2.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

### 2.1. 방역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 2.1.1. 방역 관련법

축산방역 체계는 가축질병의 예방·박멸·확산 방지 활동과 외국의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활동에 관련된 법규, 조직, 위기대응 방식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현행 축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주요 법률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며, 「축산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축산법」은 “축산업 구조개선, 축산물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미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축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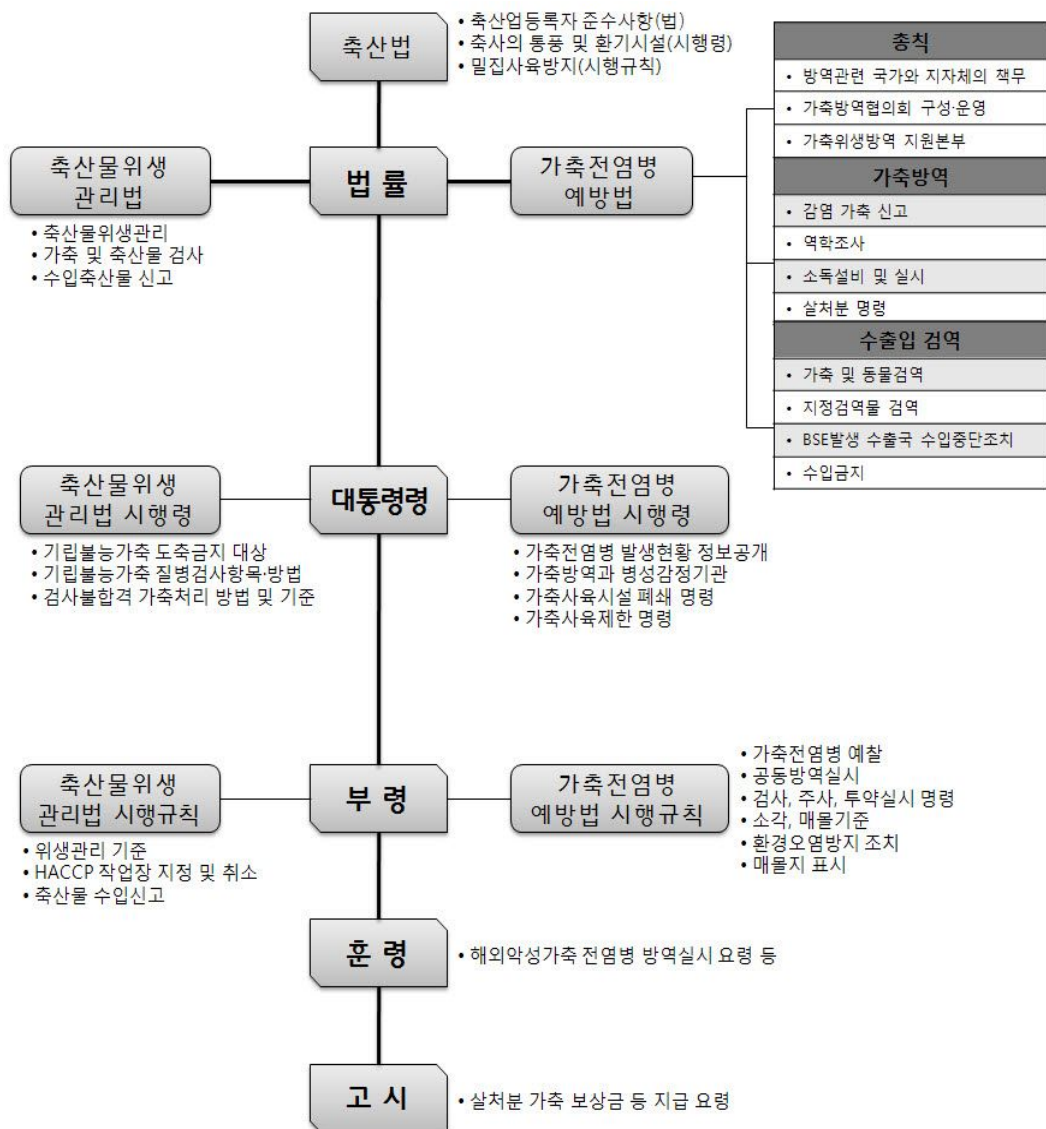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관련법과 함께 방역 및 검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 훈령),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등과 같은 농식품부 훈령과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축산법」 제22조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축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축사육시설에 통풍 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축산법」 제26조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의하면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두수 이상으로 밀집하여 사육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총칙, 가축의 방역, 수출입검역,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총칙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축소유자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2> 축산방역 및 검역 관련법의 구성 및 내용



가축의 방역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병성감정, 역학조사, 가축거래 기록작성 보존, 소독설비 및 실시, 질병전염 가축의 격리 및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살처분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검역 부분은 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수입금지,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수입검역, 수출검역, 불합격품의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칙 부분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지원, 살처분 명령이행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방역 및 살처분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칙에는 방역 및 검역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1년 이하), 벌금(300만~500만원), 과태료(300만~500만원) 부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 등의 기준 규격 및 표시, 축산물의 위생관리,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감독,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의 위생관리 부분은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도살처리 및 식용 금지, 가축별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폐기방법 등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 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 사육부터 축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가축 및 축산물 검사 부분은 도축장 등의 영업자는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관(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과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 가축의 사육방법의 개선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기립불능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질병 검사 및 검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는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역 관련법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신고체계 구축, 긴급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기관과의 협조 대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지만 방역관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농가의 자율방역시스템 구축과 민간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 2.1.2. 방역 조직 체계

축산방역·검역조직의 범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조직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데 협력하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축산 방역조직 체계는 중앙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 생산자·민간조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방역 및 검역 관련법에 기초한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는 <그림 6-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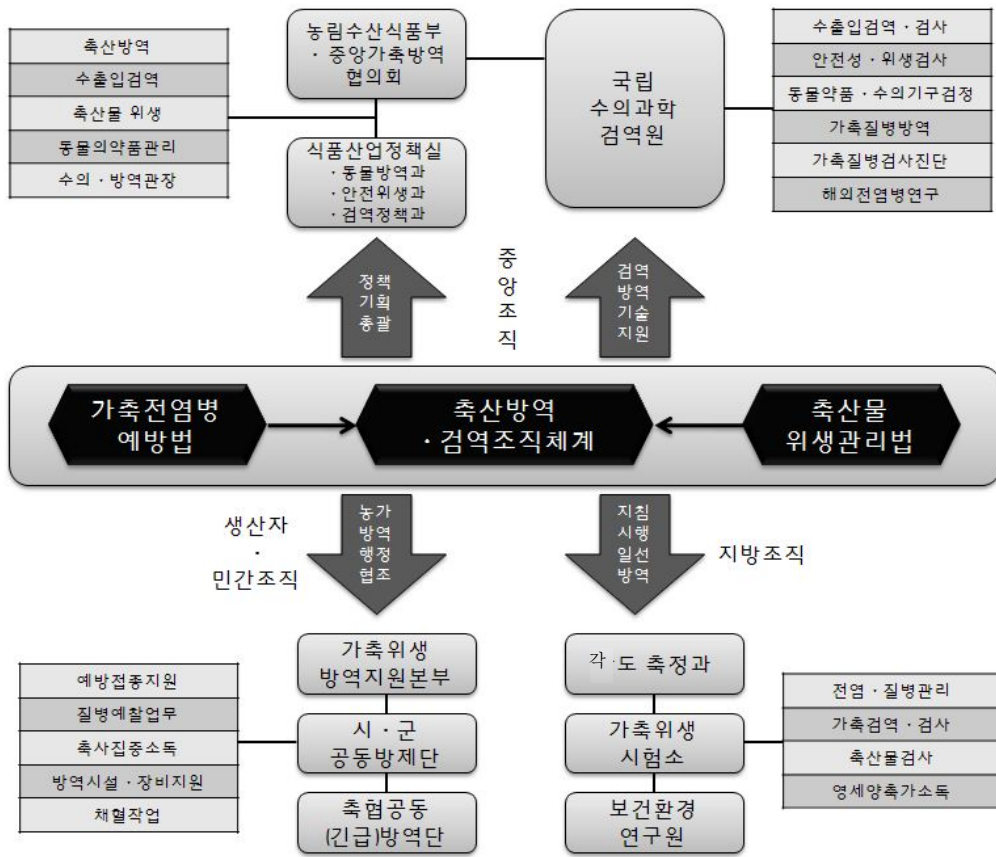
축산방역 및 검역의 중앙조직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로 구분된다.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가축방역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 제도 개선 사항, 가



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며, 주로 축산 또는 수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림 6-3> 축산방역·검역 조직 체계 및 역할



지방조직으로는 시·도 및 시·군 축산과와 시·도 소속 방역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 시·도 및 시·군 축산과는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관련 정책의 시행, 중앙조직의 지시 및 시달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 진단·예찰·축산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 소속 방역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1개씩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1개씩 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시·군 단위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전국에 걸쳐 약 130개소가 있다.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민간방역조직은 시·군 공동방제단, 지역축협의 공동(긴급)방역사업단,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 공동방제단은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각 시·군에서 부락 단위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약 1만 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축산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를 소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선 행정기관과 지역축협으로부터 인력과 장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역축협의 공동방역사업단은 1997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요령(농림부 훈령)」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단별로 5~10명의 조합 직원과 방역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방역사업단은 정부지원으로 방역차량과 소독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과 운영비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는 구제역 발생 등 특별 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긴급방역단이 있으며, 시·군 지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사집중소독과 농장출입 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돼지열병비상대책본부가 전신이며, 현재 중앙본부를 비롯하여 8개의 도본부가 있으며, 도본부 소속의 41개 출장소가 있다. 그리고 중앙본부 소속의 3개(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가 있다. 가축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접종, 농장채혈, 질병예찰, 방역교육·홍보,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1.3. 위기관리 및 대응 체계

가축질병의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위기경보 수준별 판단기준은 <표 6-10>과 같다. 가축질병의 위기 경보 발령은 관심단계부터 경계단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평가하여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심각단계 발령은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된다.

<표 6-10>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관심(Blue)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구제역 발생 및 국내 유입 징후
주의(Yellow)	국내 지역적 규모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경계(Orange)	국내 구제역 발생 후 타 지역으로 전파
심각(Red)	국내 발생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징후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0.8)」에 의하면 가축질병 위기관리의 목표는 가축질병 위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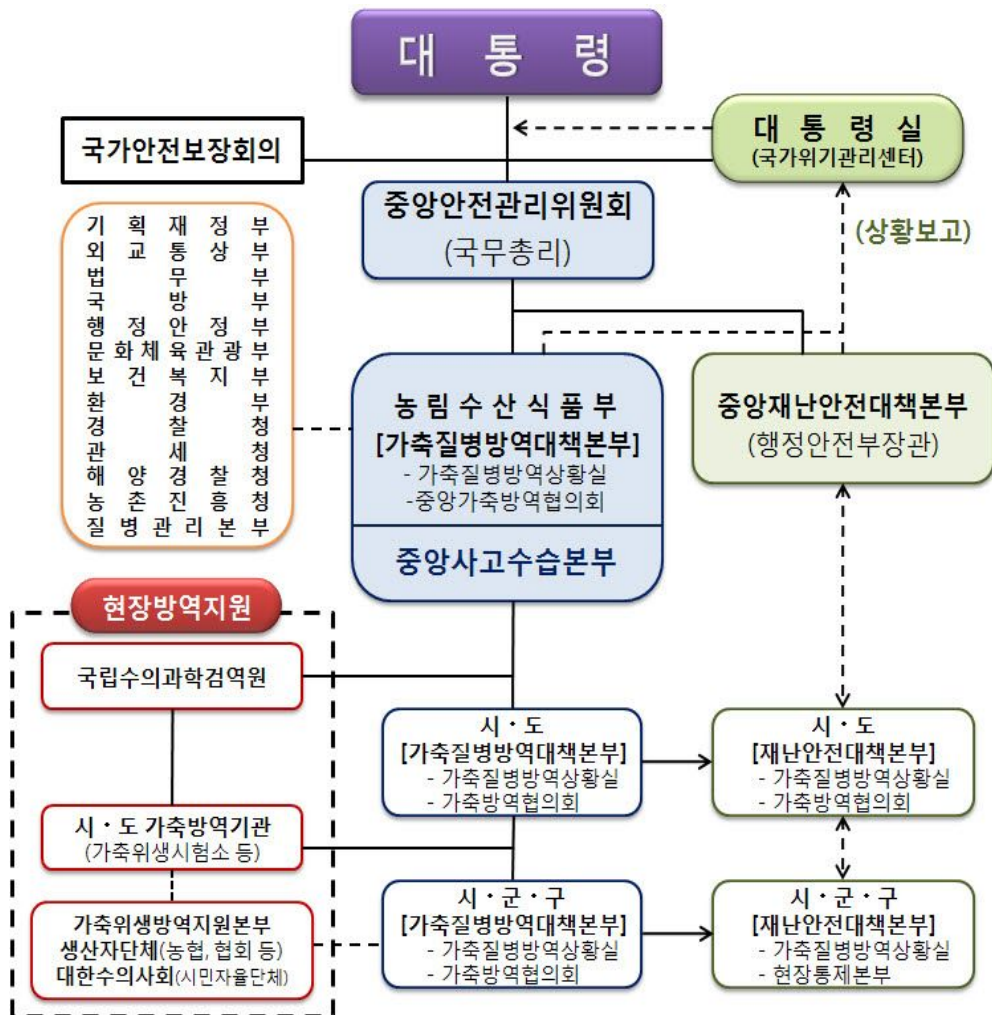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예방 차원에서 평상시부터 국내외 가축질병의 발생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감시·예찰체계 가동, 사전 예방약품 및 소독시설 확보, 관계자에 대한 방역교육·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며,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활동 강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가축질병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는 지역차단 및 살처분 등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퇴치하며, 위기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 가축방역 기관과 관련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가축질병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 6-4>와 같다. 위기관리 기구별 역할을 살펴보면,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은 위기정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관리

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장관)는 위기관리 활동을 관장하고 협조·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위기상황이 심각 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필요시 위기관리 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6-4> 현행 가축질병 위기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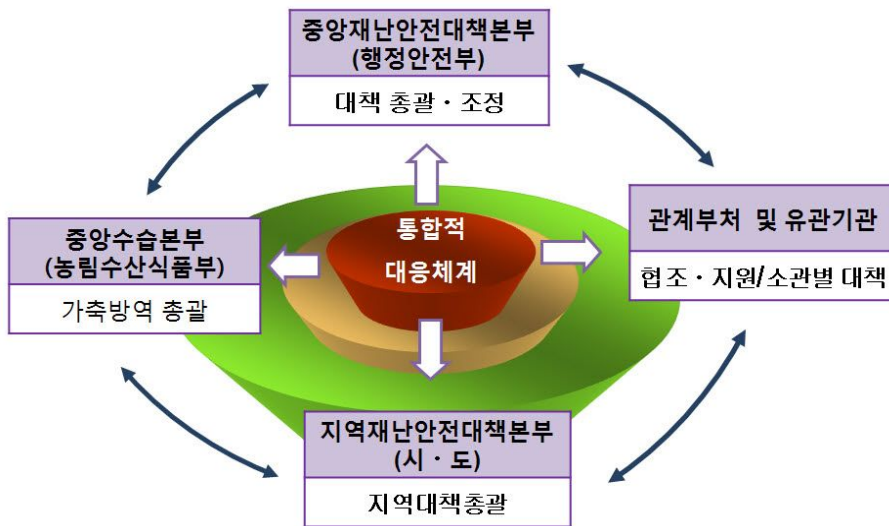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대책의 계획 수립 및 시달, 종합적 가축질병 위기대응 대책 추진,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정책 결정 및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및 시·도 방역 대책본부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기 발생 시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며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위기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어 운영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질병의 정밀검사 실시 및 기술지원,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가축방역관 파견,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전국 공항·항만 등 검역 활동, 해외여행객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예산 등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를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대책을 총괄한다

<그림 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계도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환경부는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협조하고 방역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예방물품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은 해외 가축질병 동향 및 정보의 수집·전파를 지원하고 가축질병 해외발생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의 조정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상대로 가축질병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홍보 및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을 방문한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출입국자 추적관리를 지원하며, 국방부는 현장 방역인력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오염·위험·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에 인력 지원을 하며, 관세청·해양경찰청은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항만 등 검역활동 강화하고 국내입항 무역선·외항선·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에 협조한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자체 보유 가축을 예찰하고 현장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 2.2. 방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2.2.1. 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 한계

매년 해외여행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교역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항만에서 수입 축산물, 해외 여행객, 우편물을 검색하는 검역관(동물)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여행객 수는 2003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2,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물 검역관은 78명에 불과하다.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5~11월에 구제역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중 9,400명이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항만을 통과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방문 후 입국 시 소독조치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2010년 하반기

기 구제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안동 사례).

### 2.2.2.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장에는 사료,약품,수의,출하,분뇨 등 전후방 관련업자 및 차량들의 방문이 잦지만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차량소독조 설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우농가는 19%, 양돈농가는 25.2%만이 차량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사주위 울타리 경계를 설치한 한우농가 비율은 71%이며, 양돈농가는 78.4%로 조사되어 축산농가의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는 양돈농가의 경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우농가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3.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안동지역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성판정을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체진단 키트 검사를 바탕으로 음성으로 판정하여 종결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기 부정확한 진단이 구제역 확산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 초기 신속한 차단방역, 인력 동원, 살처분 처리, 매몰지 확보 등에 있어 미숙한 점이 크게 부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2.2.4. 이동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의 한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개 시·도 이상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감염·의심 가축의 발견 일시 및 장소, 사육환경 및 분포, 감염 원인 및 경로 등이다.

현재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등 감염원인과 경로 파악은 탐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농가와 관련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제공이 없으면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는 사람 및 차량의 농가출입 기록 부재, 중간유통상인의 거래기록 부재, 농가들의 부정확한 진술 및 비협조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 파악과 이동경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2.5.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예방약 수급계획, 예방접종 방법, 예방접종 주기, 예방접종 실시 및 범위결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접종 실시여부와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결정한다.

SOP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요령이 있지만 구제역 등 급성 전염병 발생 시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 범위(링백신, 지역백신, 전국백신)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등 세부 사항이 없어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0년 하반기에 발생한 구제역 백신접종 사례에 있어서도 백신접종 시기와 범위, 사전적 백신물량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 2.2.6. 매몰지 관리 문제 부각

구제역이 2010년 하반기의 겨울철 혹한기에 발생하고 살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하여 긴급하게 매몰 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



이 발생하였다. 특히 경사지, 하천변, 저습지 등 부적절한 토지에 매몰지가 조성된 곳이 많고 매몰과정에 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도 다수 발생하였다. 부실 매몰 처리로 침출수 지하 유출 가능성과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한 곳은 전국 4,799곳(구제역 4,583곳, AI 216곳)이다. 농림수산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살처분 매몰지 4,172곳을 조사한 결과, 매몰지 417곳(9.8%)에서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유형은 비닐 훼손 및 매몰지 내 흙 다짐 미흡, 배수로 및 집수조 미설치, 유공관 및 가스배출관 미설치, 매몰초기 침출수 유출, 경사지 매몰지 조성, 침출수 지하 유출 가능성 등이다.

### 2.2.7.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현재 방역조직의 역할은 농림수산물부가 정책을 수립하며, 검역을 통한 질병 유입방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행하며, 방역관련 지침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방역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조직 간의 명령체계, 장비 및 인원동원 근거, 예산지원 근거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조직 간의 연계성 및 통제력이 미약하여 효율적인 국가방역의 실현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방역조직 및 체계는 축산농장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예찰과 위기 발생시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등은 동물약품업자, 사료판매업자, 가축유통상인, 가축분뇨처리출입차량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들 축산관련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질병 예찰정보 수집과 분석,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는 매우 부실하다.

### 2.2.8.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제기

축산업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축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로 지역사회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축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낮아 비판적 시각도 많은 상태이다.

축산업은 영세한 축사구조와 밀집사육으로 가축질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의 상당부분이 전업규모 이하의 농가이며, 이들이 전체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전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상태이다. 영세한 농가는 일정지역 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축사구조가 영세하며, 과잉 입식되는 사례가 많아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높다.

### 3.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 3.1. 한국 축산업의 비전

##### 3.1.1.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Sustainable Livestock

###### 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제고된 “녹색축산” 실현

앞으로 축산업은 친환경적으로 영위될 것이다. 친환경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된 상태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즉, 지역별 농경지 등을 고려한 가축분뇨 수용 가능량을 설정하고, 지역별 가축단위(LU: Livestock Unit) 총량을 유지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때, 가축단위 총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육두수 증량을 억제하거나 초과물량에 대해 부족지역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쿼터거래제도 도입 등 처리 방식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축사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축사환경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

이다. 밀집사육으로 인해 낮아진 가축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회복하고, 강건성이 강화되며,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보다 내실화하고, 시비기반도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비료의 품질 제고 및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며, 지역별로 토양의 성질별로 시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맞는 맞춤형 가축분뇨 비료의 개발 등도 필요하다.

친환경 축산과 관련하여 농장동물 복지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의 국제 규범화 추세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과정을 망라한 포괄적인 농장동물 복지 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 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제고된 축산업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통해 축산업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축산업의 위상제고를 통해 지역민 고용 효과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산지소의 활성화, 농촌관광의 주요 테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이 구축을 통해 축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망하여, 이를 통한 축산물 생산이 중요하다.

종축 및 사료곡물 공급의 안정화도 추진될 것이다. 한국형 종축 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사료작물 생산 기반 확대 및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조달 체계 구축 등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3.1.2. 방역과 기술 수준이 높은 축산업; Technological Livestock

#### 가.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국제협력 체계가 구축된 상태의 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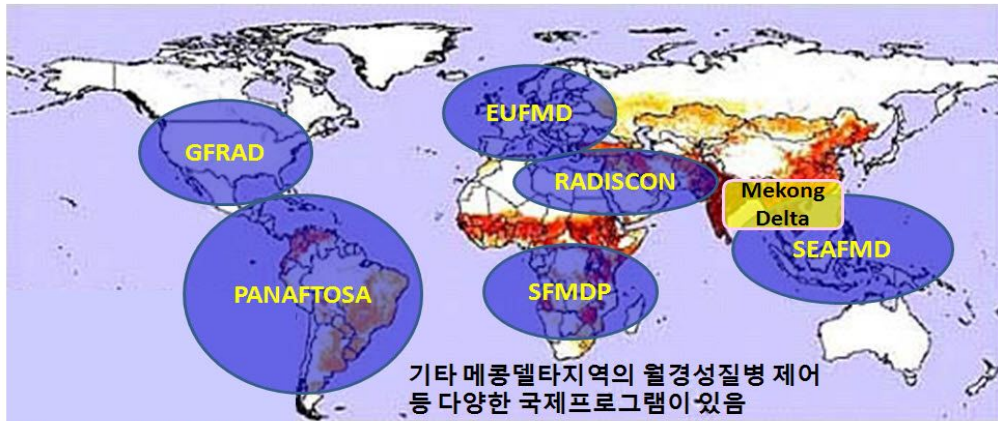
금번 구제역 사태에서 농가의 차단방역과 초기 대응능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 등 차단방역 시설과 농장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철저 그리고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이 중요하다. 아울러, 초기진단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원키트 사용 의무화, 지자체 중심의 초기대응방식을 중앙정부 주도의 대응방식으로 전환 등 농가차단방역과 초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과학적 역학조사 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탐문조사와 더불어 농가방문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 및 이동경로 파악이 상시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GIS 등을 이용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검역과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구제역 발생(경험)국으로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검역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U의 경우 FAO 산하에 EU-FMD와 같은 공동 방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공동 구제역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 조직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과 더불어 동북아 구제역 공동방역을 위한 조직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림 6-6> 세계의 구제역 관련 국제연구 및 공동제어 조직



EUFMD: 구제역 제어를 위한 EU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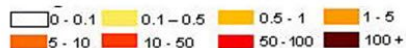
GFRAD: 구제역연구세계연합

PANAFMOSA: 범미대륙구제역센터

SEAFMD: 동남아시아 구제역제어활동

SFMDP: 동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구제역프로젝트

RADISCON: 동물질병 발생동향 조사와 제어의 북아프리카,중동,아랍지역연계망



자료: 가고시마대학. 2011.3. 「월경성 가축 질병 발병 관련 동북아 심포지엄」.

## 나. IT, BT, NT, G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한 축산업

스마트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IT를 활용한 축사시설 및 사양 관리의 현대화가 요망된다. 즉, 초고속인터넷과 CCTV를 활용한 축사의 원격 제어 및 가축의 출산, 발육상태 관리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BT를 활용한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위생성도 제고될 것이다. 축사·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IT와 RT(로봇기술) 적용을 통한 도축장 및 가공시설의 위생성과 생산성 제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R&D)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니즈와 기후 변화 등 생산과 소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1.3.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은 축산업; Advanced Livestock

#### 가.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제고된 축산업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 그중에서도 양돈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MSY(모돈 두당 출하두수)는 현재 15두 정도인데 비해 유럽 수준은 21~23두 정도로 차이가 크다. 앞으로는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모성 질병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사료 효율 제고, 번식과 비육의 분리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

한편, 축산업의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및 부가가치가 제고된 축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2009년 현재 축산업의 생산액은 16조 5천억으로 농업생산액의 40% 수준이나 부가가치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농림어업 중 13.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축산업 생산액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축산물 가공식품의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생고기를 숙성시켜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open-sandwich 개발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장

개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축산업과 전·후방산업을 지역단위로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간의 경제성 추구 및 방역의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 **나. 품질 제고를 통해 국내 축산물 시장이 보다 차별화된 축산업**

품질제고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강화를 위해 친환경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동물 복지 인증제 도입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차별화를 위해서는 소지자 니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생산에 반영하고,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품질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조금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국내 축산물 소비기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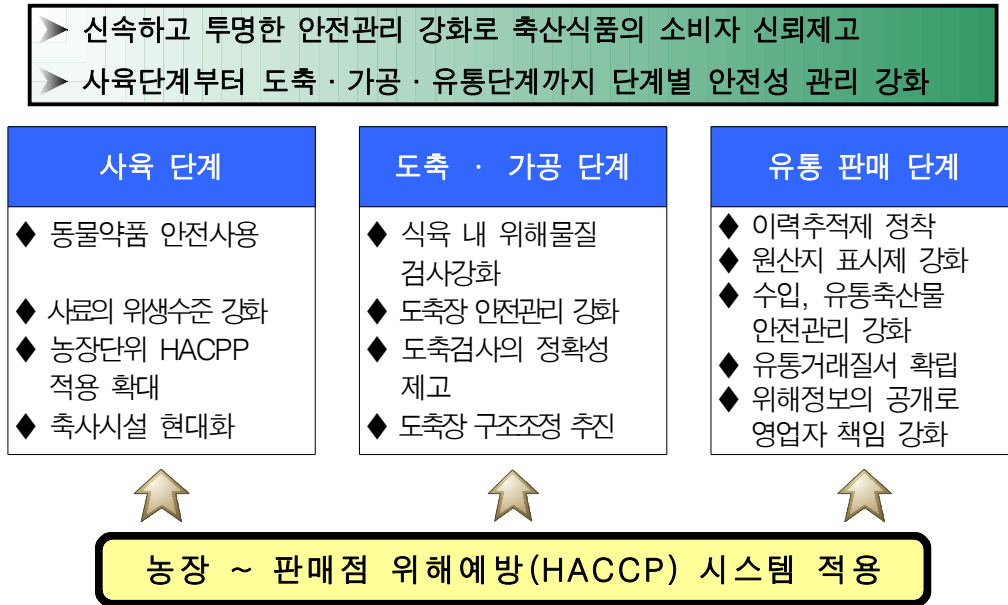
### **3.1.4. 신뢰 가능한 축산업; Believed Livestock**

#### **가.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축산식품의 소비자 신뢰가 제고된 상태의 축산업**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식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현재 도축·가공단계만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을 유통단계별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정착과 아울러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양계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력추적제 기반을 구축하여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림 6-7>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나. 축산농가와 계열업체간 신뢰가 구축된 축산업

한편, 축산 계열화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을 축산법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독립법이 제정될 것이다. 축산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래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이 때 민간계열화와 조합계열화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등의 균형감각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과제이다.

#### 3.1.5. 축산 종사자의 경영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의식이 고양된 축산업

앞으로 축산업은 축산업 종사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격인증제 또는 면허제 또는 허가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영위될 것이다. 신규진입농가에 대한 가족사양관리, 방역, 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업종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의무교육 준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부

여될 것이다. 기존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축산업 전문인력 부족문제의 해소를 위해 후계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오염부하가 큰 지역 또는 농경지의 양분이 초과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통한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 신규축산농가 진입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축거래상 허가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산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질병전파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동시에 수의사 처방제를 통한 항생제 남용 방지 및 수의사고용의무화를 통해 출하 가축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별 또는 농가그룹별 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3.1.6. 공정한 축산업; Equitable Livestock

앞으로 공정한 축산업이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축산과 비축산간에 노정되어 있는 갈등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집단이기주의 해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과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등에 대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축산업을 떠나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희생프로그램 도입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 3.2. 방역체계 개선방안

### 3.2.1. 검역체계 강화 및 주변국과 국제 협력 증진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 검역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발생국 여행 후 입국 시 소독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구제역 및 주요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를 축산농가에 사전에 제공하고 해외 방문 축산농가에 대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해야 한다. 캐나다는 입국 시에 방문 목적을 기입하고,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면 공항의 검역 교육실에서 의사로부터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있다.

출입국에 따른 기본적인 방역 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에 따른 보상 배제 및 축산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축산관계자가 외국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소독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약 5~7일) 농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농장의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을 방문한 사람의 코 속 분비물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관계자는 최소 3일 동안은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소포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우편집중국의 검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경기도 파주 구제역 발생농장에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에게 보내온 우편물 속에 그 나라 고유의 양기름이 들어왔는데도 검역원 역학조사에서 우편물 수취인의 확인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들이 많아, 해외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질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즉, 동북아 및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질병 상시발생국가의 질병 청정화를 위해 국가 간 공동 연구, 질병 정보 공유, ODA 등을 이용한 방역 관련 기술과 know-how 전수 등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U는 FAO 산하에 EU-FMD 공동 방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3.2.2. 초기 대응 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되거나 의사환축이 확인되면 위기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주의’단계가 발령된다. 동시에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농장 인근의 사료, 분뇨, 출하 등 관련업종의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구제역과 같은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하고 정교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 방역기관에서도 항체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원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진단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최초 확인될 경우 질병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 당일부턴 일정기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의 사람과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자국 내에서 구제역이 최초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단계의 최고 수준인 적색을 발령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이나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72시간 동안 중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관련 전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심각단계 수준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시 최초 백신접종 시점과 범위에 대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에 상황별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신접종 후 매몰·처분 범위, 백신수급대책, 임상검사 방법 등 백신접종 후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3.2.3. 방역조직 개편

현행 중앙 방역조직과 지방 방역조직은 명령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업무의 연계성과 통제력이 미약하며,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방역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명령 및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방역 정책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검역업무 중심의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검역과 방역을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 방역조직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은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있어 비상시 효과적인 통제 및 업무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조직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2.4.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가축전염병이 축산농가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축사 울타리 경계 설치, 차량소독시설 설치,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장출입자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샤워 후 농장에서 제공하는 의복 및 신발을 착용한 후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탐문조사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PS 및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축사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관리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사를 방문한 차량 등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3.2.5.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구제역 발생의 토착화를 방지하고 국내 축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백신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

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의 혈청 유형은 O형이지만 국내 및 주변국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A, O, Asia 1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혈청형의 바이러스유입에 대비한 혼합백신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백신접종은 6개월 단위로 재접종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제류 전체 사육두수를 고려한 백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물량 조달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백신공장 설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백신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가속에 대한 예찰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항목을 추가하여 백신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3.2.6.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구제역과 HPAI 등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매몰·처분 가속의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초동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적절한 매몰로 인해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되었다. 그리고 매몰·처분 매몰방식에 있어서도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가축전염병의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매몰·처분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합한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해야 한다. 매몰처리방식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현재 우제류에 대해 전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대규모 매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한 만큼 매몰방식 이외의 소각, 렌더링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매몰·처분과 매몰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농식품부 공동으로 대규모 공공매립지 지정 또는 소각시설 건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2.7. 방역비용 부담 원칙 확립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을 위해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회원국에게 60%의 방역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모니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와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우농가의 경우 46%, 양돈농가의 경우 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비용 지불 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한우농가는 자조금의 절반 수준인 마리당 1만 원을, 양돈농가는 마리당 500원을 지불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방역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대규모 구제역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축산 농가, 축산업계,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가축질병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2.8.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축산업은 그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장의 성과를 달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가축질병·가축분뇨로 인한 혐오산업 인식 등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었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축산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밀집사육으로 낮아진 가축질병의 저항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개선 및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위면적당 적정입식두수 유지가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육단계뿐만 아니라 운송과 도축을 포괄하는 동물 복지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농장뿐만 아니라 가축의 운송과 도축단계에서도 방역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도축 단계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전 유통단계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기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축산업 종사자의 경영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축사시설을 갖추고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진입제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하며, 가축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상인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3. 축산업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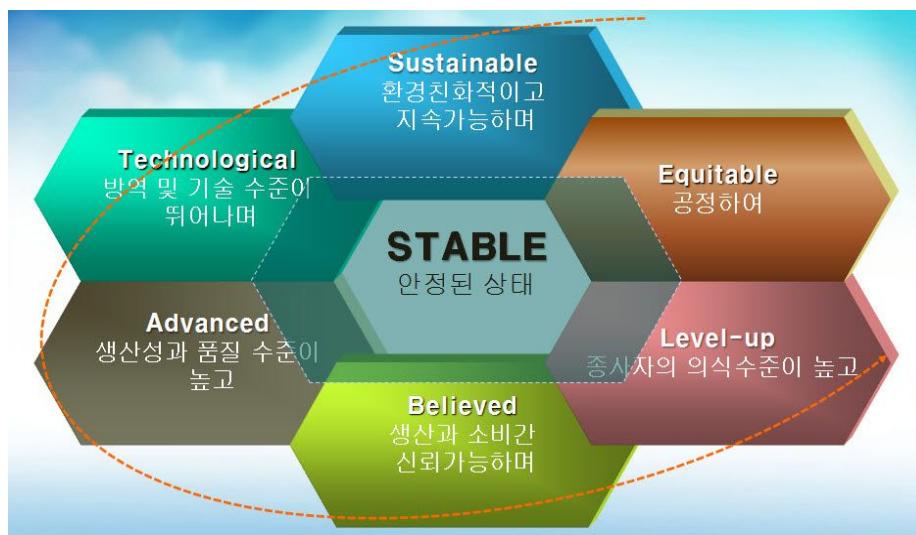
#### 3.3.1.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

선진화란 사전적 의미로 발전단계나 진보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외국문헌에서는 해당단어가 없지만 발전과 진보의 개념으로 advancement, development, progress 등의 용어가 있다.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며, 양적인 증가를 강조하는 경제성장과는 차

별적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진보(economic progress)는 이상 또는 가치목표를 향한 경제의 전진을 의미하며, 경제적 후생의 증진, 즉 생활수준의 향상과 실질 국민소득의 증대를 사회의 목표로 생각하는 C.클라크에 의해 주로 연구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그림 6-8>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 정의



축산업이 그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 추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축산업 선진화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방역 및 사양기술이 뛰어나며(Technological),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고(Advanced), 생산자와 소비자간 또는 축산과 비축산간 신뢰가능하며(Believed), 축산업 종사자의 의식수준이 높고(Level-up) 공정하여(Equitable) 전체적으로 안정된(STABLE) 상태로 정의한다.

&lt;표 6-11&gt; 축산업 선진화의 핵심 키워드

지속 가능성 (Sustainab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li> <li>축산업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li> </ul>
방역 및 기술 수준 제고 (Technologic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단방역과 초기대응 강화</li> <li>IT, BT, NT 등 첨단기술 반영</li> </ul>
생산성과 품질 수준 향상 (Advanc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li> <li>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균형 발전</li> </ul>
생산과 소비간 또는 축산과 관련 산업간 신뢰 제고 (Believ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구축</li> <li>축산농가와 계열업체의 신뢰 구축</li> </ul>
축산업 종사자의 의식수준 제고 (Level-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경영체의 경영 역량 강화</li> <li>축산경영체의 책임 의식 제고 등</li> </ul>
공정한 축산업 (Equitab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갈등 구조 해소 등</li> <li>구조조정 촉진과 사회적 배려</li> </ul>

### 3.3.2. 축산업 선진화의 정책 방향<sup>7)</sup>

축산업 정책은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축산물의 품질이 향상되어 소비기반이 확대되었으며,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축산정책은 축산업 생산액 증가, 축산물 자급률 향상, 그리고 고용확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가축 분뇨 문제와 질병 문제 등으로 축산업은 지역사회에서 혐오산업(NIMBY)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이제까지 축산업의 경제적 측면이 사회적·환경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왔다고 응답하였다.<sup>8)</sup> 또한, 전문가들은 질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 미흡, 열악한 축사시설 및 사육

7 이 부분은 정민국 외, 「축산업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8 업계, 정부, 학계 등 축산관련 전문가 32명(학계, 정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축산 관련 정책들의 축산업 선진화에 대한



환경(밀집사육 등), 낮은 생산성, 축산농가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식 미흡, 환경부하(양분수지)를 초과하는 과도한 사육두수 등이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축산업 행위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비중

구분	경제적 측면 << 사회적·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사회적·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사회적·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사회적·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사회적·환경적 측면	합계
응답 자수	1	1	1	8	21	32

<표 6-13>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순위	문 제 점	점수
1	질병 관리 및 방역시스템 미흡	83
2	열악한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밀집사육 등)	66
3	낮은 생산성	52
4	축산농가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식 미흡	45
5	환경부하(양분수지)를 초과하는 과도한 사육두수	41
6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	31
7	일반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 (환경오염산업 및 질병만연 산업)	31
8	축산농가의 낮은 경영 역량	30
9	지역주민의 축사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	24
10	축산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	20
11	가축분뇨 자원화 미흡 및 퇴·액비의 품질	14
12	고부가가치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생산 미흡	13
13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불신	13
14	무허가 축사	12
15	열악한 축산농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미비 (폐업 보상 및 회생 프로그램 등)	5

축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경쟁력 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17일~26일이며, 이메일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었을 때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축산 정책은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 향상 정책과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가 축산부분에서 “경제와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축산부분에서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보호’의 병행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산업 종사자, 정부, 관련 학계 등이 협력하여 축산부분에서의 “경제와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6-14> 축산부분에서의 “경제와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의 필요성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수	32	0	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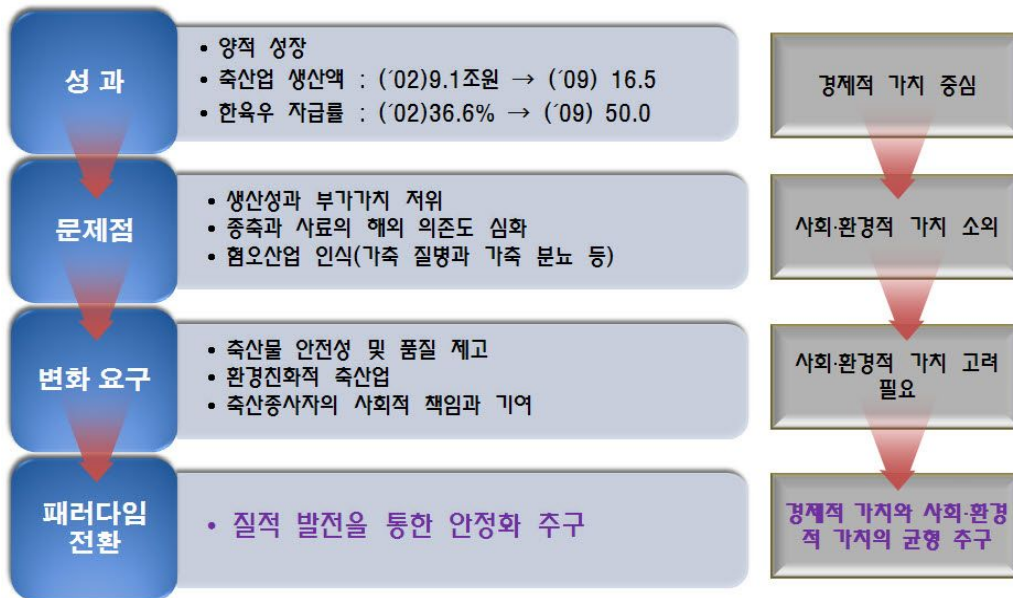
<표 6-15> 축산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보호’의 병행 가능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응답자수	4	20	5	3	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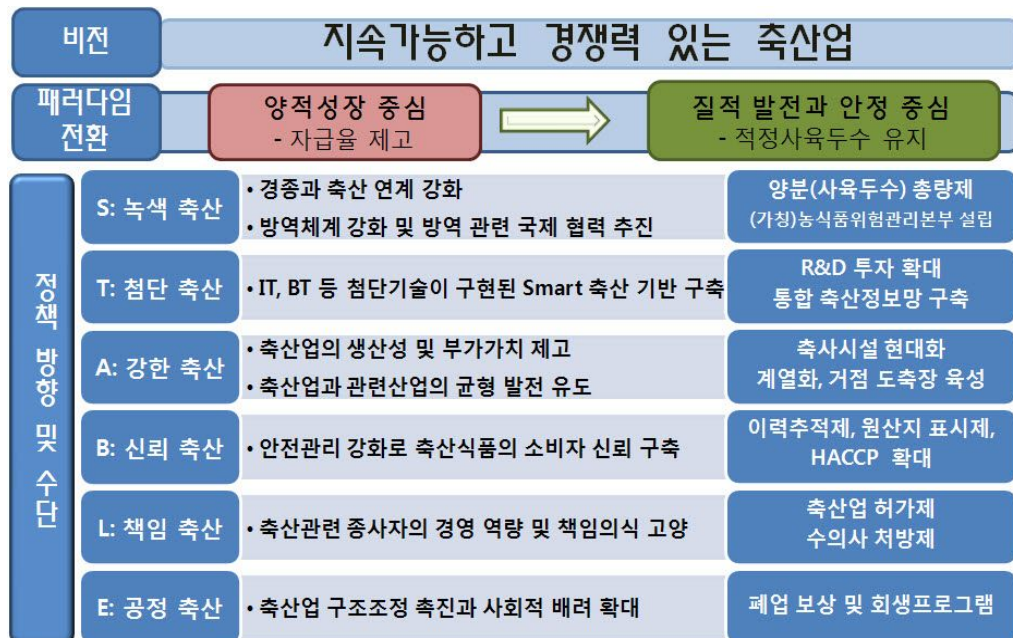
다음 <그림 6-10>은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해진 축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질적 발전을 통한 안정화’를 추구하는 축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축산업이 경제적,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산업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축산업 선진화는 현 정부에서 국가 의제화하여 추진 중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성장’ 추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림 6-9>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그림 6-10> 축산업 선진화의 정책 방향



축산업 선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 방역 대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농촌 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과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축산업의 문제점, 선진화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전문가 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업 선진화의 비전, 정책 방향 및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9</sup>

### 3.3.3.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

#### 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필요성

축산업 허가제 도입의 근거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어느 한 농가에 피해가 국한된 것이라 아니라 다른 농가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의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적 교섭을 통한 해결, 사법적 해결, 제도적·행정적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가축 전염병 문제의 해결은 추후 시행 예정인 축산업 허가제와 같은 제도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나. 축산업 등록제의 문제점

축산업 등록제의 내용에는 등록 시설의 기준이나 가축단위당 축사면적, 교육의 의무 등 다양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등록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가 규정하는 기타 내용 중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 할 적정 가축사육밀도’는

9 여기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이라는 축산업 비전의 적절성을 묻은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29명(전체 32명)이 ‘매우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 기준”(농림부고시 2004-8호, 2004.3.17)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등록제는 농가 이외에 가축 상인이나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인공수정사 및 수의사 등 농가와 직접 접촉하는 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 다. 허가제 도입이 필요한 부분

축산업에 허가기준을 정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허가제는 등록제보다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이수의 의무나 등록기준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축산업에 신규진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허가제가 현행 등록제와 차별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 등록제의 경우 등록치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농가 등을 퇴출할 목적인 경우 허가제에 의해 허가된 사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사육두수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등록제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허가제에 의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가제에 지역 개념을 포함시킬 경우 등록제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고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유지에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법제처, 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 결과).

#### 라.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방안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가축방역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선진 축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축산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 등 처리업(돼지 50개소)은 20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

육규모에 따라 20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허가를 위한 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교육 기준을 제시하고, 위치 기준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설은 차단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교육은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80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은 40시간, 5년 이상은 24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소독 및 예방접종 등이다. 한편, 허가제에서는 등록제보다 강력한 벌칙이 적용되고 현행 등록제에서의 벌칙은 다소 완화된다.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마. 향후 과제

허가제가 2012년부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전문가 확보, 교육을 시행할 기관 지정 및 인력 확보 등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2015년 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 등록제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축산업 허가제가 정착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불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의무 교육 시행과 더불어 인력 확충 등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비율은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허가제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차단방역 시설, 분뇨처리 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 토지용도 부적합, 건폐율 초과 등으로 기존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증축이나 개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새로운 시설을 증축할 수 없어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부의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축산

업 허가제의 확대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3.3.4. 환경을 고려한 축산업 진단과 과제(지역별 양분총량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사료와 물이 소요되며, 우리나라의 축산은 경지면적의 제약으로 양축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사료공급기반인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포의 확보가 병행되지 않아 상당량의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의 형태이다. 가축분뇨는 자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업적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축산부문의 경우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질병과 특화계수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sup>10</sup>, 가축질병 발생 지역의 특화 계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가축 전염병과 지역별 가축사육 밀집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원환경 측면에서 축산업을 진단한 결과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밀 사육과 질병발생이 잦은 지역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 기준 작물생산과 가축사육두수를 적용하여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량(양분수지)을 계산한 결과 질소성분의 양분초과율은 68%로 추정되어, 화학비료 투입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분투입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학비료 5% 감축 시 평균 6% 정도의 양분초과율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화처리 10% 증가 시 질소 양분 수지는 약 5%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투입량을

10 송주호 외,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7, 2004.12.

상당량 감축하거나 가축분뇨의 정화처리가 확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살포지역으로 산림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양분총량제의 경우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양분 감축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시·군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3.3.5. 무허가 축사 실태와 대책

#### 가. 무허가 축사의 개념 및 유형

무허가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중 건축법 상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재되지 않은 시설이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에는 1) 건축물대장에 타 용도(퇴비사, 창고 등)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2) 건축물대장의 축사면적보다 확장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3)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나. 무허가 축사의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보유 축산농가 모니터 6개 축종, 1,012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축사 면적 중 건축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77.7%인 것으로 나타났다(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 22.3%). 축종별로는 양돈 농가의 등재비율이 가장 높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에서도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농림부 축산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59.9%가 건축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돈 농가의 등재비율이 높고, 닭 사육 농가의 등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부



내부자료).

축종별·규모별로 축사 등재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우 축사 등재율은 76.9%였다. 특히 소규모에서 축사 등재율이 낮아 20두 미만의 경우 62.4%였다. 낙농 축사 등재율은 평균 74.2%로, 20두미만의 경우는 53.6%였다. 양돈 축사 등재율은 평균 93.5%, 그중 1천두 미만은 91.5%였으며, 산란계 축사 등재율은 평균 89.5%, 그 중 2만수 미만은 82.2%였다. 한편, 오리 축사 등재율은 평균 63.3%, 그 중 1만수 미만은 41.2%였다.

#### 다. 무허가 축사 존재의 원인 및 문제점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축사들이 건폐율 등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비롯하여 축사시설 관련 법률이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개별농가가 스스로 축사를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축산농가가 건축사 도움을 받을 경우 건축물 등재 대행비용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농가들의 낮은 준법 의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의지 미약, 정부의 홍보 및 교육 부재 등도 무허가 축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으로 먼저, 방역 및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무허가 축사의 방역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가축질병 발생 및 전파의 원인이 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축사 중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 무허가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정상적인 축사운영이 어렵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시설 대부분이 열악하여 축산업 생산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1) 무허가 축사를 추인(追認)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도록 하는 대책, 2) 축산법 등을 강화하여 무허가 축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추인을 통한 양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축사 관련법에 따른 추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인 후 등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추인을 통해 양성화가 어려운 축사 즉,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사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예: 문중 땅, 임대 토지) 대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성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차별적 적용하고,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축사양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법 소과부처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 26일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법 적용 및 개선이 제시된 바 있다. 즉, 일반 건축법은 사람의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축종별 사육 방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축종별 차별적인 건폐율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는 축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축산업 허가제의 정착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축산업 상 축산업 허가제의 차단방역 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을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 억제, 환경오염 저감, 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건축법 상 무허가 축사 여부가 사회·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축사가 무허가인 경우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축산업 허가제를 통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초과 시에도 양성화되지 못할 경우 축산업 영업을 금지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이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금 지원 시 무허가 축사의 허가 축사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별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때 무허가 축사 농가의 축사 이전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축사 증·개축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08년 7월 28일 제정)를 제정한 사례가 있다. 이 조례에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대 농가 일괄(one-stop) 서비스 행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조사 무허가 축사 존재 원인중 하나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등록비용 과다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3.3.6. 축산 관련 인증제 현황과 개선 방향

현재 축산 관련 표시·인증제로는 HACCP,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구분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등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에 있다.

축산물 인증제도들은 도입 목적은 상이하지만 실천방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제도간에 차별화 부족으로 인증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생산자에게도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환경축산물인증제도와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는 각기 동물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인증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와 2008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미미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지정제도는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HACCP는 1998년 도축·가공장에 적용한 이후 농장·판매 등 식품망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단계의 경우 인증농장

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비중은 11.1%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경우에도 2010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6,265농가에 불과하다. 이중 유기축산 인증농가는 99농가, 무항생제축산 인증농가는 6,166농가이다. 또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저감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09년 1월에 1개 농장이 최초로 지정받은 이래, 2011년 현재까지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6농가에 불과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증축산물 가격에 대한 시각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설문조사 결과 농가는 일반적으로 축산물인증제가 경제적 이익을 별로 실현시켜주지 못한다고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인증축산물의 가격수준이 다소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축산인증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현재의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인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실효성이 없거나,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증·표시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자의 인증제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국가인증에서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도의 경우에도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는 일부 동물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될 예정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들 제도를 보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기 법적 기반이 상이한 축산물인증제도의 보완·통합을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며,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여건이 되는 농장의 경우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농가의 경우 생산단계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인증제도로써가 일상적으로 시행 가능한 관리모델을 마련하여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축산물 인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

다. 현재 친환경 안전 축산물직불제의 경우 신청자격이 HACCP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을 한 농업경영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참여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HACCP와 분리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경우 제도 정착단계에서의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HACCP,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주요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거나, 생산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서 이의 도입 수준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물인증제도의 이해와 실행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경영컨설팅, 현장 기술지도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 축산물인증제 도입 농가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량수요처의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2010 구제역 백서』, 2010.9.
- 경상남도, 『2011 구제역 방역백서』, 2011.5.
- 농림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구제역 백서』, 2003.5.
- 농협경제연구소, 『구제역 발생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CEO FOCUS), 2010.5.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구제역, 우리는 이렇게 막아냈다』 (구제역 방역 우수사례집), 농민신문사, 2011.5.
-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방역백서』, 2011.6.
- 파주시, 『구제역 희망백서』, 201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의 파급영향과 정책과제』, 200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영향』, 2002.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방역체계 개선방향』, 2011.5.
- 허덕, 『구제역 발생에 따른 2011년 상반기 소·돼지가격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1.
- 이언 앤더슨(Iain Anderson), 『2001년 구제역, 교훈 도출을 위한 조사보고서』 (2002.6.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번역자료.
- 口蹄疫對應檢證委員會, 『口蹄疫對應檢證委員會報告書』, 平成22年11月24日.
- 宮崎縣口蹄疫對應檢證委員會, 『2010年口蹄疫調査報告書』, 平成23年1月.





## 부록 1. 구제역 상황일지

## 1. 구제역 신고·검사 및 조치사항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가축(잠정)
1	'10. 11.28, 16:15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	5,500	양성 (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3km 내·역학관련 예방적 살처분	·소: 124호, 2,052두 ·돼지: 14호, 51,155
			돼지	3,500			
2	11.29, 17:40	경북 안동시 서후면이송천리	한우	5	양성 (2)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5호, 46두
3	11.30, 17:40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한우	29	음성	-	-
4	12.1, 11:00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한우	150	양성 (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4호, 181두
5	12.1, 11:20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한우	3	양성 (4)	"	·소: 5호, 85두
6	12.1, 15:40	경북 안동시 이천동	한우	210	양성 (5)	"	·소: 12호, 574두
7	12.2, 09:50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한우	68	음성	-	-
8	12.2, 12:50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한우	3	음성	-	-
9	12.2, 13:00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한우	69	양성 (6)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1호, 478두
10	12.2, 13:00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한우	29	양성 (7)	"	·소 : 2호, 42두
11	12.2, 13: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한우	1	양성 (8)	"	·소 : 6호, 129두
12	12.2, 13:00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돼지	4,000	양성 (9)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농장의 경우 3km내 예방적 살처분)	·소: 1호, 64두 ·돼지 : 4호, 5,04두
13	12.2, 14:25	경북 안동시 노하동	한우	117	양성 (1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2호, 197두
14	12.2, 14:25	경북 안동시 옥동	염소 돼지양	13	음성	-	-
15	12.2, 14:25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100	양성 (1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2호, 123두 ·돼지: 1호, 340두
16	12.2, 14:25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80	양성 (12)	"	·소 : 5호, 89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잡정)
17	12.2, 14:25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35	양성 (13)	"	·소 : 3호, 188두 ·돼지 : 2호, 34두
18	12.2, 14:25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한우	106	양성 (14)	"	·소 : 8호, 148두
19	12.2, 21:00	경북 안동시 서후면이송천리	한우	6	양성 (15)	"	·소 : 7호, 35두
20	12.2, 21: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36	양성 (16)	"	·소 : 18호, 24두
21	12.2, 21: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35	양성 (17)	"	·소 : 16호, 24두
22	12.3, 15:00	경북 안동시 풍산면 회곡리	돼지	570	양성 (18)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500m 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 농장의 경우 3km내의 돼지 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소 : 12호, 252두 ·돼지 : 7호, 4,736두
23	12.3, 15: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한우	45	양성 (19)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1호, 429두
24	12.3, 15: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한우	53	양성 (20)	"	·소 : 51호, 76두
25	12.3, 18:10	경북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한우	6	음성	-	-
26	12.3, 18:10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2리	한우	65	양성 (2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132두
27	12.3, 18:10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한우	20	양성 (22)	"	·소 : 17호, 224두
28	12.3, 21: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한우	83	음성	-	-
29	12.3, 21: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한우	72	양성 (2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156두
30	12.3, 21:00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2리	한우	37	양성 (24)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5호, 140두
31	12.3, 21:00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한우	37	양성 (25)	"	·소 : 5호, 104두
32	12.3, 21:00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한우	85	양성 (26)	"	·소 : 3호, 174두
33	12.3, 21:00	경북 안동시 서후면 광평 퇴	한우	7	양성 (27)	"	·소 : 19호, 238두
34	12.4, 11:40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한우	45	양성 (28)	"	·소 : 3호, 121두
35	12.4, 11:40	경북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한우	42	양성 (29)	"	·소 : 4호, 78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가축(잡정)
36	12.4, 11:40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돼지	12,000	양성 (3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500m 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 농장의 경우 3km내의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84두 ·돼지: 5호, 18,300두
37	12.4, 11:40	경북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한우	126	음성	-	-
38	12.4, 11:40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한우	15	음성	-	-
39	12.5, 10:40	대구 북구 연경동	한우	186	음성	-	-
40	12.5, 20:25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한우	80	음성	-	-
41	12.6, 12:10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 2리	한우	2	음성	-	-
42	12.6, 15:10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한우	3	양성 (3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호, 22두
43	12.7, 20:30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한우	40	음성	-	-
44	12.8, 16:00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한우	40	음성	-	-
45	12.10, 18:30	경북 영주시 적서동	한우	56	양성 (32)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호, 60두
46	12.14, 09:30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재 2리	한우	57	음성	-	·소 : 1호, 57두
47	12.14, 18:00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돼지	1,200	양성 (3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호, 475두 ·돼지: 5호, 4,765두
		경기 연천군 백학면 노곡 2리	돼지	1,200			·소 : 2호, 225두 ·돼지: 2호, 11,165두
48	12.14, 21:40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한우	146	양성 (34)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6호, 235두
49	12.15, 10:20	경기 파주시 부곡리	젖소	180	양성 (35)	"	·소 : 7호, 563두
50	12.15, 13:20	경북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한우	150	음성	-	-
51	12.15, 14:30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한우	9	음성	-	-
52	12.17, 18:40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한우	17	음성	-	-
53	12.18, 20:00	경기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한우	100	양성 (36)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9호, 676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잠정)
54	12.19, 16:2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중산동	한육우	53	양성 (37)	"	·소 : 1호, 53두
55	12.20, 23:00	경기 가평군 하면 신하리	한우	55	양성 (38)	"	·소 : 9호, 215두
56	12.21, 11:50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흥 2리	시슴	32	음성	-	-
57	12.21, 11:30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2리	한우	27	양성 (39)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27두
58	12.21, 15:45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돼지	10,000	양성 (40)	"	·소 : 3호, 102두 ·돼지 : 1호, 10,000두
59	12.21, 15:45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 2리	한우	31	양성 (4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6호, 274두 ·돼지 : 4호, 5,200두
60	12.21, 17:50	강원 화천군 사내면 명월 2리	한우	5	양성 (42)	"	·소 : 3호, 13두
61	12.21, 18:30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돼지	5,000	양성 (43)	"	·소 : 5호, 191두 ·돼지 : 2호, 9,804두
62	12.21, 19:45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1리	한우	11	양성 (44)	"	·소 : 5호, 97두
63	12.22, 10:30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1리	한우	25	양성 (45)	"	·소 : 20호, 488두 ·시슴 : 1호, 3두
64	12.22, 13:30	강원 원주시 문막읍 취병 2리	한우	98	양성 (46)	"	·소 : 4호, 299두
65	12.22, 15:35	강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	한우	3	음성	-	-
66	12.22, 18:30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한우	27	양성 (47)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호, 99두
67	12.22, 23:45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한우	23	음성	-	-
68	12.23, 11:40	인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돼지	890	양성 (48)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3k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6호, 760두 ·돼지 : 3호, 1,900두 ·시슴 : 5호, 65두
69	12.23, 12:15	경북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젓소	80	음성	-	-
70	12.23, 16:10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한우	7	음성	-	-
71	12.23, 16:10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 2리	돼지	50	음성	-	-
72	12.23, 16:10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한우	125	음성	-	-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가축(잡정)
73	12.23, 18:50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한우	56	음성	-	-
74	12.23, 18:50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한우	55	양성 (49)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245두
75	12.23, 20:30	경북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돼지	24,000	양성 (5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농장의 경우 3km내의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돼지 : 3호, 26,280두
76	12.23, 23:50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젖소 육우	96	양성 (5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96두
77	12.24, 11:30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한우	280	양성 (52)	"	·소 : 12호, 1,004두
78	12.24, 14:05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돼지	800	음성	-	-
79	12.25, 21:50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한우	140	양성 (5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호, 162두
80	12.26, 13:40	인천 서구 오류동	돼지	3,000	양성 (54)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발생농장의 경우 3km내의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소 : 2호, 73두 ·돼 : 4호, 4,704두
81	12.26, 14:55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한우	7	양성 (55)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5호, 88두
82	12.26, 16:00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한우	5	양성 (56)	"	·소 : 7호, 57두
83	12.27, 12:5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한우	81	음성	-	-
84	12.27, 13:30	강원 춘천시 동면 상걸리	한우	11	양성 (57)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8호, 34두
85	12.27, 15:00	강원 홍천군 홍천읍장전평리	한우	6	양성 (58)	"	·소 : 7호, 90두
86	12.27, 15:20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돼지	13,000	양성 (59)	"	·소 : 11호, 45두 ·돼지 : 1호, 13,000두 ·염소 : 1호, 7두
87	12.27, 17:10	대전 서구 봉곡동	한우	97	음성	-	-
88	12.27, 17:50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한우	130	양성 (6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7호, 1,198두 ·돼지 : 2호, 2,684두 ·염소 : 1호, 7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잡정)
89	12.29, 16:50	경기 광주시 실천읍 삼합리	한우	16	음성	-	-
90	12.29, 17:40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돼지	13,000	양성 (61)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호, 16두 ·돼지: 1호, 13,000두
91	12.30, 13:10	경북 영천군 화산면 유성리	한우	144	양성 (62).	"	·소 : 12호, 606두
92	12.30, 13:10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우	14	양성 (63)	"	·소 : 25호, 312두
93	12.30, 17:40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한우	120	양성 (64)	"	·소 : 7호, 212두
94	12.30, 19:05	강원 횡성군 우천면상하가리	돼지	1,750	양성 (65)	"	·소 : 7호, 204두 ·돼지: 1호, 1,750두
95	12.31, 10:45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우	87	양성 (66)	"	·소 : 31호, 419두
96	12.31, 12:40	강원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한우	10	양성 (67)	"	·소 : 3호, 75두
97	'11.1.1, 12:4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젖소	50	양성 (68).	"	·소 : 3호, 296두
98	1.1, 13:30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돼지	1,000	양성 (69)	"	·소 : 3호, 164두 ·돼지 : 1호, 115두
99	1.1, 13:30	경북 영천시 화북면 공덕리	한우	3	양성 (70)	"	·소 : 3호, 18두
100	1.1, 15:00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우	72	양성 (71)	"	·소 : 3호, 109두
101	'11.1.1, 17:40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한우	5	양성 (72)	"	·소 : 13호, 135두
102	1.1, 20:10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한우	59	양성 (7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126두
103	1.1, 20:30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한우	96	양성 (75)	"	·소 : 1호, 96두
104	1.1, 21:10	경기 광명시 가학동	한우	74	양성 (74).	"	·소 : 5호, 181두 ·돼지 : 1호, 306두
105	1.1, 23: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돼지	3,500	양성 (76)	"	·소 : 3호, 183두 ·돼지: 7호, 6,815두
106	1.1, 23:40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돼지	12,250	양성 (77).	"	·소 : 2호, 124두 ·돼지: 1호, 12,150두
107	1.2, 10:45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한우	72	양성 (78)	"	·소 : 6호, 269두 ·사슴 : 1호, 5두
108	1.2, 11:20	충남 보령군 천북면 사호리	돼지	23,000	양성 (79)	"	·소 : 5호, 162두 ·돼지: 1호, 23,000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잡정)
109	1.2, 12:4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한우	56	음성	-	
110	1.2, 14:4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석계리	한우	34	양성 (8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34두
111	1.2, 14:40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한우	14	양성 (81)	"	·소 : 1호, 14두
112	1.2, 23:00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한우	51	음성	-	
113	1.2, 23: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젖소	69	양성 (82)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7호, 333두 ·사슴 : 1호, 5두
114	1.3, 17:30	강원 철원군 철원읍 울이리	한우	190	양성 (83)	"	·소 : 1호, 190두
115	1.3, 17:40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한우	57	양성 (84)	"	·소 : 1호, 57두
116	1.3, 18:00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른리	한우	37	양성 (86)	"	·소 : 1호, 37두
117	1.3, 21:40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돼지	2,700	양성 (85)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4호, 32두 ·돼지 : 1호, 2,700두
118	1.4, 13:50	강원 춘천시 남면 추곡리	한우	35	양성 (87)	"	·소 : 11호, 325두 ·사슴 : 1호, 3두
119	1.4, 14:15	강원 동해시 효가동	한우	3	음성	-	
120	1.4, 14:45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돼지	8,500	양성 (88)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돼지 : 2호, 12,450두
121	1.4, 15:20	강원 양양군 손양면 삼촌리	돼지	2,900	양성 (89)	"	·돼지 : 5호, 11,260두
122	1.4, 18:40	경기 용인시 백암면 금삼리	돼지	2,000	양성 (90)	"	·소 : 1호, 31두 ·돼지 : 3호, 3,400두
123	1.4, 21:20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돼지	33,900	양성 (91)	"	·소 : 2호, 34두 ·돼지 : 1호, 33,900두
124	1.5, 14: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돼지	21,766	양성 (92)	"	·돼지 : 2호, 41,934두
125	1.5, 14:05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한우 젖소	105	음성	-	
126	1.5, 14:20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돼지 한우	540	음성	-	
127	1.5, 15:30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돼지	8,965	양성 (9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7호, 279두 ·돼지 : 6호, 20,300두
128	1.5, 16:50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한우	10	양성 (94)	"	·소 : 1호, 10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가축(잡정)
129	1.5, 17:00	경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돼지	25,000	양성 (95)	"	·소 : 1호, 10두 ·돼지:1호, 25,000두
130	1.6, 14:20	강원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한우	42	음성	-	
131	1.6, 16:00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한우	15	양성 (96)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5호, 284두 ·돼지 : 2호, 25두 ·염소 : 1호, 3두 ·시슴 : 1호, 10두
132	1.6, 16:30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돼지	5,900	양성 (97)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3호, 254두 ·돼지: 1호, 5,900두
133	1.6, 21:20	인천 계양구 갈현동	젓소	49	양성 (98)	"	·소 : 1호, 49두
134	1.6, 22:45	경기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돼지	12,000	양성 (99)	"	·소 : 3호, 86두 ·돼지:1호,12,000두 ·염소 : 1호, 12두
135	1.7, 11:00	경기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돼지	4,500	양성 (100)	"	·소 : 2호, 216두 ·돼지: 1호, 4,500두
136	1.7, 12:20	경기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돼지	20,000	양성 (101)	"	·돼지 : 3호, 31,750두
137	1.7, 12:20	경기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돼지	2,000	양성 (102)	"	·소 : 1호, 135두 ·돼지: 1호, 2,000두
138	1.7, 12:20	강원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한우	7	음성	-	
139	1.7, 19:30	경북 포항시 호미곶 구만 외	한우	62	양성 (103)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62두
140	1.7, 20:00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돼지	5,000	양성 (104)	"	·소 : 2호, 72두 ·돼지: 2호, 6,180두
141	1.7, 20:20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돼지	8,400	양성 (105)	"	·소 : 14호, 406두 ·돼지: 3호, 8,574두
142	1.7, 23:40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돼지	1,200	음성	-	
143	1.7, 23:4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광혜리	한우	47	음성	-	
144	1.8, 03:00	강원 대화군 대관령면횡계리	한우, 젓소, 양	1,008	양성 (106)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816두 ·양 : 192두
145	1.8, 12:40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한우	16	음성	-	
146	1.8, 13:20	경북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돼지	1,400	양성 (107)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0호, 477두 ·돼지: 3호, 1,859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잠정)
147	1.8, 18:00	경기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돼지	2,200	음성	-	
148	1.8, 18:30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재리	한육 우	29	양성 (108)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2호, 138두
149	1.9, 11:30	경북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한우	193	양성 (109)	"	·소 : 13호, 388두
150	1.9, 14:10	강원 춘천시 서면 방동리	한우	25	양성 (110)	"	·소 : 12호, 149두
151	1.9, 16:00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한우	17	양성 (111)	"	·소 : 4호, 130두 ·돼지 : 2호, 6,029두
152	1.9, 16:00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돼지	1,400	양성 (112)	"	·소 : 1호, 30두 ·돼지 : 1호, 1,409두
153	1.10, 16:10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한우	1,140	양성 (113)	"	·소 : 1호, 1,149두
154	1.10, 18:20	경북 봉화군 상운면 운계 퇴	돼지	1,800	양성 (114)	"	·돼지 : 1호, 1,800두
155	1.10, 19:30	강원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한우	43	양성 (115)	"	·소 : 1호, 43두
156	1.11, 13:20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한우	54	음성	-	
157	1.11, 15:10	경북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시슴	21	음성	-	
158	1.11, 16:50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한우	17	양성 (116)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7호, 212두
159	1.12, 12:00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향호리	한우	25	음성	-	
160	1.12, 14:40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한우	155	양성 (117)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6호, 238두
161	1.12, 16:00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한우	32	음성	-	
162	1.12, 20:30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한우	132	양성 (118)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6호, 186두 ·염소 : 1호, 49두
163	1.13, 21:50	충북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한우	14	음성	-	
164	1.14, 15:4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우	30	양성 (119)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소 : 1호, 30두
165	1.15, 14:20	충북 제천시 송화면 도화 퇴	한우	8	양성 (120)	"	·소 : 9호, 87두 ·돼지 : 2호, 4,019두
166	1.17, 21:30	대구 북구 연경동	한우	110	양성 (122)	"	·소 : 1호, 110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가축(잠정)
167	1.17, 23:00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돼지	3,000	양성 (121)	"	·돼지 : 2호, 3,038두
168	1.18, 13:20	강원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한우	360	양성 (123)	"	·소 : 1호, 360두
169	1.18, 18:20	강원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한우	75	양성 (124)	"	·소 : 1호, 75두
170	1.19, 12:20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궁로	한우	487	양성 (125)	발생농가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소의 경우 감염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반경 500m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 살처분	·소 : 1호, 6두
171	1.19, 18:00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돼지	500	양성 (127)	발생농가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모든 중 감염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 매몰, 비육돈은 농장 전체 매몰), 반경 500m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 살처분	·돼지 : 1호, 500두
172	1.19, 23:30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한우	25	양성 (126)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미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돼지 없음))	·소 : 1호, 25두
173	1.20, 14:00	충남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한우	8	양성 (128)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미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돼지 없음))	·소 : 1호, 8두
174	1.20, 18:0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한우	44	양성 (129)	"	·소 : 1호, 44두
175	1.21, 16:20	경기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염소	40	양성 (130)	발생농가 살처분, 반경 500m내 예방적 살처분	·염소 : 2호, 80두
176	1.21, 16:30	경북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한우	142	양성 (131)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미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돼지 없음))	·소 : 1호, 142두
177	1.21, 17:10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희리	한우	103	양성 (132)	"	·소 : 1호, 103두
178	1.21, 17:50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돼지	1,000	양성 (133)	"	·돼지 : 1호, 1,000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잡정)
179	1.21, 17:50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한우	99	음성	-	
180	1.21, 18:20	강원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한우	222	양성 (134)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미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돼지 없음))	·소 : 1호, 222두
181	1.21, 15:10	경북 문경시 불정동	한우	17	양성 (135)	"	·소 : 1호, 17두
182	1.23, 16:20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한우	123	양성 (136)	"	·소 : 1호, 123두
183	1.23, 17:3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돼지	1,000	양성 (137)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돼지 살처분 (예방접종 미 실시)	·돼지 : 10호, 14,000두
184	1.24, 16:00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돼지	1,000	양성 (138)	발생농장의 모돈임상축 자돈, 비육돈만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 돼지 없음)	·돼지 : 1호, 90두
185	1.24, 16:1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돼지	7,188	양성 (139)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예방접종 후 14일 미경과 반경 500m내에는 접종 완료(돼지 없음))	·돼지 : 1호, 7,900두
186	1.26, 16:20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곶리	젖소	69	음성	-	
187	1.26, 17:20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시슴	2	음성	-	
188	1.29, 22:20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돼지 염소	251	양성 (140)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반경 500m내에 접종을 미 실시한 시슴 살처분	·돼지등 : 1호, 25두 ·시슴 : 1호, 2두
189	1.30, 16: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한우	180	음성	-	
190	1.31, 19:20	충남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돼지	4,300	양성 (141)	발생농장 감염돈사의 비육돈 살처분, 반경 500m내에 접종을 미 실시한 시슴 살처분	·돼지 : 1호, 400여두 ·시슴 : 1호, 2두
191	2.1, 10:20	충남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돼지	3,700	양성 (142)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돼지 : 1호, 3,700두

순번	신고 일시	발생지역	축종	규모 (두수)	검사 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매몰처리 대상기축(잡정)
192	2.2, 17:20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한우 돼지	1,231	양성 (143)	발생농장(모든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 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 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 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 돈은 돈사단위) 살처분	·돼지 : 1호, 1,100두
193	2.4, 17: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	돼지	3,662	양성 (144)	발생농장 개돈사의 2개돈 방 비육돈 매몰처리	·돼지 : 1호, 71두
194	2.5, 15:10	충남 천안시 성환읍	돼지	1,650	양성 (145)	발생농장의 감염된 모든만 매몰처리	·돼지 : 1호, 6두
195	2.6, 17:00	부산 사하구 장림1동	돼지, 염소 등	568	양성 (146)	발생농장의 감염된 모든 및 예방접종을 미 실시한 염소 매몰처리	·돼지·염소 : 1호 18두
196	2.14, 18:40	대전 동구 하소동	돼지	2,000	양성 (147)	발생농장의 감염된 모든 및 비육돈 매몰처리	·돼지 : 1호, 20두
197	2.16, 12:50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한우	89	음성	-	
198	2.18, 13:10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돼지	1,200	양성 (148)	발생농장의 감염된 돼지 매몰처리	·돼지 : 1호, 70두
199	2.18, 18:00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돼지	500	양성 (149)	"	·돼지 : 1호, 20두
200	2.18, 20:20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한우	71	음성	-	-
201	2.25, 16:0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삼천리	돼지	178	양성 (150)	발생농장의 감염된 돼지 매몰처리	·돼지 : 1호, 17두
202	3.2, 20:00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한우	33	음성	-	-
203	4.10, 15:40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한우	23	음성	-	-
204	4.16, 16:45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돼지	67	양성 (151)	발생농장의 감염된 돼지 매몰처리	·돼지 : 1호, 6두
205	4.19, 20:30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돼지	2,265	양성 (152)	"	·돼지 : 1호, 86두
206	4.21, 13:15	경북 영천시 도남동	돼지	800	양성 (153)	-	·돼지 : 1호, 4두
207	5.17, 13:10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한우	75	음성	-	-
208	5.26, 11:25	경북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한우	32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 매몰처리	·소 : 1호, 1두 예상

## 2. 구제역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2010. 11.28	경북 안동 (1, 1)	1	-		-의심축 신고접수
11.29 (주의 단계)	"	1 (2)	21,694		-“주의” 발령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설치(본부장:2차관) 방역 협의 회 -1차 회의 *발생농장 3km내 모든 우제류 살처분 *역학 관련농장은 이동제한 및 예찰 *축산관련 종사자 조사 및 격리
11.30	-	-	32,285		-가축시장 폐쇄(69개소)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방역조치 및 경계지역 도축장 폐쇄 정부 - 국무회의 보고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추진 계획, 총리실·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조 당부
12.1	경북 안동 (1, 1)	3 (5)	53,250		-공항·항만 국경검역 상황 점검 및 국경검역 홍보 국회 -국회 상임위 보고 *경북 안동 구제역 발생 경위 및 경북 지역방역 추진상황, 국경검역 강화, 전국 축산농장 일제 소독 등
12.2	"	12 (17)	52,730		방역 협의 회 -2차 회의 *발생농장 3km내 모든 우제류 살처분 *역학 관련농장은 이동제한 및 예찰 *축산관련 종사자 조사 및 격리 정부 -BH 서면보고 *현행 축산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한 축산농가에게 신고 의무부여 등 국경검역제도 개선방안 보고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3	"	10 (27)	69,452		-긴급가축방역비 지원 확정 -축산단체 등에 행사취소 등 자제 요청
12.4	경북 안동, 예천 (1, 2)	3 (30)	75,245		-구제역 방역관련 공항 항만 현지점검 추진 방역 협의 회 -3차 회의 *예방접종 실시는 추후 검토하고 매몰처리에 방역역량 집중 *매몰처리 범위는 500m내 한우 톨 유지하고, 예방적 매몰처리를 선제적 실시
12.5	-	-	88,446		-경북 예방적 살처분 관련 초동대응팀 파견 검역 정책과장 등) -경계지역 내 도축장 폐쇄(경북 예천) 방역 협의 회 -VIP 보고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추가 인력·장비 투입 계획 *향후 구제역 상시 방역 대책 -구제역 관계부처 회의(총리실, 2차관) *방역추진상황 및 대책
12.6	경북 영양 (1, 3)	1 (31)	104,044		-정부합동 방역추진실태 특별점검 실시 방역 협의 회 -4차 회의 *매몰범위 현행 500m내로 실시,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예방적 매몰처리 강화 *안동, 예천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활동 강화
12.7	-	-	119,878		-시도별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여부 점검 정부 -국무회의 보고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 *이동통제 초소 설치 및 매몰처리 현황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원반 구성 운영 등 방역 추진 상황 *피해농가 신속지원 및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강화 방안 *관계부처에 인력 예산 홍보 지원 등 협조 당부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8	-	-	134,616		-축산관련 협회 및 업계대표 간담회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행동지침 시달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달
12.9	-	-	137,085		-발생지역 사료운송대책 및 수매대책 시달 국회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고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발생 원인 *이동통제 초소 설치 및 매몰처리 현황 관계부처 합동 점검 지원반 구성 운영 등 방역 추진 상황 *피해농가 신속지원 및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강화 방안
12.10	경북 영주 (1, 4)	1 (32)	140,480		-긴급방역비 2차 지원 통보 정부 -차관회의 보고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등 *추후 구제역 대응방안 논의 필요
12.11	-	-	144,010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추진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 설정 및 500m반경내 우체류 가축 예방적 살처분 실시 -위험지역내 도축장 폐쇄(영주)
12.12	-	-	146,166		-살처분 보상 등 보상업무 철저 지시 *신속한 평가 및 보상비 지급 등 -구제역 방역실태 정부 합동점검(2차) 실시 -구제역 긴급대응 예비비 확보(1,125억 원) *살처분 보상금 1,099억 원, 시도 방역비 26억 원
12.13	-	-	148,517		정부 -국무회의 보고 *“10년 가축방역예산 예비비 확보방안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긴급방역비용 부족분 지원 *예비비 : 1,125억 원 (시도방역 26,살처분 보상 1,099)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14	경기 양주,연천 경북 예천 (2, 7)	2 (34)	151,404		-방역지침 위반농가 조치계획 통보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위반시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12.15 (경계 단계)	경기 파주 (2, 8)	1 (35)	173,143		-“경계” 발령 -구제역 확산 관련 대국민담화문 발표
				방역 협의 회	-5차 회의 *경기지역 매몰범위는 축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확대여부 결정 *방역지역내 역학농장에 대해 이상증상 발견시 선제적 예방매몰 실시 *발생추이 주시하면서 상황악화시 3km내 가축매몰방안 협의
				정부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 보고 국무총리실장 주재) *구제역 방역추진 현황 및 관계부처 협조 방안 <회의 결과> *12.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 구성하여 경기지역 방역활동을 현지에서 지원 *신속한 매몰처리, 이동통제 등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 가능한 국경검역 강화방안 강구 *구제역 종식 후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시스템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12.16	-	-	177,485		-사료차량 등 방역관리 강화 *사료차량 지정 및 축산종사자 타농장방문 금지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총리실, 행안부 등 7명)
				국회	-국회 보고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신속 지원</li> <li>*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검사 강화 방안</li> <li>*방역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협조 등 건의</li> <li>*「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안」 조기 심의 통과 및 축산물 홍보</li> </ul>
12.17	-	-	186,665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 유입방지 국경검역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소비안전정책관)</li> <li>-BH 경제수석보고</li> <li>*구제역 발생 상황 및 향후 대책</li> <li>*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범정부적 대응체계 유지(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경기지역 점검·지도)</li> <li>*피해농가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신속 지원</li> <li>*구제역 백신접종 검토 필요, 축산업허가제 도입·지역별 가축사육두수 통제 등 통제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수립 검토</li> </ul>
12.18	경기 파주 (2, 8)	1 (36)	193,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관리 강화 조치</li> <li>*출입차량, 운전자 소독 철저</li> </ul>
12.19	경기 고양 (2, 9)	1 (37)	198,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 확산차단 조치 실시</li> <li>*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국도 등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실시</li> <li>-젓소개량사업소 보증씨수소 무주 등으로 분산 조치</li> </ul>
12.20	경기 가평 (2, 10)	1 (38)	213,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접종 내부결정</li> <li>-백신제조 요청</li> <li>-축산농가 등에 외국인 노동자 신규 고용 금지 및 개인소독 강화</li> </ul>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21	경기 연천, 포천, 김포, 강원 화천, 평창 (3, 14)	6 (44)	224,605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인력 긴급지원 요청 총복도, 농협 등)	
					방역 협의 회	-6차 회의 *추가확산이 우려되는 발생지역에 대해 매몰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 *오염이 심하거나 확산 우려지역에 제한적인 예방접종 필요
					정부	-국무회의 보고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구제역 관련 예산 소요액 및 조치사항
12.22	강원 춘천, 원주, 횡성 (3, 17)	3 (47)	278,530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인력 긴급지원 요청 축산 과학원)	
					방역 협의 회	-7차 회의 *주요 발생지역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필요 *예방접종은 제한적인 링백신 형태로 최소의 범위에서 실시 -1차소위원회 *접종범위:안동,예천,연천,파주,고양 *접종대상:소 *접종방법:링백신 방식 *사후관리:소이력추적시스템 가동, 일정 기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소 이동시 반시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 승인 등
					국회	-국회 상임위 보고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전국 축산농장 일제 소독 및 주요 도로 차단방역 지속 실시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등 신속지원 및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강화,관계부처 협조 사항
12.23	인천 강화	4	297,165		-구제역 예방접종 세부시행계획 시달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강원 횡성 경북 영천 (4, 19)	(51)			-기재부에 구제역 방역 관련 부족 예비비 신청 *보상금 1,437억, 긴급방역 104억원  방역 협의 회 -8차 회의 *접종 범위(안동,예천,과주,연천,고양) *3km반, 10km반을 구분하여 외곽부터 안쪽지역으로 실시 *이력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가축 사후관리 추진
12.24	강원 철원 (4, 20)	1 (52)	368,043		-백신공급 완료(173만두 분) -구제역 예방약 250만두 분 긴급구매 추진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사전 교육 실시  국회 -한나라당 구제역 특위 보고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관계부처와 공조체계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 유지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신속 지원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검사 강화 방안 *방역조치 관련 제도개선 및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협조 등 건의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총리 주재)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 결정(12.22) *관계부처 협조 당부
12.25	경기 여주 (4, 21)	1 (53)	424,827	17만 (17)	-소에 대한 제한적 예방접종 실시(5개시군)
12.26	인천 서구 경기 양평 경북 청송 (4, 24)	3 (56)	443,212		-비발생지역 방역실태 점검 -예방접종 추가 실시(여주, 이천)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27	강원 춘천, 홍천, 횡성, 경북 영주 (4, 25)	4 (60)	471,094	7만 (24)	<p>-지자체에 구제역 방역 철저 지시 *축산관련 차량, 철저한 방역조치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매몰 및 통제초소, 예방접종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사후 방역관리 철저</p> <hr/> <p>정부 -VIP 보고(농식품부 방문)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살처분과 제한적인 예방접종 병행 추진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조하여 공항만에서 소독을 한 후 통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경검역 강화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4,537억원) *지자체 방역비 교부(720억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 요건 &lt;VIP지시사항&gt; *구제역이 제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p>
12.28	-	-	523,629	5만 (29)	<p>-국정과제전략협의회 보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을 위해 군경 인력 지원 요청</p> <hr/> <p>방역 협의회 -9차 회의 *예방접종을 공세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추가 확산 방지(예방접종 추가 희망 시군 등(양주 등)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광역단위의 선제적 예방접종 범위, 추가 접종지역 등은 전문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 *위기경보 격상 발령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제2차소위원회 *접종범위:발생 광역지자체단위 또는 구제역 발생지역 행정단위</p>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p>*접종대상:소(폐지는 번식돈에 한해 양돈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 *해당지자체 자체 접종 및 해당 지역 이동통제 철저</p>
				정부	<p>-국정과제전략협의회 보고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1차 예방접종 연내 조기 완료 *피해농가에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신속지원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 강화 추진 *살처분 인력 및 국경 검역 강화 관련 관계부처 협조 사항 *가축질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 *축산농가 책임의식 강화 방안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차단방역방법 개정 등 -국무회의 보고 *구제역 방역예산 예비비 확보</p>
12.29 (심각 단계)	강원 홍천 (4, 25)	1 (61)	549,783	10만 (39)	<p>-“심각” 단계로 격상 -대국민담화문 발표(농식품부, 행안부장관) -전국 도축장·사료공장 긴급점검 실시 -지역담당관 지자체 방역주친 상황 점검</p>
				정부	<p>-위기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 협의 ①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 ②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p>
12.30	경기 남양주, 경북	4 (65)	580,456		<p>-추가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강화 -추가 예방접종 지역(횡성 계) 대한 조치사항 통보</p>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영천, 경주, 강원, 횡성 (4, 27)				*인력 확보, 접종대상 및 사후관리 요령 등
12.31	경북 포항, 강원 양구 (4, 29)	2 (67)	643,797	2만 (41)	<p>-축산관련 종사자 현황조사 및 항만 시설내 사료 운반차량 소독을 위한 협조 요청(국토부 등)</p> <p>-연말연시 대비 현장 방역업무 점검</p>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원장 서면보고</li> <li>*구제역·AI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li> <li>*1차 예방접종 완료, 접종가축 사후관리 철저</li> <li>*피해농가에 살처분보상금 등 신속지원</li> <li>*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 및 국경 검역 강화</li> <li>*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가축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설립 추진</li> </ul>
2011. 1.1	경기 광명, 강원 강릉, 화천, 원주, 충남 천안, 경북 영천, 포항 (5, 33)	10 (77)	661,681	10만 (51)	<p>-추가 예방접종 지역 (삼양주, 영천) 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p> <p>*인력 확보, 접종대상 및 사후관리 요령 등</p>
1.2	강원 춘천, 충남 보령, 천안, 경북 영천, 영주 (5, 34)	5 (82)	668,220	31만 (82)	<p>-구제역 예방접종 지역 방역 철저 지시</p> <p>-구제역 발생지역 (경계지역) 도축장 개장방안 검토</p> <p>*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폐쇄해제 실시</p> <p>방역 협의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소위원회</li> <li>*접종지역: 추가확산 우려되는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li> <li>*소는 발생 및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 예방접종 확대 실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li> <li>*돼지는 발생우려지역의 종모돈에 대해</li> </ul>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우선 예방접종 *축산과학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종축에 대해 우선 예방접종 검토
1.3	경기 의정부, 강원 철원, 홍천, 충북 괴산 (6, 36)	4 (86)	766,511	8만 (90)		-구제역 소독약품 사용방법 준수 철저 지시 *희석배율 및 적정 산도 유지 등 -구제역 상황실 확대 개편 *실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24시간 체제 유지 -축산농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지시 -중대본 회의 및 지자체 구제역 방역태세 특별점검
					방역 협의 회	-4차 소위원회 *돼지는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며, 보균자 역할을 하지 않음을 확인 *접종범위: 발생 시군전체와 A센터 사육 돼지 등
					정부	-중대본 회의 *구제역·AI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사료·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 실시 *경계지역 내 도축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예방접종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검역 강화 *가축질병 최소화 등을 위해 중장기 축산업 선진화 추진 *관계부처 협조 당부
1.4	경기 용인, 강원 춘천, 황성, 양양, 충북 진천 (6, 39)	5 (91)	826,456	6만 (96)		-전국 도축장 및 사료공장에 대한 소독실태 긴급 점검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5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당진 (6, 42)	4 (95)	948,364	21만 (117)	-쇠고기·돼지고기 소비촉진 국회 시의회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구제역 예방약 관리 철저 지시
1.6	인천 계양, 경기 안성, 화성, 강원 강릉 (6, 44)	4 (99)	1,075,015	30만 (147)	-중돈·모돈접종 논의 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VIP 주제)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소·돼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단계별 확대 실시 *사료·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 실시 *경계지역 내 도축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예방접종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검역 강화 *가축질병 최소화 등을 위해 중장기 축산업 선진화 추진
1.7	경기 평택, 용인, 안성, 인천, 강원 철원, 경북 포항 (6, 46)	6 (105)	1,172,538	19만 (166)	-집유장 방역실태 추가 점검 및 도축장 일제 소독 실시 -구제역 발생시도 돼지 A센터 예방접종 추가 실시 -이동제한 지역내 수매준비 철저 지시 국회 -국회 상임위 보고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방역 대책 *감염가축 매몰과 제한적인 예방접종 병행 추진 *발생지역 및 예방접종지역 사후관리 강화 *축산에 출입하는 사료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 실시 *경계지역 내 도축장에 대한 관리 강화 *비발생지역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차단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방역 실시 *축산관계자 입국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소독 실시('11.1.7~)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활동 및 휴대품 검역 강화 *구제역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접종 확대 추진 *가축질병 최소화 등을 위해 중장기 축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
1.8	강원 평창, 충북 청원, 경북 봉화 (6, 48)	3 (108)	1,282,345			-중돈·모돈 접종시작 -중돈장 및 돼지 AI센터 방역강화방안 시달 방역 협의 회 -제10차 회의 *비발생 시도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 *돼지는 발생 시도 및 인접지역의 모든 종모돈에 대해 접종 실시 *접종지역 범위 등은 소위원회에 위임 -5차 소위원회 *접종대상:위험지역 소 및 종모돈 우선 접종
1.9	강원 춘천, 경북 경주, 봉화 (6, 48)	4 (112)	1,339,387	125만 (291)		-예방접종 이후 생산된 송아지 예방접종 실시 -국경검역 홍보·안내 요원 추가확보 운영
1.10	강원 화천, 횡성, 경북 봉화 (6, 48)	3 (115)	1,404,426			-지자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장관 )특별 서한 송부 *구제역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실시 -구제역 접종요원 관리 철저 지시
1.11	충북 충주 (6, 49)	1 (116)	1,416,772			-분뇨반출금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 알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관련 농식품위 법안심사 소위
1.12	충북 충주 (6, 49)	2 (118)	1,498,869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농식품위 전체 회의 개최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관계장관 회의 보고(VIP 주재)</li> <li>*구제역 백신 관리 현황 및 백신 접종 경과</li> <li>*일본·대만 등 백신접종 관련 외국 운영 사례</li> <li>-중대본 회의</li> <li>*설연휴 대비 기관별 구제역 방역대책 및 홍보계획 수립 점검</li> </ul>
1.13	-	-	1,594,833		<p>-구제역 전국 예방접종 단계 실시계획 송부 및 예방접종조기 완료 지시(14개 시도, 2,106 천두)</p> <p>방역 협의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차 회의</li> <li>*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등</li> </ul> <p>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법사위 개최</li> <li>*가축전염병예방법 대안 심의</li> <li>-국회 본회의 개최</li> <li>*가축전염병예방법 의결</li> </ul>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관회의 보고</li> <li>*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li> <li>*축사에 출입하는 사료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 실시</li> <li>*설연휴 귀성객 대상 소독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li> <li>*설 명절 대비 축산물 공급확대 등 가격 안정대책 추진</li> </ul>
1.14	경북 청송 (6, 49)	1 (119)	1,670,222	4만 (295)	<p>-해외여행 축산관계가 국경검역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p>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P 보고</li> <li>*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li> <li>*축사에 출입하는 사료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li> </ul>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p>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연휴 귀성객 대상 소독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li> <li>*설 명절 대비 축산물 공급확대 등 가격 안정대책 추진</li> <li>*예방접종 지역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li> <li>-국가정책조정회의</li> <li>*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li> <li>*축사에 출입하는 사료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지속 실시</li> <li>*예방접종 지역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li> </ul>
1.15	충북 제천 (6, 50)	1 (120)	1,822,496	125만 (420)	-돼지 살처분 보상기준 개선 (전년도 평균가격의 30% 초과 지급제한) 단계예방접종 시도백신공급(9개 시도, 1,245천두)
1.16	-	-	1,989,908	100만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 예방접종 점검 및 독려 농식품부 상황실)</li> <li>*빠른 시일내 예방접종이 완료되도록 지자체 독려</li> <li>-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충북 제천)</li> </ul>
1.17	대구 북구, 충남 예산 (7, 52)	2 (122)	2,104,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 매몰지 부족시 국유림 활용토록 산림청에 협조 요청</li> <li>-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일시중단 (1.18 ~ 31)</li> <li>-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통보</li> </ul>
1.18	강원 삼척, 영월 (7, 54)	2 (124)	2,164,920		-이동제한지역 수매진행절차 통보
1.19	강원 횡성, 충남 예산	3 (127)	2,250,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예방접종 계획 통보</li> <li>-가축매몰범위조정 통보</li> </ul>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경북 포항 (7, 54)				<p>*예방접종지역에서 구제역 발생할 경우 감염가축 등만을 살처분</p>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본 회의</li> <li>* 돼지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육단지에 선제적인 예방접종 실시 필요</li> <li>* 백신접종 후 면역형성기간 (1월 9) 지난 다음 구제역발생한 경우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과 새로 태어난 가축만 매몰 처리하는 등 살처분 가축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li> <li>* 이동제한 조치 중인 대규모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출하체중 (110kg)이전에라도 농가에서 요청시 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단 ,정부에서 차액보전 지원 필요)</li> <li>* 설 귀향 자제요청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li> </ul>
1.20	충남 공주, 아산 (7, 56)	2 (129)	2,307,512		<p>-예방접종에 따른 구제역 발생농장 및 돼지 A인터의 가축매몰 등 방역관리 요령 시달</p> <p>-구제역 관련 R&amp;D 세부과제 논의 진단기술 및 예방약 제조 등, 지식경제부)</p>
1.21	경기 평택, 강원 고성, 충남 아산, 천안, 경북 상주, 문경 (8, 62)	6 (135)	2,397,439	220만 (740)	<p>-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철저 재지시설 명절 이전에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전급금 ) 신속 지급 협조 요청</p> <p>-비육돈 백신접종 실시</p> <p>국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보고</li> <li>*구제역 발생대책 추진 현황 등</li> <li>*특위 차원에서 구제역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필요</li> </ul>
1.22	-	-	2,475,155		-도축장 출하가축 처리지침 조정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1.23	경북 문경 경남 김해 (8, 63)	2 (137)	2,531,531		-구제역 예방약 공급일정(2-2단계) 조정
1.24	충남 공주 경남 김해 (8, 63)	2 (139)	2,625,553	100만 (840)	-가축전염병법개정안 공포·시행 -구제역 특별 예찰활동 강화 -구제역 관련 1차 역학조사 결과 발표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 매몰기준 조정
				정부	-VIP 라디오연설을 통해 구제역 백신 자체생산 검토 발언
1.25	-	-	2,723,811		-구제역 백신 국내생산 검토 협의회 개최 (2관 주재)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며, 생산설비를 갖추면 생산 가능(검역원에서 국내 자체생산계획 방안 수립 추진) -예방접종 실시계획(2-3단계) 시달
				정부	-VIP 보고 *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등 <지시사항> *가축살처분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 *경남 등 비발생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실시 *백신 조기 도입 및 국내 제조방안 강구 *축산업 허가제 등 도입, 지속가능한 축산업 추진
1.26	-	66-	2,822,616	100만 (940)	-구제역·AI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인기 의원) *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등 -구제역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정범구 의원) *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축산업 선진화 대책 (육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 등)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본 설명절 대비 대국민 담화문 발표</li> <li>-‘11년도 제2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기재부</li> <li>*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li> <li>*매몰 두수 감축 방안 추진</li> <li>*설 대비 방역 및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등</li> <li>-중대본 회의</li> <li>*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li> <li>*매몰 두수 감축 방안 추진</li> <li>*설 대비 방역 및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li> <li>-2월 국회 대비 관계장관 회의(총리실)</li> <li>*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li> </ul>
1.27	-	-	2,880,686	40만 (980)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범위 조정</li> <li>*감염 개체 등 매몰 범위를 축소하는 등 살처분 최소화 추진</li> <li>*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요령 시달</li> </ul>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총리실)</li> <li>*구제역·AI 발생 및 주요 방역 추진 상황</li> <li>*축산업 선진화 대책</li> </ul>
1.28	-	-	2,906,477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계획2 단계 마무리 시달</li> </ul>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질병개선 관련 관계부처회의 총리실)</li> <li>*구제역·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등</li> <li>*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li> <li>* 축산업 장기발전모델 제시 등</li> </ul>
1.29	경남 양산 (8, 64)	1 (140)	2,941,553	135만 (1115)	<p>방역 협의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차 소위원회</li> <li>*시군별로 구제역 위험성 등급을 구분하여 이동제한 해제 등에 이용</li> </ul>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고위험군: 안성,여주,철원 등 중위험군: 고양,원주,횡성 등 저위험군: 그 외 지역
1.30	충남 논산 (8, 65)		2,980,717	150만 (1265)	
1.31	충남 연기 (8, 66)	1 (141)	2,994,758		-설날 전후,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가축분뇨 톱밥차량 등 농장출입 일시 통제 -배합사료 농가 배송 중단 조치 철저이행 지시 정부 -중대본 회의 *구제역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후 사후관리 대책
2.1	충남 홍성 (8, 67)	1 (142)	3,032,163		-기온상승 등 소독여건의 호전에 따른 전국일제 소독 실시 -구제역 예방접종 후 차단방역 철저 지시 -전국 2차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 조기 완료 추진
2.2	경북 울진 (8, 68)	1 (143)	3,060,377		-기온상승 등 소독여건의 호전에 따른 전국일제 소독 실시 재독려
2.3			3,074,906	135만 (1400)	-구제역 2차 예방접종 백신 공급*135만두분
2.4	경북 경산 (8, 69)	1 (144)	3,085,526	100만 (1434)	-2차 예방접종 백신공급 *100만두 분
2.5	충남 천안 (8, 70)	1 (145)	3,127,463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평가회의 개최(장관) -전국 2차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계획 (2-단계) 시 달
2.6	부산 사하 (9, 71)	1 (146)	3,164,452	34만 (1,534)	
2.7	-		3,198,516		-지자체에 구제역 예방약 항체형성 검사결과 및 차단방역 철저 지시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2.8	-		3,225,823		<p>-2차 예방접종 실시계획 (2-2단계) 통보 및 예방접종 조기완료 독려</p> <p>-매몰지 사후관리 T/F회의 개최</p>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li> <li>*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lt;VIP 지시사항&gt;</li> <li>*축산업 선진화 T/F에 외부인사 및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종합적으로 추진</li> <li>*구제역 종식 후 근본적인 가축방역 대책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li> </ul>
2.9	-		3,256,900	127만 (1,661)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본 회의</li> <li>*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li> <li>*가축매몰 최소화 방안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등</li> </ul>
2.10	충북 청주 (10, 72)		3,277,030		<p>-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TF(성판장 장관)</p> <p>-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p> <p>-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집행 관련회의 참석(행안부)</p> <p>-이동통제초소 인력운용 및 관리 철저 지시</p> <p>-구제역 R&amp;D 전략기획단 1차회의 참석(지경부)</p> <p>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 종합후속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li> <li>*구제역·AI 발생 상황 및 매몰처분 범위 최소화</li> <li>*축산물 가격안정 대책</li> <li>*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li> </ul>
2.11	-		3,291,949	161만 (1,822)	<p>-2차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2-4단계)</p> <p>*경기·충북·충남지역 비육돈에 예방접종 실시</p> <p>-구제역·AI 발생농가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p> <p>-구제역 방역지역의 가축 수매관련 검사방법 조</p>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정 *발생농장·위험지역:(현행)임상검사+혈청검사→ (조정)임상검사 등
2.12	-		3,309,922	162만 (1,984)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절차 변경 *농식품부(검역원)에 통보없이 시도에서 이동제한을 구비한 시 군을 대상으로 검사후 이동제한을 해제 -이동제한 해제지역의 통제초소 운영방안 통보 *이동제한 해제지역은 돼지 백신항체가 형성되는 3월중순까지 통제초소 운영
2.13	-		3,321,338	116만 (2,100)	-구제역·AI 발생농가 방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매몰지 오염물건 처리 및 소독 철저,사후관리는 지역공무원 등으로 구성 정부 -매몰지 관리대책 회의(경제수석 주재) *2차관 참석
2.14	대전 동구 (10, 73)	1 (147)	3,333,496		-2차 예방접종 실시계획(2-5단계) 통보 *양돈집산지(경기,전북,경북)에 예방접종 실시계획 통보
2.15	-		3,347,445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장관 주재) *자문단(19명) 위촉장 수여, 및 방역체계 개선 관련 토론 실시 등 정부 -중대본 회의 *매몰지 관리 종합관리계획 검토 및 언론브리핑 자료 작성 협의 등 -매몰지 관련 영상회의 개최(장관) *매몰지 관리종합대책 및 언론브리핑
2.16	-		3,361,937		-해외 구제역 방역체계 조사 요청 *일본, 대만 영국 등
2.17	-		3,369,537		-구제역 2차 예방 예방약 추가 공급 *강원·충남북 및 전남북 등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정부	국회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관련 관계부처 협의회(총리실)
2.18	충남 태안, 경북 청도 (10, 74)	2 (149)	3,380,890	310만 (2,410)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유업체 간담회(국장) *학교우유급식 등 시유 우선 공급방안 협의
					국회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회의 개최 (2차 관 참석) *구제역대책추진현황 보고
2.19	-		3,391,942			-2차 구제역 예방접종 계획 통보 *전남북 및 제주지역 1,663천두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2.20~23)
2.20	-		3,395,021			-지자체에 일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방역강화 조치 이행철저 지시 *농장, 초소, 매몰지 사후관리 점검반 소독철저 등 -지자체에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지역 통제초소 운영 이행 철저 지시 *기존발생농장 등의 인접지역에서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통제초소 지속 운영 등
2.21	-		3,402,304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중간 검사결과 발표 검역원) *7개 시·군, 15개 매몰지 (30개 시료) 침출수 검사 결과 구제역·탄저균 미검출
					정부	-경제수석 보고(2차관) *가축매몰처분 위주에서 소각 렌더링 등 다양한 방법 도입 검토
2.22	-		3,408,180			-일제소독·예찰 등 구제역 방역강화조치 이행 철저 지시 *지자체에 농장 차단방역, 초소운영 상황점검 및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등 지시
					국회	-민주당 구제역특위 매몰지 현장방문 *경기도 양평·이천, 강원도 홍천 등 4개 지역 매몰지 방문
					정부	-중대본 회의(2차관)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 제정안 및 전수조사 추진상황 보고
2.23	-		3,416,792			-가축수매 개선 및 수매과정에 대한 방역 강화 등 지시 *발생농장 수매시기 판단기준 구체화 (발생후 2주 또는 매몰후 1주 경과시) *수매가축 운반차량을 발생농장, 위험, 외곽 등 별로 구분운영 *수매가축 운반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2.24	-		3,428,235			-지자체에 가축매몰지 비닐 씌우기 관련 사항 지시 *가축사체의 신속한 분해를 위해 평시 매몰지 위에 비닐을 씌우지 않도록 지시 *농가에게 매몰지 복토 등 기본관리 철저 지도
					정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식품정책실장)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방역 체계 개편 방향 논의 *총리실(주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지경부 등
2.25	울산 울주 (11, 75)	1 (150)	3,437,165			-고위험군 지역(1개 시군)에 대한 매몰지 전수조사 실시 *점검반:40개(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주말 강우 대비 매몰지 관리강화 지시 *매몰지에 비닐피복 및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유실 및 붕괴 예방조치 지시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 지자체부단체장 회의 참석(국장) *중대본(주관), 농식품부, 행안부 등
2.26	-		3,442,165			-울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추진 *발생농장 주변 이동제한 및 임상예찰 강화
					정부	-가축매몰지 점검 관련 회의 개최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가축매몰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결과 평가 및 보완매몰지 선정 *행안부,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
2.27	-	3,445,715				-매몰지 주변 관측정 설치 시 기술지원 추진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위해 지자체에서 관측정을 설치할 경우 농어촌공사를 통해 기술지원 추진 -제4차 가축 매몰지 우선조사 실시 *조사대상 매몰지중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매몰지를 점검반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에 지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지시 *농어촌공사에 매몰지 보강 완료전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요청 -부분매몰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지시 *지자체에 부분매몰농장에 대한 사람 차량 등의 이동통제 및 소독·예찰 철저 지시 -매몰지 관리 실태 점검(방역본부) *구제역·AI 매몰지 현지점검 추진 (4,573개소 ,구제역 4,385, AI 188)
2.28	-	3,452,562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지자체에 공동방제단 및 농가 등이 매일 회이상 자체소독 및 예찰 강화 지시
3.1	-	3,457,261				-지자체에 구제역 의심축 미신고 및 신고지연 농가·관계자 등 제재 지시 *제재조치 시행철저 지시
3.2	-	3,460,986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이행촉구 *유사 치료행위 금지, 의심축 신고시 신속한 현장조사·초동대응 철저, 매몰범위 준수 등
					국회	-구제역 관련 정책 토론회(2차관, 국장) *주최: 김성수의원실, 양주시청 *구제역 방역추진 상 및 피해농가 지원 대책 등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정부	-중대본 회의(동물방역과장) *총리실,농식품부,행안부,기재부,문광부,환경부,문광부,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논의
3.3	-		3,463,810			-3월중 전국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지시
3.4	-		3,466,173			-3월중 전국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지시
					국회	-한나라당 구제역특위 토론회 개최
3.5	-		3,469,043			-구제역 NSP 항체 양성농장 및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사항 재강조 *해당농장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 예찰 지도 등
3.6	-		3,471,088			-매몰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방안 시달 *매몰지 담당공무원지정 및 정기점검 등 실시 -축산업선진화 관련 세부과제 회의 개최 *2차관 주재 *축산업 허가제, 사육총량제 등 논의
3.7	-		3,473,583		국회	-민주당 구제역 대책 관련 토론회(국장) -자유선진당 구제역 대책 관련 토론회(국장)
3.8	-		3,473,959		정부	-국무회의 보고(장관) *구제역 대책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2차관) *총리실장 주재 *구제역 대책 등
3.9	-		3,475,198		방역 협의 회	-가축방역협의회 *이동제한 해제기준 완화 및 가축시장 운영재개 등
					정부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관련 중대본 회의(2차관) *행안부장관 주재
3.10			3,475,869			

일자	발생 지역 (순차)	발생 건수 (누계)	매몰 대상 누계	백신 공급량 (누계)	방역 활동 및 정책 추진
3.11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토론회 개최 (장관 참석) *3.11~3.12. 농업연수원, 분임토의 등 실시
3.13			3,478,276		
3.15			3,478,718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자문위원회 회의 실시(장관 참석) *토론회 결과보고 및 관련토론 실시 등
3.17			3,479,047		
3.18					-영국농식품환경부 (Defra) 관계자 영국 FMD아래 발표 및 현안논의
계	11개 시·도 75개 시·군	150		2,530	

## 부록 2. 구제역 관련 정부 발표문

### 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잠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

제공일 : 2010. 12. 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현준, 오순민  
전 화 : 02-500-2073, 2084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 긴급방역 예산 175억원 지원

- 매몰처리 보상금 146억원, 긴급방역비 24억원, 생계안정비 5억원 -

- 농림수산식품부는 12.1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지역 등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초동방역을 위해 긴급 방역비 175억원을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중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및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 원(경북

17, 인접 도 7)을 지원하며,

- 매몰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시까지 농가별 최고 6개월 간, 1천4백만 원의 생계안정비용 총 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처리 보상금 지급 및 긴급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28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2일 유정복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구제역 3건(4차~6차) 추가 발생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다.
- 이번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가축 매물처리의 범위는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 시 기존대로 500m를 유지하되,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과감한 예방적 매물처리를 실시기로 하였다.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신현관  
서기관 : 김영수  
전 화 : 02-500-2045  
쪽 수 : 1P  
별첨자료 : 있음(1P)

이 자료는 2010년 12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 지자체·공항만 구제역 방역추진실태 집중 점검

- 구제역 인접 시·도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방역추진실태 점검반 운영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인접 시·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승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방역추진실태 점검반을 구성하여 12.4~7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인접 시·도 방역추진상황 및 주요 공·항만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 점검반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8개반 14명으로 구성되며,
- 상황실 운영상황,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유사시 대응계획 수립 여부,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등과 함께 AI 방역추진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
- 한편,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관련 홍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및 소독 상황, 불법 축산물 검색, 유관기관 협조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정승 제2차관은 12.4일 충남 도청과 충북 충주시를 방문하여 2개 시·도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0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신 현 관  
서기관 : 안 창 근  
전 화 : 02-500-2042  
쪽 수 : 1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집회 등 농가모임 자제 요청

- 12.8일 개최예정인 2010 전국농민대회를 구제역 종식 이후로 연기 요청 -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대책상황실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접 시·도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전국의 지자체와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다수의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정기적인 행사, 토론회 및 각종 집회를 구제역 종식 이후까지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카톨릭농민회 회원 3천여명이 전국에서 모이는 “2010년 전국농민대회”를 구제역 종식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게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량 내·외부(특히, 운전석)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사무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영덕, 가축 예방 매몰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9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 처리한 경북 영덕 지역의 한우농장 2개소(영해면 1. 축산면 1)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양성 농장 2개소는 각각 한우 189두, 23두를 기르고 있었으며 서로 1km내에 위치한 인접한 농장이고,
- 영해면 소재 한우농장은 사료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농가로 최근 발생 지역인 안동 풍산면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안동의 발생농장과 연관된 축산컨설팅 전문가, 왕겨 운반차량이 해당 농장 부근을 방문한 역학적 관계가 있고,
- 축산면 소재 한우농장은 영해군 한우농장의 주인이 경영하는 사료대리점에서 사료를 공급한 농가로서
- 이들 농장은 12.8일 예찰과정에서 이상증상이 관찰되어 예방 매몰 처리한 농장이다.

-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3km~10km)”, “관리지역(10km~20km)”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전두수 매몰 처리토록 하였으며,
  - \* 500m내 우제류 가축현황 :
    - 영해면 한우농장 관련 : 소 2호 16두, 멧돼지 1호 100두
    - 축산면 한우농장 관련 : 소 1호 4두
- 영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 조치를 강화토록 하였다.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1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사무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양성농장에서 출하되어 유통된 쇠고기 회수 폐기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13일 구제역 양성농장에서 출하되어 유통 중인 3두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해서 현재 회수,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양성 농장으로 판정(12.8일)되기 전, 해당 농장에서 12.4일 출하된 소 9두중 시중에 유통된 지육 3두(898kg)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3개 업소 (가공장 1, 정육점 2)에 판매되었음을 확인하고
- 12.12일, 이들 3개 업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670kg(이미 판매된 물량 228kg 제외)을 우선 봉인 조치를 하였으며, 12.13일 해당 시·도에서 봉인된 쇠고기의 회수·폐기와 해당 업소·차량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1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사무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의성, 가축 예방 매몰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13일 구제역 양성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한 경북 의성군 안사면에 소재한 한우농장 1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인된 의성군 양성농장은 한우 83두를 사육하였던 농장으로 예천군의 구제역 양성농장에서 남서쪽으로 1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 농장주가 12.6일 안동 서후면의 구제역 양성농장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차량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 12.12일 예찰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관찰되어 예방 매몰한 농장이다.
-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3km~10km)”, “관리지역(10km~20km)”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매몰 처리토록 하였으며,

\* 500m내 우제류 가축현황 : 소 12호 79두

- 의성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1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양주 · 연천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는 12.15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양주시·연천군에 소재한 돼지 농장 2개소에 대해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O-Type)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 2개소(양주, 연천 각각 1,200여두)는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다.
-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3km~10km)”, “관리지역(10km~20km)”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양주, 연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양주나 연천의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발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이들 농장과 접촉한 사람, 차량 등이 출입한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추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구제역이 경기 지역까지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 농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하였으며
  - 각 시·도, 시·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하는 한편,
  -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기로 하는 등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4p  
별첨자료: -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조기종식 및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 강구

- 가축방역대책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 제한적인 예방접종 실시 방침 결정 -
- 비발생 지자체에서도 발생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차단방역 강화키로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북부, 강원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제역을 조기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해 12.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매몰처분과 병행하여 오염정도가 심한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5개 시군**이며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 소 약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

○ 그 외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 하되,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백신을 검토키로 하였다.

○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우제류 가축만을 매몰 처분한다.

\* 소의 경우 돼지보다 더 잘 감염되고 백신 효과가 우수하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고려, 소에 한해 우선 실시

\* 예방접종 대상(잠정) : 7,016호, 소 133천여마리

안동 : 1,446호 17천마리, 예천 : 4,106호 47천마리, 연천 : 396호 18천마리, 파주 : 723호 31천마리, 고양 : 345호 20천마리

□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00개팀 800여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개시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의사회와 협력,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30만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20만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고,**
  - 이는 제한적인 예방접종없이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출하 및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고,**
  - 예방접종 및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 \* 마지막 예방 접종 또는 구제역 최종 발생 2주후부터 검사 실시
  
- 한편, 연접한 3개 시도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최고 경보수준인 심각단계 수준에 준하는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비발생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 예산은 전국 156개 시·군·구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에 따라 4억원부터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통제초소 운영·매몰지 사후관리 등 지역별 차단방역에 사용된다.
- 또한,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된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행정안전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공조로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집중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집중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 예방집종을 하더라도 예방집종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비발생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제역 예방수칙을 지금보다 한층 더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축산농가 준수사항 >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 외부인 및 근로자 통제 철저
-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 금지
-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만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 금지
-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가축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과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해 줄 것과 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소만 도축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남부지역(이천, 여주, 양평),

###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 농식품부는 경기도 건의에 따라 이들 지역에 제한적인 예방접종 실시 -

- 농림수산식품부는 12.26일 구제역이 경기 여주에서 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경북 일부지역(2개도 5개 시·군)에 이어 경기 남부지역(3개 시·군)에도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된 예방접종 대상은 발생지역인 여주군 가남면과 북내면, 예방 매몰농장이 소재한 이천시 대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농장 반경 10km내(양평 일부지역 포함)의 소(牛) 약 5만 6천여마리(1,660여 농가)를 대상으로 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여주 발생농가와 이천의 예방 매몰농가는 축산 밀집지역인 용인·안성 등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교통 및 인적 교류 등을 감안해 불 때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 이들 지역에서 충남·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의 건의와 수의과학검역원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선제적인 조치로 예방 접종기로 한 것이다.

\* 예방접종 대상(잠정) : 1,660호, 소 56천여마리  
 여주 : 851호 22천마리, 이천 : 533호 30천마리, 양평 : 276호 4천마리

□ 예방접종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공수의사, 지역농협 직원 등 30개 팀을 투입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7일내에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방약과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 2차 접종은 1차 접종완료 1개월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

□ 앞으로도 추가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기술 자문과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접종 인력을 자체 조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과 기술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3p  
별첨자료: 1개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9일 11시부터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 정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12.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주의』 단계(11.29, 구제역 발생) → 『경계』 단계(12.15, 타 시·도로 확산)

- 이는 지난 11.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 경기북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축산 밀집지역(안성, 용인, 충남·북, 전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지역별 대책본부 구성, 인력 동원, 현장 점검 등)에 주력하고,
    -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구제역 방역(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 또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공무원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시·도 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 한편,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여 발생지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29개 시·군중 12개 시·군)의 소(牛)에 대해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발생 지역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 시·도 :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여주·이천·양평·포천·양주, 인천 강화, 충북 충주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47만여 마리가 마리가 매몰 처리되어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범정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위기경보 격상 조치**로 구제역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모두 힘을 모아 **구제역의 빠른 종식과 청정국 지위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9.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영주, 경기 김포지역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29일 경북 영주 및 경기 김포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접종지역은 경북 영주와 경기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접종 대상은 경북 영주지역 2천2백여 농가, 4만5천여두 이고, 경기 김포 지역 3백여 농가, 1만4천여두 임
  -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건의서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기술 검토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사 등 70개팀, 210명을 투입하여 접종 개시 후 10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함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3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2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 횡성 지역,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31일 강원 횡성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접종지역은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에 소재한 발생농장의 반경 10km 내이며, 접종대상은 1,670여 농가의 소 36천여마리이다.

○ 강원도는 12.31부터 1.6일까지 공무원, 공수의사 등 30개팀 90명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며, 수의과학검역원은 소요되는 예방약을 공급한다.

\* 전국 예방접종 지역(12.31기준) : 29개 발생 시·군중 15개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 예방접종후에도 예방접종전과 똑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이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층 더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각종 모임이나 집회 참석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1월 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남양주 · 경북 영천,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경기 남양주와 경북 영천 지역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은 남양주, 영천의 전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71천여마리(2,886호)에 대해 실시한다.
    - \* 접종대상 : 남양주 18천여마리(472호), 영천 53천여마리(2,414호),
  - 이번에 예방접종이 추가 실시되는 남양주에는 예방접종팀 25개팀(팀당 3명), 영천에는 12개팀이 투입되어 각각 1.2일 부터 1.8일, 1.2일~1.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들 지역에서 소요되는 예방약을 공급키로 하였다.
    - \* 전국 예방접종 지역(1.1, 21시 기준) : 33개 발생 시·군중 18개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예방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 하면서



- 예방접종 후에도 예방접종전과 똑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층 더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각종 모임이나 집회 참석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

이 자료는 2011년 1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천안,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충남 천안의 전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31천여마리(793호)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충남도는 천안 지역에 예방접종팀 24개팀(100여명)을 투입하여 1.2일부터 1.8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의과학검역원은 이에 소요되는 예방약을 공급키로 하였다.
- \* 전국 예방접종 지역(1.2, 12시 기준) : 36개 발생 시·군중 19개 시·군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 예방접종후에도 예방접종전과 똑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층 더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각종 모임이나 집회 참석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3p

별첨자료: -

이 자료는 2011년 1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전역, 강원·충남 일부,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경기 전 지역, 강원 4개 시·군(춘천·원주·강릉·홍천), 충남 3개 시·군(보령·홍성·청양)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완료되었거나 실시중인 11개 시·군외에 이번에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19개 시·군과 발생지역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던 가평군의 소 256천여마리 (5,400호)를 대상으로 1.3일부터 1.9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지역의 발생농장 반경 10km내의 소 57천여마리(2,886호)에 대해 1.3일부터 1.9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충남도는 발생 지역인 보령과 보령 인근 지역인 홍성, 청양 지역내의 모든 소 122천여마리(7,102호)에 대해 1.4일부터 1.9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들 지역에 소요되는 예방약을 공급하고 집종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 전국 예방접종지역(1.3, 11시 기준) : **49개 시·군(기존 19개 시·군)**

발 생 지 역 - 37개 시·군중 26개 시·군(기존 19개 시·군)

비발생 지역 - 23개 시·군·구(신규)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에 둘러싸여 추가 전염이 우려되는 비발생지역에 대해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비발생 시·군에서 예방접종을 한 소(牛)는 쇠고기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에 등록(접종후 2~3일 소요)된 이후,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 출하를 허용한다.
- 다만, 구제역 종식시까지 다른 시·도로 출하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접종지역내의 축산농가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 예방접종후에도 예방접종전과 똑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층 더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각종 모임이나 집회 참석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지역 현황(1. 3, 11시 기준)

[예방접종 지역 : 49개 시·군·구] - 前日 19개 시·군

□ (발생지역) 37개 발생 시·군중 26개 시·군(6개 시·도) - 前日 19개

시·도	발생 및 예방접종 지역	접종완료
인 천	2개 발생 시·군중 1개 시·군(전체) : 강화, 서구	
경 기	12개 발생 시·군(전체) 양주, 연천, 파주, 고양, 포천, 김포, 남양주, 여주, 양평 이천, [광명], [가평]	파주.고양. 연천
강 원	9개 발생 시·군중 5개 시·군(10km내) 횡성, [춘천], [원주], [홍천], [강릉], 대화, 화천, 철원, 양구	
충 북	1개 발생 시·군중 1개 시·군(10km내) : 충주	
충 남	2개 발생 시·군(전체) : 천안, [보령]	
경 북	11개 발생 시·군중 5개 시·군(전체 또는 10km내) 안동(전체), 예천(10km), 영주(전체), 경주(10km), 영천(전체), 영양, 영덕, 봉화, 의성, 청송, 포항	안동.예천. 영주

\* [ ] 내 시·군 - 예방접종 지역, [ ] 내 시·군 : 1.3일 추가된 지역

□ (비발생지역) 23개 시·군·구(3개 시·도)에서 예방접종[신규]

시·도	발생 및 예방접종 지역	접종완료
서 울	서초구, 구로구 (2개구)	
경 기	안성, 용인, 화성, 평택, 광주,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오산, 하남, 의왕, 과천, 구리, 의정부, 동두천 (19개 시·군)	도내 모든 지역 접종
충 남	홍성, 청양 (2개군)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1월 6일 lvd(14: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돈 및 어미 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전문가 및 양돈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충남·북지역과 인근 경기 남부지역의 돼지 집산지를 중심으로 종돈 및 어미돼지 약 21만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

\* 접종지역 :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충남 보령·홍성·당진·서산·천안·서천, 충북 진천·충주·괴산 등 13개 시·군 1,456농가 종돈 9,000여두, 모돈 200천여두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분만 축사에서 주로 감염이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돈 및 어미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종돈이나 모돈의 경우 축사내 돼지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면역 형성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때 기존의 농장 단위의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 장 : 장 기 윤  
서기관 : 장 재 흥  
전 화 : 02-500-211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2P)

이 자료는 2011년 1월 6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 \*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 신고율 : '10.5월(48%) → 6(70) → 7(80) → 8(70) → 9(68) → 10(53) → 11(50) → 12(74.3) → '11.1.5(97.5)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인 :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3p

별첨자료 : -

이 자료는 2011년 1월 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지역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감안, 예방접종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추가 확대되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 846천여두, 돼지(종돈, 모돈) 354천여두로 총 120만여두이며,
  - 대상지역은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충남·북, 강원 지역의 미접종 소, 종돈·모돈과
  - 전북 일부지역(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 의 소, 종돈·모돈,
  - 경북지역 기접종 시·군(안동, 예천, 영주, 경주, 영천, 포항)의 돼지와 기 발생 지역중 미 접종 시·군(의성, 봉화, 영덕, 청송) 및 경남 지역과 접해 있는 경산, 청도 지역의 소, 종돈·모돈 등이다.
- ※ '11.1.8일 현재 접종 대상두수 : 소 1,327천두 중 803천두(66%) 접종 완료, 돼지(종돈, 모돈) 257천두는 농가에서 1.9일까지 자가 접종 완료 예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충남·북 지역의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추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 사료 및 가축이동이 빈번한 전북 서해안 지역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기존 접종 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북 지역의 경우 모든 시·군의 소와 종돈·모돈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키로 하였다.
- 경북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으나, 봉화, 경산 등 일부 지역의 돼지에서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발생 시·군과 경남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산, 청도를 포함하여 확대 접종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항체 형성시까지 2주간이 소요되고, 특히,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에 한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과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오순민  
전 화 : 02-500-2084  
쪽 수 : 5P  
별첨자료 : 있음(2P)

이 자료는 2011년 1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물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 살처분·소각·매물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 추가
    - 살처분·매물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 마련

- **매물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책무 부여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 ②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 공개
- ③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제5조)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입국시 신고 의무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중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음
    - \*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함

- \*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며(제9조의2)
- ⑤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
- ⑥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 강화(제19조, 제48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예방교육·소독 의무나 입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가축방역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소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⑦ 가축의 매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물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물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물지를 매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물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⑧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함

⑨ **가축의 살처분·매물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 고용된 자와 그의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시행될 예정임

⑩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 지원 확대(제50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역학조사·이동통제·살처분·소각 또는 매물 비용, 주민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키로 함

□ 동 법률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인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제3조의 2),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 입국시 소독조치·출국신고 등(제5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제9조의2),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제48조),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 2) 등 일부 조항

\* 공포일부부터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축산농가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제17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강화(제22조), 매몰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의무(제30조)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잠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1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 접종 전국 확대 방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전국 확대와 관련, '11년 1월 13일 제1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하였다.
- 전국의 모든 소 및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예방약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는 ① 전국(제주 제외)의 모든 소 및 전국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 모돈, 비육돈), ② 전국의 모든 모돈, ③ 돼지 비육돈 순으로 접종키로 하였다.
- 1단계로 오는 1월 15일 ~ 1월 16일간 도착하는 백신 225만두분은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비접종 소 146만두\*와 전국(제주 제외)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 모돈, 비육돈) 65만두에 대해 우선 접종키로 하였다.

< \* 비접종 소 접종 (146만두) >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8만두
- 전남, 전북(미접종 지역 추가), 경남 : 112만두
- 경북(미접종 10개 시군 추가) : 26만두

□ 2단계로는 비접종지역 모든 30만두 및 전국 비육돈 637만두, 제주 지역 소 및 돼지 50만두에 대해 접종 하되 1월 21일 이후 백신수급상황(1.21~1.31간 600만두 도착 예정)을 고려하여 접종 지역 우선순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2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오순민  
전 화 : 02-500-2084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2P)

이 자료는 2011년 1월 2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4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27호)」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1월 13일 국회본회의 통과, 1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등

□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 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 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농장주등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거부할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3항), 입국시 관련서류(입국신고서 등)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5조제5항),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검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조제5항)

□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축산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실시(제5조제3항)
- 일반인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제5조제5항)

-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조치 실시(제5조제6항)
- 소독 조치된 가축의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에 통보, 필요시 방역조치토록 함(제5조제7항)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안정 치료 지원(제49조의2)
  - 소방방재청의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업무와 연계
- \* 하위법령 개정 시까지 사전 홍보·계도 차원 시행, 위반시 처벌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춘석, 이두아, 조배숙, 김영우(2회), 김학용, 강기갑, 최인기, 김영록, 정범구, 류근찬, 정해걸 의원 발의 → 농식품위 대안, '11.1.12)

개정안 주요내용
<p>◆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 7호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li> <li>8호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물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li> <li>*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매물 후보지 미리 선정·관리</li> </ul>

<p>* 제3항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시·도가축방역기관 인력 장비 기술 보강 지원</p>
<p><b>◆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b></p> <p>* 제3항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종류, 발생 국가,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 - 세부사항 농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p>
<p><b>◆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업무)</b></p> <p>* 제2항 :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p> <p>* 제3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신고, 예방 교육 및 소독 조치</p> <p>* 제4항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서류 제출, 소독 등 조치함을 고지</p> <p>* 제5항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함</p> <p>* 제6항 :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동거 가족, 수의사 등도 서류 제출 및 신고 소독</p> <p>* 제7항 :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독 받은 자를 지자체에 통보</p> <p>* 제8항 :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게 가축사육기성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음</p> <p>* 제9항 :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출입국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함</p>
<p><b>◆ 제7조(가축방역관)</b></p> <p>* 제5항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 지원 강화, 교육 실시</p>
<p><b>◆ 제9조의2(가축방역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신설]</b></p> <p>* 제1항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방역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p> <p>* 제2항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b>◆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b></p> <p>* 제3항 : 축사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소독</p> <p>* 제4항 :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해야 함</p>
<p><b>◆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b></p> <p>* 제2항 :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을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p>

<b>법률 개정(안)</b>	
<b>◆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b>	* 제5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관리실태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
<b>◆ 제24조(밭갈의 금지)</b>	* 제1항 :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b>◆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b>	* 제4항 :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b>◆ 제48조(보상금 등)</b>	* 제1항 : 가축전염병 신고 수의사,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 제3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국신고 등 미이행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 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등 지급
<b>◆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b>	* 제1항~제4항 :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농장주·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 제5항 : 치료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b>◆ 제50조(비용의 지원 등)</b>	* 제1항 : 지원대상에 이동통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제2항 : 구제역 등 발생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 지역에 추가 지원
<b>◆ 제52조의 2(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신설]</b>	* 제1항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조 함 * 제2항 :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요청 * 제3항 : 정보 요청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b>◆ 제57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b>	* 해외여행에서 입국시 검역원의 검사·소독 등을 거부·기피한 자
<b>◆ 제60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b>	* 제1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자 중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 하는자, 질문 검사 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2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료 : 3p

이 자료는 2011년 1월 2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후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범위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키로 하였다.
- 소와 종돈·모돈·후보모돈의 경우 예방접종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만 매몰처분하고
  -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있는 돈방내의 돼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개체가 속해 있는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의 돼지만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이동통제후, 농장내 가축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이상확인시 소는 전수검사, 돼지는 돈방별 표본검사)를 실시
-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예찰, 사람·차량 등의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특히,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인접장소에 사료를 보관·공급하도록 하여 사료차량의 농장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였다.

## 예방접종후 발생농장의 매몰범위 조정 및 특별 관리요령

- (실시 배경) 전국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시 매몰범위 조정 및 이에 따른 특별 관리요령 필요
  - 현재 예방접종후 14일 경과된 발생농장에만 매몰 범위 등을 규정
- (매몰범위 조정)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 매몰 범위

### [소]

- 예방접종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

### [돼지]

- ① 종돈, 모돈, 후보 모돈은 예방접종후 경과 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② 비육돈

-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 돈방 단위
-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 돈사 또는 돈방(밀폐된 경우에 한함)

□ (특별관리요령) 발생농장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장내 감염 축을 확인·매몰, 오염 우려 물건의 소각·매몰, 매일 1회이상 소독·예찰 및 차량·사람의 철저한 차단 등 특별관리 실시

[임상검사·혈청검사를 실시, 감염축 확인 및 매몰 등]

- ①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 및 시료를 채취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
  - 검역원은 검사결과(항원, NSP 항체 양성여부)를 해당 시험소에 송부
- ② 지차체 및 가축위생시험소는 이동 통제후, 농장내 사육 가축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 - 농장당 16두이상(우사, 돈사, 돈방에 따라 균등 검사)
  - NSP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해당 소·돼지는 매몰 처분
- ③ 표본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소는 전수 검사, 돼지는 돈사(돈사별 10두이상) 또는 돈방별 표본 검사(돈방별 3두이상) 실시하여
  - 소는 해당 개체만 매몰하고
  - 돼지는 돈사 또는 돈방(돈사내 돈방별로 밀폐되어 있거나 예방접종후 14일이경과된 경우)별로 매몰 처분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예찰, 사람·차량 등의 이동 통제 철저]

- ① 매몰후 매일 1회이상 임상관찰 및 농장내, 축사 내외부, 장비, 기자

## 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②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매몰

-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조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 ③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 금지 표시판” 설치
-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 금지 및 인근 주민 출입 차단
- 음식물 등 생활 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 불가피한 경우, **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 원유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기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집유 차량이 정문밖에서 호스 등을 이용하여 집유토록** 조치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조(소독 등 조치) 참조

\*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14일 경과시 까지의 사료 소요량을 일시에 공급(농장 정문앞 인접 장소) 하고 동 기간내에 사료 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 (시행시기) 2011. 1.27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3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3p  
별첨자료 : 2p

이 자료는 2011년 1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하였다.
-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 다만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육은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키로 하였다.
-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 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하였다.

□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의 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 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 예방접종후 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 등에 관한 기준

### 1. 매몰기준

<소>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

<돼지>

○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 비육돈

-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 돈방

-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 2. 이동제한 해제 기준(축종별로 적용)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해제

검사(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 이상)

\* 검사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해 3주간

###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검사 실시

⇒ 이동제한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제

### 3. 수매(이동제한 해제 전)

□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후 수매하고,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수매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든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 도축

○ 지육 :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 도축부산물 : 소독 후 폐기

\* 도축장에서 감염축 발생시 해당농장 지육 폐기

### 4. 사료공장

□ 이동제한 해제 전(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 가능)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 소사료와 돼지사료 수송차량 구분 조치

## 5. 도축장

**폐쇄조치 해제 : 가축이동 해제시**

**이동제한 해제 전**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 허용, 다만 발생농장이 있더라도 우제류 가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 도축 허용

## 6. 축산분뇨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이용**

-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이 저장조(500톤 규모) 설치 지원

## 7. 재입식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 입식시험 없이 사육 조치**

-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1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김 태 용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4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2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하여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하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하여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하였다.

\* 혈청검사 : (현행) 방역지역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조정)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임상증상 포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된다.
-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이 허용된다.
  -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그리고,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개체 포함)만 매몰 처분하되, 검사결과 자연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도태기로 하였다.
- 돼지는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기로 하였으며
  -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 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하고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에는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

- (조정 배경) 구제역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 조정 필요
- (해제기준 조정)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후 해제

현 행	개 선 (안)
<p>□ 축종별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 경과후 임상·혈청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p> <p>&lt;소&gt; 발생농장 : 임상+혈청(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p> <p><b>(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 이상)</b></p> <p>&lt;돼지&gt; 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모든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p> <p><b>(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b></p>	<p>□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물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li> </ul> <p>□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li> </ul> <p>&lt;소&gt; 발생농장 : 임상+혈청(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p> <p><b>(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b></p> <p>&lt;돼지&gt; 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모든 전두수, 비육돈 돈방별 3두) -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p> <p><b>(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b></p>

- (해제 절차)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 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
  -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영 허용
-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소의 경우, 발생농장만 이동 제한후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포함)는 매몰하고,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NSP 양성측)된 경우에는 도태
  - 돼지의 경우
    -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
    -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14일 미 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
- (시행시기) 2. 10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1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 노 수 현  
서기관 : 박 흥 식  
전 화 : 02-500-2059/60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2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매가축(소, 돼지) 부산물 유통 금지조치 완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돼지 도축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 열처리를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 부산물 유통을 원하는 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 ※ 공급가능 부위
      - 소 : 내장, 머리(족, 간·심장, 폐,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
      - 돼지 : 도축부산물 전체(단,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
- 이번 부산물 유통금지 완화조치는 소·돼지 부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15.  
제공자 :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과 장 : 신 현 관  
서기관 : 김 영 수  
전 화 : 02-500-2045  
쪽 수 : 1P  
별첨자료 : 있음(2P)

이 자료는 2011년 2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 자문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를 위해 지난 2.10일에 구성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발전 T/F」 자문단 위촉식을 2.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 위촉장 수여 후에는 자문단에게 T/F 운영계획을 알리고 방역체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축산환경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축산업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 근본적으로 친환경 축산 등 **축산선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잘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17.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 장 : 해외전염병과장 조인수

서기관 : 연구관 박종현

전 화 : 031-467-1855

쪽 수 : 5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2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표준연구소 확인 결과」

#### “국내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는

#### ‘10년 베트남 발생주와 유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국제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연구소, WRLFMD, OIE, FAO)에 ‘10.11월 국내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와 ‘10년 베트남 유래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관련성을 비교분석을 요청한 결과, ‘10년 베트남 바이러스들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 퍼브라이트연구소에 ‘10년 양국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비교분석토록 요청한 결과 임.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1.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 장 : 질병관리과장 정병곤  
서기관 : 사무관 손한모  
전 화 : 031-467-1362  
쪽 수 : 1P  
별첨자료 :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2월 21일 브리핑(15:4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중간 검사결과

- 구제역 및 탄저균 검출되지 않아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는 현재까지 7개 시·군 15개 매몰지(30개 시료)의 침출수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구제역 및 탄저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시료는 경기 10개소(이천 4, 안성 1, 평택 2, 여주 3), 충남 1개소(천안 1), 강원 4개소(철원 1, 춘천 3)에서 침출수 18점, 토양 12점에서 검사한 결과임

□ 앞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선 전국 매몰지 4,467개소의 10% 수준인 약 460개소(침출수 420, 토양 40)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에 있다.

○ 검사항목은 구제역·AI·탄저뿐만 아니라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침출수및토양검사현황(11.02.21일기준)

#### ▣ 검역원 시료채취 (구제역, 탄저 검사)

연 번	매몰지 주소			매몰현황			시료 채취일	시료내역	검사결과	
	시도	시군	읍면	축종	매몰 두수	매몰완료일			구제역	탄저
1	경기	안성	일죽	돼지	1,368	`11.02.07.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2	경기	이천	대월	돼지	2,600	`11.01.18.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3	경기	이천	대월	돼지	1,500	`11.01.10.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4	경기	이천	대월	돼지	4,863	`11.01.18.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5	경기	이천	대월	돼지	4,255	`11.01.12.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6	충남	천안	수신	돼지	2,310	`11.01.20.	`11.02.15.	침출수 2점 * 10ml	음성	음성
7	강원	철원	동송	돼지,소, 사슴	3,589	`10.12.27.	`11.02.15.	침출수 3점 * 10ml	음성	음성
8	경기	평택	청북	돼지	1,367	`11.02.14.	`11.02.17.	침출수 1점 * 10ml	음성	음성
9	경기	평택	고덕	돼지	1,519	`11.01.07.	`11.02.17.	침출수 1점 * 10ml	음성	음성
10	경기	여주	능서	한우	139	`10.12.31.	`11.02.17.	토양 2점 * 10g	음성	음성
11	경기	여주	능서	한우	82	`11.01.01.	`11.02.17.	토양 2점 * 10g	음성	음성
12	경기	여주	능서	돼지	615	`11.01.20.	`11.02.17.	침출수1점*10ml 토양2점*10g	음성	음성
13	강원	춘천	동면	소,염소	14	`10.12.28.	`11.02.17.	토양 2점 * 10g	음성	음성
14	강원	춘천	동면	소,개	69	`10.12.28.	`11.02.17.	토양 2점 * 10g	음성	음성
15	강원	춘천	동면	소	7	`10.12.28.	`11.02.17.	토양 2점 * 10g	음성	음성

\* 3개 도, 7개 시군, 15개 매몰지 30점(침출수 18점, 토양 12점)

\* 15개 매몰지 : 경기10(안성1, 이천4, 평택2, 여주3), 충남1(천안1), 강원4(철원1, 춘천3)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5.  
 제공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홍보교육팀  
 과 장 : 권 상 의  
 서기관 : 070-8282-2509  
 전 화 : 2P  
 쪽 수 : 참고자료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2월 2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중심의 가축방역·위생·검역사업 적극 추진

-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양축농가 지도 및 교육·홍보 강화
- 가축질병 조기검색을 위한 시료채취, 농장순회점검 실시
-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방역팀 긴급 투입 등 현장방역 “총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방역·위생·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구제역, 소브루셀라병, 돼지 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등 주योग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용 시료채취와 축산농장 방역실태점검사업 등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위생사업과 수입 식용축산물 검역·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주योग축전염병 시료채취는 총207천여호에 1,564천여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장방역실태점검사업은 총289천여호를 방문하여 질병으로 의심되는 4천3백여건에 대하여 ‘가축질병예찰실시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사를 의뢰한 결과 1.3천여건이 질병 감염축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색된 질병 중 430건이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밝혀져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방역본부는 구제역·AI 의심축 신고 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농장을 차단하여 질병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예방접종, 시료채취, 상황실·통제초소·소독지원 등 인력 지원과 차량소독기·통제초소용 출입자소독기를 제작·설치 운영하였다.
- 축산물위생사업은 총 13,825천여두의 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이상증상이 있는 13.4천여호에 대해서는 방역사를 통해 해당농가에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가 개선되어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사업은 '10년에는 총 39.3천여건 752.7천여톤을 실시한 결과 1.6천여건의 이상보고가 있었으며, 그 중 370건, 396톤이 불합격되어 위해수입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는 별도로 방역활동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의 효과적인 방역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07년부터 가축사육농가 정보 및 위치정보를 팜스(FAHMS,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한편, 방역본부는 오는 3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화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3. 1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 노 수 현  
서기관 : 조 병 임  
전 화 : 500-205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3월 2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봄맞이 축사 일제 소독·청소 및 청정축산 다짐 결의

- 3.2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 축산인 중심으로 청정축산 운동 실천 결의대회 개최
- 전국 축산인, 사료업체·도축장 등 축산관련 기반시설 일제소독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확대 실시(주 1회 ⇒ 2회)
-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 지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3.21일부터 축산인,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청정(CLEAN)축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봄철을 맞이하여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AI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고 AI 발생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한 축산인의 자성과 새로운 청정축산을 다짐을 위해서 '11.3.21부터 「청정(CLEAN)축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이번 청정축산 운동에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종사자, 행정기관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추진하며, 청소·소독 등 청정축산 운동에 대한 실천의지 고취와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 ① 시·도에서는 오는 3.21일 주간에는 축산인, 지역 축산단체·소비자 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청정축산 운동 실천 및 자정 결의대회와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의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 \* 시·군 단위 청정축산 운동 실천 및 자정 결의대회는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 군수가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추진

- 또한, 축산관련 단체협의회는 오는 3.24일(목) 농협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에서 청정축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사 내외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다짐할 계획이다.

- ②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및 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소독을 '11.3.23(수) 일제히 실시하며,

- 향후 이 행사를 지속적인 청정축산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의 운영횟수를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며,

- 축산관련 업체는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소독을 실시한다.

- ③ 아울러, 3.21일 주간에는 축산 관련 업체별(사료업체, 도축장, 계열업체 등)로 자율적인 청정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소독 및 방역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 이번 청정축산 운동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와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우리축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4. 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  
과

과 장 : 김태웅

서기관 : 조옥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 -

이 자료는 2011년 4월 7일 배포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일부터 전국 가축시장, 다시 개장”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지역이 모두 해제(4.3일) 되어 구제역 상황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4.8일자로 전국 가축시장(85개소)을 다시 개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가축시장은 안동 구제역 발생에 따라 11.30일부터 잠정 폐쇄된 바 있으며, 129일만에 재개장하게 된 것이다.
    - \* 폐쇄된 기간동안, 지역축협에 가축중개 매매센터(89개소)를 개설, 전화 및 인터넷 중개 등을 통해 거래 유도
  - 농식품부는 가축시장 재개장을 위해 그간 사전 준비작업으로 4.1일부터 가축시장에 대한 일제 청소·세척 및 소독을 매일 1회이상 실시토록 하였고, 가축시장별 소독시설 기준 준수여부와 일제 청소·소독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시장 개장 이후에도 가축시장을 통한 질병 전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시장별로 개장시 지역축협으로 하여금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조치하고,
  - 각 시·도로 하여금 가축시장의 청소·소독 등 방역실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토록 하였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4. 1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  
과

과 장 : 김 태 용

서기관 : 조 옥 현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년 4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2일부터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4.12일자로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조정은 4.1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3.21일 홍성의 부분 매몰농장을 마지막으로 3주간 소, 돼지의 추가 매몰이 없고, 현재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 ※ 위기경보 발령 경과 : 관심(10.11.28이전) → 주의(11.29) → 경계(12.15) → 각(12.29) → 경계(11.3.24)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였지만 현재 이동제한중인 부분 매몰농장(806개소)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들 농장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및 해당 지자체에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 전국 일제소독(매주 1회이상)과 전화예찰 전담요원(670명)을 통한 상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5. 6.

제공자 :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천일, 김태웅

담당자 : 김영수(총 괄 : 500-2045)

(전화) 권우순(허가제: 500-2047)

조옥현(S O P: 500-2082)

조헌준(보 상 : 500-2073)

쪽 수 : 12P

별첨자료 : 1건

이 자료는 2011년 5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발표

- 5.6일 농림수산물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 발표 후 대책 홍보와 함께 축산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지자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과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에 왔으며,
- 지역 순회 토론회(5회),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내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별첨자료 참조)
- 또한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 즉, 2012년 허가제 도입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 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여부 등을  
허가기준으로 설정 -**

-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 또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물부가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돼지 2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예시: 돼지 2천마리 이상(1단계 허가대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

구 분	세 부 항 목
①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방역관리 수의사 계약 소독시설 : 차량소독, 출입자소독, 발판소독
②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③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④폐사축처리시설	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가축사육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외에 추가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 축산업 허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이 반영되어 있다.(2011년 1,633억원)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축종별·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갈짚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m <sup>2</sup>	16.5m <sup>2</sup>	1.4m <sup>2</sup>	0.8m <sup>2</sup>	0.11m <sup>2</sup>	0.246m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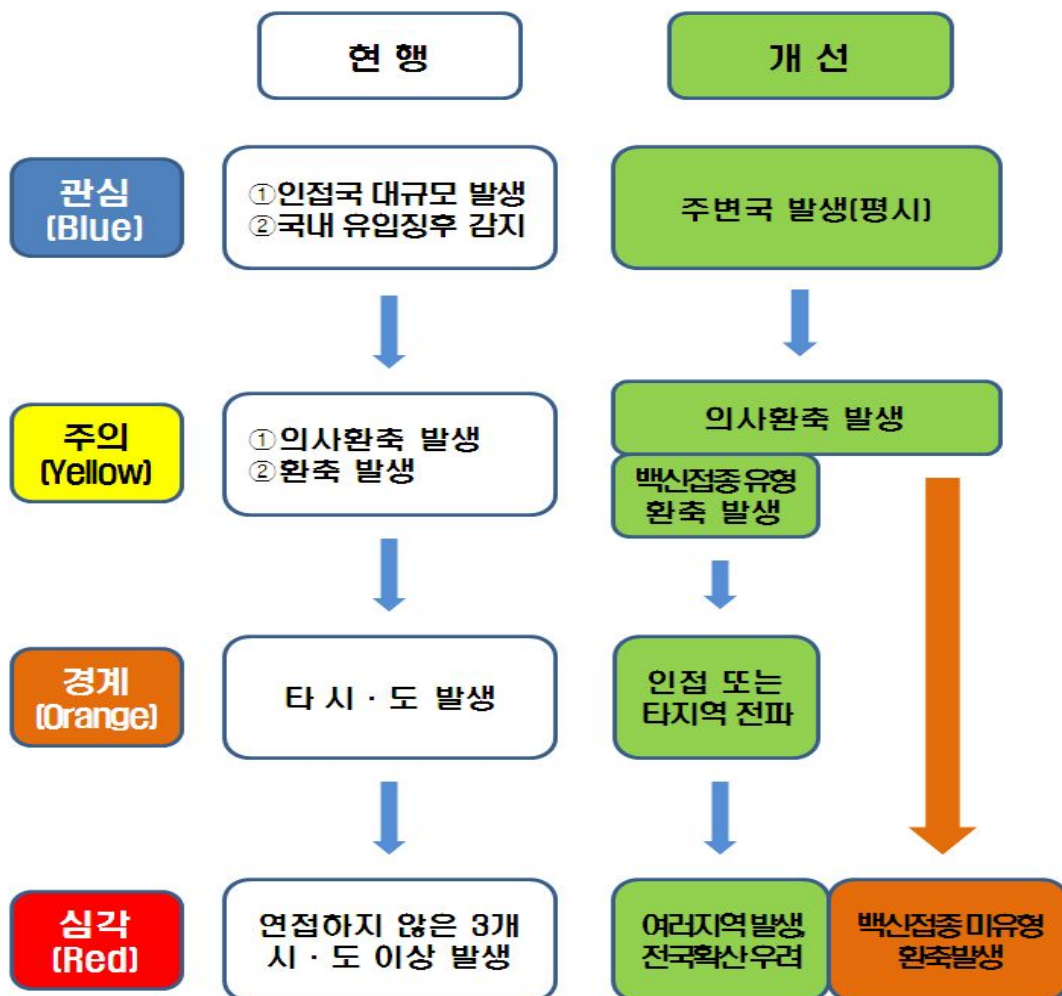
- 교육기준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즉,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 교육을 받게 된다
- 교육내용도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제 사육에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하여 운영 -

-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는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되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 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을 통한 초동대응 체계 강화 -

□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형)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형)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게 된다.



-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가축질병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구제역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및 전국 일시 이동금지(Standstill)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 신고 농장에 도착한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해당농장 이동을 통제하고 전두수 임상검사 및 항원키티트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중앙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역학조사, 농장 소독 등을 실시한다.
  -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해당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반면,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발령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 ① 백신접종 유형으로 판명될 경우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① 일정지역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 하되 농식품부와 발생 지자체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최초 발생농장과 최근 1주일내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처리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발생 시·군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 ② 구제역이 인접지역 등으로 확산시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합동 지원반을 구성하여 발생 시·도에 파견하게 된다.

- 발생 및 연접 시·도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사람·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축산농가는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생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 ③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거쳐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심각단계가 발령되더라도 발생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의 감염가축만 매몰 처리하게 된다.

-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게 된다.

- ②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으로 판명될 경우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Standstill), 모든 지자체 및 축산관련기관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이 결정될 경우 결정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가동되어 발생 농장과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매몰처리를 하고, 긴급백신 접종이후에는 매몰범위를 축소한다.
- 대규모 추가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

-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 2012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 (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게 된다.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



인 매몰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대책 발표후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되, 음성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갈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을 감액하게 된다.
-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 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 실시, 이동 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축산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 또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 - 중앙과 지방의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된다.
- 중앙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구제역진단과」와 「위기관리센터」가 신설되며,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

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 국경검역 강화,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백신 수급 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56명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회가 완료되는 대로 증원을 추진한다.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게 된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기준(예 : 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을 확충한다.
- 시·군·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예 : 농장 300호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 지방 방역기관의 조직 보강과 인력 충원은 사육규모별, 호수별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된다.

□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11.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 이 기구는 농식품부 관계자, 시·도 관계자,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관계자,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는 5개반(상황 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반, 역학조사반, 매몰처리반) 92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에서 파견되는 중

양 초동대응팀 8명과 지역내 관계자로 조직된 현장 기동조치팀 84명이 5개반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CPX)를 실시하게 된다.

### - 2012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

- 2012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 2012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하고,
    -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 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차량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차량을 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하고, 축산농장 출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를 출입한 내역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

- 2012년부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 방역 매뉴얼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 -

- 앞으로 세부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매뉴얼과 축산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h1>보 도 자 료</h1>	2010. 12. 5(일)	
		작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대근 사 무 관 서영주 <b>Tel. 2100-2347</b>
<b>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b>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사 무 관 신강민 <b>Tel. 2100-2108</b>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키로

- 총리실,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 정부는 12. 5(일) 11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제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우선, 12.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
      - 4개반, 12명으로 편성
      - 점검내용 :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구제역 상황실 운영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항·항만 국경검역

### 실태 등

- 또한,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처리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 \* 군 인력의 경우 이동통제 초소 등에 투입되고 가축 매몰처리에는 투입되지 않음
  - 이와 함께 필요시 매몰처리 경험이 있는 他道の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통제 및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 매몰처리·가축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중)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h1>보 도 자 료</h1>	2010.12.15(수)	
		작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대근 사무 관 서영주 Tel. 2100-2347
<b>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2106

##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 총리실장 주재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 양주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12.15(수) 16:00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10:00)를 거쳐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 우선, 12.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단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과장급 등 참여)을 구성하여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경기지역 방역활동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 경북지역은 기존의 농식품부 현지 방역지원단(7개반, 28명)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강화
  - 경기·경북지역을 제외한 구제역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12.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합동 점검·지원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매주점검, 1월말까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발생지역 우제류에 대한 **신속한 매몰처리, 이동통제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17:00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 농가에게 철저한 농장소독, 축산농가간 모임금지,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제** 등 방역의 기본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발생지역 농가들에게는 **가축 매몰처분, 가축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보 도 자 료</b>			
배포 일시	2011. 3. 24 (목) / 총 11매(별첨 2건)		
담당 부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장승진(2100-2353) 배지철(2100-4530) 안병윤(2100-3195) 이천일( 500-2041) 정은해(2110-6767)	사무관	이순아(2100-2353) 정남희(2150-4531) 인석근(2100-3206) 김영수( 500-2045) 임성재(2110-6770)
보 도 일 시	2011년 3월 24일(목) 14: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 정부는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는 이번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긴급 관계장관 회

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신 데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협의해 왔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 구제역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축산인, 민-군-관의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과 불편을 감내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또한,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제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 김황식 총리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 정기적 백신접종 실시, 방역체계 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매뉴얼의 철저한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이번 구제역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3월말까지 정비하고, 그 이후에도 환경오염이 없도록 안전 점검 등을 총리실에서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

□ 먼저 이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 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중 안동에서 파주로 전파되고,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된 점,
- ②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판단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된 점,
- ③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소독 등 방역효과는 저하된 점,
- ④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과 반성해야 할 점이 제기되었다.

- ① 우선 발생 초기에 강력한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이고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데, 영국

의 경우 발생 즉시 최고 경보단계인 「Red」가 발령된다.

- 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③ 이번처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 2000년 구제역 발생시 링 백신접종 이후 2002년, 2010년 1월, 4월에는 백신접종 없이 매몰처분만으로 구제역 종식

###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

-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다.
-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진다. 이후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예방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 참고로 2010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내외국인)은 총 22백만명인데,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6백만명으로 75%가 넘는다.
  -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된다. 소독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 단,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는다.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한다.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일본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상시에찰·점검 강화**

□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농장단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구제역의 교훈이다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 소독 및 기록관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방역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 축협 현황('10) : 전국에 142개소

※ 계열화 비중('10) : 한육우(통합브랜드) 42%, 돼지 20%

-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외국인 력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 20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 4,500명

□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 기준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예 :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추진한다.
-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 할 계획이다.

##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처리방안 강구

-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매몰지 문제와 관련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앞으로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매몰방식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 하고,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실명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앙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보장 상태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영향분석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중앙-지방간 방역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전산망을 통한 연계 강화

- 지방 방역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현장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방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 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수의사·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자료를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공유·활용하게 된다.

**“백신접종 청정국” 조기 획득을 목표로 추진**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임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 ※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요건 : ①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② 구제역이 최근 2년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 금년 2월까지 이미 2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금년 중에 약 2,100만두에 대한 추가 접종(2차접종 6개월 후)이 실시된다.(다만,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와 새끼돼지 1,600만마리는 태어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접종)
  -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 한편, 축산농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할 「백신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선진화 기반 마련**

- 방역체계 개선만큼 중요한 과제가 우리 축산업 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이다
  - ※ 등록기준 :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모든 농가
  - ※ 등록축종 : 4종(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가금류·우제류
- 다만,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폐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 **대책 세부사항을 4월까지 만들고, 백서를 제작하여 객관적 평가**

- 앞으로 방역 매뉴얼과 축산업 허가제 세부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현재 농식품부에 조직된 '축산업 선진화 TF'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토론회, 선진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 아울러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여 이번 구제역 사태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백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3. 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즉시		'11.1.14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상훈 과장 / 최성락 주무관 02-2110-6927 / 02-2110-6943		

## 이만의 환경부장관 구제역 관련

## 폐사가축퇴비화시설업체((주)태성기계) 방문, 격려

- ◇ 이만의 환경부장관(사진)은 15일(토)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을 매립하지 않고, 멸균 후 톱밥을 섞어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시설장비업체인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태성기계를 방문, 공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시설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5일(토)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폐사가축을 매립하지 않고 멸균 후 톱밥을 섞어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시설장비업체인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태성기계를 방문, 공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시설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태성기계(대표 김종화, 54세)는 구제역 등 발생 현장에서 폐사가축을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병원균을 멸균처리하고 처리부산물은 톱밥 등과함께 혼합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이동식 폐사가축처리시설을 제작하고 있다.
- ※ 등유사용, 250°C 이상 4기압 고온·고압 스팀방식으로 병원균 완전멸균처리
- 이 장비는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5톤 차량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구제역 등 발생시 현장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장에서 폐사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멸균처리후 퇴비로 재활용하므로써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원(퇴비)으로 재활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관련사진 웹하드 게재(moe 522, pw 9221)

	<b>보 도 자 료</b>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11.1.19.(수), 석간	'11.1.17.	2매
담당 부서	생태복원팀	김종달 팀장 / 이사현 계장			
02-3279-2883					

**국립공원도 구제역 방제에 나서 ...**

- 10개 국립공원 접근도로 61개소, 탐방로입구 42개소에서 방역 중
- 공원 인근 3km이내에서 발병 시 해당지역 탐방로 통제 예정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는 공원 내 야생동물의 구제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10개 공원의 진입도로 61개소와 탐방로 입구 42개소에서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별로 구제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200여 명의 직원을 순찰활동에 투입하여 야생동물 사체발견 등 구제역 징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주민,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사체발견 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공단이 수의사 등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이 홀로 서식하거나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은 공원인근의 축산 농가에 접근이 가능한 멧돼지나 고라니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구제역 발병에 대한 사례와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방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는 감염된 소에서 '큰 코 영양'으로 구제역이

전파되고, 다시 영양의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로 확산된 사례가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야생 가젤의 50%가 구제역으로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

- 공단 신용석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진입도로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3km 이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할 경우 그 지역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자료는 2011.1.19(수) 14시 구제역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자료 중 환경부 소관 사항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내용을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b>보 도 자 료</b>		<b>보도시점</b>	<b>자료배포일</b>	<b>매수</b>
			'11.1.19(수), 16:00부터	'11.1.19	3
	담당 부서	상하수도정책관 실토양지하수과	정은해 과장 / 임성재 사무관 02-2110-6767 / 6770		


**환경부, 구제역 매몰지역 안전한 상수도 공급**

- ◇ 매몰지역에 예비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 ◇ 매몰지 합동 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

- 환경부는 매몰지 인접 주민의 식수오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개 시·도, 17개 시군에 **예비비 857억원**을 이미 지원 ('10.12) 하였으며,
  - 매몰지가 추가로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도 **수요조사(1.20일)**를 거쳐 **상수도 확충 사업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지원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단축, 도로굴착 사전협의 등을 통해 **'11.6월까지 지방상수도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 매몰지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여 지하수 오염우려 해소가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돗물 병입수, 급수차**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한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1월 말까지 낙동강 상류지역의 부실우려 매몰지 90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한강상류 등)에 대하여도 1월 말까지 취약 매몰지 현황을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문제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면 붕괴 및 침출수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옹벽·차수벽, 우회 배수로 설치 등의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상수원 오염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이 구성되어 매몰지 보완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보 도 자 료</b>		<b>보도시점</b>	<b>자료배포일</b>	<b>매수</b>
			'11.4.6(수), 조간	'11.4.4.	2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나정균 과장 / 전형률 사무관 02-2110-6826 / 6835			

**구제역이후 가축분뇨 불법 투기 특별점검 실시**

- ◇ 4월부터 2달간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등에 대해 자자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 특별점검
- ◇ 축사 주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며

□ 중점 점검사항은

-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속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 ②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③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의 수분 조절제 사용 여부,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 ④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저장조 설치·운영 여부(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부합 여부 등)와 살포대상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여부, 살포기준 준수 여부
- 가축분뇨는 수질오염물질 중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오염부하량은 26.2%로 동일발생량 대비 가축분뇨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생활하수의 94배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필수적이다.
-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하고
-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축사입지로 환경 보전과 축산 발전이 상생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분뇨 환경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1.6.1(수) 조간부터		'11.5.30
	담당 부서	환경부	이호중 과장 / 임성재 사무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0		
	국립환경과학원	이영준 팀장 / 김현구 연구관			
	토양지하수연구팀	032-560-7924			

**구제역 매몰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침출수 영향 없음**

- ◇ 1/4분기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7,930개소 중 1,982개소(25%)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침출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 ◇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출수 영향여부를 파악하고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는 작년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1/4분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7,930개소 중 1,982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초과한 것이며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 금번에 지하수 모니터링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지자체에서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단계 조사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등이 고농도 검출, 동반검출 지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미노산 및 mtDNA 방법에 의해 정밀분석(각각 754 및 178개소)을 실시하여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 환경부 3,000개 조사 시료 중 2,500개소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용역의뢰로, 500개소는 지방환경청에서 수행

○ 또한, 지하수관정 1,003개소는 엔테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 8종의 병


원성미생물 여부를 조사하여, 분원성대장균(4.1%), 대장균(1.6%), 노로바이러스(1.3%), 클로스트로디움(0.8%)이 검출되었으나 대장균 O-157, 살모넬라, 쉬겔라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병원성미생물은 가축매몰지와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병원성미생물 조사는 (사)한국미생물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

- 한편, 환경부는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관정 가운데 먹는물 용도에 대하여는 음용중지, 급수차·병입수·대체 관정 개발 등 대체급수 등을 지원하고 매몰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개 시·도, 71개 시군에 지방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지원(국고 3,020억원, '10.12월, '11.3월)


####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b>보도자료</b>	작성	재난대책과
	<b>주시</b>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재난대책과장 안병윤 사무관 유재명
		연락처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정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광역지원체계 가동</b> - 경북 안동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경북 안동에서 돼지와 한우의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역 초기 진압을 위한 긴급 광역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이번 조치는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대응 경험이 없는 경북 내륙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광역단위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경북 및 안동시의 구제역 방역 물자현황을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광역살포기 3대(인천광역시 2대, 경기도 1대)를 경북 안동에 긴급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 또한, 방역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보강과 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 12월 1일 안동시에 특별교부세 10억을 긴급 지원했다.
  - 12월 1일에는 현장상황관리관(행안부 재난대책과 사무관)을 경북 안동에 긴급 파견하여 구제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평도 피폭으로 민심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자치단체별 물자·인력 현황 파악 및 지원협조, 의견 수렴 및 지원방안 강구 등 광역지원체계를 내실하게 가동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서기관 박용수 사무관 이범관
		연락처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정부,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지원</b> -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경북 20억, 예천 5억, 영양 5억)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경북 예천에 이어 영양에서도 한우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경북도에 20억, 예천 및 영양에 각각 5억원을 12월 8일 긴급 지원했다.

※ 12. 1 경북 안동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기 지원


□ 이번 긴급 조치는 구제역의 조기차단을 위해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하여 구제역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경북 의성군 한우 구제역 의심축은 음성으로 판정(12. 7)

□ 맹형규 장관은 “앞으로 2~3일이 구제역 확산의 중대한 고비인 만큼 행안부가 구제역 차단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지원 외에도 경북지역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방역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일부터 구제역 방역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상황관리관을 안동과 예천에 파견(2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p style="text-align: center;">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담당자 연락처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사무관 유재명 사무관 이범관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정부,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지원</b> <b>- 특별교부세 영주시·봉화군·영덕군 각각 5억원 총 15억원 긴급 지원 -</b>			

-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경북 안동에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영양에 이어 12월 8일 경북 영덕, 영주, 봉화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영덕, 영주 및 봉화에 각각 5억원씩 총 15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 안동은 특별교부세 10억원(12.1), 예천·영양은 각각 5억원(12.7)을 지원

- 이번 긴급 조치는 **구제역이 경북도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방역을 통해 추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도록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의 축산 농가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방역 및 소독, 예찰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서기관 박용수 사무관 이범관
		연락처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정부, 수도권 구제역 방역 총력 지원</b> -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경기 양주, 연천, 파주에 각 5억)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수도권인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6일 경기도 양주, 연천 및 파주에 특별교부세 각각 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 이번 긴급 조치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광범위한 확산 차단**은 물론, 경기 서부와 인천 등 인접 시·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하여 구제역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한편, 정부는 12월 16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 **12. 17일부터 경기도 제2청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단체 방역지원, 방역 물자·인력 지원 등 구제역 수도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 다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지원단(7명)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단장), 총리실·농식품부·행안부·국토부·국방부·환경부 과장급 파견관 각 1명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2010년 12월 21일(화) 1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서기관 박용수 사무관 이범관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맹형규 장관, 구제역 방역체계 현장 점검</b> <b>- 경기도·고양시·가평군에 총 20억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b>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북부의 연천·양주·파주에 이어 고양·가평 한우 농가에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태세를 점검할 목적으로 12월 21일(화) 오후 경기도 제2청 정부합동지원단 상황실과 고양시 방역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 맹 장관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수도권 지역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장비·인력·방역약품 확보 등 **경기북부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방역관련 근무자를 격려**했다.
- 또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평군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씩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 ※ 旣지원 75억 : 경북 20억, 안동 10억, 영양·예천·영주·봉화·영덕·의성 30억(각 5억), 양주·연천·파주 15억(각 5억)
- 정부는 수도권 지역 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월 16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하고, 생석회 등 방역물자 협조 지원, 군경 등 초소인

력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부합동지원단(7명)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단장), 농식품부(부단장)·총리실·행안부·국토부·국방부·환경부 과장급 각 1명


- **맹형규 장관**은 정부합동지원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구제역 살처분으로는 최대 규모인 20여만 마리가 매몰 처리되었는데,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 확산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서기관 박용수 사무관 이범관
		연락처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행정안전부, 구제역 방역 지원에 총력</b> <b>- 경기도·강원도 신규발생 4개시군에 특별교부세 총20억 긴급 지원 -</b>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던 강원도 평창과 화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경기도에서도 포천과 김포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 지원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방역지원에 나섰다.
- 또한, 오늘 오후에 개최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을 참석시켜 구제역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협조요청과 함께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 별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구제역의 조기 차단을 위해 특별교부세 95억원을 지원하고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에 파견에 하여 현장지원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이 경기도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총력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서기관 박용수 사무관 이범관
		연락처	02-2100-3195, 2887 010-9348-6243
<b>행정안전부,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b> - 신규발생지역 및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10억 긴급 지원 -			

- 행정안전부는 11.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경기 7개 시·군, 강원 5개 시·군 및 인천 1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 구제역 조기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추가발생지역 및 인접 비발생 시도에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 방역지원에 나섰다.
-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인 **춘천·원주·횡성·강화에 각 5억원** 및 **강원도에 20억원**과 **인접 비발생 5개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10억원**과 **기 발생지역(경기·경북도)에 각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특교세 지원현황》

- 강원도 : 10억원(평창·화천 각 5억)
- 경기도 : 45억원(경기도 10억, 7개 시군 각 5억)
- 경북도 : 60억원(경북도 10억, 안동 10억, 6개 시군 각 5억)

- 이는 구제역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비발생 시·도**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약품**

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또한, 행안부는 그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운영중인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12월 23일 행안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행안부는 구제역 확산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2010년 12월 29일(수) 11: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안병윤 aby0515@korea.kr
		연락처	02-2100-3195 010-4880-7889
<b>구제역 총력 대응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b> -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 정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12월 29일(수)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 『주의』 단계(11.29, 구제역 발생) → 『경계』 단계(12.15, 타 시·도로 확산)
- 이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했으며,
- 경기북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축산 밀집지역(안성, 용인, 충남·북, 전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지역별 대책본부 구성, 인력 동원, 현장 점검 등)에 주력하고,
  -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구제역 방역(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 또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 한편,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여 발생지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29개 시·군중 12개 시·군)의 소(牛)에 대해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대상 시·도 :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여주·이천·양평·포천·양주, 인천 강화, 충북 충주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47만여 마리가 마리가 매몰 처리되어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범정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2010년 12월 29일(수) 1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재난대책과장 안병운 사무관 정호윤  02-2100-3195, 3207 010-2500-8584
<b>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b> <b>16개 시도 구제역 방역 독려 및 충북 현장방문</b> <b>- 시·도지사 영상회의 개최 및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 -</b>			

-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경기북부, 강원·인천지역 뿐 아니라 경기남부,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12월 2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 이에 따라 맹형규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장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직후 16개 시·도지사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방역물품이나 장비, 인력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서 적기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반상회, 지역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제역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지역 내 행사의 자제 또는 연기**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 또한,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실태와 구제역 현장 방역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29일(수) 오후에는 **충북재난안전대책본**

부(충북도청) 및 충주시 방역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 이는 현시점에서 구제역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기남부, 충남·북 및 전북지역 등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충북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 및 방역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 **맹형규 장관**은 충북도 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지원반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서기관 안승대 sdan100@korea.com
		연락처	2100-8215~16 010-3213-7208

### 구제역 발생현황 및 주요 추진 사항

#### □ 구제역 발생현황은

- 12월 29일 추가로 신고된 2건의 의심축 가운데 경기 광주는 음성 판정, 기 발생지역인 강원 홍천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총 누계 신고는 총 90건이 되고(양성 61, 음성 29),
- 전체 발생지역은 5개 시도 29개 시·군으로 전일과 동일함.

**경기**10(연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이천),  
**인천** 2(강화, 서구), **강원** 7(평창, 화천, 춘천, 원주, 횡성, 철원, 홍천),  
**충북** 1(충주), **경북** 9(안동, 예천, 영양, 영주, 의성, 영덕, 봉화, 영천, 청송)

#### □ 매몰 현황은

- 12월 30일(02시 현재) 매몰 대상 농장은 전일에 비해 146개소가 증가했고, 매몰 대상 두수는 26,154두가 증가했으며, 이중 12월 29일 실제 매몰은 17,936두가 추가로 이루어졌음.
- 전체적으로는 매몰대상 2,318개 농장 549,783두 가운데 494,601두가 매몰된 상태임.(90.0%)

□ 방역 진행상황은


- 12월 29일 현재 1일 공무원 등 11,285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장비 182대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동 통제초소 1,50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 12월 29일까지 접종대상인 11개지역의 227,839두 가운데 121,982두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한 상태이며(54%),
- 12월 30일 10시 현재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경북 영주 등 4개 시·군 78,254두가 추가로 접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총 접종대상은 총 15개 지역 306,093두로 늘어남.

※ 접종대상지역: 안동, 예천, 파주, 고양, 연천, 여주, 이천, 양평, 양주, 동두천, 포천, 충주, 강화, 영주, 김포


□ 12월 29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 본부장(행안부 장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10개 부처 31명 근무

- 금일(12.30) 오전 8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장석홍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파견관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및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지방세운영과
	2011년 1월 2일(일)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전동훈 주무관 오정의
		연락처	02-2100-3941 010-2372-8755
<b>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b>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1.3)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 ※ (‘10.12.31. 기준) 5개 시도 31개 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안병윤 aby0515@korea.kr
		연락처	02-2100-3195 010-4880-7889

**서울대 수의과대학, 구제역 방역에 발벗고 나서**  
 - 예방 백신 접종 및 살처분·매몰 지원 -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권오경)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의과대학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의 의견을 모아 구제역 방역활동에 참여할 뜻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밝혔다.
  - 이는 예방백신 접종은 물론, 살처분 등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지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대 수의과 대학의 구제역 방역활동은
  - 수의학과 교수 15명, 대학원생 15명, 학부생 1~3년 40여명 등 총 70여명으로 방역활동 참여자를 구성하여, 1~2월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 경기 화성, 용인, 안성 지역의 예방백신 접종, 살처분 및 매몰작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구제역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시험에서 가산점 부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자발적인 방역활동 참여로 국민들의 방역활동 참여는 물론, 다른 지역의 수의과대학(10개)의 추가적인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방역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권오경 서울대 수의과대학장은 “구제역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제역, 인수공통전염병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재난대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안병윤 사무관 임왕주
		연락처	02-2100-3195, 3208 010-3762-4100
<b>맹형규 장관, 영남지역 구제역 현장대책회의 개최</b> -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부단체장 경주에서 대책회의 -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현재 비발생지역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철저한 차단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월 7일(금) 13:30 영남지역 부단체장 현장대책회의(장소:경주시청)를 개최했다.
  - 금번 회의는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 인천, 강원에도 이어 충청권에도 확산됨에 따라 영남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자체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방역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비발생지역인 경남·부산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이상의 방역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 발생지역에서 오는 축산관련 차량(사료·가축수송·집유차량)에 대한 원칙적인 통제, 시·도간 가축의 이동 금지(농협발급 출하 증명서 소지 차량은 가능)
  - 도축장별로 출하 가능지역 및 출하 전용도로를 지정·운영
  -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밖에서 출하증명서 확인 및 임상관찰 실시,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 소독 후 도축장 진입 허용


-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경우에는 **방역행동요령**(소독 철저, 5일이 지난 후 농장 출입 허용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축산농가 및 **지역민에게 홍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설명절 연휴 차량과 사람의 급격한 이동 증가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도로별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 이동경로, 농장과의 인접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방역초소 설치, 일제 소독, 축산농가 및 지역민 홍보방법** 등을 수립하여 대비하기로 하였다.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너무 크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회의를 마친 후, 경주(월산 초소)와 울산(봉개초소)의 방역초소를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다.
- 한편, 1월 9일(일)에는 충청·호남지역(논산시청, 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실태 점검 및 현장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작 성	재난대책과
	2011년 1월 11일(화) 16: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과 장 안 병 윤  02-2100-3195, 3207 010-2500-8584
<b>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b> <b>경기지역 구제역 현장대책회의 주재</b>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월 11일(화) 16:00 안성시청에서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안성·화성·평택·용인·이천시·여주군·양평군 등 7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구제역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지역에서의 돼지구제역 감염확산비율이 제일 높아 이에 대한 확산 방지대책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기지역은 인구이동이 많고 돼지 사육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184만 마리, 전국의 18%)지역이다.
  - ※ 돼지사육(990만) 현황 : 1. 충남(191만), 2. 경기(184만), 3. 경북(123만) 순
  - ※ 금년 돼지구제역 발생 시·군(16개)현황 : 경기(5), 강원(4), 충남(3), 충북(3), 경북(1)
- 이번 회의를 주재한 맹형규 장관은 구제역이 사람과 차량에 의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발생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급격한 이동 증가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도로별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 이동경로, 농장과의 인접성 등을 미리 미리 조사하여 방역초소 설치, 일제 소독, 축산농가 및 지역민 홍보방법 등 설 명절 연휴 방**

역계 획을 사전에 수립해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 또한, 맹장관은 “최근 돼지구제역 확산현황을 볼 때 경기도의 방역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방역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안성에서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 회의를 마치고, 맹장관은 방역초소(평택IC 초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총괄지원반장 안병윤 aby0515@mopas.go.kr
		연락처	2100-8212~3
<b>경남 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조치</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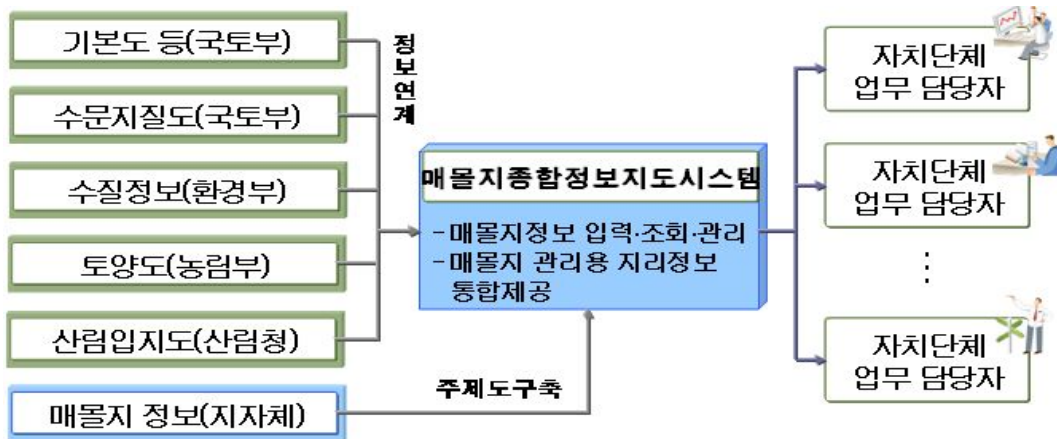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 1.21일부터 충남 공주·아산, 경북 상주·문경의 소에 이어 그동안 미발생 지역이었던 경남 김해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방역조치를 지시
  - ① 우선, 금일 도착한 **예방백신 100만두분중 174천두분을 김해지역에 긴급 배분**하여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늘중으로 완료**토록 하고
  - ② 발생농가 돼지 1,000두와 반경 500m내 돼 9농가 6,500두에 대해서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살처분 및 매몰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 ③ 해당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은 물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
- **중대본부장(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김해시장에게 **철저한 방역과 예방백신 수령 즉시 바로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전남·북 등 다른 미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 아울러, 설 이전까지 **전국의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백신을 조기에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음.

 <b>행정안전부</b>	보 도 자 료	작 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년 2월 23일(수) 조간 (2.22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정보화지원과장 황규철
		연락처	02-2100-3547 010-7232-0577
<b>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GIS 등 첨단 IT기술 총동원</b> <b>- 공간정보 기반의 매몰지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 -</b>			

※ GIS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농림부·환경부·행안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도, 수문지질도, 토양도, 행정주체도, 산림입지도 및 수질정보 등을 통합·연계한 종합정보지도를 만들어 매몰지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시스템에는 매몰지 위치, 가축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정보와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나 조치한 사항 등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된다.

<시스템 개념도>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의 분포·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정도,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그리고, 매몰지 주변의 토질, 토양의 깊이, 암석의 종류·분포 등의 지질정보를 통해, 유사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 또한, 향후 매몰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매몰지였는지를 모니터상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매몰지를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건축·도로 등 각종 인·허가 결정시 관련 토지가 매몰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동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내에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관계관으로 **T/F**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 “이번 구제역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여 **4,000여개 이상의 매몰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을 총동원**,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 **수질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신현관 과장 02-2100-2700 (010-4612-6357) 하태은 사무관 02-2100-2701 (010-3340-9431)
<b>구제역 2차 백신 접종 완료, 추가 백신 확보도 차질없이 진행</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26일 전국 소 및 돼지에 대한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 되었다고 밝히고, 향후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1~2주 후부터는 구제역 발생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맹형규 중앙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구제역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욱 철저히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1차 예방접종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예방약 수급상황, 축종별·지역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 접종은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여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170만 마리에 대해** 실시했다고 하였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구제역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접종과 신규 출생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예방백신 소요물량 중 **1,555만 마리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백신항체가 6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추가접종은 향후 2차접종후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구제역 감염우려가 있는 사슴과 염소 37만 마리분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보관분을 활용하여 예방접종토록해 발생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 백신을 맞은 어미에서 새로 태어난 가축은, 어미에게서 받은 항체의 수치가 떨어지는 출생 후 2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고, 송아지와 모돈 후보 돼지는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되, 비육돈은 6개월 뒤에 출하되므로 2차 접종대상에서 제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권준욱 팀장/ 02-2100-2706 황호평 사무관/ 02-2100-2707
<b>구제역 이것이 궁금하십니까?</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 발표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안부장관)는 구제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을 제작 발간한다고 밝혔다.
- 질의·응답 자료집은 그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자주 질문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중앙대책본부 민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제작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하여 작성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b>행정안전부</b>	보도자료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매몰지 관리지원팀
	<b>즉시</b>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권준욱 팀장/ 02-2100-2706
		연락처	이상원 연구관 02-2100-2707
<b>구제역, 모든 정보는 여기에 있다</b> <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제역 종합포털(www.구제역.kr) 운영 -</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구제역** 관련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를 3월 4일부터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 중앙대책본부는 동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를 방문하면, 구제역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대책,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1차 자료집**’ 등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구제역 종합포털**」은 중앙대책본부에서 제공되며 기존에 각 부처에서 제공하던 구제역 관련정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됨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작 성	상훈담당관실 (담당관 이완섭)
	2011. 3. 30(수) 조간 (3.29 17: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행정사무관 유재권 02-2100-3157 010-5418-3411
<b>구제역 방역작업중 순직군인 훈장 추서</b>			

**\* 3.29(화) 17:00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 안건입니다.**

- 정부는 어제(3.29)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방역지원중 순직한 육군 모 부대 소속 故 권인환 일병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하였다.
  - 故 권 일병은 지난 1월 9일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설치된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근무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 ※ 故권인환(23세) : 순천 청암대 졸업후 '10.8월 입대, 의무병으로 근무
  - 지난해 12월 28일 모래 살포작업중 순직한 前경상북도 영양군 故김 경선씨는 지난 1월 6일 옥조근정훈장을 이미 추서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은 권 일병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며
  - 오늘 故 권 일병에 대하여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추서된 공무원은 모두 2명이라고 밝혔다.
  - 나머지 사망자는 소속기관에서 추서요청 또는 공상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거나 관련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 “국가적 재난상황인 구제역 방역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다 고 귀한 생명을 잃은 순직 공무원과 유가족 들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예우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b>행정안전부</b>	<b>보 도 자 료</b>	작 성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정경택 행정사무관 김영근 행정사무관 권오정
		연락처	02-2100-3967 (010-2650-5383) 02-2100-3971 (010-4803-2451)
<b>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b> <b>- 주민편의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b>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서는 ‘구제역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4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 구제역 검사와 관련하여 “기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안에

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어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왔지만 이번 이양확정으로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  
에 이양

-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있어 시·도별 주택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익 증대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 **관리·집행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특화된 묘목생산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국유림(산림청 소관제외),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현지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등을 지방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



을성을 제고 하였고, 국가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문화재 중요성 인식제고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지역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 이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아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 정부 담화문·발표문

# 담 화 문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 인근 시·군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어서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축산농가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부는 경기도 양주, 연천 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12월 14일 경기 양주·연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 15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였습니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하고 가축 매물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12월 15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하여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축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육하던 가축을 매몰하는 심정이 안타깝겠지만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동통제 등의 방

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 가축매몰시 및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에 상수도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 담 화 문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 29개 시·군 중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군의 소(牛)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발생지역도 확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전국의 모든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및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육류 소비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부 등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구제역 조기 종식

을 위해 범정부적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중앙구제역수습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 정 복



## 「가축질병 방역체제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관련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는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은 축산인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정 부담만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은 이제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후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수도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제역 종식에 나섰습니다.

한 세기 만에 처음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축산인, 민-군(軍)-관의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가축시장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 돼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에서부터 축산농장에 이르기까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상의 미흡한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을 민과 관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역과정에서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지하수와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이 없도록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매몰지는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매몰지 안전점검, 대책 추진 등의 사후관리는 총리실이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축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정부와 축산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 간다면, 선진화된 방역체제를 갖춘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전국의 지역행사가 정상화되어 지역 경제가 한층 활발해 질 것입니다.

4월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논산 딸기축제, 황성 회다지소리축제 등의 다양한 지역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지역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이 우리 모두가 믿고 사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축산농가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정성껏 키운 가축을 매몰해야 했던 축산농업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을 내다 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이번  
에 경험한 구제역 사태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대  
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발생초기 대응체제와 국경검역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축산농가  
의 방역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을 강화하고, 전산  
망 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초동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  
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  
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발생초기에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유  
형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  
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비적 기구  
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  
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을 실시하고, 현장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인접국과의 국제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입국 시에는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국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이 강화됩니다.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EU와 북미의 경우처럼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수의·방역당국간 정보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과

기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방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인접한 농장과 자율방역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할 것입니다. 축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몰지는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매몰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앙·지방의 방역조직을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방역조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의과 대학의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에 대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자체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상시 예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2. 예방접종계획

소·돼지에 대해 전국 백신을 실시한 상황에서 당분간 백신접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방역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기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이미 2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약 2,100만두분에 대한 추가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 O형,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농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백신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연구센터는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의 국내 생산여부는 안전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 되었으나, 방역·안전·위생·품질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AI 등이 빈발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4. 향후 추진계획

첫째, 매뉴얼 정비와 축산업 허가제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총리실에서는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구제역 백서는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역 초기기에 준부대 투입을 의무화할 것과, 검역검사본부를 ‘청’ 단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의 어려움이 선진 축산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축산농업인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축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업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24

**관계부처 합동**



## 부록 3.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 목록

## 1. 중앙일간지 기획기사 및 사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2/1	사설	국민일보	구제역 확산 차단에 만전을
12/2	사설	한국일보	구제역, 허둥대지 말고 정교한 대응을
12/3	기획	경향신문	초동대응 부실 상시발생국 시간 문제
	사설	파이낸셜뉴스	구제역 확산, 농가도 소비자도 비상
		서울경제	구제역 방지에 우리 모두 힘 합쳐야
		부산일보	구제역 발생 사상 최악, 경남 확산 철저히 막길
12/4	사설	세계일보	구제역 타지역으로 확산 반드시 막아야
12/6	사설	한국경제	구제역비상, 확산경로차단이급선무다
		국제신문	구제역 확산 차단, 농가피해 최소화에 전력하라
12/7	사설	중앙일보	구멍 뚫린 방역, 축산농가 예방의식도 문제
		서울신문	‘구제역 합동반’ 뒷북이지만 총력 다하라
		국제신문	口蹄疫
12/8	기획	전신문	구제역 확산...영양서도 발병 등 관련기사
	사설	국민일보	구멍난 구제역 방역망 서둘러 강화해야
		한겨레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구제역 방역체계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지역 ‘통계청 조사’ 방문 논란을 보며
12/9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 기간엔 특히 불조심
		헤럴드 경제	구제역 · AI, 방역체계 허점을 메우라
12/13	사설	한국일보	구제역 확산에다 AI까지 덮친다면
12/14	사설	조선일보	안동 일대 구제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12/16	기획	경향신문	뒷북 방역에 전국으로 확산 우려
	사설	한겨레	구제역 방역망 뚫릴때까지 당국은 뤼했다
		문화일보	사상 최악의 구제역 확산, 방역체계 재정비하라
		문화일보	구제역 효율적 대처 위해 국가축산통합전산망 필요
12/17	사설	중앙일보	구제역 대비 ...더 철저한 방역으로 전국화 막아야
		서울경제	축산농가에 위로와 관심을
		서울신문	안이한구제역대응...어디까지뚫릴건가
		경향신문	살처분을 다시 생각한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확산, 정부만의 일 아니다
12/18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확산은 다방 공무원 탓
		동아일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찮다
12/20	사설	경향신문	살처분, 땅속의 야만
12/21	기획	경향신문	20만마리 살처분 2차 오염 우려
		경향신문	일산서도 발생 확인
		경향신문	살처분 외에는 방법 없나?
		경향신문	감염경로 오리무중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백신 부작용 만만찮다
12/23	사설	서울경제	허술한 방역이 키운 '구제역 재앙'
		중앙일보	구제역 전국화... 백신접종 사후관리가 중요
		경향신문	방역부실 잔인한 구제역 백신접종
		국민일보	구제역 창궐하도록 국회, 정부 뒤흔다
		서울신문	확산일로 구제역 백신접종 한시가 급하다
		한국일보	구제역 확산에 온 국민이 경계심 가져야
		부산일보	구제역 예방백신 결정까지 정부 최선 다했나
		문화일보	구제역 무차별 확산, 백신접종만으론 안심 못한다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예방 관리, 더 철저해야 한다
	기획	경향신문	살처분 27만마리, 구제역 피해 3200억
12/24	사설	조선일보	쇠고기·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을 분위기 만들어줘야
		중앙일보	구제역 초기 대응 실패, 책임 물어라
		한국경제	백신접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제역 사태
		서울경제	구제역 위기 극복, 온 국민이 나설 때
		세계일보	방역시스템 싹 뜯어고쳐라
		국제신문	정부의 엉터리 방역이 자초한 '구제역 대란'
		한겨레신문	구제역 비상사태, 백신 믿지 말고 방역체계 다잡아야
12/25	사설	한국일보	구제역 확산 막으려면
		중앙일보	구제역과 '위당소리'
		파이낸셜뉴스	축산업 복원 대책 있나
12/27	사설	동아일보	크리스마스도 잊은 방역전사들
		파이낸셜뉴스	구제역상시 방역체계 강화해야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기획	조선일보	말 못하는 소·돼지이지만 이렇게 파묻는 것은... 정말 못할 짓
12/28	사설	조선일보	살처분 현장은 전쟁터, 눈물로 기도합니다
		조선일보	구제역과 토끼의 해
		경향신문	구제역 백신 사후대책마저 부실해선 안된다
		서울신문	보상 따져 구제역 백신을 거부해선 안돼
		한국경제	축산위험관리강화대책,실효성기대할수있나
12/29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에‘방역예측시스템’ 도입하자
		한국경제	말만 앞선 ‘구제역방역시스템’
		한겨레	구제역 방지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려 하는가
12/30	사설	조선일보	떼 죽음 소의 눈망울
		세계일보	민, 관, 정 협력으로 시급히 잡아야 할 구제역
12/31	사설	해럴드 경제	견잡을 수 없는 구제역, 허가제 불가피
12/31	사설	국제신문	구제역 방역망 구축, 지자체 최우선 과제돼야
1/3	사설	한국경제	<취재여록> 구제역 사태 책임 ‘성역’ 없어야
		중앙일보	한우의 비명
		서울신문	구제역에 AI까지...전국민 바짝 긴장해야
1/3	특집	중앙일보	구제역·AI, 가열조리하면 걱정 없지요
1/4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확산 방지에 전 국민의 동참을
		파이낸셜뉴스	우려되는 구제역 트라우마
		한국경제	구제역놓고도다투는여야
		국민일보	아무리 가축이라도 생매장이라니
		부산일보	구제역 남하 대비 부·울·경 철통 방어망 펴길
1/5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추정 돼지 100마리 지난달 충북서 이미 유통
		경향신문	한우 유전자원을 지켜라
1/5	사설	파이낸셜뉴스	구제역 2차 오염은 환경 재앙 신호
		조선일보	구제역 현장에서 차이고 다치는 수의사들
		경향신문	구제역, 방역체계부터 바꿔야
		동아일보	축산농, 검역-방역을 생명처럼
		한겨레신문	초보 농사꾼이 바라본 구제역 대책
1/5	사설	한겨레신문	구제역 ‘팬데믹’에서 배운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6	사설	서울신문	지금이‘구제역국회’여야홍정할때인가
		동아일보	구제역 확산, 정부 정치권 농가의 공동책임
		한겨레신문	구제역 통제불능,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경향신문	동물 생매장은 야만이다
		헤럴드 경제	구제역 재앙, 축산가 개별 대처가 낫다
1/7	사설	조선일보	방역 시설에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한국경제	국가재난 구제역사태 근본대책은뭔가
		서울경제	‘구제역 재앙’ 막을 특단대책 시급
		경향신문	구제역은 결코 천재(天災)일 수 없다
		문화일보	살처분 100만마리·피해 1조원 넘어선 구제역 재앙
1/8	사설	중앙일보	구제역, 올 것이 온 것이다
		국민일보	지역축제당분간자제해야
		세계일보	구제역·AI, 축산업 붕괴 막아야 한다
	기획	조선일보	구제역 파동 다음엔 우유 파동
1/10	사설	국민일보	구제역·AI가축재앙 끝이 안 보인다
		세계일보	사육환경 바꾸지 않으면 축산재앙 되풀이
		한국일보	동물 폐죽음
		한겨레신문	공장축산을 매장하라!
		한겨레신문	인간의 탐욕과 방심이 부른 ‘구제역 대재앙’
1/11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가축, 인도적 살처분 필요
	사설	국민일보	가축 대학살,인간의 교만
		한겨레신문	학살당한 소·돼지를 향한 애도
		동아일보	축산업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1/12	기획	한국일보	“축산인이 앞장서서 구제역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 시련을 청정축산 거듭나는 기회로
		한겨레신문	구제역과 인간사회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후유증... 지역경제 흔들린다
1/13	사설	중앙일보	동물들과 함께 사는 법
		중앙일보	축산연구소 구제역 대처가 이 모양이니
		세계일보	동물 폐죽음
		부산일보	구제역에 AI까지 “축산 재앙” 속수무책인가
1/14	기획	경향신문	살처분 150만마리 넘어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기획	세계일보	태백, 관광·건강도시로 변모 구제역으로 축제 축소돼 아쉬워
		동아일보	사랑도 조합장 선거도 뽕뽕 열린 구제역의 위력
	사설	한국경제	우리가더키우는구제역공포
		국민일보	“소는 누가 키우나”
		경향신문	비교육적인 가축 생매장
		서울신문	대통령-여야대표‘구제역회담’열어라
1/15	사설	한국일보	구제역 살처분
1/17	사설	파이낸셜뉴스	<2차관 기고> 국가적 역량 모아 구제역 끝내자
		경향신문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대안 찾아야 한다
	서울경제	구제역 패닉 탈출하려면	
	특집	중앙일보	인간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필요하다
1/18	사설	서울신문	구제역 살처분에 몸살 앓는 축산농가
		경향신문	축산업, 대규모·집중화 정책 바뀌야
		국제신문	구제역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
		한국일보	구제역 풍경
1/19	사설	서울신문	구제역 참화 농식품부 책임부터 따져봐야
		경향신문	구제역, 애착과 상실의 비극
		한겨레신문	끔찍한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한국일보	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문화일보	구제역 방역작업 비협조자에 강력한 처벌 필요
1/20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확산 분수령 파주 였다
		서울경제	숫자가 의심스럽다... 曲曲哭
	사설	국민일보	구제역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일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1/21	사설	중앙일보	리더십 바이러스, 백신은 있는가
		국민일보	구제역 후폭풍
		한겨레신문	동물도 기본권이 있다!
		한겨레신문	가축대학살은 인수공통전염병 부른다
		한국일보	위기는 면역되지 않는다
1/22	사설	국민일보	구제역방역에 적극 협조를
		한겨레신문	실 구제역 방역,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24	사설	서울경제	멈춰선 새해 영농시계
		서울경제	<1차관 기고> 구제역, 축산 선진화 계기로
		서울신문	역병(疫病)과공공선(公共善)
		한겨레신문	순환농업이 근본대책이다
		국민일보	방역은 제2의 국방
		부산일보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마저 뚫렸다면
1/25	기획	부산일보	“이동통제 전 이미 농장 인근 오염”
		부산일보	구제역 확산 현황
	사설	국제신문	구제역 창궐하는데 백신조차 제때 못 구해서야
	기획	경향신문	사료차량은 차단 안해 초기 방역망 무너져
1/26	사설	머니투데이	시민들 “구제역·물가 좀 잡아달라”
		조선일보	“가장 좋은 구제역 예방은 방문하지 않는 것”
		부산일보	살처분 선 안락사 원칙
		부산일보	구제역 방역 값 비싼 수업료
		문화일보	구제역 官災, 문책 불가피하다
		부산일보	구제역 재앙 역시 “人災”, 방역체계 대수술하라
1/27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에 유린당한 한국 축산
		조선일보	구제역 대재앙이 보여준 危險千萬 대한민국
		국민일보	예방적 가축 살처분 명령은 위법
		한겨레신문	구제역 확산 자초한 농식품부 장관 물러나야
		국제신문	장관의 ‘보여주기식’ 방문
		세계일보	초동 실패 되풀이 말아야 할 설 연휴 구제역 대처
		경향신문	구제역 관재(官災) 책임을 물을 때다
		머니투데이	귀향길도 가로막은 구제역
		머니투데이	소는 누가 키울거야?
		파이낸셜	구제역 비상인데 축산인은 해외여행
		국제신문	축산물 대란 막으려면 구제역부터 빨리 잡아야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확산 차단, 전 국민이 나서자
1/28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살처분 범위 줄인다
	사설	아주경제	국민 여러분 구제역은요
1/29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농민 가슴에 쇠파닥 박나
		경향신문	유엔, 한국발 구제역 경계령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재앙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한국일보	장관 사퇴 관계없이 구제역을 빨리 잡아라	
		서울신문	지금 이 축산농 도덕적 해이를 탓할 때인가	
		한겨레신문	정부 각료들, 구제역 수습 의지 있나	
	사설	국민일보	유 장관, 구제역 퇴치에 전념할 때	
		1/31	머니투데이	구제역 젓소 우유는? 축산농에 150억 보상 인체에 진짜 해 없냐
		머니투데이	구제역 두달 살처분만 300만마리	
		문화일보	“백신 맞아도 안전 안심하고 드세요!”	
	사설	문화일보	“텅빈 축사 소독 또 소독… 명품 안동한우 脈 다시 이을 것	
		서울신문	설연휴 구제역 차단 온 국민 협조 절실하다	
		머니투데이	도대체 언제쯤 잡힐까	
		특집	중앙일보	구제역 백신 맞은 소·돼지고기, 걱정말고 드세요
2/1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 막느라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리며	
		한국경제	설연휴 구제역더번지지않게총력기울여라	
		한국일보	구제역 나르는 설 연휴 되지 않게	
		아주경제	설 이후에는 모든 일이 안정되길	
2/2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 가축 물은 3000곳 지하수 오염 심각	
		한겨레신문	정부의 화려한 구제역 쇼	
		파이낸셜뉴스	발길 무겁지만 그래도 설이다	
2/7	사설	중앙일보	구제역, 덴마크에서 배워라	
		동아일보	구제역 생매장과 국격	
		서울경제	구제역 책임공방은 추후에	
		아시아투데이	구제역과 남의 탓	
		부산일보	안전지대 없어진 구제역 재앙, 이젠 어쩔 건가	
2/8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부산도 뚫렸다	
	기획	동아일보	올해 ‘백신맞은 소’가 달구지 끈다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 후유장애 무상치료를	
		동아일보	구제역-물가 같은 各論이 국정의 관건이다	
		조선일보	구제역 2차 환경재앙 터지기 전에 방지책 세우라	
		한겨레신문	구제역 매몰지, 대규모 환경재앙 걱정된다	
		경향신문	구제역 소독 거부하는 고급 승용차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세계일보	구제역·AI 방역매뉴얼 보완책 시급하다
		아시아투데이	구제역·AI 2차 재앙, 어떻게든 막아야
	특집	경향신문	동물 살리는 수의사가 구제역 그 죽음의 곯판에 끌려다니려니 죽겠시유
2/9	사설	국제신문	구제역 매몰지 2차오염 방지에 각별한 신경을
		국민일보	구제역 이후 새 위기에 대비할 때
		조선일보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꼭 고쳐야
		서울경제	구제역 대비 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국제신문	구제역 재앙, 그 인간적 성찰
		헤럴드경제	구제역 후폭풍, 매몰지 관리 등 대비를
2/10	사설	경향신문	생매장 구제역 가축들의 역습
		서울신문	‘구제역후폭풍’떡거리파동대비하라
		국제신문	구제역 살처분과 ‘호모 사케르’
		머니투데이	구제역 불똥 튄 서민식당
		중앙일보	구제역 현장에 전문가 모으자
2/11	사설	파이낸셜뉴스	방역 · 행정 두루 정통해야 구제역 퇴치
		중앙일보	허균이 본 구제역 원인
		문화일보	구제역 매몰 오염 방지 위한 4대 제언
		부산일보	“외양간”은 제대로 고치자
	특집	중앙일보	“소 문으러 갑니다” 어느 지역 공무원의 한 마디
2/12	사설	조선일보	구제역, 最惡 상황까지 염두에 두라
		동아일보	구제역 ‘매몰 후유증 대책’마저 실패하지 말라
2/14	사설	조선일보	축산농도 가축 死體 문을 곳 미리 확보해야
		한국경제	구제역 2차 환경재앙 어떻게든 막아야
		한겨레신문	가축전염병 막으려면 축산방식 바꿔야
		한겨레신문	백신집중은 끝 아닌 시작...새 매뉴얼·방역책 시급
		한겨레신문	대량 살처분 실효성 상실...이젠 친환경 축산을
		파이낸셜뉴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주력
		부산일보	구제역 그리고 후폭풍
2/15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 대란’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습해야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경향신문	농촌에도 봄이 오긴 올까요?
		한겨레신문	구제역 참상: 우리 시대 내면의 본질
		한겨레신문	구제역 2차, 3차 재앙에도 속수무책인가
2/16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최대 수혜자는 미국산 소·돼지고기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환경오염 도 부실대응 우려된다
		국민일보	매물로 인한 상수원 오염 꼭 막아야
		한국일보	구제역 환경오염 제대로 예방하라
		아주경제	구제역 대책 매물이 최선이었을까
		한국경제	구제역 대응방식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중앙일보	구제역 진압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조선일보	가축 사체 썩은 물이 강에 흘러드는 건 막아야
		세계일보	총력 대처해야 할 구제역 2차 환경재앙
		부산일보	가축 마구잡이 매물 탓에 “강 오염” 재앙 오나
		문화일보	구제역 가축 살처분 앞서 농민의 고통 생각해야
2/17	사설	서울경제	총체적 전환 시급한 구제역 대책
		국제신문	구제역, 또다른 ‘시한폭탄’
		한겨레신문	구제역 매몰지 문제, 근본 대책 시급하다
		한겨레신문	소의 눈물, 농부의 눈물
2/18	사설	동아일보	“장관 오신다 해서 흙 물을까봐 비닐 깔고 있다”
		머니투데이	정운천 ‘침출수 퇴비’ 논란
2/19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오염 불안 별일 아니다 로 해소될 일인가
		한국일보	소·돼지 묻은 주인 마음 껴어보지 않아도 느껴져
2/21	기획	조선일보	화천 효자 산천어, 소·돼지 때문에 운다
	사설	아시아투데이	행안부, 경기도 침출수 대책 따라하나?
		한겨레신문	침출수 폐수 처리도 날림으로 하려 하나
		한겨레신문	침출수
		중앙일보	박근혜, 소·돼지에게 가야 한다
문화일보	구제역 침출수의 4가지 대책		
2/22	특집	경향신문	구제역으로 축산농 무너지면 농촌경제 마지노선 함락되는 셈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보다 불안한 ‘장관의 말’
		중앙일보	국가위기에 할 말이 따로 있지 ...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서울경제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한국경제	마이클샌델과 구제역과
		경향신문	축산농 올리는 구제역 살처분 130% 보상 보도
		국민일보	‘살처분’
2/23	사설	한겨레신문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몰상식
		중앙일보	<시론> 소는 소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서울신문	당신도 영웅입니다
		조선일보	1930년대 구제역 매뉴얼만 지켰어도
2/24	사설	국제신문	현실화되는 구제역 2차 피해 적극 대처 나서라
		국민일보	구제역 관련 불필요한 오해 불식시켜야
		경향신문	살처분되는 자연
		세계일보	구제역 대응 GIS 활용했더라면...
		경향신문	축산청 을 만들자
2/25	사설	경향신문	생매장, 악어의 눈물
		한국일보	매몰시대를 살면서
		한겨레신문	축구하는 돼지, 산 채로 묻히는 돼지
2/26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과 기후변화
		서울신문	폭우온다는데 구제역 매몰지 안전한가
	기획	조선일보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핏물생수’ 퍼올릴라
2/28	사설	한겨레신문	영국은 구제역에서 배웠다
		서울경제	살처분 동영상 유감
		경향신문	3월3일은 삼겹살데이, 우리 축산물 애용을
3/1	사설	한국일보	침출수 대책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3/2	사설	국제신문	짚کم예산 내놓고 구제역 식수대책 손놓은 정부
		조선일보	거창한 正義보다 구제역 정의 부터
		조선일보	구제역 와중에 삼겹살데이를 맞으며
		중앙일보	동물 복지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매몰지 앞으로가 문제다
3/3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백서 있으나 마나
	기획	내일신문	시민이 나서는 구제역 관리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3/4	사설	한국일보	구제역 침출수와 수질 오염
3/5	사설	파이낸셜뉴스	구제역 매몰지 정보 덮지 말라
		동아일보	매몰지 공개 과학적 기준 세워야 괴담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축산업 쿼터제 도입 신중히 결정해야
3/7	기획	경향신문	똑같은 실수 되풀이 대재앙 자초했다
	사설	파이낸셜뉴스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이렇게
		문화일보	봄철 구제역 매몰지 보완대책
		부산일보	구제역 매몰지에도 봄은 오는가
3/8	기획	한겨레신문	[특별대담]구제역이후,지속가능한한국농업을생각한다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 위기를 축산업 혁신 계기로
		한국경제	구제역 열차사고 디도스의뿌리
3/9	사설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피해 낙농가에 관심과 격려를
3/10	사설	한겨레신문	구제역 매몰지 다시 파야 한다
		한겨레신문	구제역 ‘대량 살처분’ 대안 찾아야
		아주경제	구제역 침출수를 퇴비로
		아시아투데이	구제역 대책...축산농민 지원은 없나
3/11	기획	세계일보	“구제역은 없다 청정사육 환경 철저히 관리”
		경향신문	살처분, 개 고양이도 무관할까
	사설	동아일보	‘친환경 축산’ 더 늘려야 구제역 막을 수 있다
		한국일보	구제역 살처분 총 점검하자
3/15	사설	동아일보	도시발달이 초래한 도살처분 잔혹사
		동아일보	가축 침출수로 인한 전염병 가능성 없어
3/16	기사	아시아투데이	경기, 구제역 피해자 ‘무한돌봄’
3/17	사설	머니투데이	구제역과 한우농가의 미래
3/18	사설	부산일보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3/22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발생 112일... 살처분 매몰 첫 0
3/24	기획	동아일보	항생제 사료·주사료 버려 햇빛 보는 날? 도축장 가는 날
3/25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가축 소각 등 살처분 방식 다양화
		동아일보	햇별이 최고 보약 지붕 여니 질병 똑 -성장 쑥 복돼지로
	사설	동아일보	가축 347만 마리 죽이고 봄 되니 끝난 구제역
		서울신문	‘구제역종료’ 선언이후가 더 중요하다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국민일보	구제역 방역 이행강제할 대책 세워라
		서울경제	‘방역선진화’ 농가부담 최소화가 과제
		한겨레신문	축산업 대책,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이어져야
		경향신문	이런 대책으로 구제역 재앙 막을 수 있나
		세계일보	축산업 대책, 실천이 관건이다
		한국일보	구제역, 이번 같은 방역실패 다시 없게
		파이낸셜뉴스	축산업 선진화로 구제역과 결별하길
		헤럴드경제	구제역 종결,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화일보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 너무 피상적이다
		헤럴드경제	구제역 옆친데 日방사능 덮치니... 우리밥상 글로벌 먹거리가 점령
3/26	사설	동아일보	구제역 사태, 건강축산의 계기로
3/29	사설	서울신문	구제역과 ‘동물복지’
		세계일보	현실화된 가축매몰지 지하수 오염
4/4	기획	한국일보	농가 가축 재입식 아직은 ‘주저주저’
		한국일보	구제역 농가 되찾는 봄, <상> 아물지 않은 상처
		한국일보	매몰지, 구제역 사태 2라운드
		한국일보	가축 사육 총량제
4/5	기획	한국일보	질병 근원 ‘밀식사육’ 못 고쳐 매몰 보상금 차등은 반발 커
4/6	기획	경향신문	7~14일 지나면 맛있 소 1~2일 뒤 맛있게 돼지
4/7	사설	국제신문	이 강산 죄 없는 축생들의 명복을 빌며
4/13	사설	세계,한겨레,파이	구제역 대응 실패의 교훈 잊지 말자 관련기사
4/15	사설	파이낸셜뉴스	가축 방역체계 개선 서둘러야
4/18	기획	경향신문	백신 예방망’도 허사, 당국,축산농가 ‘허탈’
4/19	기획	경향신문	구제역 경보 재상향 계획없다
	사설	서울신문	종료선언 23일만에 또 터진 구제역 불안하다
4/20	특집	한겨레신문	탁상행정...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
4/21	기획	경향신문	경북 영천시 구제역 또 발생
	사설	아시아경제	구제역, 환경재앙 아니다
4/23	사설	파이낸셜뉴스	구제역 대책 지나쳐도 나쁘게 없다
4/26	사설	경향신문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 2. 전문지 기획기사 및 사설

일자	구분	언론사	제 목
12.1	사설	축산신문	한시라도 눈 돌릴 수 없는 '질병과의 전쟁'
		농수축산신문	다시 터진 구제역, 더 이상 확산 막아야
12.2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 감염경로 추적·방역 총력을
12.3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또 발생 ... 방역에 만전 기해야
12.6	사설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초동방역, 중간점검해 보완해야
12.8	사설	축산신문	구제역 조기종식 경험살려 다시 한번 방역 총력 다하자
		축산신문	구제역 왜 한우농장에 많이 발생되나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비상방역체계, 전국적으로 가동해야
12.9	사설	농어민신문	축산물 소비위축 2차 피해막자
		농어민신문	구제역, 얼마나 연습 해야하나?
12.10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때문에 축산물 소비 망설일 필요 없다
12.13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교육하라
12.15	사설	축산신문	정확한 구제역 진단위해 지자체 항원검사검토를
12.20	사설	농어민신문	농가 방역 의식 강화가 먼저다
		농어민신문	구제역, 살처분이 옳은 대책인가
		축산신문	가축 질병 자극적 보도 혐오감 조장... 축산 농가 피해 우려 자제를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사태, 왜 이지경까지 왔나
12.22	사설	축산신문	구제역 조기 종식 고대...소독제 바로 알고 쓰자
		농민신문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강화
12.23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 확산, 총체적 대응 급하다
12.27	기획	농어민신문	구제역 확산 비상 피해규모 눈덩이... 소 13만여 마리 '백신접종' 불가피
	사설	축산신문	아듀 2010년, 구제역 '전사'를 생각한다
1.3	사설	축산신문	구제역 청정국 희망 포기해서는 안된다
		축산신문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기 마련... 구제역 종식 의지 굳건히 하자
1.5	사설	축산신문	축산업계 악성질병에 '시름'...다시 한번 지혜 모아 극복을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방역, 국민의 힘 모아야
1.6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 확산, 여기서 끝내자
		농어민신문	여야, 구제역 대책 정치적 계산 말라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1.7	사설	농수축산신문	축산업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구제역
1.10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과의 전쟁 안동·파주는 지금
		축산신문	번지는 구제역 ‘국가적재난’…온국민 힘모아 종식이루자
		농민신문	가축방역 인프라 확실히 구축하자
1.12	사설	축산신문	축산이 무너지면 경제도 파탄…힘 모아 구제역 종식 이루자
		농민신문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막아야 한다
		농민신문	백신접종 파견업무를 마치고
1.17	기획	농어민신문	구제역 방역현장 모진 추위도 잊고 뜬 눈으로 … 쉴새 없는 방역에 분주
		농어민신문	방역 관계자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사설	농어민신문	동물 폐죽음과 인간의 오만
		농수축산신문	축산물 안전성 홍보로 소비자 불안감 잠재워야
		농민신문	악성가축전염병, 근원적 의문을 제기 한다
1.19	사설	축산신문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1.20	기획	농어민신문	구제역 확산 후폭풍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피해 … 관련 업계 ‘죽을맛’
1.21	사설	농민신문	이제라도 외양간 단단히 고치자
1.24	기획	농어민신문	“방역체계 중앙집권화…신속한 초기 방역 활동 최우선”
		축산신문	470만두 살처분…5년간 41조원 손실 _ 해외 구제역 방역조치 사례 (2) 백신 선택 대만
	사설	농어민신문	소 잃은 외양간부터 고치자
		축산신문	구제역 백신 맹신은 금물 …철저한 차단방역 힘써야
1.26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청정국 유지정책’ 유연성 필요
		축산신문	구제역악몽하루빨리벗어나농가재기모든역량집중해야
1.27	사설	축산신문	올해 자조금 구제역 이후 후속 조치 초점
		농어민신문	첨단 번식기술로 구제역 위기 극복
1.28	사설	축산신문	도축장 폐쇄에 생계 막막…축산 농가 못지 않게 관심을
		농민신문	구제역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이렇게 극복하자
1.31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피해 농가 노리는 보이스포싱 엄단하라
2.1	사설	축산신문	축산인 역경 딛고 재개위해 오해의 시선 거두고 응원을
		축산신문	구제역 방역으로 순직한 분들의 넋을 기리며
2.3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 책임 농가에 전가 말라
		농어민신문	구제역 고통받는 농촌…소도 농민도 죽을지경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2.7	사설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예방 접종후에도 방역 철저히 해야
		농어민신문	구제역·AI 보상금 신속히 지급을
2.9	사설	축산신문	구제역 혼란 속 목장 지키는 마음 아는지
		축산신문	그래도 차단방역 밖에 길이 없다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종식이후 축산업 대책도 서둘러야
		농민신문	구제역 재앙, 발전의 기회로 삼자
2.11	사설	농민신문	축산재난이 환경재앙 초래하지 않게 해야
2.14	기획	축산신문	꼼꼼한 소독으로 농장내 병원균 철저히 제거 _살처분 농장 관리 이렇게
		농어민신문	구제역·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제언
	사설	축산신문	막막함 털고 차근차근 준비 생산성 업그레이드 기회로 (주)도드람B&F가 제안하는 농장재건을 위한 입식준비 사항
		축산신문	구제역 이전 사육규모 회복...산업 재건 최우선 목표돼야
		축산신문	구제역 냉철한 대처...농·축산업 공생발전 이뤄야
		농수축산신문	국립축산과학원 구제역 발생원인 꼭 밝혀내야
2.16	사설	축산신문	무조건적 매몰 능사 아니다...개선책 강구를
		축산신문	2차 백신으로 끝내지 말고 정기적 추가접종 검토해야
		농민신문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기해야
2.17	사설	농어민신문	축산업 안정적 기반 확보 대책 마련을
2.18	사설	농수축산신문	양돈산업을 구제역 이전으로 재기하는 길
		농민신문	구제역 바이러스, 정부의 명쾌한 해명 있어야
2.21	사설	농어민신문	침출수 퇴비 발언' 경솔했다
		농어민신문	구제역 사태 왜곡 반성하라
		축산신문	구제역 이후 산업 재건, 범축산업계 하나 돼야
		농민신문	'구제역 백신 청정국' 추진에 부쳐
2.25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과 축산업허가제
2.28	기획	농어민신문	축종별 희생방안 모색 릴레이 좌담회 ① 한우
		농어민신문	축종별 희생방안 모색 릴레이 좌담회 ②돼지 "원활한 중돈 공급방안 마련 서둘러야"
		축산신문	든든한 방역 도우미...청정화 시대 활짝 연다
3.3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4)자연순환농업 정착
		축산신문	지속 가능 축산 우리가 이끈다 ...주목 받는 동약·기자재특선 크린피스 - 액체소독제 '썬라텍'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사설	농어민신문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 ‘유감’
		농수축산신문	구제역매몰지역침출수,뽐아내정화처리해야
3.7	기획	농어민신문	축종별 희생 방안 모색 릴레이 좌담회 ③낙농 “유대 현실화...생산기반 확대 급선무”
		축산신문	지속 가능 축산 우리가 이끈다..주목받는 동약 기자재특선 모비웹스 - 친환경 대인소독기 ‘안티플루 게이트’
	사설	축산신문	구제역 틈탄 한탕주의 안돼..장기적 안목서 현명한 대처를
3.9	사설	축산신문	FMD 한파에도 ‘봄날은 온다’
		농민신문	주부들 구제역 인체감염 오해많아
		농민신문	백신접종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3.11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 삼자
		농민신문	농업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국가 위기
3.14	사설	축산신문	FMD 백신 접종비용 자조금서 지원을
3.15	기획	농수축산신문	포스트 구제역 다시 일어서자 ‘한국축산’ 1.미래 축산 가축입식부터 시작된다.
3.16	기획	축산신문	방역강화차원이겠지만신고기피등부작용심화 _지상공청/ FMD·AI 살처분 보상금 하향조정...축산인·전문가 의견은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1)구제역시련축산‘재도약’기회로
	사설	축산신문	FMD로 자조금 사업 위축 ...수매 돼지도 자발적 납부를
		농민신문	가축전염병은 외부에서 유입돼... 국가 차원의 검역·방역 안 절실
3.17	사설	농어민신문	근거 없는 불안 확산, 이제 그만
3.18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2)축산농가도변해야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이 한국축산에 남긴 교훈
3.21	기획	농어민신문	한국 축산업, 위기가 기회다 ①프롤로그/원칙부터 제대로 세우자
	사설	농수축산신문	구제역 피해농가가 재입식전 해야 할 일
3.22	기획	농수축산신문	포스트 구제역 다시 일어서자 ‘한국축산’ 2. 新생산 포인트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3.23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3)방역체계 개선 이뤄내자
		축산신문	백신 유용성 향상 초점 맞춤형 백신 개발 시급
	사설	농민신문	동물 복지형 축산, 마냥 미룰 일 아니다
3.28	기획	농어민신문	한국 축산업 , 위기가 기회다 ② 흔들리는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길을 찾자

일자	구분	언론사	제목
		농수축산신문	포스트 구제역 다시 일어서자 '한국축산' 3.새로운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사설	농어민신문	위기의 축산업 구하는 길
		축산신문	낙농업 특수성 감안 보상체계 재검토돼야
		농수축산신문	실천방안에 달린 '가축질병...축산업 선진화방안'
3.30	사설	축산신문	도축 장폐쇄로 생계위협...보상책 반드시 검토돼야
4.4	기획	농어민신문	한국 축산업, 위기가 기회다 ③양돈, 질병 청정화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해답이다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후폭풍은 한우 소비로
4.6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5)사육환경 바꾸자
	사설	농민신문	동물복지 축산, 실천 가능한 것부터
4.8	사설	농민신문	구제역 직격탄 맞은 고추농가
4.13	기획	농수축산신문	<기획연재>포스트구제역사료업계양돈에'올인'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6)축산물 생산·유통체계 정비
	사설	농수축산신문	축산업 재건에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
4.25	사설	축산신문	농가 생존위한 재기 몸부림...현실적 보상 뒷받침 절실
4.27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7)외국의 구제역 대처사례-영국
5.9	사설	축산신문	살처분 농가에 책임 전가 ...정부 보상 대책 개선 돼야
5.18	기획	농민신문	한국 축산 새 판을 짜자 (9)축종별 대책-낙농





## 부록 4. 구제역 관련 법령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30호]

####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

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 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다.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전문개정 2010.4.1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1.7.25>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의 종류, 발생 국가·일시·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본조신설 2010.4.12]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1.1.24]

[시행일 : 2011.7.25] 제5조

[시행일 : 2012.1.26] 제5조제9항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4>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부화장(孵化場)·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록,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1.7.25>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25>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

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25>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 2012.1.26] 제17조의2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역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



- 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

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④ 제2항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중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10.4.12]

[제목개정 2011.1.24]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개정 2010.4.12]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의견에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지정검역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

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5>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

- 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4.12]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

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주에게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5조(선박·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제4장 보칙 <개정 2010.4.12>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 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

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4>

[전문개정 2010.4.12]

**제51조(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제20조, 제21조, 제 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4]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제5장 벌칙 <개정 2010.4.12>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4.12]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4>

1.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

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0.4.12]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4.12]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

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이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6장 삭제 <2007.8.3>

**제61조** 삭제 <2007.8.3>

**제62조** 삭제 <2007.8.3>

**제63조** 삭제 <2007.8.3>

**제64조** 삭제 <2007.8.3>

### 부칙 <제10930호, 2011. 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 2.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9호, 2010.8.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방주사·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제역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서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위험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경계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경계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확산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방역지역"이라 함은 위험지역·경계지역·관리지역을 말한다.
7.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8.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돼지·면양·산양·사슴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돼지·면양·산양·사슴 등 우제류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 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구제역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 제2장 예방활동

**제4조(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제역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구제역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또는 가상훈련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검역원장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제역에 관하여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중인 우·제류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년도의 구제역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검역원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검사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

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및 소·돼지·산양·면양 또는 사슴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약의 비축 등)** 검역원장은 구제역 발생시 긴급예방접종을 대비하여 일정량의 예방약 또는 예방약 제조용 항원을 비축하여야 하며, 예방약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9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사환축을 발견한 자 또는 의사환축을 진단한 수의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방역관도 동시에 파견)하여 임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진단 결과 이상증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감수성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내외·운동장·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역원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내 상주
8.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사환축의 구제역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감수성 가축의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지사의 조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원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원장에게 검역원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설치
4.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우제류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6.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7.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8.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감수성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제출

**제11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등의 조달계획 수립
5.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 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지체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가축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3.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 ②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의 채취 업무를 검역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의사환축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간이진단키트(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이하 같

다)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원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원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정도·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협의회에 부의
2. 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경찰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양성)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의거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

**제14조(검역원장의 조치)** 검역원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 파견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 발생농장 우제류 가축의 임상관찰, 간이진단키트 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조치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그 밖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5조(입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검역원 관계관이 직접 행하며,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원 차폐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의사환축이 발생하였거나 일시에 많은 지역에서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사유로 검역원 관계관에 의한 현지 시료채취가 어렵거나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발생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료 채취업무를 위임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발생사실의 발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원장으로부터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구제역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역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 요령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되, 발생사실의 발표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환축으로 판정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및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정부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원장은 제3항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구제역 예방요

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발생 시·군에 초동대응팀(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도의 관계관 등으로 구성)을 파견하여 상황실 운영, 매몰처분, 이동통제 및 소독실시 등의 사항에 대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구제역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동물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까지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③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 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위험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경계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경계 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 재설정.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등이 발생일 7일전부터 접촉한 우제류 가축
4. 환축의 사체를 사료로 급여한 우제류 가축
5. 그 밖에 역학적으로 구제역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② 검역원장은 제1항 각호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발생농장 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까지 살처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원장으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의 범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필요한 장비·인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방역상의 이유로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장소에서의 살처분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생지 또는 발생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여 살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발생농장에서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소각하되,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아있는 상태 또는 사체 상태로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 즉시 차량내부를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다른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동원장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장비내역을 작성하여 소독·예찰 등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역학조사)** ①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검역원장과 발생농장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우제류 가축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14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우제류 가축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2% 가성소다, 4% 탄산소다액 등의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범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 (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동물과 파리 등 구제역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정액·털·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매몰(가축분뇨발효시설에서 처리중인 분뇨는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 또는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위험·경계·관리지역내 축산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예방약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1조(위험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위험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위험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험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위험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험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위험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위험지역안으로 반입금지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위험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경계지역 해제일부부터 유통 허용
5. 점유된 원유
  - 가. 경계지역 해제일까지는 소독·폐기. 다만, 지정차량을 이용하여 점유한 원유에 대하여는 고온단시간살균법(72~75℃에서 15~20초)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 이상에서 1초이상)으로 처리한 후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가능.

- 나. 경계지역 해제일부터는 방역조치 이전과 같은 유통을 허용하되,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은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경계지역 해제일부터는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 허용
  7. 정액·사료·가축의 분뇨·음식물쓰레기의 위험지역밖으로 반출금지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원유·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차단.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위험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 ⑤ 위험지역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위험지역의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의 방역조치기간보다 같거나 짧아서는 아니된다.
      1.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위험지역안의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2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위험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경계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경계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경계지역 설정대상 외곽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경계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우제류 가축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경계지역밖의 우제류 가축의 경계지역안으로 반입금지. 다만, 자돈전문생산농장의 자돈 등 이동제한기간중 과밀사육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경계지역안의 비어 있는 축사로의 이동 허용
2. 가축시장 및 도축장의 폐쇄. 다만, 경계지역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부산물은 소독·폐기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유통허용
5. 집유된 원유는 우제류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금지
6. 우제류 가축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구제역에 오염되지 아니



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7. 사료·가축분뇨는 경계지역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8.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우제류 가축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0. 그 밖의 차량은 소독후 통행허용
11. 경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
  - ⑤ 경계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우제류 가축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안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지역 방역)** ① 시장·군수는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관리지역 설정대상 경계선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지역의 외곽이 경계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안쪽만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시장의 폐쇄
  2.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우제류 가축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주기적인 예찰
  4. 검역원의 검사계획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모니터링 혈청검사
  5. 관리지역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검사 강화
- ③ 관리지역의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경계지역이 해제되는 날까지

로 한다.

**제24조(축사의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원의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 등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등안의 의사환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
2. 당해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원장의 기술적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4. 도축장등에 계류된 우제류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는 폐기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 조치

**제25조(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이 단기간 사육후 도축장에 출하되거나 그 밖에서 사유로 영구적인 예방접종표시가 어려운 가축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주사 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종돈·모돈 : 귀에 "○"모양의 구멍을 뚫거나 귀표 부착
2. 소·사슴·염소 : 둔부에 "○"모양의 낙인표시 또는 목걸이 부착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영구적인 표시방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 가축을 구매·판매 또는 출하한 일자 및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역방역대책본부)** ① 구제역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원의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구제역방역대책본부(검역원은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5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27조(종식 선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구제역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관리, 우제류 가축의 혈청검사, 구제역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원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가축의 재사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

제류 가축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별표 4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내외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 :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

## 제6장 보칙

**제30조(준용규정)** 이 요령은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을 제외한 법 제2조제2호가 목의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해당 제1종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C2011-27

---

## 2010~2011 구제역 백서

- 구제역의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 방지 방안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0. 31  
발 행 2011. 10. 31  
발행인 이 동 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 [dongyt@chollian.net](mailto:dongyt@chollian.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